발간사

증오범죄는 나와 다른 인종이나 국적, 종교, 성적(性的)취향을 가진 사람들, 혹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편견에서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부유층이나 백인 등의 사회 기득권층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까지 증오범죄의 개념을 확장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증오범죄의 피해자들 중에서는 사회적 약자들이 많습니다. 이민자들로 구성된 나라인 미국과 일찍이 외국 노동자들을 받아들인 유럽 선진각국에서는 증오범죄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있었지만 단일민족국가인 한국사회에서 증오범죄에 관한 연구는 매우 희소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외국인들을 어디에서든지 마주칠 수 있게 되면서 외국인에 대한 증오범죄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소하게는 욕설이나 모욕과 같은 심리적 폭력에서 구타나 기물파손과 같은 신체적 폭력에 이르기까지 증오범죄의 피해자가 된 외국인들의 사례를 기사로 접하게 되면서 선주한국인들의 다문화사회에 대한 의식제고가 필요함을 절실히 느낍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도 외국인 뿐만 아니라 성적소수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증오범죄는 이전부터 지속되어 왔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범죄로 인식하지 않은 탓에 그 심각성을 간과했기 때문에 증오범죄는 학적인 연구와 사회적 관심에서 떨어져 있게된 것이었습니다.

한국사회가 다문화·다인종사회로 변화되어가면서 증오범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으나 아직 실증연구들이 많이 부족하고 외국의 법제도 소개에만 머물렀던 한계가 있었는데 본 보고서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증오범죄의 피해실태를 조사하고, 선진각국의 증오범죄 관련 법제도를 비교·고찰하여 국내법에서 증오범죄의 형법적 위치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모색하였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살펴보고 우리가 가진 법체계안에서 증오범죄를 어떻게 평가하고 수용할지를 신중하게 모색하고자 한데서 이 보고서의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작은 결실을 밑거름으로 차후에도 증오범죄에 관해 진지하고 탄탄한 연구들이

많이 쏟아져나와 보다 조화롭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본 보고서를 위해 애쓴 김지영 연구위원과 이재일 교수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2011년 12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김 일수

국문요약

한국이 다문화 사회가 되면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증오범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나 외국인 혐오단체의 존재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지 않았으나, 인종이나 피부색을 이유로 한 공공장소에서의 모욕과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 교정기관의 부당한 처우, 경찰의 부당한 체포와 가혹행위 등의 사례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한국에서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증오범죄의 증가와 흉포성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증오범죄는 인종이나 피부색, 국적만의 문제가 아니라 종교와 성(性), 성적(性的)취향, 신체적 장애, 연령, 계층 등이 다른 다양한 집단에 대한 편견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범죄이다. 인종과 국적에서부터 성(性)과 계층 등의 전영역에 걸쳐 발생하는 증오범죄는 주로 주류집단이 비주류집단에 해를 가하는 것을 일컫지만, 소수집단의 구성원이 가해자가 되고 주류집단의 구성원이 피해자가 되는 일도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증오범죄의 개념에서 보자면 한국이 다문화 사회가 되기 이전부터 성적(性的)취향, 계층에 따른 편견과 혐오에서 비롯된 폭력이나 살인 등의 범죄는 드물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증오범죄는 한국사회 중요한 범죄유형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증오범죄에 대한 실증조사와 연구들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증오범죄의 피해실태를 조사하고, 선진각국의 증오범죄에 대한 대응방안 및 국내에서의 증오범죄의 형법적 위치를 설정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증오범죄의 역사와 개념, 특징, 선진각국의 대응방안 및 증오범죄의 형법적 위치설정을 위해서 문헌조사를 실시하고, 증오범죄의 사례를 수집하였다. 국내증오범죄의 발생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

였는데, 조사대상은 외국인 노동자와 외국인 유학생으로 한정하였다. 증오범죄는 인종과 국적, 계층, 연령, 성적취향, 정치적 지향 등의 다양한 편견대상에 의해 발생하지만, 본 연구에서의 실태조사는 인종, 국적, 종교적 차이에 초점을 맞추었다. 구체적으로 말해 실태조사는 외국인에 대한 편견에서 발생하는 증오범죄의 실태를 조사한 것이며, 이때의 외국인에서 백인은 제외하고 국적과 인종, 종교를 고려하여 중국인과 인도네시아인, 우즈베키스탄인에 한정하였고, 노동자와 유학생의 두 집단을 비교하였다.

증오범죄는 인종과 국적, 성적지향, 정치적 입장 등의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지만, 본 조사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증오범죄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외국인 중에서도 중국인과 인도네시아, 우즈벡인을 각 200명씩 할당하여 인종과 국적, 종교적 차이를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인 외국인들 665명 중 증오범죄피해를 경험한 사람들의 비율은 다음과 같았다. 먼저 폭행을 경험한 사람은 7명으로 1.1%였고, 말이나 행동으로 폭행의 위협을 당한 경험은 16명으로 2.4%를 차지했다. 강도를 당하거나 당할 뻔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3명과 5명으로, 각각 0.5%와 0.8%를 차지했다. 성폭행을 당하거나 당할 뻔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2명과 9명으로 각각 0.3%와 1.4%를 차지했다. 그리고 소유물을 파손 당하거나 파손 당할 뻔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각각 2명으로 0.3%를 차지했다. 자신의 종교나 국가의 상징이나 건물 등이 파손되는 경험을 하거나 파손당할 뻔한 경우는 각각 2명으로 0.3%를 차지했다. 물건이나 돈을 빼앗기거나 빼앗길 뻔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9명과 6명으로 각각 1.4%와 0.9%를 차지했다. 마지막으로 집이나 교회 등이 방화 당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없었고, 방화당할 뻔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1명으로 0.2%에 불과했다

이러한 증오범죄피해결과를 2009년에 10,67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내범죄피해실태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성폭력, 강도, 폭행·상해, 협박·괴롭힘 등의 폭력범죄에 있어서는 0.3%에서 0.5%사이로 피해자실태 조사에서의 결과보다 다소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 피해인 절도의 경우에 있어서는 본 조사에서 1.4%가 피해경험을 보고한 반면, 2009년 피해자실태조사에서는 2.9%가 피해경험을 보고하여 본 조사에서의 피해경험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는 표집의 수도 적고, 편파된 표집이나 2008년 범죄피해조사결과와 비교해

서 국내의 증오범죄발생율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인종, 종교, 국적으로 인해 본인이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33명의 대상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험을 하였는지 중복응답으로 확인하였다. 그 결과 1회에 그친 경우가 54.5%로 과반수를 차지하였고, 2회가 36.7%, 3회가 7.6%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말이나 행동으로 폭행의 위협을 당한 외국인의 경우에 5회에 이르는 위협을 반복해서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의 증오범죄 피해횟수는 평균 3.2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증오범죄 피해경험을 보고한 33명의 외국인들이 피해장소로 가장 많이 보고한 곳은 직장으로, 14명(42.4%)이 직장에서 인종, 종교, 국적을 이유로 피해를 입었다고 보고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버스나 기차, 비행기, 전차 등의 교통수단안(11명, 33.3%), 학교(6명, 18.2%)나 백화점, 마트, 옷가게, 음식점 등의 장삿집(6명, 18.2%), 인도나 차도 등의 노상(5명, 15.2%), 술집, 노래방 등의 유흥업소(4명, 12.1%)와 같은 공적 공간에서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하였다. 그 외에도 본인의 집에서 발생했다고 응답한 경우도 4명이 있었다.

한편 외국인들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분석하면, 출신국가나 종교에 따라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국적취득 여부도 범죄의 두려움과는 뚜렷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으나, 거주지역와 신분, 가계소득에 따라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유의미한 차이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거주지역의 외국인들이 인천과 경기지역 외국인들에 비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적었으며, 유학생들이 노동자로 온 외국인들보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낮았다. 또한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중에서 월소득이 높을수록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적었다. 월소득이 낮은 외국인 노동자들은 폭력범죄 뿐만 아니라 재산범죄에 대한 두려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외국인들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경제적 위치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현대사회에서의 형법은 과거와는 달리 피해자를 중심으로 한 형법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형법의 기능 중 사회보호적 기능이 중심이 되어 형법의 예방적 측면이 강조된다. 이러한 형법의 중심에 소위 '위험형법(Risikostrafrecht)'이 놓여 있으며, 위험형법은 범죄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회적 문제 - 여기서는 특히 범죄 - 를 조정하는 수단으로서 형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관련하여 최근에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소위 '증오범죄(hate crime; Hasskriminalität)'이다. 증오범죄는 인종·종교·성적 지향성·정치적 지향성·국적·민족·피부색 등 행위자가 평소에 가진 선입견(bias; Vorurteil)이 범죄의 동기가 되어 특정표지를 소유한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증오범죄는 해당 특정표지에 대한 선입견을 가진 자들에 의하여 특정표지를 소유한 불특정다수를 향한 공격행위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본인이 해당 공격행위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게 되어 사회적 불안요소로서 작용하게 된다.

다민족 사회인 미국에서는 특정표지를 소유한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린치, 방화, 유대인교회당에 대한 방화·파괴 등은 미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이었으며, 1980년대에 이르러 스킨헤드와 같은 외국인에 대한 혐오를 가진 증오집단이 생성되면서 혐오 및 편견범죄가 급격하게 증가되었다. 이에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증오범죄'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범죄행위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으로 1990년 4월 23일 '증오범죄통계법(The Hate Crime Statistics Act)'이 미국 의회를 통과하였고, 이 법률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은 증오범죄와 관련된 자료를 의무적으로 수집하게 되었다. 당시 법무부장관이 의무적으로 수집해야만 하는 증오범죄의 대상은 인종·종교·성적 취향·민족성에 대한 편견으로 인한 범죄이었지만, 그 후 장애인에 대한 편견에 의한 범죄(폭력범죄 규제 및 법집행에 관한 법(1994년); The Violent Crime Control and Law Enforcement Act), 청소년 대상 범죄 또는 청소년 실행 범죄 및 특정 성정체성에 대한 편견으로 인한 범죄(매튜 세퍼드 & 제임스 버드 증오범죄 예방법(2009년); Matthew Shepard and James Byrd, jr. Hate Crime Prevention Act) 또한 증오범죄의 의무적 수집대상으로 확대되었다. 증오범죄에 대한 논의와 대처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도 미국의 '증오범죄통계법'에 의한 증오범죄는 기존의 전통적인 범죄와 완전히 다른 새로운 유형의 범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범죄유형에 편견·혐오라는 동기가 더해진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영미법계인 미국과는 달리 대륙법계인 독일에서의 증오범죄에 대한 논의는 그다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이유로 증오범죄가 독자적인 유형의

범죄가 아니라 증오를 통하여 행위자가 동기화된 전통적인 범죄라는 것이며, 이로 인하여 i) 증오범죄는 개별적 사례에서 그 입증가능성이 현저히 낮으며, ii) 증오범죄의 퇴치를 위한 방법이 형벌을 강화하는 것뿐이고, iii) 이러한 형벌강화는 단지 형법을 심정형법(Gesinnungsstrafrecht)으로 만들어 버리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독일에서는 미국의 '증오범죄통계법'과 같은 증오범죄에 관한 개별법이나 증오범죄와 관련된 조항이 없다. 그리고 범죄통계에서도 증오범죄를 별도로 수집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지 않다. 독일에서도 외국인 혐오증 또는 극우보수주의적 선입견에 의한 범죄행위가 증가하고, 연방범죄청(BKA)은 이를 별도로 범죄통계에 포함시키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증오범죄통계처럼 증오범죄의 유형이 다양하지 않으며, 다만 외국인 혐오 및 극우보수주의라는 선입견에 의한 범죄행위만을 통계에 포함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에 외국인 혐오 및 극우보수주의가 동기가 된 범죄행위의 증가로 인하여 이러한 동기에 의한 폭력행위에 대한 형벌강화를 시도하고자 하는 입법개혁운동이 2000년 이후 시도되고 있으며, 특히 브란덴부르크주,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 및 작센-안할트주의 입법안이 대표적이다.

증오범죄는 기존의 전통적인 범죄와 완전히 다른 새로운 유형의 범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범죄유형에 편견·혐오라는 동기가 더해진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하는 행위자 지향적 이해방식에 따르면 증오범죄에 대한 별도의 대책은 필요없는 것으로 이해되어질 수 있다. 하지만 피해자 지향적 이해방식에 의하면 증오범죄를 특별한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손해 및 사회적 손해를 야기하는 독자적인 범죄행위로 이해할 수 있으며, 따라서 증오범죄는 사람 또는 재산에 대한 폭력범죄로서, 그 원인이 이러한 사람 또는 소유자·점유자의 인종, 종교, 민족, 성별, 정치적·성적 지향성, 연령, 정신적·신체적 장애 등으로, 행위자의 범죄목적은 피해자가 상징하는 것에 대한 공격행위가 된다. 이로 인하여 범죄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일반국민들의 불안감은 극도로 증가하게 되어, 사회불안요소로서 작용하게 된다. 결국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하여 '증오범죄'라는 개념이 형법에 도입되어야 하며, 증오·혐오로 인하여 동기화된 범죄행위를 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일반국민의 불안감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생성된 증오

범죄 관련 법률규정이 실질적 효과가 없이 단지 일반국민에게 '입법자 또는 국가가 국민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는 것만을 보여주기 위한 법률규정(소위 '상징입법')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제1장

서론

김 지 영

01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한국이 다문화 사회가 되면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증오범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나 외국인 혐오단체의 존재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지 않았으나, 인종이나 피부색을 이유로 한 공공장소에서의 모욕과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 교정기관의 부당한 처우[1], 경찰의 부당한 체포와 가혹행위[2] 등의 사례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한국에서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증오범죄의 증가와 흉포성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증오범죄는 인종이나 피부색, 국적만의 문제가 아니라 종교와 성(性), 성적(性的)취향, 신체적 장애, 연령, 계층 등이 다른 다양한 집단에 대한 편견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범죄이다(Bureau of Justice Assistance, 1997). 인종과 국적에서부터 성(性)과 계층 등의 전영역에 걸쳐 발생하는 증오범죄는 주로 주류집단이 비주류집단에 해를 가하는 것을 일컫지만, 소수집단의 구성원이 가해자가 되고 주류집단의 구성원이 피해자가 되는 일도 일어날 수 있다(Bureau of Justice Assistance, 1997). 이러한 증오범죄의 개념에서 보자면 한국이 다문화 사회가 되

1) 2011년 7월 26일자 한겨레 신문
2) 2010년 9월 10일자 한국일보

기 이전부터 성적(性的)취향, 계층에 따른 편견과 혐오에서 비롯된 폭력이나 살인 등의 범죄는 드물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증오범죄는 한국사회 중요한 범죄유형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증오범죄에 대한 실증조사와 연구들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민자들의 국가인 미국에서는 일찍부터 증오범죄에 대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처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 미의회는 증오범죄 통계법(the Hate Crime Statistics Act)을 1990년 4월 23일에 통과시켰다. 이 법에서 증오범죄란 기존의 전통적인 범죄와 완전히 다른 새로운 유형의 범죄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범죄유형에 편견이라는 동기가 더해진 것을 의미한다. 이 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인종, 종교, 성적취향, 또는 민족성에 대한 편견에 의해 일어난 것이 확실한 범죄"에 대해 의무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게 되었다. 미법무부 장관은 증오범죄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관리하는 책임을 FBI의 장에게 위임하였고, FBI의 장은 다시 UCR 프로그램(the Uniform Crime Reporting Program)에 이를 맡겼다. 법무부 장관 산하에서 여러 주와 지역에 있는 법집행기관과의 협력과 원조에 힘입어, UCR 프로그램은 의회가 요구한 증오범죄통계자료를 만들어 해마다 증오범죄의 발생현황을 공표하고 있다.[3)]

국내에서 증오범죄에 관한 연구는 주로 문헌고찰과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증오범죄관련 법률의 검토라든지(박상열, 2001). 미국에서의 인종차별에 의한 증오범죄(최응렬, 정승민, 2005), FBI 자료상에 나타난 증오범죄의 피해자들에 관한 연구(허경미, 김정원, 2007) 등은 문헌고찰적 방법에 기대고 있다. 이러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주로 미국과 독일의 사례와 통계를 통해 증오범죄의 실태를 분석하고 있다. 또한 사례연구들을 보면 일명 '묻지마 살인' '무동기 범죄'로 불리워지는 범죄, 여성과 부유층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폭력살인범죄를 증오범죄에 포함시킨 박순진(2004), 임미혜(2006), 남기철(2006) 지영배(2010) 등의 연구가 있으나, 양적 연구는 전무하다. 또한 선진국의 법제도가 아닌 국내의 법체계에서 증오범죄를 어떻게 다룰것인지에 관한

3) http://www.fbi.gov/about-us/investigate/civilrights/hate_crimes

심도깊은 논의는 부족하였다. 때문에 본 연구는 국내에서 점차로 증가하는 증오범죄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증오범죄의 피해실태를 조사하고, 선진각국의 대응방안 등을 기술하고, 입법적 대안마련을 위해 증오범죄의 형법적 위치에 관해 논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증오범죄의 역사와 개념, 특징, 선진각국의 대응방안 및 증오범죄의 형법적 위치설정을 위해서 문헌조사를 실시하고, 증오범죄의 사례를 수집하였다. 국내증오범죄의 발생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조사대상은 외국인 노동자와 외국인 유학생으로 한정하였다. 증오범죄는 인종과 국적, 계층, 연령, 성적취향, 정치적 지향 등의 다양한 편견대상에 의해 발생하지만, 본 연구에서의 실태조사는 인종, 국적, 종교적 차이에서 초점을 맞추었다. 구체적으로 말해 실태조사는 외국인에 대한 편견에서 발생하는 증오범죄의 실태를 조사한 것이며, 이때의 외국인에서 백인은 제외하고 국적과 인종, 종교를 고려하여 중국인과 인도네시아인, 우즈베키스탄인에 한정하였고, 노동자와 유학생의 두 집단을 비교하였다.

연구기간과 연구비가 한정된 관계로 600명의 외국인을 목표로 설문을 실시하였는데, 600명이라는 적은 인원안에서 충분한 피해사례가 나와야 신고율, 가해자 특성 등의 2차 분석이 가능하므로 증오범죄의 대상이 되기 쉬운 동남아시아인들, 그중에서도 국적과 인종, 종교, 국내 체류인원현황 등을 고려하여 3개국 출신자들을 표집하였으며 출신국이 동일한 외국인들안에서도 노동자와 유학생들이 겪는 증오범죄가 다를 수 있다는 가정하에 체류자격이 다른 두 집단을 선정한 것이다(표 1-1 참고). 노동자들의 경우, 수도권에 거주하는 사람들로만 목적표본수를 채울 수 있었으나 유학생의 경우에는 수도권 거주자들로 목적표본수를 채울 수 없어 전국거주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대상이된 유효표본은 총 665명이다.

표 1-2 조사설계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대인 면접 조사
조사일시	외국인 노동자 2011년 10월 17일(월) ~ 11월 10일(목)
	외국인 유학생 2011년 10월 20일(목) ~ 11월 13일(일)
조사대상	수도권 거주 외국인 노동자(중국,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전국 거주 외국인 유학생(중국,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유효표본	외국인 노동자(중국 88, 인도네시아 133, 우즈베키스탄 106)
	외국인 유학생(중국 132, 인도네시아 100, 우즈베키스탄 106)
표집방법	목적적 표집

제2장

이론적 배경

김지영·이재일

02 이론적 배경

제1절 증오범죄의 역사

1. 미국증오범죄의 역사

증오범죄에 대한 논의가 발전해오면서 오늘날에는 증오범죄 행위를 보다 쉽게 인식할 수 있게 되었지만 과거에도 그랬던 것은 아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법에 의한 규제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즉, 피해자의 헌법적, 법률적 권리는 인정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인간성을 무시하는 구시대적인 가치가 규범화되어 있었으며, 정부와 다른 기관들 또한 증오범죄 행위에 연루되거나 직접적으로 가담하기도 했었던 것이다. 이론적 배경에서는 다인종 다문화로 구성된 국가이기 때문에 증오범죄를 엄중히 처벌하며 증오범죄 통계가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된 미국과 한국과 유사하게 선주민과 이주민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한국이 그 법체계의 상당부분을 취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를 중심으로 증오범죄의 역사와 개념, 증오범죄의 발생현황 등을 논의하고자 한다.

학자들에 따르면, 증오범죄 행위자는 확고한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이를 정당화한다(Arendt, 1963; Gibbs, 1989; Levin & McDevitt, 1993). 이들중 상당수는 자민족중심주의자이며 피해자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과거부터 현재까지 미국 문화는 이같은 편견적 사고방식과 가치체계를 내포하고 있었다. 즉 미국의

사회문화에는 심각한 편견과 차별이 조직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증오의 문화'가 지속적으로 사회 구성원의 일부인 피해자들을 하찮은 존재로 여기도록 하고 있다.

'명백한 사명(Manifest Destiny)'이란 신의 명령에 따라 앵글로 색슨 백인 개신교도가 북미 대륙을 지배해야 한다는 주장을 말한다. 1845년 이전까지 공식적으로 정책이 만들어지지는 않았으나, 이러한 신념은 백인의 식민지배 시대 초기부터 확실히 존재하였다. 17세기에도 '성스러운 의무'라는 신념이 존재하여(Horsman, 1981; Perlmutter, 1992), 식민지 시대의 미국인들은 기독교를 인종적 순수성이나 흰피부색과 연결하였고, 그 외 다른 종교들은 인종적 불순함 또는 유색인종과 관련시켰다. 이렇게 미국 역사는 초기부터 '명백한 사명', 기독교, 인종적 정체성이 문화적으로 결합되어 있었다. 실제로, 인종적 우월주의는 미국문화에 깊숙이 침투해 있으며, 미국인은 곧 백인이라는 생각 때문에 다른 인종들은 외국인 취급을 받고 있다. 이러한 구분을 지속시키기 위하여 예방적 조처가 취해지기도 한다. 따라서 배척과 차별 같은 관행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면 심한 편견과 증오는 사회적으로 정당화된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명백한 사명'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대륙적 확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라면 필요한 모든 수단이 동원된다(Merk, 1963). 차별, 인종주의, 사기, 절도, 강간, 납치, 살인 등이 '명백한 사명'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범죄 행위들도 수인 가능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과거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폭행, 절도, 살인, 강간 같은 범죄행위는 일반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 반면, 같은 행위라도 인종주의나 자민족중심주의를 원인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그렇게 할 수 없었다(Jordan, 1968). 이는 법률과 형사체계가 힘있는 이익집단의 입장을 대변하는 경우가 많고(Mann, 1993; Walker, Spohn, & DeLone, 1996), 미국에서 가난한 이들과 유색인종이 폭넓게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여러 주에서 유색인종은 특히 백인이 피고인인 경우 완전한 법적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Perlmutter, 1992; Steinfield, 1973; Takaki, 1994a, 1994b). 그러나 1960년대 흑인인권운동은 차별과 함께 다루어졌기 때문에 흑인인권 운동이 미국사회로 번져가면서 유색인종들이 취업, 교육, 투표, 정부 정책 같은 다양한 분야에 접근하거나 공공편의시설을

이용할 기회는 크게 강화되었다. 이러한 운동을 하면서, 정부가 정책적, 경제적인 기회를 신장시키고 시민권을 보장한다면 집단간의 폭력은 부분적으로라도 누그러질 수 있었기 때문에, 차별철폐가 무엇보다 중요한 화두라는 사실에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즉 폭력을 억제하려는 노력은 사회통합이라는 보다 큰 목표를 이루는 데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증오범죄에 주목하게된 것이다. 증오범죄라는 개념은 다양한 사회운동 담론이 결합되어 생겨났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흑인 인권운동, 여성운동, 동성애자운동, 장애자 권익 운동, 범죄피해자 권익 운동이다(Jenness & Broad, 1997). 이러한 운동들은 지금의 반증오범죄운동으로 수렴되었고(Jenness, 1999; Jenness & Grattet, 2001; Maroney, 1998), 이것이 미국의 증오범죄 연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2. 독일증오범죄의 역사

독일에서의 '증오범죄(Hasskriminalität)'라는 개념은 미국의 '증오범죄(hate crime)'와 다른 문화적·역사적 문맥속에서 발전하여 왔다. 독일에서는 극우보수주의적으로 동기화된 범죄와 국가사회주의(Nationalsozialismus)의 전통 및 사상에 함몰되어 있는 범죄단체에 증오범죄의 내용적 핵심이 있다.

선입견 또는 증오에 의하여 동기화된 것으로 평가되는 공격행위는 늦어도 1990년대 이후 독일 형사정책에서 주요 관심대상이 되었다.[4] 일련의 센세이셔널한 폭력사건이 외국인 혐오에 의한 공격행위로서 새로이 논쟁되었으며, 선입견에 의하여 동기화된 범죄에 관한 토의가 정치적 사건이 되었다. 예를 들어, 2007년 8월 19일 밤 작센주 Mügeln시 도시축제가 폭력적 사건으로 비화되었는데, 이 축제도중에 한 무리의 독일인들이 '독일은 독일인에게(Deutschland den Deutschen)' 및 '외국인은 나가라(Ausländer raus)' 라는 구호를 통하여 도시전체를 선동하였고, 그 와중에 인도출신 8명의 남성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 검찰에 의하면 이 사건은 외국인 혐오증이라는 배경하에서 발생하였으며, 제1심에서 국민선

4) Kubink, MSchrKrim 2002, S. 325.

동(Volksverhetzung)의 혐의로 18세 피고인은 벌금형이, 그리고 그 밖의 주요 피고인들은 3개월의 구금형이 선고되었다.[5] 또 다른 사건은 2008년 7월 22일 밤 브란덴부르크주 Templin시에서 발생하였는데, 우익계 소속의 2명은 노숙자를 폭행한 후에 증거인멸을 위하여 피해자의 몸에 불을 지르려고 하였다. 그 노숙자는 수차례의 머리에 발길질을 당하여 사망하였다. 재판장은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와 피고인들의 신나치주의적 인간상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두명의 행위자가 인간경시적이고 정치적 신념에 의하여 그 피해자를 살해한 것을 인정하였다. 행위자들은 행위동기의 비열함을 이유로 모살죄와 모살방조죄로 중형을 선고받았다.[6] 또한 최근에 큰 주목을 받은 사건이 2009년 7월 1일 Dresden시에서 발생하였다. 32세의 Marwa El-Sherbini는 2008년 그녀를 '테러리스트' 및 '이슬람주의자'라고 모욕했던 러시아 출신의 남성을 고소하였는데, 그 남성은 드레스덴 지방법원에서 소송 중에 그녀를 18번의 자상을 가하여 살해하였다. 그리고 그 남성은 자신의 형사재판 중에 갑자기 이집트 여성에게 달려들어 그녀를 칼로 찔러 부상을 입혔다. 그 사건 이후 드레스덴 검찰은 비열한 행위동기에 의한 모살죄를 적용하여 그를 기소하면서, 행위동기가 비유럽인과 이슬람교도에 대한 확정적 증오라고 하였다.[7] 피고인은 모살, 모살미수, 중상해를 이유로 하여 종신형이 선고되었다. 러시아출신 독일인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은 인정하였지만 외국인 혐오로 인한 동기는 부정하였는데,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눈에는 모든 이슬람인이 회교도일 뿐이라는 생각으로 회교도에 대한 피고인의 심각한 경시가 있다는 이유로 책임의 양이 중하다고 인정하였다.[8] Mügeln과 Templin이라는 도시명은 당시 사건 이후에 일반 대중의 감정에는 인종주의·외국인 혐오증과 동의어로 인식되었으며, 구 동독의 일부 지역은 외국인에게는 명백히 위험한 지역이라는 의미에서 '가서는 안 될 장소(No-Go-Areas)'로서 사회적 논쟁을 야기하였다.[9] '증오범죄'라는 개념은 형사정책적 논의뿐만 아니라 언론보

5) "Mob von Mügeln. Fremdenfeindlich aber nicht organisiert", in: N-TV.de, 31.08.2007.

6) LG Neuruppin, 21 Kls 236 Js 22868/08 (2/09), S. 64; "Hohe Haftstrafen im Templner Mordprozess", in: Focus Online, 05.05. 2009.

7) "Anklage nach Mord im Landgericht Dresden", in: MDR.de, 26.08.2009.

8) "Höchststrafe für Mörder von Marwa El-Sherbini", in: Süddeutsche Zeitung.de, 11.11.2009.

도에서 더 자주 사용된다.

독일에서 경찰의 범죄인식기준으로서 '증오범죄'라는 명칭이 어떻게 도입되었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 수년간의 형사정책적·사회적 전개를 추적해 볼 필요가 있다. 90년대 독일은 이주민 증가로 인한 다인종 사회로의 변화가 외국인 혐오에 의하여 동기화된 폭력행위를 급격하게 증가시켰다. 이러한 변화는 특정 그룹 소속인에 의한 선입견에 의하여 동기화된 범죄행위로 독일의 형사정책의 초점을 옮겨놨다.[10] Hoyerswerda, Rostock, Mölln 및 Solingen에서 소수인종을 박해하기 위한 이민자와 난민지원자에 대한 폭력이 급증하였다. 1990년부터 1999년 사이에 연방범죄청(Bundeskriminalamt)은 극우보수주의적, 외국인 혐오적, 그리고/또는 반유대인적인 동기에 의하여 범하여진 살인사건을 공식적으로 16건이라고 보고하고 있다.[11] 1994년 이후의 범죄수는 전체적으로 감소하였지만, 이주민에 대한 외국인 혐오적인 공격행위뿐만 아니라 노숙인, 동성애자 또는 정치적 반대자와 같은 다른 피해자 그룹에 대한 공격행위는 지금까지도 항상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00년 10월 2일 Düsseldorf에서 극우보수주의자에 의한 유대인 교회당의 방화사건이 독일전역을 분노하게 하였고, 당시 연방총리였던 Gerhard Schröder는 국민들에게 소위 '분별력 있는 사람의 봉기(Aufstand der Anständigen)'를 호소하였다.[12]

외국인 혐오적 공격행위에 대한 피해자 정보의 부족과 역사적으로 극우보수주의와 반유대주의적으로 동기화된 범죄에만 제한적으로 초점을 맞추어 오던 그동안의 경찰실무에서, 2001년 연방 및 각 주의 내무부장관회의에서 경찰의 범죄유형에 '증오범죄'라는 독자적인 카테고리를 신설하였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피해자 집단에 대한 폭력범죄의 출현형태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정치적·이데올로기적 범죄와 극우보수주의자에 의한 범죄에의 집중은 더 이상 시대에 적합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독일은 특정 그룹 소속원에 의한 선입견에 의하여 동기화된 범죄를 위한 공식적인 범죄유형으로 도입되었고, 이는 개념적 정확성과

9) "Zentralrat der Juden sieht Not-Go-Areas", in: Welt Online, 22.08.2007.

10) BMI/BMJ, 1.PSB, S. 282. 참조

11) BT-Drs. 14/805 참조

12) "Schröder fordert Aufstand der Anständigen", in: Spiegel Online, 04.10.2000.

경찰에서의 범죄파악의 객관화에 기여하였다. 새로운 범죄카테고리의 도입으로 다른 피해자 집단과 사회적 차별에 관한 구성요건이 경찰 범죄파악에 고려되고, 범죄예방적 관점에서 이러한 영역에 더 강력하게 개입할 수 있게 되었다.[13] 그러나 증오범죄에 대한 독일모델은 경찰에 의한 통계적인 카테고리화 및 범죄파악에 제한된다. 형법의 입법단계에서는 '증오범죄'라는 개념을 아직까지는 수용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증오범죄'라는 개념정의의 불명확성이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형사정책적 어젠다 형성에서는 증오범죄가 그 기능을 발휘한다. 왜냐하면 형사정책적 어젠다 형성은 공식적 범죄통계에서 사건수의 지속적인 증가와 일반 대중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는 언론이 좋아할 만한 사건들과 연결되기 때문이다.[14]

국민선동에 대한 범죄구성요건은 이미 19세기 후반에 하나의 '계급투쟁조항(Klassenkampfparagraph)'[15]으로서 공적 평화의 유지에 기여하였으며, 그 후에 특정 국민그룹에 대한 가벌적 행위의 선동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으로 발전하였다. 특히 형법 제130조는 국가사회주의의 역사적 사건과 2차 세계대전 후 다시금 증가하는 반유대주의적 폭력행위 및 반민주주의적·국민선동적인 경향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동법률조항은 유대인 민족을 위하여 특별히 범죄화되었다는 점에서 심각한 회의론에 직면하게 된다.[16] '독일 유대인 중앙위원회(Zentralrat der Juden in Deutschland)'의 당시 위원장은 "개별적인 민족그룹의 형법적 특권은 반생산적이고 이러한 집단에 대한 혐오감만 점점 더 강화시킬 뿐이다"[17]라고 비판하였다. 결국 1960년에 이르러 연방의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선동조항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다. 즉, 통과된 법률안은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은 "국민의 일부(Teile der Bevölkerung)"로서 기술하였으며, 독일에서의 공적 평화의 유지 및 독일 기본법 제1조에 따른 인간의 존엄성의 보호를 위하여 제130조를 제정하였다.[18]

13) BMI/BMJ, 1.PSB, S. 273ff. 참조
14) Aden, in: Lange (Hrsg.), Kriminalpolitik, 2008, S. 123ff.
15) 1871년 제국형법전(RStGB von 1871).
16) Junge, Das Schutzgut des § 130, 2000, S. 10ff.
17) Rohrßen, § 130 StGB, 2009, S. 166ff.

극우보수주의(Rechtsextremismus)는 "독일 기본법에 구체화된 근본원칙으로서 인간의 평등에 반하는 것으로 인권의 효력을 부정하며, 이것으로 인하여 극우보수주의적 세계관은 인종적인 소속감의 과대평가에 의하여 특징지워지고, 그로부터 외국인 혐오증(Fremdenfeindlichkeit)이 발생한다"[19]라는 것으로 이해되어진다. 극우보수주의적 이데올로기는 반유대주의(Antisemitismus), 인종주의(Rassismus) 및 암묵적 폭력행사의 의향과 같은 무관용주의(Intoleranz)를 내포하고 있다.[20]

독일의 형법 제130조는 독일 재통일 이후의 시기인 1990년대 초에 극우보수주의로 동기화된 개별 국민집단에 대한 공격이라는 폭력이 증가하면서 특별한 의미를 획득하였다. Hoyerswerda, Rocstock, Mölln, Solingen에서의 방화사건을 계기로 내적 안전이 쟁점화되었고, 1990년부터 1999년까지 극우보수주의로 동기화된 범죄의 사건수는 1만건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전개는 결국 경찰, 검찰, 법원을 통한 외국인 혐오적·반유대주의적·극우보수주의적으로 구분된 범죄의 형사소추를 최우선시하였으며, 이러한 범죄영역을 다루는 특별 합동수사기관을 만들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1994년 12월 1일 범죄퇴치법(Verbrechensbekämpfungsgesetz)의 시행을 통하여 제130조 규정이 개정되어, 오늘날까지 사용되고 있다. 제130조 제1항은 다음과 같다.

제130조 (국민선동)

제1항. 공적 평화를 해하는 것에 적합한 방식으로

1. 국민의 일부분에 대한 증오를 선동하거나 또는 국민의 일부분에 대하여 폭력 조치 또는 자의적 조치를 선동하거나, 또는
2. 국민의 일부분을 모욕하거나, 악의적으로 경멸하거나 또는 중상모략한 자는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으로 처벌한다.[21]

---

18) Glet, Sozialkonstruktion, 2011, S. 16.

19) 독일 연방헌법보호청(Bundesamt für Verfassungsschutz) 용어해설 참조 (http://www.verfassungsschutz.de/de/Glossar_FAQ/af_glossar/Glossar.pdf)

20) Coester, Hate Crime, 2008, S. 349ff.

21) § 130 (Volksverhetzung) (1) Wer in einer Weise, die geeignet ist, den öffentlichen Frieden zu stören,

1. zum Haß gegen Teile der Bevölkerung aufstachelt oder zu Gewalt- oder Willkürmaßnahmen

이러한 영역에서 독일의 형사사법실무는 무엇보다도 극우보수주의·외국인 혐오주의를 저지하고 극단주의적 선동자의 확장을 방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국민선동에 관한 신조항의 목적은 »사회에서의 평화로운 공동생활의 보호 및 위협받는 국민그룹의 안전 또는 안전감을 위하여 외국인 혐오적·극우보수주의적·신나치주의적 사상확장의 방지«에 있다.[22)]

제2절 증오범죄의 개념

앞서 언급한바, 증오범죄란 단순히 말해서 인종, 종교, 국가, 성적취향, 계층, 연령 등에 따른 편견과 증오에서 발생한 범죄로 기존의 전통적인 범죄와 완전히 다른 범죄유형이 아니라 기존의 범죄유형에 편견이 더해진 범죄를 가리킨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추상적인 개념으로 본 연구에 앞서 증오범죄의 개념에 관해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증오범죄를 가중처벌하는 미국에서는 각 주마다 증오범죄방지법을 통해 증오범죄를 조금씩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네소타주에서는 피해자의 인종, 종교, 민족, 성, 나이, 장애, 성적 지향이 동기가 된 범죄를 증오범죄로 규정하고 있고, 뉴저지에서는 피해자의 인종, 얼굴색, 종교적 신념 혹은 민족성 등을 증오범죄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오레곤에서는 인종, 피부색, 종교, 출생지, 성적 지향, 결혼상태, 정치적 관계, 신념, 노동단체, 반노동단체, 심리적·신체적 장애, 나이, 경제력, 사회적 지위, 피해자의 시민권 등이 증오범죄의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일리노이에서는 피부색, 종교적 신념, 민족적 뿌리, 신체적 장애에 대한 편견으로 발생하는 범죄를 증오범죄에 포함하고 있다(Perry, 2001). 반면 편견의 정도와 인과관계의 정도에 따라 네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증오범죄

gegen sie auffordert oder

2. die Menschenwürde anderer dadurch angreift, dass er Teile der Bevölkerung beschimpft, böswillig verächtlich macht oder verleumdet, wird mit Freiheitsstrafe von drei Monaten bis zu fünf Jahren bestraft.

22) Junge, Das Schutzgut des § 130, 2000, S. 42.

의 성립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첫째, 심한 편견과 강력한 인과관계, 이는 증오범죄가 성립하는 가장 확실한 조건이 된다. 둘째, 심한 편견과 경한 인과관계의 경우, 이는 심한 편견을 가진 개인에 의해 범죄가 저질러지지만 편견이 범죄행위의 동기인지에 관해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증오범죄로 추정할 수 없다. 셋째, 경한 편견과 긴밀한 인과관계의 경우, 대부분 미국의 증오범죄가 이 범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은 강력한 신념을 지닌 증오범죄자도, 망상을 가진 증오범죄자도 아니며, 보통의 범죄자이거나, 비행청소년 등일 수 있다. 미국에서 통계상으로 보고되는 증오범죄의 대부분이 세 번째 유형에 해당한다. 넷째는 경한 편견과 경한 인관관계의 경우인데, 이러한 범죄행위의 대부분은 일시적인 분쟁이나 순간적인 분노로부터 초래된 것으로 가끔 증오범죄로 간주되지만 일반적인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가 더 많다(Jacobs & Potter, 2000).

한편 경찰관, 피해자, 가해자들을 상대로 한 인터뷰를 보면 증오범죄자는 범죄 동기를 기준으로 크게 세개의 부류로 묶을 수 있다. 첫째, 흥분과 스릴을 느끼려고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있는 한편, 자신의 생활기반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었던 경우도 있으며, 적은 수이기는 하지만 피해자들을 악하거나 열등한 존재로 보고 이들을 없애는 것을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으로 여겨 증오범죄를 저지른 예도 있다. 위 세 개의 집단 모두에서 발견되는 기저요인은 극심한 편견이다. 그러나 각 집단의 편견과 증오가 폭력행위로 발현되는 조건은 심리적·환경적으로 서로 다르다. 예를 들면, 증오범죄 행위를 하면서 스릴을 느끼는 가해자 집단의 경우 일종의 유희로, 혹은 권력욕 때문에 증오범죄를 저지른다. 방어적인 가해자 집단은 자신의 생활기반이 위협받는다고 느낄 때 이의 보호를 목적으로 혹은 보다 보복적인 가해자 집단의 경우는 모욕이나 폭행을 당했다고 인지할 때 그에 대해 보복하기 위해서 증오범죄를 저지른다. 마지막으로 사명의식에 젖은 가해자들의 경우, 자신들을 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정화하는 십자군이라고 생각한다(Levin & McDevitt, 1993).

증오범죄 피해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주류집단과 다른 인종이거나 민족적·문화적으로 완전히 다른 소수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으며(Bureau of Justice Assistance, 1997), 대부분 주류집단보다 정치적·경제적으로

약자였다(Hamm, 1993). 증오범죄의 가해자들에게 피해자들은 자신의 경제적·신체적 안정과 삶의 질을 위협하는 존재로 간주된다(Levin and McDevitt, 1993). 그러나 한국 증오범죄의 범주안에는 불특정다수를 향한 무동기 범죄까지 포함되었다(박순진, 2004; 임미혜, 2006). 예를 들어 지존파의 연쇄살인이나 대구지하철 방화 등에 있어 부유층에 대한 증오, 장애가 된 자신의 처지로 인한 세상에 대한 증오 등이 동기가 된 것으로 국내연구자들은 이러한 범죄들도 증오범죄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피해자들은 사회적 주류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연구자들이 주장하는 증오범죄의 핵심은 분노나 증오가 아닌 사회적 편견이라고 할 수 있다. 편견이란 왜곡된 고정관념을 근거로 하여 어떤 집단 전체를 나쁘게 보는 것이다(Morgan, King & Robinson, 1981). 또한 편견이란 개인이 속한 사회의 산물이다. 어떤 사회에서는 편견의 대상이 되는 집단이 어떤 사회에서는 존경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박순진(2004)은 미국의 증오범죄는 편견의 희생자인 집단이 동시에 증오범죄의 희생자가 되지만, 한국의 증오범죄는 편견의 희생자인 집단이 증오범죄의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즉 증오범죄의 개념을 편견 그 자체에 의해 동기화된 것이 아니라, 편견의 희생에 의해 동기화된 범죄로까지 확장한 것이다.

미국식 증오범죄에 대한 개념정의를 독일로 그대로 가져오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사회적·정치적 출발의 전제조건과 공공기관에서 수집하는 통계적 자료들이 서로 비교될 수 없기 때문이다. 증오범죄라는 용어는 하나의 법적 카테고리도 아니고 특정된 법적 구성요건도 아니다. 증오범죄라는 용어는 다만 선입견에 의하여 범하여진 공격행위와 관련된 범죄학적 개념일 뿐이다.[23] 현재 이에 관해서는 두가지 이론적 원칙이 있다: 첫 번째 방식은 행위자 지향적 모델(das täterorientierte Modell)로서, 이 모델에서는 증오범죄의 개념을 정의하는데 있어서 행위동기가 중요하다. 이러한 방식은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인종, 종교, 또는 성적 동기상황에 의하여 범하여진 범죄를 포함한다. 이러한 고찰방식은 입증의 문제점과 행위자 심정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두 번째 방식은 피해자 지향적 모델(das opferorientierte Modell)이다.[24] 피해

23) Glet, Sozialkonstruktion, 2011, S. 59.

자가 어떤 특정된 사회적 그룹에 속해 있고, 그러한 그룹 소속의 피해자에 대한 공격행위가 그 중심을 이루고, 피해자에 대한 개별적인 결과 및 사회적 공동생활에 대한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선입견에 의하여 동기화된 범죄에 높은 상징적 가치를 부여한다. 증오범죄라는 개념은 통일된 개념정의 또는 법적 위치지움의 관점에서 볼 때, 그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다양하고 상반된 서술이 된다. 이것은 지금까지 범죄학 또는 형사사법기관에서 보편적으로 승인된 증오범죄라는 개념정의가 왜 존재하지 않았는가를 잘 설명해 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형사사법기관의 실무가들에게는 개념정의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러한 개념정의가 상황에 대한 통일적 평가와 추상적인 법률규정이 구체적인 개별사례로 전환하는 것에 기여하기 때문이다.[25]

개념논쟁과 관련된 상이한 개념정의 방식이 다수 존재한다. 하지만 행위자와 피해자가 상이한 그룹 소속임을 나타내고 행위동기가 어떤 특정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피해자의 자격에 있다는 사실에는 의견이 일치한다. 증오범죄의 피해자는 행위자와 깊은 관계가 없는 자로서 대부분이 우연히 그리고 고정된 개인적 표지들에 의하여 선택되어지고, 행위시에 혐오·선입견·증오의 결과로서 특정 그룹 전체에게 비하 및 위협이라는 목적실현과 관련되어져 있다는 것에도 어느 정도는 동의가 존재한다. 피해자 개인은 어느 특정 그룹의 상징적 대표자로서 기능하고, 그러한 행위를 통하여 행위자는 이러한 그룹에는 인간의 존엄성, 헌법적 기본권 그리고 존재 자체를 위태롭게 해야 한다는 '부정의 표지(Botschaft der Ablehnung)'를 보낸다. 동시에 그러한 행위를 통하여 유사한 심정을 가지고 있는 폭력행위를 준비하고 있는 그룹을 선동하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증오범죄 이외에 사회에서의 평화로운 공동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소위 '표지범죄(Botschaftsverbrechen)'라고도 부를 수 있다.[26]

이러한 범죄유형 구별에 있어서 어떤 잠재적 피해자표지와 어떤 행위자 그룹이 고려되야 하는가는 우선적으로 개별 국가들의 특이성에 따라 다르게 된다.

24) Schneider, in: ders. (Hrsg.), Internationales Handbuch der Kriminologie, 2009, S. 229.

25) Glet, Sozialkonstruktion, 2011, S. 59.

26) Schneider, BewHi 2003 (50/2), S. 115ff.

문화적 특징·사회적 규범·정치적 이익·역사적 맥락 등의 상이함이 어떤 개념을 정의하는데 있어서 초국가적인 통일성을 저해하며, 주제의 초점을 상이하게 만든다. 독일에서는 증오범죄의 개념정의를 위하여 행위자 지향적 고찰방식이 사용되고, 이러한 고찰방식은 동기 및 행위를 결정하는 행위자의 선입견에 의하여 좌우된다. 따라서 동일한 범죄일 경우 피해자가 증오범죄의 대상이 된 지위를 실제적으로 소유하고 있는지 또는 행위자가 피해자가 특정 그룹 소속원이라는 것을 추측했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중요하지 않다.[27)]

증오범죄로서 표현되는 현상은 상이하다. 따라서 독일에서는 개념설정의 복잡성 및 형사정책적 논의의 부존재로 인하여 어떠한 범죄가 실무에 있어서 증오범죄의 카테고리에 귀속되어질 수 있고, 귀속되어져야만 하는가에 대해서도 불분명하다. 개념규정의 범위내에서 보호요소로서 피해자의 고유한 표지 및 불변의 표지로 인한 행위자와 다른 피해자가 속해있는 그룹에 관한 문제라는 것에는 이론적 이해가 일치한다.[28)] 독일에서는 이러한 범죄의 범위가 여러 개의 카테고리로 나뉘고, 상이한 출현형태 또는 상이한 피해자 유형이 개념정의에 함께 포함된다. 증오범죄의 피해자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소수자그룹에 속한다. 여기에서 소수자 그룹내에서 발생되는 범죄들 또한 이 범죄카테고리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만 한다. 그리고 소수자그룹의 구성원들의 다수자그룹에 대한 공격행위 또한 발생할 수 있다. 결국 사회적 차별에 관한 구성요건처럼 광범위하게 파악할 수 있는 범죄가 공통적 범죄카테고리인 증오범죄에 위치지울 수 있다.

피해자 표지 및 피해자 소속 그룹의 동일성에 대한 다양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영역을 거론할 수 있다.

- 인종주의 및 외국인 혐오증
- 반유태주의
- 이슬람 공포증 / 이슬람 혐오증

27) Glet, Sozialkonstruktion, 2011, S. 61.

28) Krupna, Das Konzept, 2010, S. 20ff.

- 기독교인 또는 다른 종교 구성원에 대한 공격행위
- 집시에 대한 공격행위
- 동성애자·성전환자·이성애자에 대한 증오범죄
-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폭력행위
- 노숙인·사회적 약자·난민지원자 등에 대한 공격행위
- 반대의 정치적 의사 및 확신에 근거한 공격행위

이러한 열거는 최종적인 것은 아니다. 다만, 위의 열거된 표지들을 볼 때 증오범죄의 상이한 개념정의는 가변적이고, 또한 사회적 범주화 및 사회내의 특정 그룹의 지위에 의존하는 정도가 강력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29] 독일 경찰이 파악한 증오범죄의 사례들은 우선적으로 '외국인 혐오증' 및 '반유대주의'의 영역에 따라서 구별되는 피해자 표지를 포함한다. 즉, 증오범죄는 단호한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의하여 수행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대부분의 선입견에 의하여 동기화된 사례들은 극우보수주의라는 정치적으로 동기화된 영역에 해당된다. 증오범죄라는 카테고리에 파악할 수 있는 범죄들은 부분적으로나마 정치적 좌파영역 또는 외국인범죄와의 관련성을 가지고 나타난다.[30]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이러한 카테고리화에 귀속할 수 없는 경우의 사례들도 많다.

인종주의와 외국인 혐오증은 증오범죄의 영역에 있어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행위동기이다. 여기에서의 공격목표는 인종, 피부색, 언어, 문화 또는 종교이다. 공격자는 피해자가 독일 국적을 소유하고 있는가와 상관없이 인종적 소수자를 향한다. 비정부기구 Human Rights First의 보고에 따르면, 예를 들어 2007/2008년 독일에서는 아프리카 출신의 독일인 및 터키 혈통의 독일 국적자에 대한 공격행위와 위협을 목적으로 한 선입견에 의하여 동기화된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31] 파악된 범죄유형에 있어서 거의 모든 범죄유형이 증오범죄의 사례에 해당되었고, 형법적으로는 특히 국민선동, 신체상해, 재물손괴, 모욕 등이다.[32]

29) Glet, Sozialkonstruktion, 2011, S. 62.
30) BMI / BMJ, 2. PSB, S. 151 참조.
31) Human Rights First, 2008 Hate Crime Survey, S. 13ff. 참조.
32) BMI / BMJ, 2. PSB, S. 151ff. 참조.

증오범죄라는 범죄카테고리의 도입과 함께 '선입견에 의한 범죄'에 대한 개념정의가 필요하다. 독일의 증오범죄(Hasskriminalität)에 미국식 증오범죄(hate crime)를 받아들이는 것과 독자적인 범죄카테고리의 확장은 통계적인 파악가능성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용적인 한계설정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33]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독일에서의 증오범죄를 위한 논의는 외국인 혐오적 또는 극우보수정치적 행위가 중심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선입견에 의하여 동기화된 공격행위가 오직 조직화된 극우보수적 그룹의 구성원 또는 신나치주의자들에 의해서만 범하여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34] 다만 여기에서도 사회적 집단의식속에서 확정된 명백한 반사회성이 인지되어져야만 한다. 이러한 반사회성은 해당 영역에서의 전형적인 유형(Stereotyp)에 의하여 결정되고, 당연히 제한적인 현상학적 유형의 행위이해, 행위자이해 및 피해자이해를 야기한다.[35]

문제는 또한 증오범죄의 개념하에 포섭되어야만 하는 영역의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다. 경찰에 의한 증오범죄의 개념정의에서 국적·민족·인종·피부색·종교·출생국·성적 지향성·장애·외모·사회적 지위 등이 고려되지만, 연령 또는 성별의 특이성에 관해서는 불명확하다. 과격 축구팬인 훌리건(Hooligan)·광적 살인범(Amokläufer)·테러리스트 등과 같은 그 밖의 영역들 또한 증오범죄의 가변적 영역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2009년 Ansbach의 광적 살인범 재판에서 당시 검사는 18세 행위자의 행위동기를 '인간에 대한 증오 및 학교제도에 대한 증오'라고 명명하였다.[36]

33) Glet, Sozialkonstruktion, 2011, S. 64.

34) Ganter, Ursachen und Forum, 1998 참조.

35) Glet, Sozialkonstruktion, 2011, S. 64.

36) "Hass auf die Menschheit", in: Süddeutsche.de, 21.09.2009.

제3장

주요 국가의 증오범죄 발생현황

김지영·이재일

03 주요 국가의 증오범죄 발생현황

제1절 미국

1. 미국증오범죄의 통계수집

1990년 4월 23일, 미의회는 증오범죄 통계법(the Hate Crime Statistics Act)을 통과시켰다. 이 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인종, 종교, 성적취향, 또는 민족성에 대한 편견에 의해 일어난 것이 확실한 범죄"에 대해 의무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게 되었다. 법무부 장관은, 시행절차를 만들고, 증오범죄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관리하는 책임을 FBI의 장에게 위임하였으며, FBI의 장은 다시 UCR 프로그램(the Uniform Crime Reporting Program)에 이를 맡겼다. 법무부 장관 산하에서 여러 주와 지역의 법집행기관과의 협력과 원조에 힘입어, UCR 프로그램은 의회가 요구한 증오범죄 데이터 모음집을 만들었다.

UCR 프로그램은 11개 주가 보고한 증오범죄 데이터를 모아 '증오범죄 통계, 1990: 자료집 (Hate Crime Statistics, 1990; A Resource Book, 1993)'이라는 제목으로 최초의 간행물을 냈다. UCR 프로그램은 증오범죄 조사에 익숙한 기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통일된 방법으로 전국적인 규모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증오범죄 통계, 1992(Hate Crime Statistics, 1992)'은 UCR 증오범죄 통계 프로그램

에 참여한 미전역 법 집행기관들이 작성한 최초의 자료가 실려 있다.

1994년 9월에 미의회는 '폭력범죄 규제 및 법집행에 관한 법 (the Violent Crime Control and Law Enforcement Act of 1994)'을 통과시킴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편견 또한 포함하도록 증오범죄 통계법을 개정하였다. '교회방화 방지에 관한 법(the Church Arson Prevention Act)'은 1996년 7월에 제정되었는데, 이후 일몰조항이 없어지고 증오범죄 데이터 수집이 UCR 프로그램의 전담업무로 규정되었다. 2009년에 의회는 '매튜 셰퍼드·제임스 버드 증오범죄 방지에 관한 법 (Matthew Shepard and James Byrd, Jr. Hate Crime Prevention Act)'을 통과시키면서 증오범죄 통계법을 재개정하였다. 새로 개정된 법은 청소년이 직접 범죄를 저지르거나 그 대상이 되는 범죄는 물론, 특정 성(性)또는 성정체성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일어나는 범죄에 관한 정보수집 역시 규정하고 있다.

2. 미국증오범죄의 발생추세

2001년에서 2010년 연도별로 미국에서 발생한 증오범죄 전체추세를 보면 9.11 테러가 발생한 2001년에 증오범죄 발생건수가 가장 많았고, 2002년부터 감소하여 2008년까지 비슷한 추세를 보이다가 2009년에 다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3-1, 그림 3-1 참조)

표 3-1 2001-2010 연도별 전체 증오범죄 추이

편견유형 (전체)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인종	4367 (44.8)	3642 (48.8)	3844 (51.3)	4042 (52.8)	3919 (54.7)	4000 (51.8)	3870 (50.7)	3992 (51.2)	3199 (48.4)	3135 (42.7)
종교	1828 (18.7)	1426 (19.1)	1343 (17.9)	1374 (17.9)	1227 (17.1)	1462 (18.9)	1400 (18.3)	1519 (19.5)	1303 (19.7)	1322 (20)
성적성향	1393 (14.3)	1244 (16.6)	1239 (16.5)	1197 (15.6)	1017 (14.1)	1195 (15.4)	1265 (16.6)	1297 (16.6)	1223 (18.5)	1277 (19.2)
민족성/ 출신국가	2098 (21.5)	1102 (14.7)	1026 (13.7)	972 (12.7)	944 (13.1)	984 (12.7)	1007 (13.2)	894 (11.4)	777 (11.7)	847 (12.8)

편견유형 (전체)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장애	35 (0.3)	45 (0.6)	33 (0.4)	57 (0.7)	53 (0.7)	79 (1)	79 (1)	78 (1)	96 (1.4)	43 (0.6)
다중편견사건	9 (0.09)	3 (0.04)	4 (0.05)	7 (0.09)	3 (0.04)	2 (0.02)	3 (0.04)	3 (0.04)	6 (0.09)	4 (0.06)
총 계	9730 (100)	7462 (100)	7489 (100)	7649 (100)	7163 (100)	7722 (100)	7624 (100)	7783 (100)	6604 (100)	6628 (100)

출처 : http://www.fbi.gov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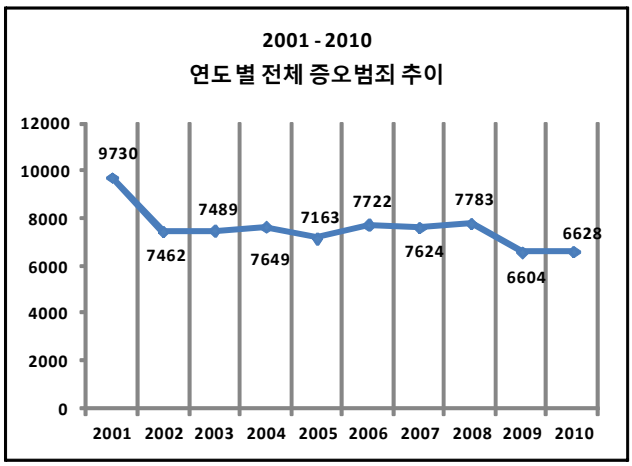

그림 3-1 연도별 전체 증오범죄 추이

년도별로 인종, 종교, 성적지향, 장애, 다중편견 등 편견의 대상에 따른 증오범죄 발생추세를 분석하였다. 먼저 인종적 편견에 따른 증오범죄 발생추세를 보면 전체증오범죄 발생추세와 유사하게 2001년에 가장 높은 발생빈도를 보이다가 2002년부터 감소하여 2008년까지 큰 변동없이 지속되다가 2009년에 다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2 참조, 그림 3-2 참조)

표 3-2 2001-2010 연도별 인종적 편견에 의한 증오범죄 추이

편견유형 (인종)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ANTI 백인	891 (20.4)	719 (20)	830 (21.6)	829 (20.5)	828 (21.1)	890 (22.3)	749 (19.3)	716 (17.9)	545 (17)	575 (18.3)
ANTI 흑인	2899 (66.4)	2486 (68)	2548 (66.3)	2731 (67.5)	2630 (67.1)	2640 (66)	2658 (68.7)	2876 (72)	2284 (71.4)	2201 (70.2)
ANTI 아메리카 인디언/ 알래스카인	80 (1.8)	62 (1.7)	76 (2)	83 (2.1)	79 (2)	60 (1.5)	61 (1.6)	54 (1.4)	65 (2)	44 (1.4)
ANTI 아시아인/태평양인	280 (6.4)	217 (6)	231 (6)	217 (5.4)	199 (5.1)	181 (4.5)	188 (4.9)	137 (3.4)	126 (3.9)	150 (4.8)
ANTI 다인종집단	217 (5)	158 (4.3)	159 (4.1)	182 (4.5)	183 (4.7)	229 (5.7)	214 (5.5)	209 (5.2)	179 (5.6)	165 (5.3)
총 계	4367 (100)	3642 (100)	3844 (100)	4042 (100)	3919 (100)	4000 (100)	3870 (100)	3992 (100)	3199 (100)	3135 (100)

출처 : http://www.fbi.gov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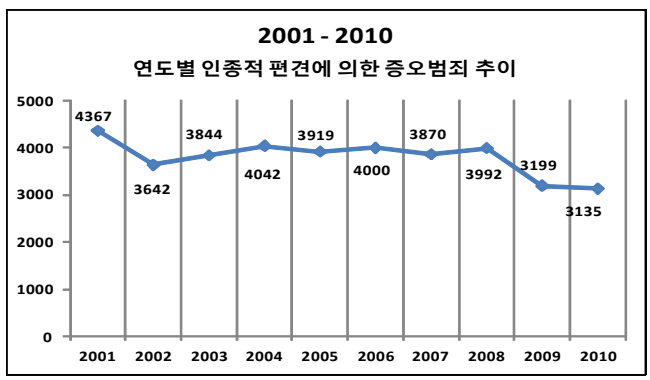

그림 3-2 연도별 인종적 편견에 의한 증오범죄 추이

연도별 종교적 편견에 의한 증오범죄의 발생추세를 보면 인종적 편견에 의한 발생추세와 마찬가지로 2001년에 발생빈도가 가장 높았다가 2002년에 감소한다. 이후 2004년까지 큰 변동없이 지속되다가 2005년에 다시 감소한 후, 2006년, 2007년에 증가하고, 2008년에 약간 더 증가세를 보이다가 2009년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표 3-3 참조, 그림 3-3 참조).

표 3-3 2001-2010 연도별 종교적 편견에 의한 증오범죄 추이

편견유형 (종교)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ANTI 유대교	1043 (57)	931 (65.3)	927 (69)	954 (69.4)	848 (69.1)	967 (66.1)	969 (69.2)	1013 (66.7)	931 (71.5)	887 (67.1)
ANTI 카톨릭	38 (2.1)	53 (3.7)	76 (5.7)	57 (4.1)	58 (4.7)	76 (5.2)	61 (4.4)	75 (4.9)	51 (3.8)	58 (4.4)
ANTI 프로테스탄트	35 (1.9)	55 (3.9)	49(3.6)	38 (2.8)	57 (4.6)	59 (4)	57 (4.1)	56 (3.7)	38 (2.9)	41 (3.1)
ANTI 이슬람	481 (26.3)	155 (10.9)	149 (11.1)	156 (11.4)	128 (10.4)	156 (10.7)	115 (8.2)	105 (6.9)	107 (8.2)	160 (12.1)
ANTI 기타종교	181 (9.9)	198 (13.9)	109 (8.1)	128 (9.3)	93 (7.6)	124 (8.5)	130 (9.3)	191 (12.6)	109 (8.4)	123 (9.3)
ANTI 다종교, 집단	45 (2.5)	31 (2.2)	24 (1.8)	35 (2.5)	39 (3.2)	73 (4.5)	62 (4.4)	65 (4.3)	57 (4.4)	48 (3.6)
ANTI 무신론, 불가지론	5 (0.3)	3 (0.2)	9 (0.7)	6 (0.4)	4 (0.3)	7 (0.5)	6 (0.4)	14 (0.9)	10 (0.8)	5 (0.4)
총 계	1828 (100)	1426 (100)	1343 (100)	1374 (100)	1227 (100)	1462 (100)	1400 (100)	1519 (100)	1303 (100)	1322 (100)

출처 : http://www.fbi.gov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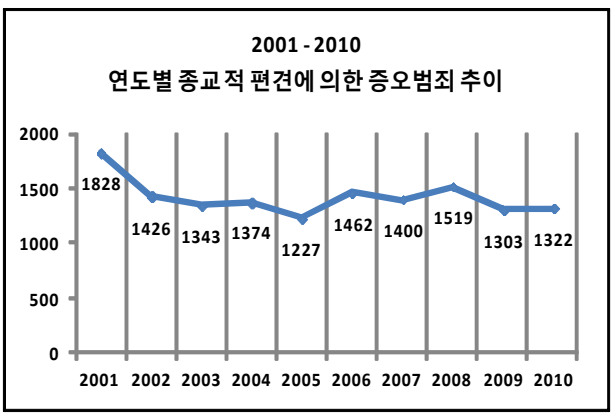

그림 3-3 연도별 종교적 편견에 의한 증오범죄 추이

연도별 성적지향에 의한 증오범죄의 발생추세를 보면 2001년에 발생빈도가 가장 높았다가 2002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서 2005년에 가장 낮은 발생율을 보인다. 이후, 2006년부터 발생빈도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8년을 정점으로, 2009년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서나 2010년에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3-4 참조, 그림 3-4 참조)

표 3-4 2001-2010 연도별 성적 성향에 의한 증오범죄 추이

편견유형 (성적성향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ANTI 남자 동성애자	980 (70.4)	825 (66.3)	783 (63.2)	738 (61.7)	621 (61.1)	747 (62.5)	772 (61)	776 (59.8)	682 (55.8)	739 (57.9)
ANTI 여자 동성애자	205 (14.7)	172 (13.8)	187 (15.1)	164 (13.7)	155 (15.2)	163 (13.6)	145 (11.5)	154 (11.9)	185 (15.1)	144 (11.3)
ANTI 동성애자	173 (12.4)	222 (17.8)	247 (19.9)	245 (20.5)	195 (19.1)	238 (19.9)	304 (24)	307 (23.7)	312 (25.5)	347 (27.2)
ANTI 이성애자	18 (1.3)	10 (0.8)	14 (1.1)	33 (2.7)	21 (2.1)	26 (2.2)	22 (1.7)	33 (2.5)	21 (1.7)	21 (1.6)
ANTI 양성애자	17 (1.2)	15 (1.2)	8 (0.6)	17 (1.4)	25 (2.5)	21 (1.8)	22 (1.7)	27 (2.1)	23 (1.9)	26 (2)
총 계	1393 (100)	1244 (100)	1239 (100)	1197 (100)	1017 (100)	1195 (100)	1265 (100)	1297 (100)	1223 (100)	1277 (100)

출처 : http://www.fbi.gov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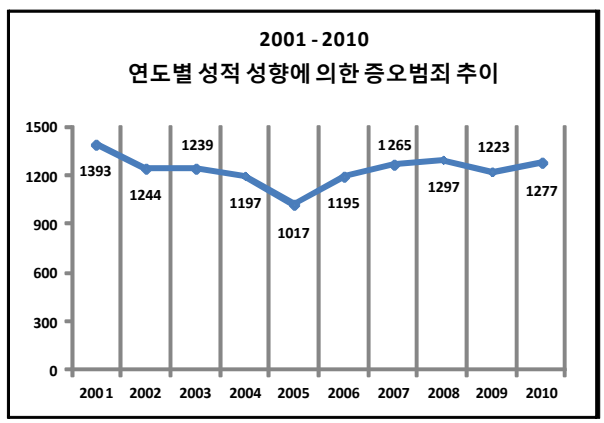

그림 3-4 연도별 성적성향에 의한 증오범죄추이

연도별 민족성/출신국가에 의한 증오범죄의 발생추세를 보면 2001년에 가장 높은 발생율을 보이다가 2002년부터 급격히 감소하여 이후 큰변화 없이 유사한 추세를 지속하고 있다(표 3-5 참조, 그림 3-5 참조).

표 3-5 2001-2010 연도별 민족성/출신국가에 의한 증오범죄 추이

편견유형 (민족성/출신국가)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ANTI 라틴아메리카	597 (28.5)	480 (43.6)	426 (41.5)	475 (48.9)	522 (55.3)	576 (58.5)	595 (59.1)	561 (62.8)	483 (62.2)	534 (63)
ANTI 기타민족/출신국	1501 (71.5)	622 (56.4)	600 (58.5)	497 (51.1)	422 (44.7)	408 (41.5)	412 (40.9)	333 (37.2)	294 (37.8)	313 (37)
총 계	2098 (100)	1102 (100)	1026 (100)	972 (100)	944 (100)	984 (100)	1007 (100)	894 (100)	777 (100)	847 (100)

출처 : http://www.fbi.gov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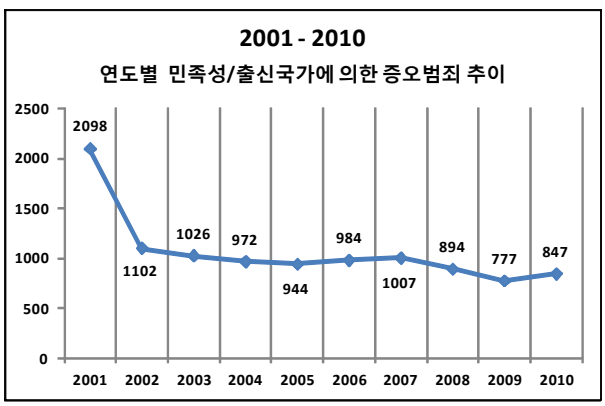

그림 3-5 민족성/출신국가에 의한 증오범죄 추이

연도별 장애에 의한 증오범죄의 발생추세는 이전의 인종이나 종교, 국적, 성적 지향과는 확연히 다른 발생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1년에 가장 낮은 발생비율을 보이다가 2002년에 약간 증가한 후, 2003년에 다소 감소하는 등, 2004년부터 2009년까지 미미한 증감폭을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나타내다가 2010년에 급격히 감소하였다(표 3-6 참조, 그림 3-6 참조).

표 3-6 2001-2010 연도별 장애에 의한 증오범죄 추이

편견유형 (장애)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ANTI 육체적 장애	12 (34.3)	20 (44.4)	24 (72.8)	23 (40.4)	21 (39.6)	17 (21.5)	20 (25.3)	22 (28.2)	25 (26)	19 (44.2)
ANTI 정신적 장애	23 (65.7)	25 (55.6)	9 (27.2)	34 (59.6)	32 (60.4)	62 (78.5)	59 (74.7)	56 (71.8)	71 (74)	24 (55.8)
총 계	35 (100)	45 (100)	33 (100)	57 (100)	53 (100)	79 (100)	79 (100)	78 (100)	96 (100)	43 (100)

출처 : http://www.fbi.gov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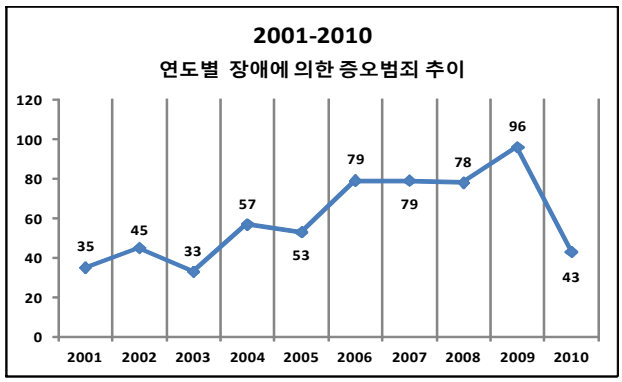

그림 3-6 연도별 장애에 의한 증오범죄 추이

3. 2010년 미국증오범죄의 발생현황

2010년 한해동안 미국에서 발생한 증오범죄의 전체발생현황을 분석하면 인종적 편견에 의한 증오범죄사건의 발생율이 47.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종교(19.9%)와 성적성향(19.3%)에 대한 증오범죄가 그 뒤를 이었다.

표 3-7 2010년 미국 전체 증오범죄의 실태

편견유형 (전체)	사건	범죄자	피해자	알려진 범죄자
	빈도(%)	빈도(%)	빈도(%)	빈도(%)
인종 Race	3,135(47.3)	3,725(48.3)	3949(48.1)	2934(48.9)
종교 Religion	1,322(19.9)	1,409(18.3)	1552(18.9)	606(10.1)
성적성향 SexualOrientation	1,277(19.3)	1470(19.1)	1528(18.6)	1516(25.2)
민족성/출신국가 Ethnicity/NationalOrigin	847(12.8)	1040(13.5)	1122(13.7)	887(14.8)
장애 Disability	43(0.6)	46(0.6)	48(0.6)	58(0.9)
다중편견사건 Multiple–BiasIncidents	4(0.06)	9(0.1)	9(0.1)	7(0.1)
총 계	6,628(100)	7,699(100)	8208(100)	6008(100)

출처 : http://www.fbi.gov 재구성

인종적 편견으로 발생한 증오범죄를 분석한 결과, 흑인에 대한 증오범죄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70.2%) 백인에 대한 증오범죄가 뒤를 이었다(18.3%).

표 3-8 2010 인종적 편견에 의한 증오범죄의 실태

편견유형 (인종)	사건	범죄자	피해자	알려진 범죄자
	빈도(%)	빈도(%)	빈도(%)	빈도(%)
ANTI 백인	575(18.3)	679(18.2)	697(17.6)	649(22.1)
ANTI 흑인	2201(70.2)	2600(69.8)	2765(70)	1974(67.3)
ANTI 아메리카인디언/알래스카인	44(1.4)	45(1.2)	47(1.2)	43(1.5)
ANTI 아시아인	150(4.8)	190(5.1)	203(5.14)	156(5.3)
ANTI 다인종집단	165(5.3)	211(5.7)	237(6)	112(3.8)
총 계	3135(100)	3725(100)	3949(100)	2934(100)

출처 : http://www.fbi.gov 재구성

종교적 편견에 의해 미국에서 2010년 한해동안 발생한 증오범죄의 실태를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유대교인들에 대한 증오범죄가 6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이슬람인에 대한 증오범죄가 12.1%로 뒤를 이었었으며, 유대교, 이슬람, 카톨릭, 개신교를 제외한 기타 종교에 대한 증오범죄가 세 번째로 높았다(9.3%).

표 3-9 2010 종교적 편견에 의한 증오범죄의 실태

편견유형 (종교)	사건	범죄자	피해자	알려진 범죄자
	빈도(%)	빈도(%)	빈도(%)	빈도(%)
ANTI 유대교	887(67.1)	922(65.4)	1040(67)	346(57.1)
ANTI 카톨릭	58(4.4)	61(4.3)	65(4.2)	22(3.6)
ANTI 개신교	41(3.1)	46(3.3)	47(3)	6(1)
ANTI 이슬람	160(12.1)	186(13.2)	197(12.7)	125(20.6)
ANTI 기타종교	123(9.3)	134(9.5)	141(9)	72(11.9)
ANTI 다종교, 집단	48(3.6)	53(3.8)	55(3.6)	30(5)
ANTI 무신론	5(0.4)	7(0.5)	7(0.5)	5(0.8)
총 계	1322(100)	1409(100)	1552(100)	606(100)

출처 : http://www.fbi.gov 재구성

2010년에 미국에서 발생한 성적지향에 의한 증오범죄의 실태를 살펴보면 남자 동성애자를 겨냥한 증오범죄의 비율이 57.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동성애자 자체에 대한 증오범죄 발생비율이 27.1%로 두 번째로 높았다. 여자 동성애자를 겨냥한 증오범죄의 발생비율은 11.3%로 세 번째로 높았으며, 이성애자에 대한 증오범죄도 있었다(1.6%).

표 3-10 2010 성적 성향에 의한 증오범죄의 실태

편견유형 (성적성향)	사건	범죄자	피해자	알려진 범죄자
	빈도(%)	빈도(%)	빈도(%)	빈도(%)
ANTI 남자 동성애자	739(57.9)	851(57.9)	876(57.3)	904(59.6)
ANTI 여자 동성애자	144(11.3)	167(11.4)	181(11.8)	152(10)
ANTI 동성애자	347(27.1)	403(27.4)	420(27.5)	412(27.2)
ANTI 이성애자	21(1.6)	21(1.4)	22(1.4)	21(1.4)
ANTI 양성애자	26(2)	28(1.9)	29(1.9)	27(1.8)
총 계	1277(100)	1470(100)	1528(100)	1516(100)

출처 : http://www.fbi.gov 재구성

2010년 한해 동안 미국에서 발생한 출신국가/민족성에 대한 증오범죄발생실태를 보면 라틴 아메리카의 비율이 63%, 기타 민족이나 출신국에 대한 증오범죄가 37%로 나타났다.

표 3-11 2010 민족성/출신국가에 의한 증오범죄의 실태

편견유형 (출신국가/민족)	사건	범죄자	피해자	알려진 범죄자
	빈도(%)	빈도(%)	빈도(%)	빈도(%)
ANTI 라틴아메리카	534(63)	681(65.5)	747(66.6)	593(66.9)
ANTI 기타민족/출신국	313(37)	359(34.5)	375(33.4)	294(33.1)
총 계	847(100)	1040(100)	1122(100)	887(100)

출처 : http://www.fbi.gov 재구성

2010년 한해 동안 미국에서 발생한 장애에 대한 증오범죄실태를 보면, 정신적 장애에 대한 증오범죄가 55.8%로 육체적 장애에 대한 증오범죄(44.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2 2010 장애에 의한 증오범죄의 실태

편견유형 (장애)	사건	범죄자	피해자	알려진 범죄자
	빈도(%)	빈도(%)	빈도(%)	빈도(%)
ANTI 육체적 장애	19(44.2)	22(47.8)	24(50)	28(48.3)
ANTI 정신적 장애	24(55.8)	24(52.2)	24(50)	30(51.7)
총 계	43(100)	46(100)	48(100)	58(100)

출처 : http://www.fbi.gov 재구성

제2절 독일

1. 독일증오범죄의 통계수집

증오범죄는 독일에서 이른바 국가보호범죄(Staatsschutzdelikten)에 속하고 "정치적으로 동기화된 범죄(politisch motivierte Kriminalität, PMK)"의 하위범주에 해당한다. 상응하는 범죄행위는 이러한 범주에서 국가보호를 담당하는 경찰부서에 의해 파악되고 정해진 주제영역에 따라 분류된다. 그러나 동기에 따른 범죄

행위의 정확한 분류는 2001년 이후에서야 비로소 나타났다.[37]

국가보호범죄의 통계적 평가와 파악은 독일에서 1961년 이래 형사신고서비스의 범주에서 연방 전역에서 이루어졌으며, 2001년 이후 극단적인 동기로 행해진 범죄는 "국가보호에 관한 형사 특별신고서비스(Kriminalpolizeiliche Sondermeldedinst Staatschutz, KPMD-S)" 소관이었다. 경찰의 국가보호임무는 주로 위해방지와 국가보호범죄의 소추를 포함한다. 독일에서는 1990년대에 외국인혐오범죄와 반유대주의 범죄가 큰 폭으로 증가한 이후, 국가보호부서의 업무범위가 확대되었다. 따라서 1992년 이후 신고서비스는 외국인혐오범죄를 별도로 다루었고, 1993년 이래 보충적으로 반유대주의 범죄를 다루고 있다.[38] 그리고 용의자에게서 정치적 동기가 증명될 수 있는 한, 일반적 범죄 또한 이러한 체계 내에서 파악될 수 있다. 상응하는 사례의 녹화와 서류작성은 "경찰범죄통계-국가보호(Polizeiliche Kriminalstatistik-Staatsschutz, PKS-S)"에서 이루어진다. 국가보호범죄의 통계를 위한 당시의 구상은 극단주의를 기준으로 한 적합한 수사절차의 판단이었다. 그러나 극단적 이데올로기를 척도로 하는 분류기준은 점차 형법적 현상의 변화된 출현형태와 충돌하였다.

2001년 제1회 정기안전보고서(Erster Periodischer Sicherheitsbericht 2001: 1. PSB)에서 연방내무부와 연방법무부는 공동으로 '정치적으로 동기화된 범죄'의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정치적으로 동기화된 범죄'에는 범죄행위의 상황에 대한 평가 그리고/또는 행위자의 입장에 있어서 행위의 기초에 헌법적대적 동기가 있거나 이를 전통적인 국가보호범죄로 분류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사건이 해당한다.[39] 예를 들어, 외모, 출신 또는 정치적 입장을 이유로 인하여 사람에게 범죄행위를 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소위 '증오범죄') 이러한 개념정의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평가기준으로서 '극단주의'라는 개념으로부터의 탈

37) Holzberger, Bürgerrechte & Polizei/CILIP 2001 (68/1) 참조.

38) BT-Drs. 14/5773, S. 2ff. 참조.

39) 독일 형법 제80조 내지 제83조, 제84조 내지 제86a조, 제87조 내지 제91조, 제94조 내지 100a조, 제102조 내지 104a조, 제105조 내지 제108e조, 제109조 내지 제109h조, 제129a조, 제234a조, 또는 제241a조의 범죄구성요건이 이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설령 개별적인 경우에서 정치적 동기가 확정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열거한 범죄구성요건들은 국가보호범죄이기 때문이다.

피이다. 이러한 분류의 중심에는 특히 외적 행위상황, 행위자표지 또는 희생자의 집단소속성에 따라 확정될 수 있는 행위야기동기가 있다. 따라서 '정치적으로 동기화된 범죄'의 평가에 있어서 경찰의 개인적 평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새로운 신고시스템과 이와 결부된 범죄행위의 특정 범주로의 분류는 자료분석을 용이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정치적으로 동기화된 범죄'로 발전할 수 있는 명확한 상황판단이 이루어지고, 이로써 예방적·강제적인 조치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정치적으로 동기화된 범죄'의 범주를 위하여 범행의 질, 객관적인 주제에 따른 분류 그리고 주관적인 행위배경에 대한 확정이 단계별로 이루어진다.[40]

범주화의 1단계는 행위의 질에 근거한 분류로서, 이는 종류, 규모, 범죄의 중요도에 따라서 선전범죄(Propagandadelikte), 정치적으로 동기화된 범죄, 정치적으로 동기화된 폭력범죄, 테러로 구분된다. 선전범죄는 보수적으로 동기화된 범죄(rechtsmotivierte Kriminalität)와 같은 부분이 많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범주로 파악된다.[41] 행위자의 특별한 범행예비에 대한 인식이 가능한 '정치적으로 동기화된 범죄'는 '정치적으로 동기화된 폭력범죄'의 개념에 포섭될 수 있다. 그리고 다음의 범죄유형은 '정치적으로 동기화된 범죄'의 범주에 속한다:

- 살인(Tötungsdelikte)
- 상해(Körperverletzungen)
- 방화 및 폭발물 범죄(Brand- und Sprengungstoffdelikte)
- 소요죄(Landfriedensbruch)
- 선박, 항공, 철도, 도로교통에 대한 위해(Gefährliche Eingriffe in den Schiffs-, Luft-, Bahn- und Straβenverkehr)
- 자유박탈(Freiheitsberaubung)
- 강도(Raub)
- 공갈(Erpressung)

40) Bundesamt für Verfassungsschutz, Definitionssystem "Politisch motivierte Kriminalität", S. 17 참조.

41) Zierke, in: Egg (Hrsg.), Extremistische Kriminalität, 2006, S. 71.

- 저항범죄(Widerstanddelikte)
- 성범죄(Sexualdelikte)

범죄행위의 이러한 분류는 경찰범죄통계(PKS)의 폭력개념과는 의식적으로 거리를 두었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동기화된 범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범죄행위는 동범죄의 통계에서 별도로 언급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모살죄(Mord)', '고살죄(Totschlag)', '강도죄(Raub)', '공갈죄(Erpressung)', '중상해죄(gefährliche und schwere Körperverletzung)'의 구성요건은 양 영역의 통계에 모두 포함되는 반면에, '정치적으로 동기화된 범죄목록'에는 추가적으로 '단순상해죄(einfache Körperverletzung)', '방화죄(Brandstiftung)', '폭발물휴대죄(das Herbeiführen einer Sprengstoffexplosion)'를 거론하고 있다.

범주화의 2단계는 각 범죄행위의 특정한 사회적 주제영역으로의 분류(여기서: 증오범죄)가 행해지며, 여기에서는 중첩적으로 분류가 이루어질 수 있다.[42] 범주화의 3단계에서는 각 범죄행위를 주관적 행위배경과 행위자의 인식(Einstellung)을 고려하여 개별 현상영역(Phänomenbereich)으로 분류된다. 여기에는 진보주의-정치적으로 동기화된 범죄[43], 보수주의-정치적으로 동기화된 범죄[44], 정치적으로 동기화된 외국인 범죄[45] 등이 있다.

위에서 설명한 정치적으로 동기화된 범죄의 범주화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42) Singer, Kriminalstatistik 2004(59), S. 32 참조.

43) 이러한 범죄에는 행위상황 그리고/또는 행위자의 인식을 평가할 때, 범죄행위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의 구성요소의 폐지(극단주의)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이성적인 관점에 따라 진보주의 정치적 입장으로 분류할 수 있는 범죄가 해당한다. 특히 무정부주의 또는 공산주의(마르크스주의 포함)와 연관된 행위실행의 경우, 이 범죄를 진보주의-정치적으로 동기화된 범죄로 분류할 수 있다(BKA, Information zum polizeilichen Definitionssystem, S. 9).

44) 민족주의, 인종주의, 또는 국가사회주의와의 연관성이 행위실행의 원인이 되는 경우, 이를 극우주의적(rechtsextremistisch)인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BKA, Information zum polizeilichen Definitionssystem, S. 9).

45) 행위자의 인식이 비독일 출신이라는 요소로 특징되고, 이것이 행위실행에 결정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 이를 동범주로 분류한다. 특히 행위자의 인식이 국내외의 관계와 발전 또는 외국의 독일에 대한 관계 및 발전에 영향을 미치고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할 때 동범주로 분류한다(BKA, Information zum polizeilichen Definitionssystem, S. 9).

표 3-13 정치적으로 동기화된 범죄(PMK)

<table>
<tr><td colspan="4">범죄행위의 질</td></tr>
<tr><td>선전범죄(형법 제86조, 제86a조)</td><td>정치적으로 동기화된 범죄</td><td>정치적으로 동기화된 폭력범죄</td><td>테러</td></tr>
<tr><td colspan="4">주제영역</td></tr>
<tr><td>증오범죄
– 외국인혐오
– 반유대주의</td><td>핵에너지
– 운송
– 임시창고
– 기타</td><td>분리주의
– DHKP-C
– ETA
– 기타</td><td>기타 주제영역</td></tr>
<tr><td colspan="4">현상영역</td></tr>
<tr><td>진보주의-정치적으로 동기화된 범죄</td><td>보수주의-정치적으로 동기화된 범죄</td><td>정치적으로 동기화된 외국인범죄</td><td>기타</td></tr>
<tr><td colspan="4">국제관계</td></tr>
<tr><td colspan="4">극단주의적 범죄</td></tr>
</table>

출처: BKA 2004

경찰의 정의에 따르면 증오범죄란 행위상황 그리고/또는 행위자의 인식의 평가시 그 행위가 정치적 입장, 국적, 민족, 종족, 피부색, 종교, 출신, 외모, 장애, 성적 지향성, 사회적 지위 등의 사유를 근거로 한 어떤 사람에 대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실행행위(Tathandlung)가 이러한 사유와 인과관계가 있거나, 또는 이러한 인과관계에서 제도·사물 또는 객체에 대하여 정치적으로 동기화된 범죄를 말한다.[46]

외국인 혐오주의 및 반유대주의 영역은 통계적으로 파악되는 증오범죄의 한부분을 차지한다. 피해자의 국적, 민족, 종족, 피부색, 종교 또는 출신을 이유로 행해진 범죄행위는 외국인 적대적 범죄행위에 속한다. 반유대주의적 범죄행위는 종족, 사회적 또는 정치적 동기를 이유로 혹은 원칙적으로 반유대주의적 입장에서 행해지는 증오범죄행위의 한부분이다.

증오범죄는 또한 행위자의 명확한 정치적·극단주의적 동기 없이 이루어진 행위일지라도 통계상 등록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행위자가 동기를 명확하게 표

46) BKA, Information zum polizeilichen Definitionssystem, S. 7f.

현하지 않은 경우에도 행위상황의 고려하에 편견이 동기가 된 범죄행위를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예를 들어 노숙자(사회적 지위, 외모), 동성애자(성적 경향)에 대한 폭력행위 또는 진보주의정치가에 대한 범죄(정치적 입장) 또한 세분화하여 파악할 수 있고, 정치적으로 동기화된 범죄 또는 증오범죄로 인정할 수 있다.

다른 범죄와 마찬가지로 증오범죄도 장소적 관할권은 각 주의 지역경찰관서에 있다. 아래 도표는 상이한 경찰단계에서 증오범죄의 수사인지 및 처리 절차와 범죄행위의 '정치적으로 동기화된 범죄' 통계 등록의 과정이다. 행위동기와 주관적 구성요건표지의 평가는 해당 지역경찰관서의 담당경찰관을 통해 수사초기단계부터 이루어진다. 이 때 행위진행과정, 피의자 특징 및 피해자 특징의 고려하에 개별 사건이 증오범죄에 해당하는지 확정될 수 있다. 선입견이 결부된 행위동기를 나타내는 근거는 특히 행위의 전반적인 정황(행위진행과정·실행), 피해자와 행위자의 상이한 집단소속, 모욕적인 제스처, 피해자가 속한 집단에 대한 선입견 또는 혐오감을 추측할 수 있는 상징의 사용 또는 행위과정에 있어서 행위자의 구두표현, 행위자의 집단에의 소속감 또는 선입견이 동기가 된 침해와 관련된 행위자의 전과 등이다.

표 3-14 '정치적으로 동기화된 범죄'의 경찰 수사인지 및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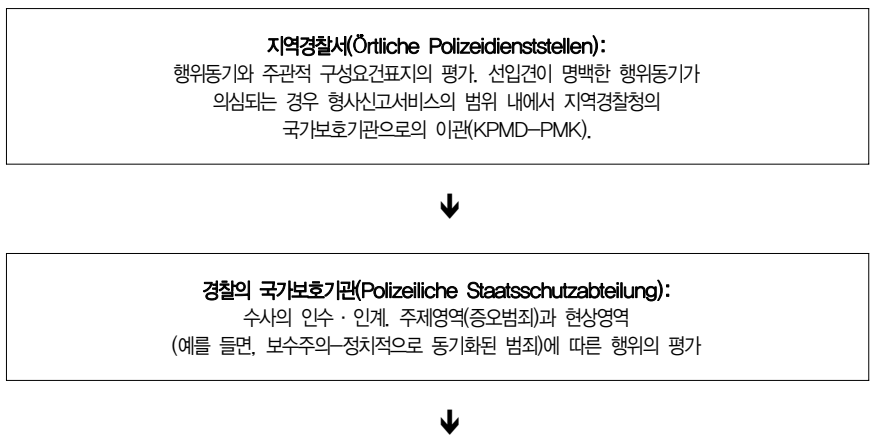

주범죄청(Landeskriminalamt):
경찰의 국가보호기관에서 범죄기술적 질의의 수행. 범죄행위의 정보에 대한 조사·확인, 사안 및 분류 심사.

↓

연방범죄청(Bundeskriminalamt):
각 주의 사례들의 종합. 범죄행위의 정치적으로 동기화된 범죄에 대한 연방차원의 국가보호통계에 등록.

수개의 범죄구성요건 위반시 보통은 가장 중한 법정형이 부과된 범죄에 따라서 통계가 기록된다. 행위에 따른 분류가 이루어진 후, 수사는 이 범죄분야를 담당하는 국가보호 경찰공무원에게 이관된다. 각 주에는 이를 전담하는 전문수사관으로서 국가보호위원(Staatschutzkommissariate)이 있다. 사례분류를 통하여 위에서 기술한 의심이 확인되지 않으면, 수사절차는 지역경찰서로 환송된다. 이와 반대로 해당되는 사례들은 국가보호기관에 남게 되고, 수사종결후 경우에 따라 증오범죄의 주제영역으로 분류된다. 이어서 정치적으로 동기화된 범죄에 대한 범죄 질의(KTA-PMK)의 형태에서 각 주의 주범죄청(LKA)의 담당 부서에 보고된다. 범죄 질의의 범주에서 특히 다음과 같은 정보에 대한 질의가 이루어진다: 사안, 행위시간, 행위장소, 행위수단, 행위자에 대한 정보, 공범자에 대한 인적 묘사, 희생자에 대한 정보 및 행위가 정치적으로 동기화된 범죄의 어떠한 주제영역과 현상영역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등. 각 주의 주범죄청은 특별한 사례에 있어서 사안 및 인식기준의 적합한 적용에 대해 심사하고, 주 단위로 범죄를 종합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치적으로 동기화된 범죄에 대한 이러한 통계는 원칙적으로 단지 사례의 수만 보고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범죄의 진행에 대한 현실적인 개관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다. 상황의 인식과 묘사 사이의 불일치를 피하기 위하여 '추가-정치적으로 동기화된 범죄' 및 '최종-정치적으로 동기화된 범죄'가 존재하고, 이러한 것을 통하여 행위의 동기상황이 경찰의 첫 번째 분류와 일치하는지 또는 경우에 따라 수정되어야 하는지, 수사진행시 또는 절차종결시

심사된다. 전체 사례들은 최종적으로 연방범죄청으로 이관되고, 여기에서 연방차원의 국가보호통계에 기록된다. 연방범죄청은 중앙정보수집기관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한다. 이러한 기능에서 연방범죄청은 정치적으로 동기화된 범죄와 증오범죄의 영역에서 기본원칙에 대한 작업을 수행하고, 연방전체의 통계 파악과 평가작업을 수행한다. 연방범죄청의 수사권한은 국가보호범죄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극단주의적이고 국제적으로 조직화된 연관성이 있는 범죄행위에 제한된다. 연방범죄청의 형사소추인계는 각 주의 주관청의 요청, 연방내무부 또는 연방검찰청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다.

범죄를 외적 행위상황, 행위경과, 행위자 특징 및 피해자 특징에 의거하여 행위자의 행위동기를 평가하는 것이 경찰의 의무이다. 그러나 이것은 범죄행위가 각 해석상황에 따라서 상이하게 범주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선입견에 기한 범죄행위의 인지, 평가 및 산정은 특히 초기수사단계에서는 아주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담당경찰공무원의 고도의 능력을 요구한다.[47] 증오범죄의 영역에서 범죄발생이 얼마나 많으며, 어떤 사례들이 이러한 범주에서 파악될 수 있는지는 경찰과 형사사법기관이 수사단계에서 어떠한 범죄를 그러한 범죄로 해석·인정하고 등록하는지에 달려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개념정의체계에 따를 경우 연방 전체의 중요한 모든 사안들이 분명한 기준에 따라 일관되게 확인되고 평가된다고 할 수 있다.[48]

독일의 정치적으로 동기화된 범죄 및 증오범죄의 등록은 극우주의적 행위배경(rechtsextremistische Tathintergründe)과 상응하는 특징군(群)에 특별히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이는 특히 다른 행위자 및 피해자의 상황에 대한 파악을 어렵게 한다. 이와 관련하여 행위자의 정치적 극우주의적 배경이 행위를 증오범죄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라는 견해가 있다. 독일 좌파당(DIE LINKE)이 연방정부에 대한 대정부질의에서 학문적으로 볼 때 극우주의자가 사실 인종주의자이지만, 인종주의자가 반드시 극우주의적 이데올로기를 추종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였다.[49] 이에 대한 연방정부의 답변은 범죄인지시스템은

47) Zierck, in: Egg (Hrsg.), Extremistische Kriminalität, 2006, S. 66 참조.

48) BMI/BMJ, 1. PSB, S. 267 참조.

외국인 혐오증이 배경이 된 모든 범죄가 파악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동기화된 범죄 인지시스템은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었다.[50] 그러나 경찰실무는 이와는 다르다. 이에 대하여 Coester는 사회적 인식의 흠결 때문에 독일에서는 선입견에 의한 범죄의 일정부분은 그에 맞게 인식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극우주의적으로 동기화된 범죄는 명백하게 알 수 있다고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극우주의적으로 동기화된 범죄는 피해자, 목격자, 경찰 및 형사사법기관에게 낯설지 않은 내면화된 연상(聯想) 및 상(像)을 제공해주기 때문이라고 한다.[51]

그러나 연방차원의 통일적인 범죄인지시스템의 도움에도 불구하고, 증오범죄의 개념정의와 산정방식의 측면에서 각 주마다 특유의 불명료함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각 주의 책임자는 자신이 관장하는 주의 명성에 대한 염려 때문에 범죄율 통계에 개입하려고 한다. 2007년 11월 Sachsen-Anhlat주의 경우가 그렇다. Sachsen-Anhlat주에서는 수년간 극우보수주의자에 의한 범죄율이 높았다. 2006년에 1,240건의 범죄가 보수주의-정치적으로 동기화된 범죄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2007년 상반기 이러한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다. 보수주의-정치적으로 동기화된 범죄수가 전년도에 비해 약 절반으로 감소하였다. 즉, 극우보수주의를 행위배경으로 한 범죄가 284건으로 파악되었다. 언론보도처럼 이러한 급격한 감소는 경찰의 예방조치 강화 때문이 아니라, Sachsen-Anhlat주 주범죄청의 새로운 범죄통계 산정방식 때문이었다.[52] 이 사례에서 Sachsen-Anhlat주 주범죄청 공무원에게 행위자 불명의 극우보수주의 관련 범죄는 '정치적으로 불분명한 것'으로 분류할 것이 지시되었다고 한다. 그러한 범죄는 극루보수주의적 행위배경이 의심됨에도 불구하고 통계에 산입되지 않았으며, 그 결과 등록된 극우보수주의적 범죄의 급격한 감소가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Sachsen-Anhlat주의 예는 통계의 공신력이라는 측면에서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동기화된 범죄'에 관한 경찰 인식의 통일성 부존재의 문제점을 잘 보여준다. 또한 특정 범죄에 대한 개념정의 규정의 실무상 적용에 있어서 정치적 영향력이 개입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49) BT-Drs. 16/4401 참조.

50) BT-Drs. 16/4689, S. 2 참조.

51) Coester, Hate Crime, 2008, S. 406.

52) "LKA soll Rechtsextremismus-Statstik geschönt haben", in: Spiegel Online, 2007. 11. 27.

그 밖의 다른 형사절차에서도 '정치적으로 동기화된 범죄'통계에 관한 공신력이 의심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 예로 '정치적으로 동기화된 범죄'에 관한 경찰과 검찰·법원 사이의 평가가 다르다는 것이다. '정치적으로 동기화된 범죄'로 파악된 증오범죄는 경찰의 경우 수사절차가 종결된 사건을 포함한다. 경찰은 이러한 증오범죄는 혐의자가 파악되는 순간 분명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평가는 사법적 최종판단과는 별개의 것이다. 이러한 통계의 불일치를 제거하기 위하여 법원의 절차종료 후 통계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추가-정치적으로 동기화된 범죄(Nachtrags-PMK)'에의 등록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으로 동기화된 범죄'의 형사신고서비스에 대한 규정은 그 사건의 절차종결을 확인하고 경우에 따라서 그 원래의 분류를 수행할 것을 경찰에게 의무지우지 않는다.[53] '정치적으로 동기화된 범죄'에 관한 이러한 상이한 인식으로 인하여 검찰·법원의 결정은 보통 통계에 등록되지 않는다.

2. 독일증오범죄의 발생추세

'정치적으로 동기화된 범죄(Politisch motivierte Kriminalität: PMK)'는 연방 및 각 주의 내무부장관회의에서 범죄인지기준이 합의되었고, '증오범죄'라는 범죄영역이 마련되었다. '정치적으로 동기화된 범죄'의 통계(PMK-Statistik)는 행위자가 확실한 정치적 동기 그리고/또는 인간경시적 동기에 의한 범죄를 조사하고 있다. 통계작성을 위한 자료는 각 주의 경찰, 각 주의 주범죄청을 통해 수집된다. '정치적으로 동기화된 범죄'는 '보수주의-정치적으로 동기화된 범죄', '진보주의-정치적으로 동기화된 범죄', '정치적으로 동기화된 외국인 범죄'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이 영역에서 파악된 모든 국가보호범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아래에서는 독일 연방내무부의 '정치적으로 동기화된 범죄'관련 통계[54]를 요약해 설명해 보고자 한다.

53) Kleffner/Holzberger, Bürgerrechte & Polizei/CILIP 2004(77/1), S. 56ff.

54) BMI, Politisch motivierte Kriminalität im Jahr 2009, 23.03.2010.

연방내무부의 보고에 따르면 2009년 '정치적으로 동기화된 범죄'의 발생건수가 전년 대비 약 6.7% 상승하여 총 33,917건에 이르렀다. 이 중 43.8%에 해당되는 14,851건이 선전범죄이다. 극단주의적 행위배경을 가지고 있는 범죄비율은 73.6%(24,605건)를 차지했다. '정치적으로 동기화된 폭력행위'가 약 20.4% 증가한 3,044건으로, 특히 증가폭이 높았다.

보수주의적 성향이 동기가 된 범죄는 2009년 19,468건이 등록되어 전년 대비 4.7% 감소하였다. 보수주의적 성향이 동기가 된 범죄 중 폭력범죄는 약 5%인 959건이 기록되었으며, 총 800건의 상해죄가 발생하였으며, 1건의 사망사고가 발생되었다.

2009년 연방내무부의 통계에서 눈의 띄는 것은 '진보주의-정치적으로 동기화된 범죄'가 9,375건으로 '정치적으로 동기화된 범죄' 전체에서 39.4%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폭력범죄가 19%인 1,822건이며, 이중 50% 이상의 사건은 진보주의 계열 구성원이 경찰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하였거나(Körperverletzungsdelikte) 또는 저항범죄(Widerstandsdelikte)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또한 약 849건의 상해범죄가 진보주의 계열 구성원이 보수주의 계열 구성원에게 가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치적으로 동기화된 외국인 범죄'는 2009년 966건의 범죄가 등록되어, 전년대비 34.9%가 감소했다. 2009년 144건이 '정치적으로 동기화된 외국인 범죄' 중 폭력범죄이고, 그 중 85건이 상해범죄이다.

표 3-15 정치적으로 동기화된 범죄(2008/2009)

정치적으로 동기화된 범죄	2008	2009	전년대비 비율 (%)
총 PMK	31,801	33,917	+ 6.7
PMK-우파	20,422	19,468	- 4.7
PMK-좌파	6,724	9,375	+ 39.4
PMK-외국인	1,484	966	- 34.9
PMK-기타	3,171	4,108	+ 29.5

출처: 연방내무부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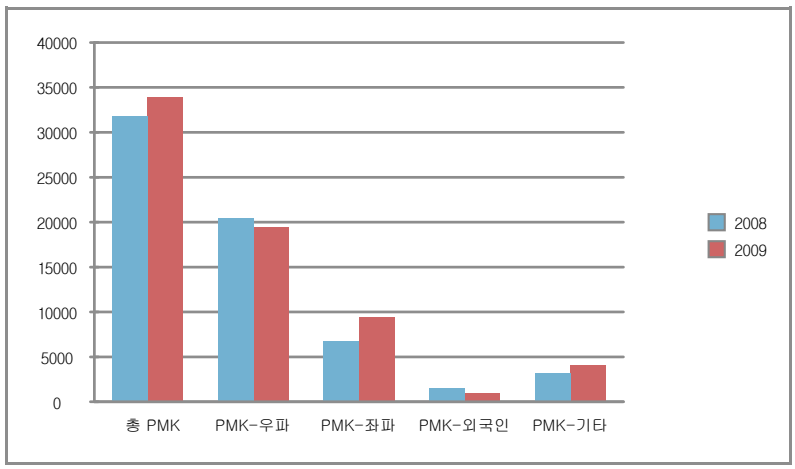

그림 3-7 정치적으로 동기화된 범죄(2008/2009)

연방내무부의 통계는 '정치적으로 동기화된 범죄'의 모든 주제영역과 현상영역에 관련된다. 하지만 연방내무부에서 파악한 범죄건수가 전체적으로 경찰에 의해 파악된 증오범죄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동기화된 범죄' 관련 통계는 극단주의적 행위동기를 가지고 있는 범죄현황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이다. 그러나 이 통계는 성적 경향, 출신 등 피해자의 특징을 기준으로 하는 세분화된 분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문제일 수 있다.

증오범죄와 관련하여 '정치적으로 동기화된 범죄'통계는 '보수주의-정치적으로 동기화된 범죄'에서 나타난 범죄 및 폭력범죄만 표시한다. 이에 따르면 2009년 2,477건의 외국인 혐오라는 행위동기를 가진 범죄(2008년: 2,950건)가 등록되었다. 이 중 366건(2008년: 409건)이 폭력범죄이다. 반유대주의라는 행위동기를 가진 '보수주의-정치적으로 동기화된 범죄'는 2009년 총 1,520건(2008년: 1,496건)으로, 이 중 폭력범죄는 31건(2008년: 44건)이었다. 외국인 혐오증·반유대주의라는 행위동기 이외의 광범위하고 다양한 범죄종류는 이 통계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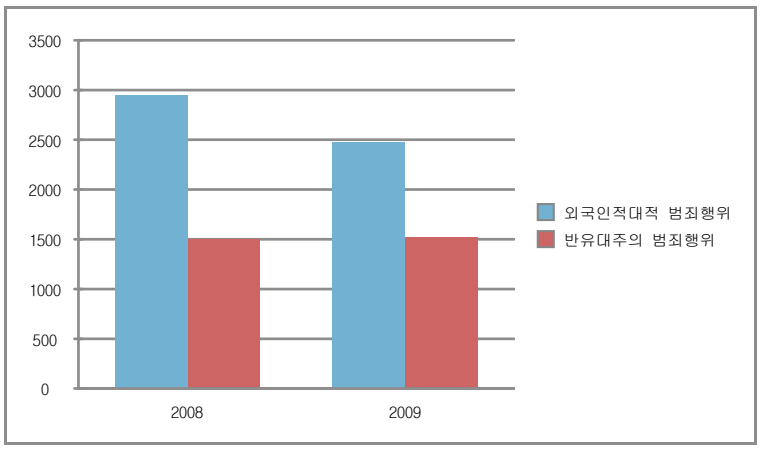

출처: 연방내무부 2010

그림 3-8 외국인 혐오적 범죄행위와 반유대주의 범죄행위

연방내무부의 연방헌법보고서(Verfassungsschutzbericht)는 독일에서 헌법적대적 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각 주의 헌법보호청 역시 범죄상황에 대한 통계가 담긴 보고서를 발간한다. 극단주의자에 의한 시도 및 안전위해적 시도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평가하는 것이 헌법보호청의 소관으로, 연방헌법보호법 제3조는 연방 및 각 주의 헌법보호청의 과제는 다음의 정보, 특히 사물 및 사람과 관련된 정보, 소식 및 자료의 수집·평가로서,

-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연방 및 각 주의 존립과 안전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거나 연방과 각 주의 헌법기관 또는 그 구성원의 직무수행에 불법적인 침해를 목적으로 하는 시도,
- 연방헌법보호법의 적용범위 내에서 외국 또는 반국가단체를 위한 안전위해적 또는 비밀정보기관적 활동,
- 폭력행사 또는 그 예비행위를 통해 독일연방공화국의 대외적 이해관계를 위태롭게 하는 연방헌법보호법의 적용범위 내에서 시도,
- 국민합의의 유물, 특히 대중의 평화로운 공동생활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연방헌법보호법의 적용범위 내에서의 시도로 규정하고 있다.

동 보고서는 '정치적으로 동기화된 범죄'에서 헌법보호의 법적 업무범위에 따라 극단주의적 배경을 지닌 범죄 및 폭력범죄의 통계를 보여준다.[55] 헌법보호보

고서의 사항들은 각 주의 '정치적으로 동기화된 범죄'통계에 근거한 연방범죄청의 통계에 기초하고 있다. 증오범죄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헌법보호보고서에는 없다.

정기안전보고서(Der Periodische Sicherheitsbericht)는 연방내무부와 연방법무부가 공동으로 발간하는 것으로, 경찰의 범죄통계 및 형사사법기관의 범죄통계에 대한 설명과 범죄상황에 대한 광범위한 현상파악을 목적으로 한다.[56] 또한 암수범죄(숨은 범죄)의 연구와 피해자 관점에서의 범죄연구도 함께 고려되었다. 동보고서의 중심주제는 안전정책이다.[57]

2001년도 제1차 정기안전보고서(Erster Periodischer Sicherheitsbericht 2001; 1. PSB)는 정기보고의 시작이며, 변화하는 범죄상황의 국가적 대응을 위한 표준화에 기여하였다. 제1차 정기안전보고서에서 '정치적으로 동기화된 범죄'에 대한 경찰의 개념정의와 '증오범죄'라는 상위개념에 따른 범주적 인식가능성이 소개되었다. 증오범죄는 제1차 정기안전보고서뿐만 아니라 2006년 제2차 정기안전보고서(Zweiter Periodischer Sicherheitsbericht 2006; 2. PSB) 또한 보수주의가 동기가 된 범죄 중 외국인 혐오적·반유대주의적 범죄 및 폭력범죄에 대한 비교통계학을 제시하고 있다. 폭력범죄, 선전범죄(Propagandadelikte)의 빈도와 대중선동죄(Volksverhetzung)의 범죄구성요건이 구별되고 있다. 폭력범죄의 발생건수가 제2차 정기안전보고서에서 비교적 상세히 설명되고 있다. 이러한 통계는 연방범죄청의 보고서와 '정치적으로 동기화된 범죄'에 대한 형사신고서비스(KPMD-PMK)에서 파악된 범죄에 기초하고 있다.

정기안전보고서는 외국인 혐오적·반유대주의적 범죄에서 행위자 및 피해자 구조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요약하고 있고, 연령·性·가족상태·교육·사회적 지위·국적·전과 등과 같은 다양한 요소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정기안전보고서는 증오범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증오범죄의 개념정의에 따

55) 정치적 극단주의는 민주주의 헌법국가를 거부하고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치적 목적설정에 따라 보통은 극우진보주의와 극우보수주의로 분류된다(Jesse, in; Andersen/Woyke(Hrsg.), Handwörterbuch des politischen Systems der BRD, S. 178ff. 참조).

56) Meise/Maier, in; Kube (Hrsg.), Kriminologische Spuren in Hessen, S. 83ff. 참조.

57) BMI/BMJ, 1.PSB, S. 1ff. 참조.

른 선입견이 동기가 된 범죄발생에 대해서 동 보고서는 단지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지난 몇 년동안 독일 좌파당(DIE LINKE)은 연방의회(Bundestag)에서 매달 극우주의적·외국인 혐오적 행위동기를 가진 범죄목록을 요구하는 서면질의(keine Anfrage)를 연방정부에 하고 있다. 독일 좌파당은 이러한 서면질의를 통하여 '보수주의-정치적으로 동기화된 범죄'에 해당하는 모든 증오범죄의 사례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이 서면질의에는 증오범죄의 전체 발생건수 이외에도 선입견이 동기가 된 선전범죄와 폭력범죄의 전체 발생건수를 포함하고 있다. 이 범죄목록은 각 주별로 분류되어 월 단위로 작성되어 보고된다. 연방정부는 이 범죄목록에서 각 주의 '증오범죄/정치적으로 동기화된 범죄(Hasskriminalität/PMK)'에서의 용의자·체포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피해자의 수에 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범죄목록에서도 개별적인 피해자 특징에 따른 상세한 분류가 이뤄지고 있지 않으며, 또한 '진보주의-정치적으로 동기화된 범죄', 외국인 범죄, 그리고 반유대주의적 범죄는 이 범죄목록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러한 서면질의가 증오범죄에 관한 명확한 해명자료는 아니다.

범죄목록으로 작성된 연방정부에 대한 서면질의 답변서는 증오범죄·선입견이 동기가 된 범죄·폭력범죄의 임시적 합계에 불과하고, 추후 각 주의 주경찰 및 연방경찰에 의해 사후 수정의 가능성이 있는 범죄목록이다. 그러나 임시적 범죄목록임에도 불구하고, 증오범죄와 관련하여 최근의 정보를 가장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자료이다. 왜냐하면 연방범죄청의 통계자료는 2008년까지의 사건발생수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증오범죄는 모든 범죄형태에서 나타날 수 있지만, 선전범죄의 발생빈도가 가장 높다.[58] 선전범죄는 특히 '보수주의-정치적으로 동기화된 범죄'에서 주로 발생한다.[59] 연방내무부는 2009년 '보수주의-정치적으로 동기화된 범죄'의 68%가 선전범죄에 해당한다고 발표하였다.[60] 독일 좌파당의 연방정부에의 서면질의에

58) Zierck, in: Egg(Hrsg.), Extremistische Kriminalität, 2006, S. 71ff.; Willems/Steigleder, Täter-Opfer-Konstellationen, 2003, S. 26ff.; BT-Drs. 17/46 참조.

59) Kubink, ZRP 2002,S. 309.

60) BMI, Politisch motivierte Kriminalität im Jahr 2009, 23. 03.2010.

대한 답변서에 의하면 2009년도에 '보수주의적-정치적으로 동기화된 증오범죄'로 파악된 사건 중 625건이 선전범죄로, 전체 증오범죄 2,768건의 약 23%에 해당된다.[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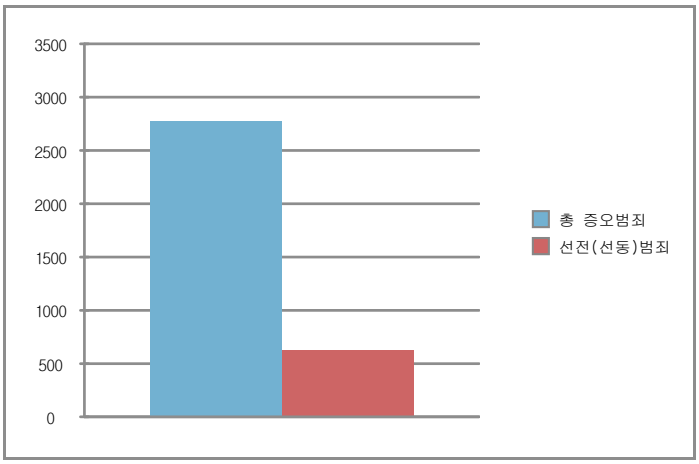

출처: 독일연방하원 2010

그림 3-9 증오범죄/보수주의-정치적으로 동기화된 범죄 중 선전범죄

일반적으로 '보수주의-정치적으로 동기화된 범죄'에서의 대다수 선전범죄는 독일 형법 제86조, 제86조의a 또는 제130조에 따른 범죄이었다. 증오범죄로서 선전범죄의 발생비율이 높은 이유는 이러한 선전행위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가능성이 보다 용이해졌다는 것으로, 예를 들어, 행위자의 언어적 모욕 또는 국가사회주의(나치)의 내용이 있는 기호 등과 같은 헌법위반적 표지의 과시 등이다. 또한 대중선동죄의 구성요건요소는 금지된 슬로건의 공표 또는 유사한 공격적인 행동만으로도 충족되기 때문에, 그 파악이 용이한 점이 있다.[62]

61) Rechtsextreme und fremdenfeindliche Straftaten 2009. BT-Drs. 16/12261; BT-Drs. 16/12636; BT-Drs. 16/13320; BT-Drs. 16/13765; BT-Drs. 16/13876; BT-Drs. 16/14024; BT-Drs. 16/14121; BT-Drs. 17/46; BT-Drs. 17/195; BT-Drs. 17/414; BT-Drs. 17/663; BT-Drs. 17/1319 참조.

62) Gaßebner, in: Wahl(Hrsg.), Skinheads, Neonazis, Mitläufer, S. 36ff. 참조.

제4장

주요 외국의 증오범죄 대응방안

김지영·이재일

04

주요 외국의 증오범죄 대응방안

제1절 미국

1. 현행 증오범죄법령

증오범죄법을 통과시키도록 주를 설득하려는 ADL(Anti-Defamation League)의 노력은 성공적이어서 ADL이 1981년에 모델이 되는 법률의 초안을 작성하자마자 오레곤이나 워싱턴 같은 몇몇 주에서 유사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다른 주들도 신속하게 이를 따랐다. 1994년에 이르러서는, 34개 주와 콜롬비아 지구에서 처벌-강화-유형(penalty enhancement-type)의 법률들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2000년에는 7개 주만이 법령을 갖추지 않았다.

많은 주들이 ADL 모델을 참고하였지만, 그 주들은 처음 법률을 통과시킬 때, 그리고 개정을 하면서 상당한 변화를 가한 경우가 많다. 어떤 주들은 ADL 모델을 따르지 않고 여러 법률들을 조합하여 새로운 법률을 만들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오늘날의 증오범죄 입법은 매우 다양하게 되었다. 몇몇 법률은 순수하게 처벌을 강화하는 근거로 사용되어서 편향된 동기에 의한 판결을 증가시키기도 했다. 처벌의 강화는 상당하다. 특정 조건 하에서는 최고형이 두 배, 세 배, 또는 그보다 더 높기도 하다. 이러한 법률들은 또한 가벼운 비행을 중죄로 재분류

하기도 하는데, 이런 상황은 가해자들에게는 심각한 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주들에서는 다른 범죄들과 증오범죄를 구분하는 법률을 제정하기도 하였다. 어떤 경우이든, 실질적인 효과는 피고인들이 일반적인 범죄에 의해서 받는 것보다 더 심각한 처벌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주(州)들 간에는 다른 차이들이 또한 존재한다. 몇 개 주는 교묘하게 행해지는 범죄를 증오범죄로 규정하도록 허용한다. 반면 다른 몇 개 주는 괴롭힘, 공격, 난폭한 행동 등, 특정 가해행위만을 증오범죄로 규정한다(Jacobs & Potter, 1998). 그리고 어떤 주는 피해자를 그가 속한 집단 "때문에" 또는 집단"을 이유로" 선택해야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반면 다른 주들은 단순히 범죄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하거나 편견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하거나 또는 편견이 "명백하여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주들은 또한 법률에 어떤 집단들을 열거하고 있는지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모든 법률들은 집단의 기준으로 최소한 인종, 종교, 그리고 민족(또는 출신국)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23개 주 만이 성적취향, 21개 주가 성별, 23개 주가 정신적, 신체적 장애, 4개 주가 정치적 소속, 그리고 4개 주만이 연령을 집단의 기준에 포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처벌-강화-유형의 법률과 달리, 어떤 주들은 추가법률 또는 관련 법률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40개 주)은 제도적인 폭력주의를 금지하고 있다. 거의 절반(24개 주)은 증오범죄 자료를 수집하는 것에 관한 법률을 가지고 있다. 몇 개 주(10개 주)는 행정부서에 대한 전문화된 훈련과 관련된 법률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많은(28개 주) 주들이 민사소송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루이지애나, 매사추세츠, 미네소타, 그리고 워싱턴은 이 다섯 가지 유형의 법률을 모두 가지고 있고, 단 한 개 주 - 와이오밍 - 는 증오범죄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다.

주에 대한 로비의 노력이 성공적이었던 경험을 해 본 ADL과 그 동맹들은 연방정부로 관심을 돌렸다. 물론 상당한 성과가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느리고 제한적이다. 1994년에, 의회는 Hate Crimes Sentencing Enhancement Act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은 특히 연방 처벌 강화 법률의 하나로 제정되었다. 이 법률로 인해 the United States Sentencing Commission이 증오범죄와 관련된 사건의 판결 요건을 검토하게 되었다. 1994년에 의회는 Violence Against Women Act(VAWA)

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1997년에는 Church Arson Prevention Act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Gerstenfeld, 2004).

그러나 이러한 처벌법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증오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실제로 증오범죄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 이를 수사할 수 있는 방안은 미흡한 실정이다. 증오범죄에 대한 훈련지침서가 증오범죄해결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증오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각종 자료를 수집하는 것 또한 장려될 필요가 있다(McDevitt, Levin & Bennett, 2002).

2. 증오범죄에 대한 통계 및 자료 수집

증오범죄에 대해서 구체적인 관련성이 있는 연방법이 처음 제정된 것은 1990년이다. HCSA(Hate Crimes Statistics Act)로 불리는 이 법률은 미국 사법부가 지역 행정부 직원을 통해 증오범죄의 자료를 수집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였다. 이 법률은 의회에 의해서 매우 강력한 지지를 받았다. 단 4명의 상원 의원들만이 이 법률에 반대표를 던졌으며, 이들의 반대 이유는 단지 열거된 범주들 중에서 성적취향이 있었다는 것이었다. Uniform Crime Reporting(UCR) 프로그램을 통해 이종, 종교, 성적 취향, 민족 등이 원인이 된 증오범죄, 그리고 살인, 강간, 가중폭행, 단순 습격, 위협, 방화, 파괴, 소유권에 대한 파괴행위 등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침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되었다.

HCSA는 원래 1995년에는 효력을 상실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계속적인 수집활동의 필요로 인해 나중에 2002 회계연도까지 연장되었다. 법령에 의거하여 법무부장관의 책임을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관리자에게 위임하여 'FBI의 UCR 프로그램과정'을 개발하였고, 증오범죄 데이터 수집활동을 하였다(최응렬, 정승민, 2005). 그런데 증오범죄에 관련된 자료를 모으는 것과 그 자료를 해석하는 데는 문제가 있어왔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늘날 UCR 프로그램에서는 법집행기관이 국내의 증오범죄통계를 모으는 것에 대한 기법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미국에서의 증오범죄 정책의 탄생과 성숙

미국에서는 지난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현안으로서 증오범죄에 대해 개념을 규정하고, 연구를 발전시키고, 설명해 왔다. 상원의원 Edward Kennedy는 증오범죄는 파괴적이고 국민간 분열을 초래하며, 증오범죄의 효과는 피해자 개인에게만 그치지 않고 널리 퍼지고, 증오범죄는 전체 사회를 해치며 미국이 기초하고 있는 이상을 무너뜨린다. 따라서 증오범죄에 대해서는 모든 법의 힘을 동원해서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20세기가 끝날 때가 되어서야 선출직 고위공직자에 의해서 이런 언급이 있었다는 것이고, 차별적 폭력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 변화가 등장하고, 제도화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범죄통제 노력, 민·형사법의 발전, 시민권의 할당, 그리고 소수자의 상징적 지위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순간을 차지한다. 증오범죄에 대한 정책영역의 탄생과 구조화는 단계적으로 발생하였다. 사회운동으로부터 입법구상, 법이론, 법집행 단계까지 증오범죄의 의미와 정책적인 중요성은 일련의 변화를 겪었다. 우리가 보아 온 것처럼 각각의 변화는 미국의 정책 과정을 구성하고 있는 상이한 기관의 영역들의 개념에 근거한 독특한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다. 그래서 증오범죄 정책의 의미는 새로운 맥락들 사이에서 새로운 방향으로의 변화를 많이 겪었다. 증오범죄에 대한 정책적 구상이 새로운 환경에 적용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증오범죄의 정의는 새로운 현상을 수용할 수 있도록 확장되면서, 의미와 개념의 함의를 확장하는 결과를 낳았다(Grattet & Jenness, 2001).

미국에서는 증오범죄에 효과적인 몇 가지 방안이 제시되어 왔다. 첫째는 인종주의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이는 것이다(Winkel, 1997). Winkel은 편견적인 고정관념들이 변화되어서 인종주의, 편견, 그리고 혐오 등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였다. 그는 편견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중매체에서의 캠페인이 심리학적으로 대중에게 접근할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실증적인 증거에 따르면, 설득적인 전략을 사용하는 반인종주의 캠페인은 효과가 없지는 않으나, 조건에 따라서 그 효과는 가변적이라고 한다.

둘째, 피해자-가해자 조정의 방법이 제안되기도 한다(Shenk, 2001). 형사 사법

시스템은 그동안 범죄발생 이후에 피해자와 지역사회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그리고 시스템이 처벌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재범 발생을 예방할 수 없었다고 보고, 증오범죄에서의 회복적 사법적 접근이 피해자들의 정서적으로 치유와 가해자들의 범죄영향 인식에 효과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심지어 폭력적인 증오범죄의 경우에도 피해자-가해자 조정이 피해자, 가해자, 그리고 지역사회에 이익이 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증오범죄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알리는 학생들의 프로젝트 사례를 들 수 있다(Mahoney, 1999). Massachusetts 주는 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학생들이 증오에 의한 괴롭힘과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시민의 권리를 알리는 일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알려주는 작업을 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교육과 행동주의를 통해서 편협함과 증오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는 인턴십 프로그램, 인터넷 사이트 개설, 매뉴얼, 공동체 봉사활동, 미디어의 지원 등과 같은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여 피해자와 잠재적인 가해자, 그리고 공동체 사회에 대한 의식을 키울 수 있도록 하였다.

어떤 범죄가 편견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를 규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에, FBI는 편견으로 인해 발생하는 범죄행위를 찾아내는 데 사용할 지표를 마련하였다. '통일적 범죄 보고서 (the Uniform Crime Reports, 이하 UCR)'는 13개의 지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발생 가능성이 있는 편견을 규정하려면 이 중 몇 개 항목이 충족되어야 한다(미 법무부, 1990). 가해자가 유사 범죄 전력이 있는지, 조사 중인 사건과 같은 지역에서 증오범죄가 일어난 적이 있는지, 사건 발생일이 마틴 루터 킹 데이 같은 특정한 날과 관련되었는지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UCR 가이드라인은 조사관들이 각 사례별로 사실을 검토하고 허위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사항들에 특히 주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증오범죄에 관한 교육이 모든 경찰관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미 법무부, 2000). 경찰에 대한 교육과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공을 통해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지 않게 할 수 있지만, 현재 경찰관들은 편견을 가늠하는데 어떤 방법이 효과적이고 적합한지 잘 알지 못하고 있다(McDevitt, 2000).

조사관들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증오범죄 행위 현장에 제일 먼저 출동한 법집행기관 모두가 따라야 할 분명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며, 증오범죄 행위에서

증오라는 동기를 규명하고 공소를 제기하는 등 보다 복잡한 문제를 다루는 관계자들을 위해서도 적절한 기준이 확립되어야 한다.

제2절 독일

1. 증오범죄에 대한 법규

미국과는 달리 독일에서는 증오범죄라는 카테고리는 이전에는 법적인 의미를 갖지 않았다. 개념 자체가 독일 형법에서는 당시의 현행법 체계에서(de lege lata) 고려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독일에서는 행위형법이 중심이지 심정형법이 중심이 아니기 때문이다.[63] 행위형법에 따르면 가벌성의 근거는 법익의 침해 또는 위태화에 연결된 행위책임(Tatschuld)이다. 그러나 증오범죄의 개념정의에 대한 몇몇 표지들에 대한 상황들은 독일에서도 발견된다. 예를 들어, 차별금지(Diskriminierungsverbot)가 독일 헌법인 기본법(Grundgesetz)에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다. 즉, 독일 기본법 제3조 제3항은 "어느 누구도 자신의 성별, 결혼여부와 출신, 신념, 종교적·정치적 관점 때문에 불이익을 받거나 또는 우선시 되어져서는 안된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장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독일 법체계에서 '증오(Hass)'라는 단어는 명시적으로는 국민선동의 범죄구성요건(형법 제130조)에서 발견된다. 동조는 공공의 평화를 해하는 것에 적합한 방식으로 국민의 일부분에 대한 증오를 선동하거나, 그들에 대하여 폭력적 조치 또는 자의적 조치를 선동하는 자는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묵시적으로 '증오'를 나타내는 조항들이 많다. 예를 들어,

- 위헌적 조직의 선전수단 및 표식의 유포·사용을 통한 민주법치국가의 위태화

63) 독일에서의 심정형법의 문제성과 관련하여 Rath, Gesinnungsstrafrecht, Hamburg 2002; Preuß, in: Luthart / Söllner (Hrsg.), Verfassungsstaat, Souveränität, Pluralismus, Opladen 1989, S. 129-152 참조.

(형법 제86조, 제86조의a),
- 공공 질서에 관한 죄(형법 제123조 제124조, 제125조, 제125조의a, 제129조의a, 제130조의a, 제131조).
- 생명에 관한 죄(형법 제211조, 제212조, 제213조),
- 재물손괴죄(형법 제303조, 제304조),
- 공공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형법 제306조, 제307조),
- 신체의 불훼손성에 관한 죄(형법 제223조, 제223조의a, 제224조, 제226조),
- 모욕죄(형법 제185조) 등이다.

위에서 살펴 본 독일 형법상의 조문들은 미국 증오법(hate crime law)과는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법에서는 선입견에 의하여 동기화된 범죄를 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1993년 10월 7일 독일 연방대법원(BGH)은 '외국인 혐오'라는 동기는 '비열한 행위근거(niederer Beweggrund)'라고 결정하였다.[64] 즉, 형법 제211조의 범주내에서 인종적·외국인 혐오적인 동기는 비열한 행위근거로서 단계지워야만 하고, 그와 동일하게 고려되야만 하는 것을 승인한 것이다.[65] 행위근거의 판단에 있어서 행위자의 행위동기를 위한 모든 외적·내적 상황들의 종합적 평가가 필수적이며, 그에 있어서 행위의 계기뿐만 아니라 사람 및 피해자의 생존권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 또한 고려되야만 한다.[66] Neuruppin 검찰청은 2008년 11월 25일 2명의 보수극단주의자들에 의한 노숙인에 대한 살인사건의 공소장에 이 조문은 외국인 혐오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 그룹에 대해서도 사용되야만 한다는 것을 명백히 하였다.[67] 행위자의 동기는 형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의 양형단계에서 고려된다. 행위자의 행위근거 및 목적, 그리고 행위로부터 도출되는 심정을 평가하고 고려하여야 한다.[68] 사실관계의 전체적 평가를 위하여, 특히 인종적, 외국인 혐오적 또는 다른 근거

64) BGH-Urteil vom 7. 9. 1993, 5 StR 455/93.
65) Schönke / Schröder, § 211 Rn. 27 참조.
66) BGHSt 47, 128, 130.
67) Neuruppin 검찰청 (문서번호: 326 Js 22868/08)
68) Schönke / Schröder, § 46 Rn. 13 참조.

에 의한 인간 경시적 동기는 중요하고 또한 형벌강화를 위한 원인으로 평가되야 만 한다.[69] 행위동기가 법률적인 범죄구성요건의 표지가 아니라는 전제하에서 이러한 동기는 양형의 최종단계에서 고려될 수 있다.

2. 증오범죄의 관할: 독일연방

연방대법원의 연방검찰청장은 국가보호의 영역에서 독일의 최상위 형사소추기관이다. 연방중앙검찰청은 법원조직법(GVG) 제142조의a 제1항에 따라서 독일의 내적·외적 안전에 극도로 영향을 미치는 국가보호와 관련된 중범죄에 있어서 검찰역할을 수행한다. 1990년대 초반부터 연방검찰청은 Mölln(1992) 및 Solingen (1993)의 극우보수주의자들에 의한 방화, 그리고 1994년 Lübeck의 유대인 교회의 방화사건을 인계받았다. 연방과 주 사이의 권한배분에 관한 일반규정인 독일 기본법 제30조에 따르면 국가적 권한의 행사와 판결권한의 행사는 원칙적으로 각 주의 업무영역이다. 여기에서의 예외가 국가보호형법이며, 이에 있어서는 연방 사법부와 각 주의 사법부 사이에 권한이 분배되어 있다(법원조직법 제142조의a에 의한 법원조직법 제120조). 이러한 기본법상의 권한배분은 독일연방대법원의 연방관청은 단지 특별히 설정된 개별사례에만 권한을 가질 수있다. 국가보호에 중요한 모든 범죄가 연방사법기관에 일반적으로 권한을 부여한 법률규정은 없다. 독일연방대법원의 연방검찰청장은 내적·외적 안전에 대한 아주 심각한 범죄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관할권이 있다. 국가보호의 특성을 가진 다른 범죄에 있어서는 독일연방대법원의 연방검찰청장은 특정된 전제조건하에서만 소추권한을 가진다. 내적 안전은 극우보수주의, 과격 진보주의 및 외국인 극단주의라는 선입견으로 인하여 모든 정치적으로 동기화된 범죄가 해당된다. 조직범죄뿐만 아니라 독일의 내적 안전을 침해하는 아주 중한 폭력범죄가 이 관계에 해당된다. 범죄행위가 상황에 따라 결정되거나, 독일의 내적 안전을 침해하거나, 그 사건에 별도의 중요성이 부여되는 것이 적합한 경우에는, 연방검찰총장이 개별 폭

69) BGH 1 StR 656/94 vom 15. 12. 1994.

력범죄자의 소추를 담당한다. 법원조직법 제12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서 독일 연방대법원의 연방검찰청장이 수사인수를 위한 계기가 나타난 사건은 다음과 같다.

1999년 8월에 연방검찰총장은 Mecklenburg-Vorpommern주의 Eggesin시에서 외국인 혐오로 인하여 2명의 베트남 국적을 가진 사람을 습격하고 행위과정에서 중상해를 입힌 극우보수주의자 집단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였다. 국가보호에 관한 범죄에 있어서 연방검찰총장의 수사권한은 형사사건 Eggesin(문서번호: 3 StR 378/00)의 2000년 12월 22일 판결을 통하여 확인되었다. 즉, 범죄행위가 전체 국가의 내적 형태 또는 그 헌법원칙을 침해하는 것에 지향된 경우에, 연방의 권한은 유지된다는 것이다. 연방검찰청을 통한 국가보호에 중요한 절차의 인수는 법원조직법 제120조에 포함되고, 공동에 의한 범죄에의 한계설정을 제고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불특정한 법개념에 의존한다.[70] 이러한 규정은 한편으로는 사회의 변화에 반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보호의 개념이 개방적이고 변화가능한 것으로 허용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법적 개념에 단순하게 포섭되는 것이 허용되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개념정의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연방관할의 전제조건은 개별사례로서, 행위의 전체 사회적 문맥의 고려하에서 항상 새롭게 검증해야만 한다.[71]

어떤 행위가 전체 국가의 내적 형태 또는 헌법상의 원칙들을 침해하는 것이라면, 그 행위는 독일의 내적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특정된다. 피고인이 외국인 혐오적이고 극우보수주의적인 동기에 의하여 행위한 경우에, 이에 해당될 수 있다.[72]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증되는 행위가 그 범죄의 중요성 (피해자에의 구체적 영향력과 내적 안전에의 위태화) 및 별도의 상황을 근거로 하여 이러한 현상의 평균사례에 해당되지 않을 때,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개념이 부정될 수 있다.[73]

70) Sowada, Der gesetzliche Richter, 2002, S. 666ff. 참조

71) Glet, Sozialkonstruktion, 2011, S. 71.

72) Glet, Sozialkonstruktion, 2011, S. 71.

73) Beschluss des BGH vom 21. 03. 2001 - 3 StE 2/01 - "Jessnitz".

3. 증오범죄를 위한 입법안 발의

2007년 8월 20일 Brandenburg주와 Sachen-Anhalt주는 현행 형법의 강화를 위한 입법안을 연방참사원에 제출하였다. 이미 2000년에 Brandenburg주는 형법 제224조의a(비열한 동기로 인한 상해죄)를 형법전에 도입하고자 하는 입법안을 연방참사원(Bundesrat)에 제출하였다. 특히 동조의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국민의 일부, 국적·인종·종교에 의한 그룹, 또는 국민들에 의하여 특정된 그룹에 대한 증오 또는 그 밖의 비열한 동기에 의하여 상해를 가한 자는, 1년 이상 10년 미만의 자유형으로 처벌한다.[74]

그러나 이 입법안은 통과되지 않았다. 2000년에 Mecklenburg-Vorpommern주 또한 형법에 특별한 행위자의 동기를 규범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연방참사원에 제출하였다. 이로 인하여 증오 또는 그 밖의 비열한 행위동기에 의하여 범하여진 범죄퇴치에 관련하여 형사소추기관 및 법원의 인식을 일깨우게 되었다.[75] 그 후 형법 제46조, 제47조 및 제56조의 보완을 통하여 인간경시적, 인종적 또는 외국인 혐오적인 행위동기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형벌강화가 강력하게 고려되었다. 입법안에는 양형단계에서 형법 제46조 제2항에서 고려되는 행위동기 및 행위자의 목적이 확장되었으며, 행위가 인간경시적, 인종적, 외국인 혐오적 행위동기 및 목적이 함께 고려되는 경우에 형법 제47조의 보완을 통하여 6개월 이하의 단기자유형의 부과가 필수적이었다. 형법 제56조 제3항에서 추가적으로 6개월 이상의 자유형의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되지 않도록 하였다.[76]

이러한 동기에 의하여 실현된 범죄를 위한 입법안은 동일한 공격행위가 보통 행위자와의 개인적인 분쟁상황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특정의 소신 또는 확신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된 사실에 따라 근거지워진다. 이에 따르면, 행위는 개인으로서 피해자에 대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

74) BR-Drs. 577/00, S. 1 (Anlage)

75) BR-Drs. 759/00 참조.

76) BR-Drs. 572/07, S. 5.

자에게 증오된 인간그룹에 대한 본보기라는 것이다.[77]

입법안의 자세한 목적은 더 강력한 형벌을 통한 위하, 형사소추기관의 인식 강화, 공공의 문제의식의 강화, 그리고 유럽연합 입법에의 상응 등이다.[78] 그런 행위들이 특별히 남용되어져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입법안 제청자들은 특별예방 및 일반예방의 관점에서 현존하는 법적 근거의 강화를 꾀하였다.[79] 즉, Brandenburg주 및 Sachsen-Anhalt주의 형법개정입법안에 제시된 개정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형법 제46조 제2항 제2문에 '행위자의 목적들(Ziele des Täters)'이라는 법문에 따라 다음의 법문을 추가한다: "특히 인간경시적, 인종적, 또는 외국인 혐오적 (…)"
2. 형법 제47조 제1항에 다음과 같은 문장이 추가된다: "행위가 인간경시적, 인종적 또는 외국인 혐오적인 행위동기 또는 목적에 의하여 함께 결정되는 경우에, 자유형의 부과가 법질서의 방위를 위하여 일반적으로 필수적이다."
3. 형법 제56조 제3항에 다름과 같은 문장이 추가된다: "법질서의 방위를 위하여 제47조 제1항 제2문의 사례는 일반적으로 집행해야만 한다."

선입견범죄 및 증오범죄의 지속적인 퇴치를 위한 더 강력한 형벌의 요구는 독일연방의 다른 주들, 정치가, 피해자 지원단체, 그리고 형사소추기관의 실무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나뉘었다. Nordrhein-Westfalen주, Baden-Württemberg주, Hessen주, Berlin시, Rheinland-Pfalz주, Thüringen주는 형사소추를 위한 현존 도구들로 충분하다는 이유로 입법안을 거부하였다. 그에 반하여 Niedersachsen주, Mecklenburg-Vorpommern주, Sachsen주, Schleswig-Holstein주, Hamburg시는 동의하였다.[80] 찬성자들은 법률개정안을 상징효과를 통한 합리적인 위하로 간주하였으며[81], 특

77) BR-Drs. 572/07, S. 5.

78) Schellenberg, Strategien, 2008, S. 10 참조

79) BR-Drs. 572/07.

80) "Rechtsextremismus ist kein Ostproblem", in: Netzzeitung.de, 16.08.2007.

81) "Rechtsextreme Schläger sollen härter bestraft werden - Politiker warnen", in: Spiegel

히 독일 유대인중앙회는 극우보수자에 의한 범죄증가를 예방하기 위하여 구 동독지역의 각 주들의 법률개정안 공동발의를 환영하였다.[82] 이에 반하여 반대자들은 정당 및 몇몇 피해자 지원단체들에 의한 '각 주의 정치가의 대중영합주의', '상징정치', 그리고 '심정형법을 위한 활로개척'이라고 주장하며 반대하였다.[83] 독일연방정부는 법률개정안을 거부하였다. 2008년 8월 13일 정부의견서에서 이 법률개정안은 인종주의적, 외국인 혐오적, 또는 다른 인간경시적 동기에 의한 범죄퇴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지만, 제안된 법률개정안은 객관성이 의심된다고 적고 있다. 연방정부의 견해는 행위동기에 대한 평가는 이미 형법 제46조에 포함되어 있으며, 단기자유형의 부과와 그 집행은 현행 형법 제47조와 제56조에 따라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연방정부는 '인간경시적', '인종주의적', 그리고 '외국인 혐오적'이라는 개념과 관련하여 언어적 정확성의 결여를 비판하였다.[84] 그 밖에 주의할 점은 현재 독일 형사사법시스템에는 증오범죄의 절차과정을 위한 경험적인 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형사재판 종결율과 유죄선고율을 보면, 경찰에 의하여 파악된 범죄 중에서 얼마나 유죄선고가 이루어지고, 선입견에 근거한 동기상황이 형량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에 대하여 이전에는 명시적인 구별이 없었다.[85] 이러한 상황때문에 절차와 관련된 정보의 경험적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그 결과 법실무에서 부과된 형벌의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86]

2009년 5월에 간행된 '인종주의 및 배타주의에 대한 유럽위원회(Europäischen Kommision gegen Rassismus und Intoleranz)'의 독일보고서는 현존하는 형법규정들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모든 일반범죄에 있어서 인종주의적 행위동기를 형벌강화적 요소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비록 독일 형법 제46조에서 양형에서 고려되는 행위자의 행위동기 및 의도가 열거되어 있지만, 인종주의적 행위동기가 명시

Online, 09.08.2007.

82) "Knobloch will härtere Strafen für Hasskriminalität", in: Spiegel Online, 13.02.2008.

83) "Brandenburg und Sachsen-Anhalt fordern härtere Strafen", in: FAZ Net, 15.08.2007.

84) BT-Drs. 16/10123.

85) Glet, Sozialkonstruktion, 2011, S. 76 참조.

86) Glet, Sozialkonstruktion, 2011, S. 76 참조.

적으로 형벌강화적 요소로 언급되지 않은 것을 비판하였다. 이 보고서는 독일에서 인종주의가 극우보수주의라는 형식을 통한 처벌만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하여 심각하게 우려를 표현하였다. 그 밖에 유럽위원회는 인종주의와 인종차별의 퇴치를 위한 법률적 규정의 강화를 위하여, 그리고 인종주의에 의하여 동기화된 범죄의 실체 확인과 형사소추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경찰공무원·검찰·법관의 교육 및 재교육을 권고하고 있다.[87]

2010년 2월 9일 Mecklenburg-Vorpommern주 및 Sachsen-Anhalt주 주정부는 소위 증오범죄에 있어서 양형강화를 위한 법률안을 다시금 연방참사원에 제출하였다.[88] 법무부장관인 Angela Kolb는 형벌의 확정에 있어서 인종주의적·외국인 혐오적인 행위동기를 특별히 고려해야만 하고, 법원은 정치적으로 동기화된 범죄에 있어서 집행유예가 아니라 실형을 선고해야만 하는 것을 찬성하였다. 법률안의 목적은 경찰·검찰·법원의 책임있는 모든 사람들은 범죄행위가 극단적 또는 외국인 혐오적 행위동기를 가지고 있는가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89] 그 이외에도 외국인 혐오적·인종주의적 범죄의 별도 영역은 피해자가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행위자에 의하여 증오된 인간그룹의 대표자로서 본보기로 선택된 영역으로, 이러한 범죄행위는 해당된 소수자그룹에 두려움과 공포를 유포한다. 따라서 Kolb는 형사소추기관은 행위의 동기와 그 사회적 영향력에 따라 항상 추적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새로운 법률과 일반적인 양형도그마틱이 필수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90]

입법안을 제출한 Mecklenburg-Vorpommern주 및 Sachsen-Anhalt주는 2008년 독일연방내무부의 보고서의 극우보수주의적, 외국인 혐오적, 또는 반유대주의적인 것으로 단계지워진 범죄수의 현저한 증가를 그 예시로 들었다. 이에 따르면 2008년 극우보수주의적 배경을 가진 범죄가 20,422건으로 전년 대비 16% 증가

87) Europäischen Kommission gegen Rassismus und Intoleranz, ECRI-Bericht über Deutschland, 26.05.2009, S. 15-17 참조.

88) BT-Drs. 71/10 참조.

89) “Härteres Vorgehen bei rassistischen Straftaten gefordert", in: MDR.de, 05.03.2010.

90) Bundesrat - 876 Sitzung, Prof. Dr. Angela Kolb, Tagesordnungspunkt 3, Entwurf eines Gesetzes zur Änderung des Strafgesetzbuches, 05.03.2010, S. 53ff.

하였다. 이 중 폭력범죄의 수는 전년 대비 5.6% 증가한 1,113건으로 파악되었다.[91] 연방의회(Bundestag)는 형법개정을 위한 법률안을 2010년 받아들여, 형법 제46조 제2항 제2문에 '행위자의 목적'이라는 법문에 따라 '특별히 인종주의적, 외국인 혐오적, 또는 그 밖의 인간경시적'이라는 법문을 삽입하였다. 형법은 소위 '증오범죄'의 사회적 거부를 명시적으로 표현하여야만 하는데, 왜냐하면 그러한 유형의 공격행위는 아주 특별하게 사회의 공공의 평화를 해하는 데 적합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개정이유서에서 확인하였다.[92]

91) BMI, Politisch motivierte Kriminalität im Jahr 2008, 20.04.2009.

92) BR-Drs. 71/1/10 참조.

제5장

증오범죄 실태조사

김 지 영

05

증오범죄 실태조사

제1절 인구통계적 특성

1. 성별·연령대·국적

조사대상이 된 외국인 중 남자는 369명으로 55.5%, 여자가 296명으로 44.5%를 차지해서 남자가 10% 가량 더 많았다.(표 5-1, 그림 5-1 참조)

표 5-1 성별

	빈도(명)	%
남자	369	55.5
여자	296	44.5
계	66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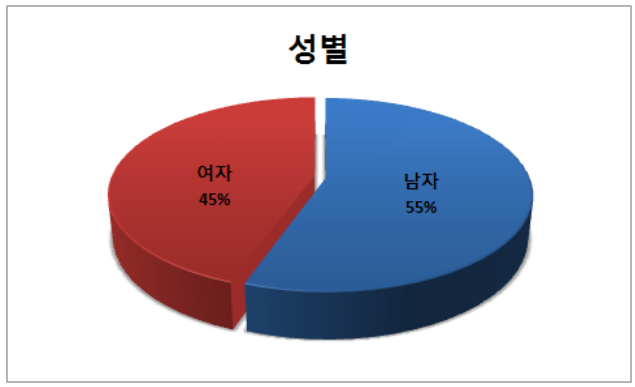

그림 5-1 성별

조사대상이 된 외국인 중 10대 12.2%, 20대 57.0%, 30대 26.2%, 40대 이상이 4.7%로, 20대가 가장 많았고, 30대, 10대 40대 이상의 순이었다.(표 5-2, 그림 5-2 참조)

표 5-2 연령대

	빈도(명)	%
10대	81	12.2
20대	379	57.0
30대	174	26.2
40대 이상	31	4.7
계	66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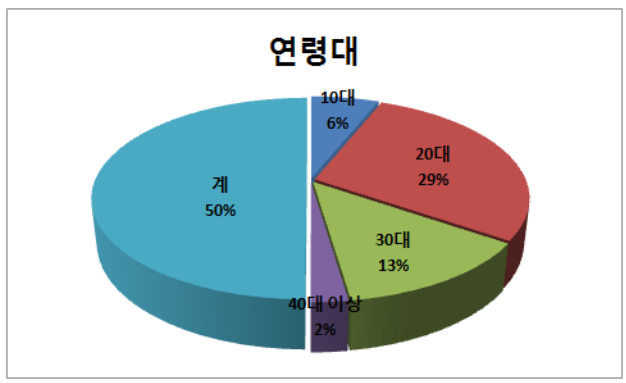

그림 5-2 연령대

조사대상이 된 외국인들은 3개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데, 전체 인원 중 중국인이 220명으로 33.1%, 인도네시아인이 233명으로 35.0%, 우즈베키스탄인이 212명으로 31.9%를 차지하였다.(표 5-3, 그림 5-3 참조)

표 5-3 국적

	빈도(명)	%
중국	220	33.1
인도네시아	233	35.0
우즈베키스탄	212	31.9
계	66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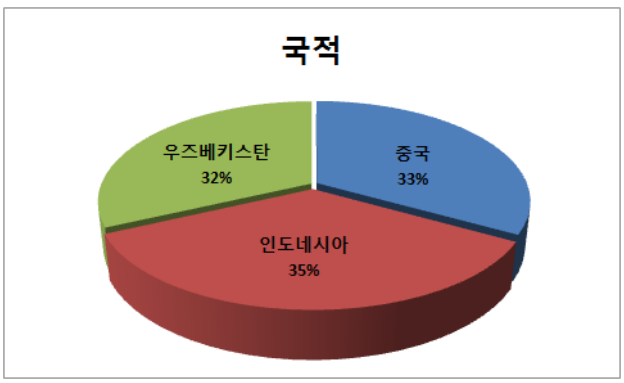

그림 5-3 국적

2. 신분·거주지역·종교

조사대상인 외국인들의 신분은 노동자 또는 귀화 한국인이 327명으로 49.2%를 차지하였고, 한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338명으로 50.8%를 차지하였다.(표 5-4, 그림 5-4 참조)

표 5-4 신분

	빈도(명)	%
노동자/귀화 한국인	327	49.2
학생	338	50.8
계	66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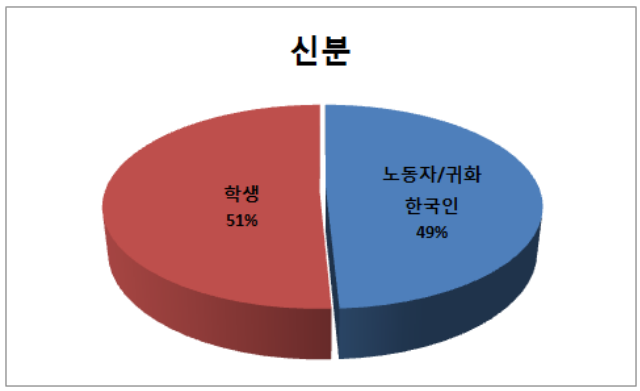

그림 5-4 신분

본 조사는 수도권지역에서 실시되었는데, 그 중에서 서울지역 거주자가 286명으로 43.0%를 차지하였고, 인천·경기도가 235명으로 35.3%, 기타 지역이 144명으로 21.7%를 차지하였다.(표 5-5, 그림 5-5 참조)

표 5-5 거주지역

	빈도(명)	%
서울	286	43.0
인천·경기도	235	35.3
기타 지역	144	21.7
계	66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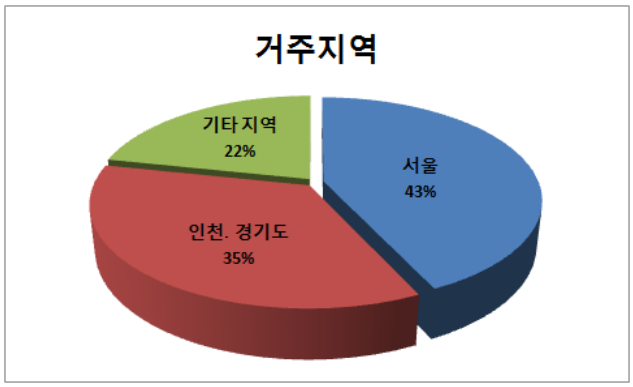

그림 5-5 거주지역

조사대상자들은 다양한 종교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슬람교가 281명으로 42.3%, 기독교가 87명으로 13.1%, 불교가 38명으로 5.7%, 가톨릭교가 37명으로 5.6%, 러시아정교가 27명으로 4.1%,힌두교가 2명으로 0.3%를 차지하였으며, 기타 종교로 응답한 3인은 '天'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종교가 없는 경우가 190명으로 28.6%를 차지하였다.(표 5-6, 그림 5-6 참조)

표 5-6 종교

	빈도(명)	%
무교	190	28.6
불교	38	5.7
기독교	87	13.1
이슬람교	281	42.3
러시아 정교	27	4.1
가톨릭	37	5.6
힌두교	2	0.3
기타	3	0.5
계	665	100.0

기타로 응답한 3명(0.5%)이 '天' 이라고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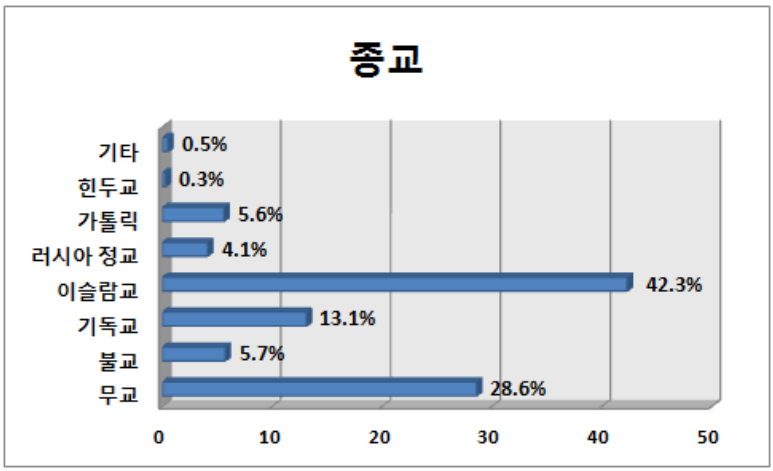

그림 5-6 종교

3. 한국국적 취득 여부·결혼상태·배우자 국적

조사대상자들 중 한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33명으로 5.0%에 불과했고, 95.0%에 해당하는 632명은 한국국적이 없는 상태였다.(표 5-7, 그림 5-7 참조)

표 5-7 한국국적 취득 여부

	빈도(명)	%
취득	33	5.0
미취득	632	95.0
계	66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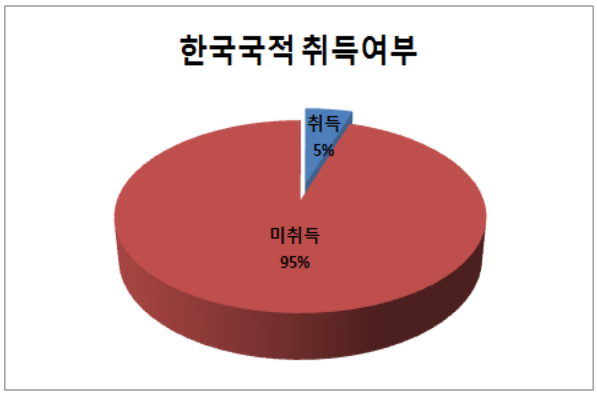

그림 5-7 한국국적 취득 여부

조사대상자의 결혼상태는 기혼인 경우가 176명으로 26.5%, 미혼인 경우가 477명으로 71.7%를 차지하였고, 별거나 이혼, 사별을 한 경우가 12명으로 1.8%를 차지하였다.(표 5-8, 그림 5-8 참조)

표 5-8 결혼상태

	빈도(명)	%
미혼	477	71.7
기혼	176	26.5
별거, 이혼, 사별	12	1.8
계	66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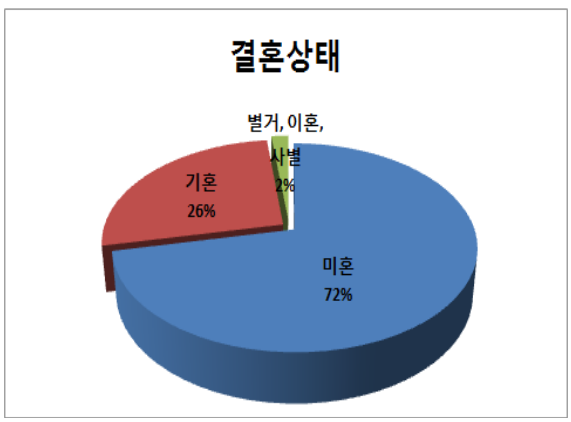

그림 5-8 결혼상태

현재 결혼상태가 기혼이거나 별거, 이혼, 사별 상태인 대상자들 188명중 무응답 6명을 제외한 182명을 분석한 결과 배우자의 국적이 한국인 경우가 66명으로 36.3%, 한국이 아닌 경우가 116명으로 63.7%를 차지하였다.(표 5-9, 그림 5-9 참조)

표 5-9 배우자의 국적

	빈도(명)	%
한국	66	36.3
한국 이외	116	63.7
계	18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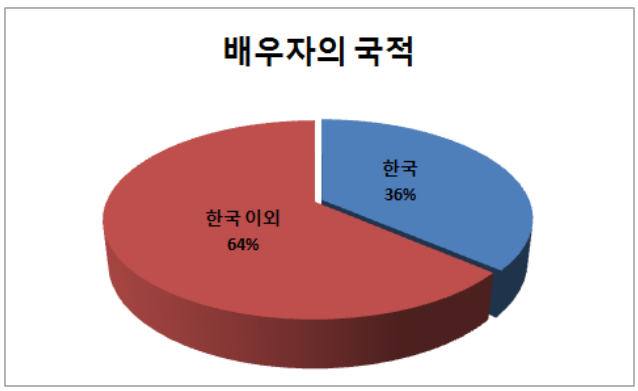

그림 5-9 배우자의 국적

4. 동거가족·가구 월소득

조사대상자들에게 동거가족의 구성을 중복응답의 형태로 질문하였다. 동거인들 중 친구가 265명으로 39.8%, 동료근로자가 90명으로 13.5%, 배우자가 84명으로 12.6%, 자녀가 52명으로 7.8%, 고향에서 온 가족이 33명으로 5.0%, 배우자의 가족이 19명으로 2.9%를 차지하여, 친구와 함께 지내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그리고 동거인이 없이 혼자 살고 있는 경우가 194명으로 29.2%였고, 기타 응답으로는 기숙사 룸메이트(10명, 1.5%), 홈스테이(1명, 0.2%) 등이 있었다.(표 5-10 참조)

표 5-10 동거가족

	빈도(명)	%
배우자	84	11.2
자녀	52	7
고향에서 온 가족	33	4.4
배우자의 가족	19	2.5
친구	265	35.4
동료 근로자	90	12
독거	194	25.9
기타	11	1.5
계	748	100

기타에는 '기숙사 룸메이트'(10명, 1.5%)와 '홈스테이'(1명, 0.2%) 포함

조사대상자들중 노동자인 327명에 한해서 가구 월소득을 조사하였다. 150만원 미만이 185명으로 가장 많은 56.6%를 차지하였고, 150만원에서 250만원 사이가 115명으로 35.2%였다. 그리고 250만원 이상인 경우는 27명으로 8.3%에 불과했다. (표 5-11, 그림 5-10 참조)

표 5-11 가구 월소득

	빈도(명)	%
150만원 미만	185	56.6
150만원 이상 – 250만원 미만	115	35.2
250만원 이상	27	8.3
계	32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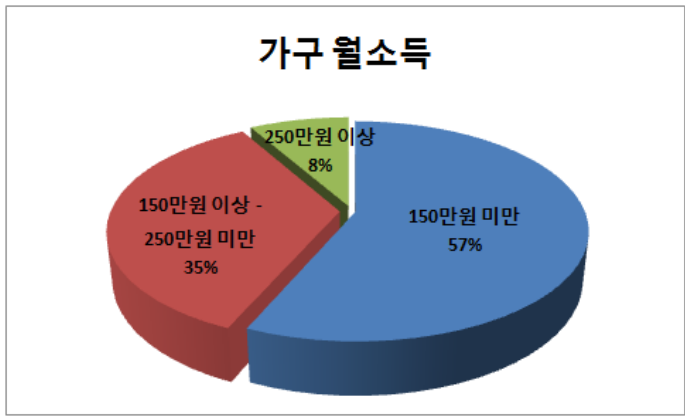

그림 5-10 가구 월소득

제2절 한국에서의 피해경험

1. 본인의 피해 및 피해횟수

조사대상인 외국인들 665명 중 인종, 종교, 국적으로 인한 피해를 경험한 사람들의 비율은 다음과 같았다. 먼저 폭행을 경험한 사람은 7명으로 1.1%였고, 말이나 행동으로 폭행의 위협을 당한 경험은 16명으로 2.4%를 차지했다. 강도를 당하거나 당할 뻔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3명과 5명으로, 각각 0.5%와 0.8%를 차지했다. 성폭행을 당하거나 당할 뻔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2명과 9명으로 각각 0.3%와 1.4%를 차지했다. 그리고 소유물을 파손 당하거나 파손 당할 뻔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각각 2명으로 0.3%를 차지했다.

자신의 종교나 국가의 상징이나 건물 등이 파손되는 경험을 하거나 파손당할 뻔한 경우는 각각 2명으로 0.3%를 차지했다. 물건이나 돈을 빼앗기거나 빼앗길 뻔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9명과 6명으로 각각 1.4%와 0.9%를 차지했다. 마지막으로 집이나 교회 등이 방화 당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없었고, 방화당할 뻔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1명으로 0.2%에 불과했다.(표 5-12 참조)

표 5-12 인종, 종교, 국적으로 인한 본인 피해 경험

단위: 명(%)

문항	없다	있다	계
폭행을 당한 경험 (예: 흉기로 찌르기, 총쏘기, 때리기, 물건집어던지기, 밀치기, 목조르기 등)	658 (98.9)	7 (1.1)	665 (100.0)
말이나 행동으로 폭행의 위협을 당한 경험	649 (97.6)	16 (2.4)	665 (100.0)
강도를 당한 경험	662 (99.5)	3 (0.5)	665 (100.0)
강도를 당할 뻔한 경험	660 (99.2)	5 (0.8)	665 (100.0)
성폭행 당한 경험	663 (99.7)	2 (0.3)	665 (100.0)
성폭행 당할 뻔한 경험	656 (98.6)	9 (1.4)	665 (100.0)
소유물 파손 당한 경험	663 (99.7)	2 (0.3)	665 (100.0)
소유물을 파손 당할 뻔한 경험	663 (99.7)	2 (0.3)	665 (100.0)
나의 종교나 국가의 상징(국기 등), 건물(교회 등) 등을 파손 당한 경험	663 (99.7)	2 (0.3)	665 (100.0)
나의 종교나 국가의 상징(국기 등), 건물(교회 등) 등을 파손 당할 뻔한 경험	663 (99.7)	2 (0.3)	665 (100.0)
물건이나 돈을 빼앗긴 경험	656 (98.6)	9 (1.4)	665 (100.0)
물건이나 돈을 빼앗길 뻔한 경험	659 (99.1)	6 (0.9)	665 (100.0)
집이나 교회 등에 방화 당한 경험	665 (100.0)	0 (0.0)	665 (100.0)
집이나 교회 등에 방화 당할 뻔한 경험	664 (99.8)	1 (0.2)	665 (100.0)

2009년에 실시된 국내범죄피해실태 조사에서도 10,671명을 대상으로 하여 본 조사에서와 유사한 유형의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2009년 피해자실태 조사에서의 결과를 본조사의 결과와 비교했을 때 성폭력, 강도, 폭행·상해, 협박·괴롭힘 등의 폭력범죄에 있어서는 피해자실태 조사에서의 결과보다 다소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 피해인 절도의 경우에 있어서는 본 조사에서 1.4%가 피해경험을 보고한 반면, 2009년 피해자실태조사에서는 2.9%가 피해경험을 보고하여 본 조사에서의 피해경험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는 표집의 수도 적고, 편파된 표집이나 2008년 범죄피해조사결과와 비교해서 국내의 증오범죄발생율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표 5-13 참조)

표 5-13 2008년 한국의 범죄피해조사결과

	응답자수	패해자 수		사건보고 수		총 피해 건수	
		빈도(명)	%	빈도(명)	%	빈도(명)	%
성폭력	10,671	27	0.3	27	0.3	73	0.7
강도	10,671	28	0.3	28	0.3	49	0.5
폭행·상해	10,671	41	0.4	43	0.4	98	0.9
협박·괴롭힘	10,671	32	0.3	32	0.3	219	2.0
절도	10,671	307	2.9	335	3.1	636	5.9

2008년 한국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연구(VI),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9)

인종, 종교, 국적으로 인해 본인이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33명의 대상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험을 하였는지 중복응답으로 확인하였다. 그 결과 1회에 그친 경우가 54.5%로 과반수를 차지하였고, 2회가 36.7%, 3회가 7.6%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말이나 행동으로 폭행의 위협을 당한 외국인의 경우에 5회에 이르는 위협을 반복해서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의 증오범죄 피해횟수는 평균 3.2회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5-14 참조)

표 5-14 인종, 종교, 국적으로 인한 본인 피해횟수

문항	1회	2회	3회	4회	5회	전체
폭행을 당한 경험 (예: 흉기로 찌르기, 총쏘기, 때리기, 물건집어던지기, 밀치기, 목조르기 등)	3 (42.9)	4 (57.1)	0 (0.0)	0 (0.0)	0 (0.0)	7 (100.0)
말이나 행동으로 폭행의 위협을 당한 경험	7 (43.8)	6 (37.5)	2 (12.5)	0 (0.0)	1 (6.3)	16 (100.0)
강도를 당한 경험	3 (100.0)	0 (0.0)	0 (0.0)	0 (0.0)	0 (0.0)	3 (100.0)
강도를 당할 뻔한 경험	3 (60.0)	2 (40.0)	0 (0.0)	0 (0.0)	0 (0.0)	5 (100.0)
성폭행 당한 경험	2 (100.0)	0 (0.0)	0 (0.0)	0 (0.0)	0 (0.0)	2 (100.0)
성폭행 당할 뻔한 경험	5 (55.6)	2 (22.2)	2 (22.2)	0 (0.0)	0 (0.0)	9 (100.0)
소유물 파손 당한 경험	1 (50.0)	1 (50.0)	0 (0.0)	0 (0.0)	0 (0.0)	2 (100.0)
소유물을 파손 당할 뻔한 경험	0 (0.0)	1 (50.0)	1 (50.0)	0 (0.0)	0 (0.0)	2 (100.0)
나의 종교나 국가의 상징(국기 등), 건물(교회 등) 등을 파손 당한 경험	2 (100.0)	0 (0.0)	0 (0.0)	0 (0.0)	0 (0.0)	2 (100.0)
나의 종교나 국가의 상징(국기 등), 건물(교회 등) 등을 파손 당할 뻔한 경험	2 (100.0)	0 (0.0)	0 (0.0)	0 (0.0)	0 (0.0)	2 (100.0)
물건이나 돈을 빼앗긴 경험	5 (55.6)	4 (44.4)	0 (0.0)	0 (0.0)	0 (0.0)	9 (100.0)
물건이나 돈을 빼앗길 뻔한 경험	3 (50.0)	3 (50.0)	0 (0.0)	0 (0.0)	0 (0.0)	6 (100.0)
집이나 교회 등에 방화 당한 경험	–	–	–	–	–	–
집이나 교회 등에 방화 당할 뻔한 경험	0 (0.0)	1 (100.0)	0 (0.0)	0 (0.0)	0 (0.0)	1 (100.0)
계	36 (54.5)	24 (36.7)	5 (7.6)	0 (0.0)	1 (1.5)	66 (100.0)

2. 가족 혹은 동거인의 피해 및 피해횟수

조사대상자들의 가족이나 동거인의 피해경험을 확인한 결과, 피해경험은 다음과 같다. 가족이나 동거인이 있다고 응답한 341명 중, 그들이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외국인은 5명으로 1.5%였고, 폭행의 위협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4명으로 1.2%를 차지하였다. 그 외에 강도를 당한 경험, 강도를 당할 뻔한 경험, 소유물을 파손당한 경험, 물건이나 돈을 도둑맞은 경험, 물건이나 돈을 도둑맞을 뻔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각각 1명씩 이었다. 나머지 성폭행 당한 경험, 성폭행을 당할 뻔한 경험, 소유물을 파손 당할 뻔한 경험을 보고한 응답자는 없었다.(표 5-15 참조)

표 5-15 인종, 종교, 국적으로 인한 가족 및 동거인 피해 경험

문항	없다	있다	계
가족이나 동거인이 폭행을 당한 경험 (예: 흉기로 찌르기, 총쏘기, 때리기, 물건집어던지기, 밀치기.목조르기 등)	336(98.5)	5(1.5)	341(100.0)
가족이나 동거인이 폭행의 위협을 당한 경험	337(98.8)	4(1.2)	341(100.0)
가족이나 동거인이 강도를 당한 경험	340(99.7)	1(0.3)	341(100.0)
가족이나 동거인이 강도를 당할 뻔한 경험	340(99.7)	1(0.3)	341(100.0)
가족이나 동거인이 성폭행을 당한 경험	341(100.0)	0(0.0)	341(100.0)
가족이나 동거인이 성폭행 당할 뻔한 경험	341(100.0)	0(0.0)	341(100.0)
가족이나 동거인이 소유물을 파손당한 경험	340(99.7)	1(0.3)	341(100.0)
가족이나 동거인이 소유물을 파손 당할 뻔한 경험	341(100.0)	0(0.0)	341(100.0)
가족이나 동거인이 물건이나 돈을 도둑맞은 경험	340(99.7)	1(0.3)	341(100.0)
가족이나 동거인이 물건이나 돈을 도둑맞을 뻔한 경험	340(99.7)	1(0.3)	341(100.0)

인종, 종교, 국적으로 인해 가족이나 동거인이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14명의 대상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험들을 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피해경험이 1회에 그친 경우가 50.0%로 가장 많았고, 2회 28.6%, 3회 14.3%, 4회 7.1%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가족과 동거인의 경우 평균 1.8회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5-16 참조)

표 5-16 인종, 종교, 국적으로 인한 가족 및 동거인의 피해경험 횟수

문항	1회	2회	3회	4회	전체
가족이나 동거인이 폭행을 당한 경험 (예: 흉기로 찌르기, 총쏘기, 때리기, 물건집어던지기, 밀치기.목조르기 등)	2 (40.0)	3 (60.0)	0 (0.0)	0 (0.0)	5 (100.0)
가족이나 동거인이 폭행의 위협을 당한 경험	2 (50..0)	1 (25.0)	0 (0.0)	1 (25.0)	4 (100.0)
가족이나 동거인이 강도를 당한 경험	1 (100.0)	0 (0.0)	0 (0.0)	0 (0.0)	1 (100.0)
가족이나 동거인이 강도를 당할 뻔한 경험	1 (100.0)	0 (0.0)	0 (0.0)	0 (0.0)	1 (100.0)
가족이나 동거인이 성폭행을 당한 경험	–	–	–	–	–
가족이나 동거인이 성폭행 당할 뻔한 경험	–	–	–	–	–
가족이나 동거인이 소유물을 파손 당한 경험	1 (0.0)	0 (0.0)	0 (0.0)	0 (0.0)	1 (100.0)
가족이나 동거인이 소유물을 파손 당할 뻔한 경험	–	–	–	–	–
가족이나 동거인이 물건이나 돈을 도둑맞은 경험	0 (0.0)	0 (0.0)	1 (0.0)	0 (0.0)	1 (100.0)
가족이나 동거인이 물건이나 돈을 도둑맞을 뻔한 경험	0 (0.0)	0 (0.0)	1 (0.0)	0 (0.0)	1 (100.0)
계	7 (50.0)	4 (28.6)	2 (14.3)	1 (7.1)	14 (100.0)

3. 본인이 피해를 당한 장소

증오범죄 피해경험을 보고한 33명의 외국인들이 피해장소로 가장 많이 보고한 곳은 직장으로, 14명(42.4%)이 직장에서 인종, 종교, 국적을 이유로 피해를 입었다고 보고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버스나 기차, 비행기, 전차 등의 교통수단 안(11명, 33.3%), 학교(6명, 18.2%)나 백화점, 마트, 옷가게, 음식점 등의 장삿집(6명, 18.2%), 인도나 차도 등의 노상(5명, 15.2%), 술집, 노래방 등의 유흥업소(4명, 12.1%)와 같은 공적 공간에서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하였다. 그 외에도 본인의 집에서 발생했다고 응답한 경우도 4명이 있었다(12.1%).(표 5-17 참조)

표 5-17 피해 장소(중복응답)

	빈도(명)	%
버스나 기차, 비행기, 전차 등의 교통수단 안	11	20
술집, 노래방 등의 유흥업소	4	7
교회, 절 등의 종교적 장소	1	2
백화점, 마트, 옷가게, 음식점 등의 장삿집	6	11
약국, 병원 등의 의료기관	1	2
공원 등의 위락시설	1	2
경찰서, 동사무소 등의 정부기관	3	5
인도나 차도 등의 노상	5	9
직장	14	25
가해자의 집	0	0
나의 집	4	7
학교	6	11
계	56	100

제3절 가해자의 특징

1. 가해자의 신원 확인 여부

증오범죄 피해경험이 있는 외국인 33명 중에서 가해자의 신원을 아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모든 피해의 경우에 가해자의 신원이 확인되었다고 응답한 경우는 13명으로 39.4%를 차지하였다. 일부 피해의 경우에만 신원이 확인되었다고 응답한 경우는 7명으로 21.2%였고, 모든 피해에서 가해자의 신원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경우가 13명으로 39.4%를 차지하였다.(표 5-18, 그림 5-11 참조)

표 5-18 가해자 신원 확인 여부

	빈도(명)	%
모든 피해의 경우에 신원이 노출됨	13	39.4
일부 피해의 경우 노출되고, 일부의 경우 노출되지 않음	7	21.2
모든 피해의 경우에 신원이 노출되지 않음	13	39.4
계	3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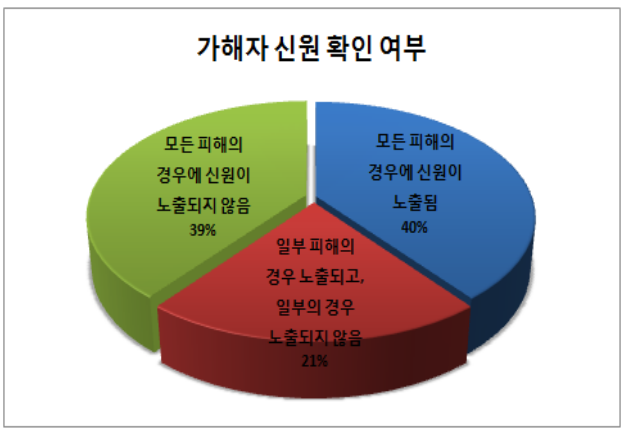

그림 5-11 가해자 신원확인여부

2. 가해자와의 관계

가해자의 신원이 모든 경우 또는 일부의 경우에 확인된 20명의 경우에 가해자와 본인의 관계를 중복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잘 알고 있거나(8명, 40.0%), 안면이 있는 사람(5명, 25.0%)이 65.0%를 차지하여, 과반수 이상의 경우에 가해자가 평소 알고 있던 사람인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5-19, 그림 5-12 참조)

표 5-19 가해자와의 관계(중복응답)

	빈도(명)	%
잘 알고 있는 사람	8	40.0
안면이 있는 사람	5	25.0
전혀 모르는 사람	7	35.0
계	2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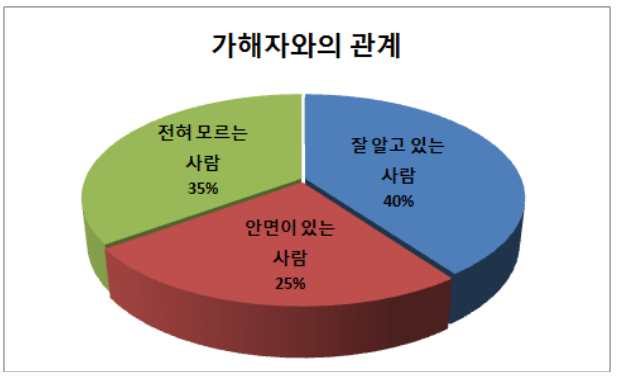

그림 5-12 가해자와의 관계

3. 가해자의 국적

가해자의 신원이 확인된 20명의 외국인에 대해서 가해자의 국적을 조사한 결과, 가해자가 한국인이었다는 응답이 14명으로 70%를 차지하였고,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에게 피해를 당했다는 응답이 9명으로 45.0%를 차지하였다.(표 5-20, 그림 5-13 참조)

표 5-20 가해자의 국적(중복응답)

	빈도(명)	%
한국인	14	61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	9	39
계	23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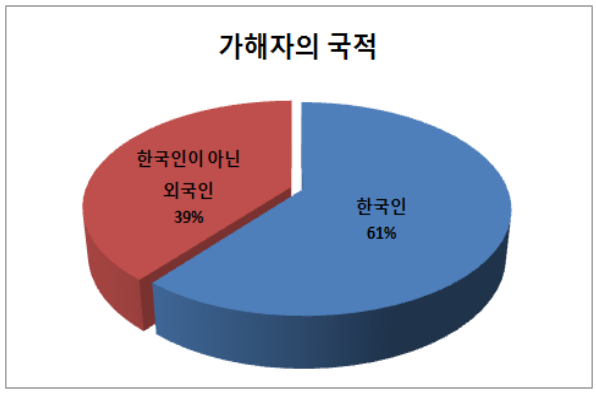

그림 5-13 가해자의 국적

4. 가해자의 성별

가해자의 신원이 확인된 경우, 성별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17명(85.0%)이 남자였다고 응답하였고, 4명(20.0%)이 여자였다고 응답해서, 가해자가 남자였던 경우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표 5-21, 그림 5-14 참조)

표 5-21 가해자의 성별(중복응답)

	빈도(명)	%
남자	17	85
여자	4	15
계	20	100

무응답: 64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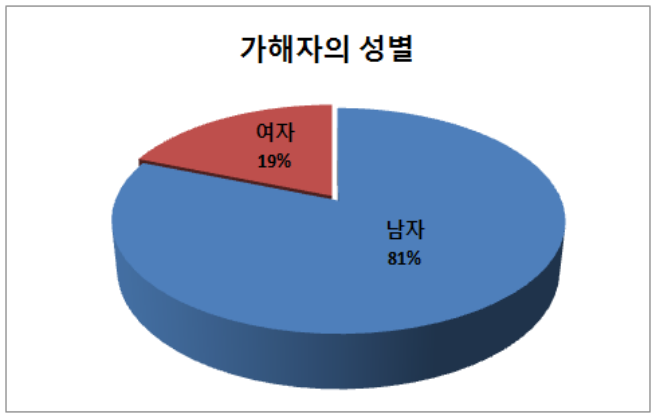

그림 5-14 가해자의 성별

5. 가해자의 연령대

가해자의 신원이 확인된 20명의 외국인의 경우에서, 10대는 한 명도 없었고, 20-30대가 8명으로 40.0%, 40-50대가 10명으로 50.0%, 60대 이상인 경우가 2명으로 10.0%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대부분의 범죄가 20-50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표 5-22, 그림 5-15 참조)

표 5-22 가해자의 연령대(중복응답)

	빈도(명)	%
10대	0	0.0
20-30대	8	40.0
40-50대	10	50.0
60대 이상	2	10.0
계	2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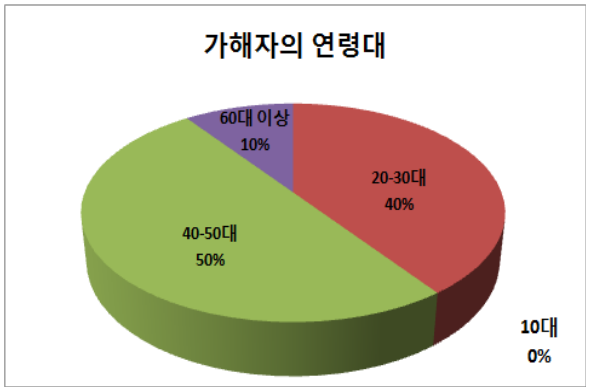

그림 5-15 가해자의 연령대

6. 가해인원

가해자의 신원이 확인된 20명의 경우에, 가해자들의 구성 인원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1명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8명으로 40.0%, 2-3명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11명으로 55.0%를 차지하였다. 4명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1명, 5명이라고 응답한 경우도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5-23, 그림 5-16 참조)

표 5-23 가해자의 인원(중복응답)

	빈도(명)	%
1명	8	38
2-3명	11	52.4
4명	1	4.8
5명 이상	1	4.8
계	21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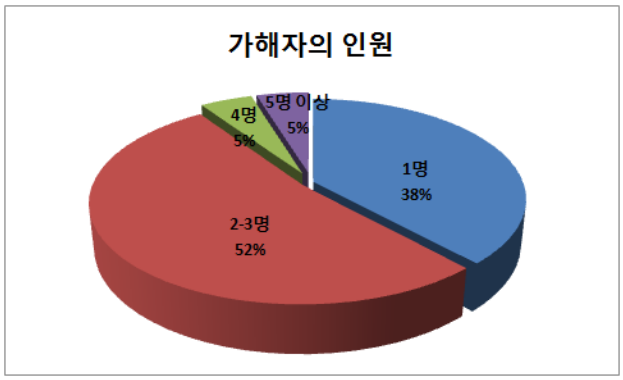

그림 5-16 가해자의 인원

제4절 신체적·경제적 피해와 도움요청

1. 신체적 피해

범죄를 경험한 33명의 외국인들이 입은 신체적 피해의 내용을 조사한 결과, 23명(69.7%)이 아무런 신체적 피해가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신체적 피해를 보고한 6명(18.2%)은 성희롱, 5명(15.2)은 멍, 타박상, 긁힌 상처를, 3명(9.1%)은 강간 시도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도 뼈나 이가 부러지거나 기절을 한 경우도 있었다.(표 5-24, 그림 5-17 참조)

표 5-24 신체적 피해(중복응답)

	빈도(명)	%
신체적 피해 없었음	23	59
강간	0	0.0
강간 시도	3	7.7
성희롱	6	15.4
칼에 의한 손상(가위나 송곳 같은 날카로운 물건)	0	0.0
화기에 의한 손상 (가짜 총)	0	0.0
뼈나 이가 부러짐 (신체 골절)	1	2.6

	빈도(명)	%
장기 손상	0	0.0
기절 (의식불명)	1	2.6
멍, 타박상, 긁힌 상처	5	12.7
화상	0	0.0
기타	0	0.0
계	39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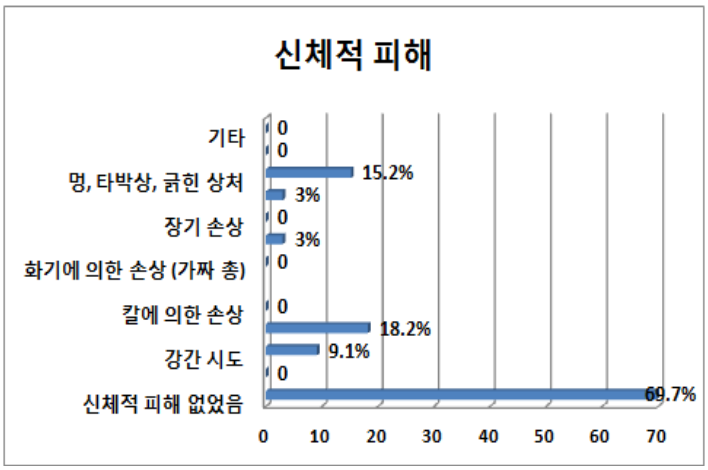

그림 5-17 신체적 피해

2. 경제적 피해

범죄 피해자, 그리고 가족 또는 동거인이 그동안 입은 경제적 피해를 조사하였다. 여러 번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합산한 금액을 답하도록 하였고, 병원비의 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병원치료비, 진단서 비용, 침뜸의 시술비, 치아치료비, 물리치료비, 정신과 치료비 등이었다. 그 결과 피해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11명으로 33.3%를 차지하였고, 300만원 이상으로 응답한 경우도 2명이 있었다. 13명의 무응답자들을 제외한 20명의 경제적 피해의 평균은 42만원으로 나타났다. (표 5-25 참조)

표 5-25 경제적 피해

	빈도(명)	%
0원	11	33.3
5만원	1	3.0
20만원	3	9.1
25만원	1	3.0
50만원	1	3.0
100만원	1	3.0
300만원	2	6.1
무응답	13	39.4
계	33	100.0

3. 경찰신고 여부

범죄피해 경험자들에게 경찰에 신고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항상 신고를 한 경우는 2명으로 6.1%에 불과하였고, 신고를 한 적도 있고, 안 한 적도 있는 경우는 5명으로 15.2%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인 26명(78.8%)이 한번도 신고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26, 그림 5-18 참조)

표 5-26 경찰신고 여부

	빈도(명)	%
신고한 적이 없다	26	78.8
신고한 적도 있고, 안 한 적도 있다	5	15.2
항상 신고했다	2	6.1
계	3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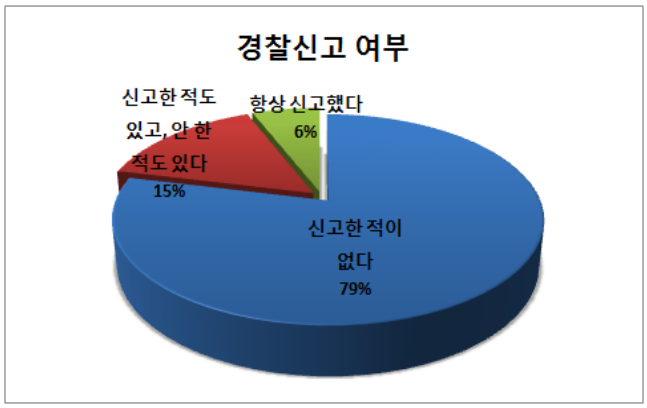

그림 5-18 경찰신고 여부

4. 경찰 대응에 대한 만족도

경찰에 신고를 한 적이 있는 7명 중 매우 만족했다는 응답을 한 경우는 1명(14.3%)에 불과했고, 약간 만족했다는 응답(4명, 57.1%)이 과반수 이상이었고, 전혀 만족하지 못했다는 응답(2명, 28.6%)과 매우 만족했다는 응답(1명, 14.3%)이 다음을 차지하였다.(표 5-27, 그림 5-19 참조)

표 5-27 경찰 대응에 대한 만족도

	빈도(명)	%
전혀 만족하지 못했다	2	28.6
약간 만족했다	4	57.1
매우 만족했다	1	14.3
계	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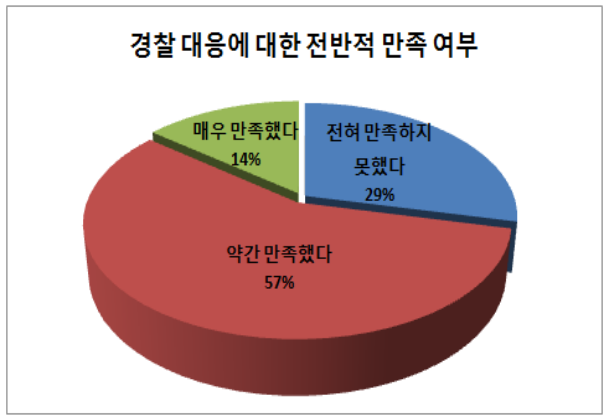

그림 5-19 경찰 대응에 대한 전반적 만족 여부

5.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

범죄피해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한 적이 없는 26명의 외국인들에게 그 이유를 중복응답으로 확인한 결과, 증거가 없어서라고 응답한 경우가 10명(38.5%), 문제를 개인적으로 해결해서라고 응답한 경우가 5명(19.2%), 발생한 피해가 심각하지 않아서라고 응답한 경우가 4명(15.4)이었다. 그 외에도 가해자가 아는 사람이어서, 복수가 두려워서, 경찰이 아무런 해결방법을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라는 응답을 한 경우도 있었다.(표 5-28 참조)

표 5-28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중복응답)

	빈도(명)	%
발생한 피해가 심각하지 않아서	4	15.4
문제를 개인적으로 해결해서	5	19.2
증거가 없어서	10	38.5
경찰이 아무런 해결방법을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2	7.7
경찰이 나를 괴롭힐 것 같아서	0	0.0
가해자가 아는 사람이어서	3	11.5
복수가 두려워서	2	7.7
기타	0	0.0
계	26	100.0

6. 경찰 이외의 대상에 대한 도움요청 여부 및 요청대상

범죄피해 경험이 있는 33명에게 경찰 이외의 대상에 대한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는지 확인한 결과 21명(63.6%)이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9 참조)

표 5-29 경찰 이외의 대상에 대한 도움요청 여부

	빈도(명)	%
요청한 적이 있다	21	63.6
요청을 한 적이 없다	12	36.4
계	33	100.0

경찰 이외의 대상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는 21명의 경우에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했는지 확인한 결과, 외국인 지원기관(6명, 28.6%), 고국의 친구나 지역단체나 학교 직원(각각 5명, 23.8%), 고국의 대사관(4명, 19.0%) 등의 공식적인 기관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한국인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한 비율과 고국의 대사관도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19%). 반면 이웃(1명, 4.8%), 직장 상사나 동료(1명, 4.8%) 등에 대한 도움 요청은 그 비율이 높지 않았다.(표 5-30 참조)

표 5-30 경찰 이외 도움요청 대상 (중복응답)

	빈도(명)	%
이웃	1	3.7
외국인 지원 기관	6	22.2
종교단체	1	3.7
고국의 친구나 지역단체	5	18.4
직장 상사나 동료	1	3.7
고국의 대사관	4	14.9
학교 직원 (교수, 교내 상담센터 등)	5	18.5
한국인 친구	4	14.9
기타	0	0.0
계	27	100

7. 경찰 이외의 대상으로부터 받은 도움의 종류

경찰 이외의 대상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21명의 경우에 그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한 결과, 심리상담이 10명(47.6%), 정보제공이 7명(33.3%)을 차지하였고,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경우가 4명이었다(19.0%).(표 5-31 참조)

표 5-31 경찰 이외의 대상으로부터 받은 도움의 종류

	빈도(명)	%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다	4	19.0
심리상담	10	47.6
물리적 도움	0	0.0
정보 제공	7	33.3
기타	0	0.0
계	21	100.0

제5절 증오범죄에 대한 두려움

1. 증오범죄에 대한 두려움

조사대상자 전체를 대상으로 국적·인종·종교 등을 이유로 한국에서 본인에 대해 발생할 수도 있는 증오범죄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는지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문항에 관계없이 절반 정도의 응답자들이 '전혀 두렵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 '조금 두렵다'는 응답이 많았고, '매우 두렵다'는 응답이 가장 적었다. '매우 두렵다'는 응답의 비율이 비교적 높은 경우는 성폭행이나 방화와 같이 비교적 피해가 큰 범죄였다.(표 5-32 참조)

표 5-32 증오범죄에 대한 본인의 두려움

단위: 명(%)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	전체
폭행(흉기로 찌르기, 총쏘기, 때리기, 물건 집어던지기, 밀치기, 목조르기)에 대한 두려움	298 (44.8)	250 (37.6)	117 (17.6)	665 (100.0)
강도에 대한 두려움	332 (49.9)	233 (35.0)	100 (15.0)	665 (100.0)
성폭행에 대한 두려움	354 (53.2)	183 (27.5)	128 (19.2)	665 (100.0)
소유물 파손에 대한 두려움	343 (51.6)	218 (32.8)	104 (15.6)	665 (100.0)
종교, 국가의 상징(국기 등), 건물(교회 등) 등의 파손에 대한 두려움	351 (52.8)	204 (30.7)	110 (16.5)	665 (100.0)
물건이나 돈의 절취에 대한 두려움	339 (51.0)	222 (33.4)	104 (15.6)	665 (100.0)
집이나 교회 등 방화에 대한 두려움	358 (53.8)	179 (26.9)	128 (19.2)	665 (100.0)

2. 성별 및 연령대에 따른 증오범죄에 대한 두려움

폭행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서는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χ^2=4.919, p=n.s.). 성별에 관계없이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비슷하였다.(표 5-33 참조)

표 5-33 성별에 따른 폭행에 대한 두려움

		폭행 (흉기로 찌르기, 총쏘기, 때리기, 물건 집어던지기, 밀치기, 목조르기)에 대한 두려움			계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	
성별	남성	179(48.5)	132(35.8)	58(15.7)	369(100.0)
	여성	119(40.2)	118(39.9)	59(19.9)	296(100.0)
계		298(44.8)	250(37.6)	117(17.6)	665(100.0)

χ^2=4.919, p=n.s.

강도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서는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χ^2=7.203, p <.05). 남성의 13.0%가 '매우 두렵다'고 응답한 반면, 여성의 17.6%가 '매우 두렵다'고 응답하여, 남성에 비해서 여성의 경우에 '매우 두렵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5-34 참조)

표 5-34 성별에 따른 강도에 대한 두려움

		강도에 대한 두려움			계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	
성별	남성	201(54.5)	120(32.5)	48(13.0)	369(100.0)
	여성	131(44.3)	113(38.2)	52(17.6)	296(100.0)
계		332(49.9)	233(35.0)	100(15.0)	665(100.0)

χ^2=7.203, p <.05

성폭행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서는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χ^2=18.740, p <.001). 남성의 15.7%가 '매우 두렵다', 23.6%가 '조금 두렵다'고 응답한 반면, 여성의 17.6%가 '매우 두렵다', 32.4%가 '조금 두렵다'고 응답하여, 남성에 비해서 여성의 경우에 성폭행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표 5-35 참조)

표 5-35 성별에 따른 성폭행에 대한 두려움

		성폭행에 대한 두려움			계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	
성별	남성	224(60.7)	87(23.6)	58(15.7)	369(100.0)
	여성	130(43.9)	96(32.4)	70(23.6)	296(100.0)
계		354(53.2)	183(27.5)	128(19.2)	665(100.0)

χ^2=18.740, p <.001

소유물 파손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서는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χ^2=.615, p=n.s.). 성별에 관계없이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비슷하였다.(표 5-36 참조)

표 5-36 성별에 따른 소유물 파손에 대한 두려움

		소유물 파손에 대한 두려움			계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	
성별	남성	195(52.8)	119(32.2)	55(14.9)	369(100.0)
	여성	148(50.0)	99(33.4)	49(16.6)	296(100.0)
계		343(51.6)	218(32.8)	104(15.6)	665(100.0)

χ^2=.615, p=n.s.

종교, 국가의 상징, 건물 등의 파손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서는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χ^2=4.709, p=n.s.). 성별에 관계없이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비슷하였다.(표 5-37 참조)

표 5-37 성별에 따른 종교, 국가의 상징, 건물 등의 파손에 대한 두려움

		종교, 국가의 상징(국기 등), 건물(교회 등) 등의 파손에 대한 두려움			계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	
성별	남성	201(54.5)	101(27.4)	67(18.2)	369(100.0)
	여성	150(50.7)	103(34.8)	43(14.5)	296(100.0)
계		351(52.8)	204(30.7)	110(16.5)	665(100.0)

χ^2=4.709, p=n.s.

물건이나 돈의 절취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서는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χ^2=.382, p=n.s.). 성별에 관계없이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비슷하였다.(표 5-38 참조)

표 5-38 성별에 따른 물건이나 돈의 절취에 대한 두려움

		물건이나 돈의 절취에 대한 두려움			계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	
성별	남성	192(52.0)	121(32.8)	56(15.2)	369(100.0)
	여성	147(49.7)	101(34.1)	48(16.2)	296(100.0)
계		339(51.0)	222(33.4)	104(15.6)	665(100.0)

χ^2=.382, p=n.s.

집이나 교회 등 방화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서는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χ^2=.892 p=n.s.). 성별에 관계없이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비슷하였다.(표 5-39 참조)

표 5-39 성별에 따른 집이나 교회 등 방화에 대한 두려움

		집이나 교회 등 방화에 대한 두려움			계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	
성별	남성	202(54.7)	94(25.5)	73(19.8)	369(100.0)
	여성	156(52.7)	85(28.7)	55(18.6)	296(100.0)
계		358(53.8)	179(26.9)	128(19.2)	665(100.0)

χ^2=.892 p=n.s.

폭행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서는 연령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χ^2=3.282, p=n.s.). 연령대에 관계없이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비슷하였다.(표 5-40 참조)

표 5-40 연령대에 따른 폭행에 대한 두려움

		폭행 (흉기로 찌르기, 총쏘기, 때리기, 물건 집어던지기, 밀치기, 목조르기)에 대한 두려움			계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	
연령대	10대	32(39.5)	35(43.2)	14(17.3)	81(100.0)
	20대	180(47.5)	135(35.6)	64(16.9)	379(100.0)
	30대	73(42.0)	67(38.5)	34(19.5)	174(100.0)
	40대 이상	13(41.9)	13(41.9)	5(16.1)	31(100.0)
계		298(44.8)	250(37.6)	117(17.6)	665(100.0)

χ^2=3.282, p=n.s.

강도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서는 연령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χ^2=9.454, p=n.s.). 연령대에 관계없이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비슷하였다.(표 5-41 참조)

표 5-41 연령대에 따른 강도에 대한 두려움

		강도에 대한 두려움			계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	
연령대	10대	37(45.7)	37(45.7)	7(8.6)	81(100.0)
	20대	195(51.5)	131(34.6)	53(14.0)	379(100.0)
	30대	85(48.9)	54(31.0)	35(20.1)	174(100.0)
	40대 이상	15(48.4)	11(35.5)	5(16.1)	31(100.0)
계		332(49.9)	233(35.0)	100(15.0)	665(100.0)

χ^2=9.454, p=n.s.

성폭행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서는 연령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χ^2=9.101 p=n.s.). 연령대에 관계없이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비슷하였다.(표 5-42 참조)

표 5-42 연령대에 따른 성폭행에 대한 두려움

		성폭행에 대한 두려움			계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	
연령대	10대	40(49.4)	32(39.5)	9(11.1)	81(100.0)
	20대	207(54.6)	96(25.3)	76(20.1)	379(100.0)
	30대	92(52.9)	45(25.9)	37(21.3)	174(100.0)
	40대 이상	15(48.4)	10(32.3)	6(19.4)	31(100.0)
계		354(53.2)	183(27.5)	128(19.2)	665(100.0)

χ^2=9.101 p=n.s.

소유물 파손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서는 연령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χ^2=4.771 p=n.s.). 연령대에 관계없이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비슷하였다.(표 5-43 참조)

표 5-43 연령대에 따른 소유물 파손에 대한 두려움

		나의 소유물 파손에 대한 두려움			계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	
연령대	10대	45(55.6)	28(34.6)	8(9.9)	81(100.0)
	20대	199(52.5)	122(32.2)	58(15.3)	379(100.0)
	30대	82(47.1)	58(33.3)	34(19.5)	174(100.0)
	40대 이상	17(54.8)	10(32.3)	4(12.9)	31(100.0)
계		343(51.6)	218(32.8)	104(15.6)	665(100.0)

χ^2=4.771 p=n.s.

종교나 국가의 상징, 건물 등의 파손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서는 연령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χ^2=4.533, p=n.s.). 연령대에 관계없이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비슷하였다.(표 5-44 참조)

표 5-44 연령대에 따른 종교나 국가의 상징, 건물 등의 파손에 대한 두려움

		종교, 국가의 상징(국기 등), 건물(교회 등) 등의 파손에 대한 두려움			계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	
연령대	10대	46(56.8)	25(30.9)	10(12.3)	81(100.0)
	20대	202(53.3)	116(30.6)	61(16.1)	379(100.0)
	30대	86(49.4)	52(29.9)	36(20.7)	174(100.0)
	40대 이상	17(54.8)	11(35.5)	3(9.7)	31(100.0)
계		351(52.8)	204(30.7)	110(16.5)	665(100.0)

χ^2=4.533, p=n.s.

물건이나 돈의 절취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서는 연령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χ^2=1.059, p=n.s.). 연령대에 관계없이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비슷하였다.(표 5-45 참조)

표 5-45 연령대에 따른 물건이나 돈의 절취에 대한 두려움

		물건이나 돈의 절취에 대한 두려움			계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	
연령대	10대	42(51.9)	29(35.8)	10(12.3)	81(100.0)
	20대	194(51.2)	123(32.5)	62(16.4)	379(100.0)
	30대	87(50.0)	60(34.5)	27(15.5)	174(100.0)
	40대 이상	15(51.7)	10(34.5)	4(13.8)	29(100.0)
계		339(51.0)	222(33.4)	104(15.6)	665(100.0)

χ^2=1.059, p=n.s.

집이나 교회 등의 방화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서는 연령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χ^2=1.626, p=n.s.). 연령대에 관계없이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비슷하였다.(표 5-46 참조)

표 5-46 연령대에 따른 집이나 교회 등의 방화에 대한 두려움

		집이나 교회 등 방화에 대한 두려움			계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	
연령대	10대	46(56.8)	20(24.7)	15(18.5)	81(100.0)
	20대	208(54.9)	102(26.9)	69(18.2)	379(100.0)
	30대	88(50.6)	49(28.2)	37(21.3)	174(100.0)
	40대 이상	16(51.6)	8(25.8)	7(22.6)	31(100.0)
계		358(53.8)	179(26.9)	128(19.2)	665(100.0)

χ^2=1.626, p=n.s.

3. 출신국에 따른 증오범죄에 대한 두려움

폭행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서는 출신국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χ^2=10.714, p 〈.05). 중국인의 20.0%가 '매우 두렵다', 33.2%가 '조금 두렵다'고 응답한 반면, 인도네시아인의 19.3%가 '매우 두렵다', 42.9%가 '조금 두렵다'고 응답하였고, 우즈베키스탄인의 13.2%가 '매우 두렵다', 36.3%가 '조금 두렵다'고 응답하여, 폭행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서 출신국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47 참조)

표 5-47 출신국에 따른 폭행에 대한 두려움

		폭행(흉기로 찌르기, 총쏘기, 때리기, 물건 집어던지기, 밀치기, 목조르기)에 대한 두려움			계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	
출신국	중국	103(46.8)	73(33.2)	44(20.0)	220(100.0)
	인도네시아	88(37.8)	100(42.9)	45(19.3)	233(100.0)
	우즈베키스탄	107(50.5)	77(36.3)	28(13.2)	212(100.0)
계		298(44.8)	250(37.6)	117(17.6)	665(100.0)

χ^2=10.714, p 〈.05

강도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서는 출신국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χ^2=2.485, p=n.s.). 출신국에 관계없이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비슷하였다.(표 5-48 참조)

표 5-48 출신국에 따른 강도에 대한 두려움

		강도에 대한 두려움			계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	
출신국	중국	110(50.0)	80(36.4)	30(13.6)	220(100.0)
	인도네시아	109(46.8)	85(36.5)	39(16.7)	233(100.0)
	우즈베키스탄	113(53.3)	68(32.1)	31(14.6)	212(100.0)
계		332(49.9)	233(35.0)	100(15.0)	665(100.0)

χ^2=2.485, p=n.s.

성폭행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서는 출신국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χ^2=1.876, p=n.s.). 출신국에 관계없이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비슷하였다.(표 5-49 참조)

표 5-49 출신국에 따른 성폭행에 대한 두려움

		성폭행에 대한 두려움			계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	
출신국	중국	123(55.9)	60(27.3)	37(16.8)	220(100.0)
	인도네시아	118(50.6)	65(27.9)	50(21.5)	233(100.0)
	우즈베키스탄	113(53.3)	58(27.4)	41(19.3)	212(100.0)
계		354(53.2)	183(27.5)	128(19.2)	665(100.0)

χ^2=1.876, p=n.s.

소유물 파손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서는 출신국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χ^2=4.384, p=n.s.). 출신국에 관계없이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비슷하였다.(표 5-50 참조)

표 5-50 출신국에 따른 소유물 파손에 대한 두려움

		나의 소유물 파손에 대한 두려움			계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	
출신국	중국	110(50.0)	76(34.5)	34(15.5)	220(100.0)
	인도네시아	112(48.1)	83(35.6)	38(16.3)	233(100.0)
	우즈베키스탄	121(57.1)	59(27.8)	32(15.1)	212(100.0)
계		343(51.6)	218(32.8)	104(15.6)	665(100.0)

χ^2=4.384, p=n.s.

종교나 국가의 상징, 건물 등의 파손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서는 출신국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χ^2=3.910, p=n.s.). 출신국에 관계없이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비슷하였다.(표 5-51 참조)

표 5-51 출신국에 따른 종교나 국가의 상징, 건물 등의 파손에 대한 두려움

		종교, 국가의 상징(국기 등), 건물(교회 등) 등의 파손에 대한 두려움			계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	
출신국	중국	108(49.1)	78(35.5)	34(15.5)	220(100.0)
	인도네시아	127(54.5)	64(27.5)	42(18.0)	233(100.0)
	우즈베키스탄	116(54.7)	62(29.2)	34(16.0)	212(100.0)
계		351(52.8)	204(30.7)	110(16.5)	665(100.0)

χ^2=3.910, p=n.s.

물건이나 돈의 절취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서는 출신국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χ^2=4.665, p=n.s.). 출신국에 관계없이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비슷하였다.(표 5-52 참조)

표 5-52 출신국에 따른 물건이나 돈의 절취에 대한 두려움

		물건이나 돈의 절취에 대한 두려움			계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	
출신국	중국	105(47.7)	78(35.5)	37(16.8)	220(100.0)
	인도네시아	113(48.5)	82(35.2)	38(16.3)	233(100.0)
	우즈베키스탄	121(57.1)	62(29.2)	29(13.7)	212(100.0)
계		339(51.0)	222(33.4)	104(15.6)	665(100.0)

χ^2=4.665, p=n.s.

집이나 교회 등의 방화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서는 출신국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χ^2=1.575, p=n.s.). 출신국에 관계없이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비슷하였다.(표 5-53 참조)

표 5-53 출신국에 따른 집이나 교회 등의 방화에 대한 두려움

		집이나 교회 등 방화에 대한 두려움			계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	
출신국	중국	117(53.2)	58(26.4)	45(20.5)	220(100.0)
	인도네시아	122(52.4)	63(27.0)	48(20.6)	233(100.0)
	우즈베키스탄	119(56.1)	58(27.4)	35(16.5)	212(100.0)
계		358(53.8)	179(26.9)	128(19.2)	665(100.0)

χ^2=1.575, p=n.s.

4. 신분에 따른 증오범죄에 대한 두려움

폭행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서는 신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χ^2=5.790, p=n.s.). 노동자/귀화 한국인과 학생 신분에 관계없이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비슷하였다.(표 5-54 참조)

표 5-54 신분에 따른 폭행에 대한 두려움

		폭행 (흉기로 찌르기, 총쏘기, 때리기, 물건 집어던지기, 밀치기, 목조르기)에 대한 두려움			계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	
신분	노동자/귀화한국인	133(40.7)	127(38.8)	67(20.5)	327(100.0)
	학생	165(48.8)	123(36.4)	50(14.8)	338(100.0)
계		298(44.8)	250(37.6)	117(17.6)	665(100.0)

χ^2=5.790, p=n.s.

강도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서는 신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χ^2=16.788, p 〈.001). 노동자나 귀화외국인의 경우 20.8%가 '매우 두렵다'고 응답한 반면, 유학생의 경우 9.5%가 '매우 두렵다'고 응답하여, 노동자나 귀화외국인이 강도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표 5-55 참조)

표 5-55 신분에 따른 강도에 대한 두려움

		강도에 대한 두려움			계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	
신분	노동자/귀화한국인	154(47.1)	105(32.1)	68(20.8)	327(100.0)
	학생	178(52.7)	128(37.9)	32(9.5)	338(100.0)
계		332(49.9)	233(35.0)	100(15.0)	665(100.0)

χ^2=16.788, p 〈.001

성폭행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서는 신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χ^2=10.030, p 〈.05). 노동자나 귀화외국인의 경우 23.9%가 '매우 두렵다'고 응답한 반면, 유학생의 경우 14.8%가 '매우 두렵다'고 응답하여, 노동자나 귀화외국인이 성폭행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표 5-56 참조)

표 5-56 신분에 따른 성폭행에 대한 두려움

		성폭행에 대한 두려움			계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	
신분	노동자/귀화한국인	158(48.3)	91(27.8)	78(23.9)	327(100.0)
	학생	196(58.0)	92(27.2)	50(14.8)	338(100.0)
계		354(53.2)	183(27.5)	128(19.2)	665(100.0)

χ^2=10.030, p 〈.05

소유물 파손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서는 신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χ^2=19.264, p 〈.001). 노동자나 귀화외국인의 경우 21.7%가 '매우 두렵다'고 응답한 반면, 유학생의 경우 9.8%만이 '매우 두렵다'고 응답하여, 노동자나 귀화외국인이 소유물 파손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표 5-57 참조)

표 5-57 신분에 따른 소유물 파손에 대한 두려움

		나의 소유물 파손에 대한 두려움			계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	
신분	노동자/귀화한국인	150(45.9)	106(32.4)	71(21.7)	327(100.0)
	학생	193(57.1)	112(33.1)	33(9.8)	338(100.0)
계		343(51.6)	218(32.8)	104(15.6)	665(100.0)

χ^2=19.264, p 〈.001

종교나 국가의 상징, 건물 등의 파손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서는 신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χ^2=19.648, p 〈.001). 노동자나 귀화외국인의 경우 22.9%가 '매우 두렵다'고 응답한 반면, 유학생의 경우 10.4%만이 '매우 두렵다'고 응답하여, 노동자나 귀화외국인이 종교나 국가의 상징, 건물 등의 파손에 대한 두려움이 유학생들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표 5-58참조)

표 5-58 신분에 따른 종교나 국가의 상징, 건물 등의 파손에 대한 두려움

		종교, 국가의 상징(국기 등), 건물(교회 등) 등의 파손에 대한 두려움			계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	
신분	노동자/귀화한국인	155(47.4)	97(29.7)	75(22.9)	327(100.0)
	학생	196(58.0)	107(31.7)	35(10.4)	338(100.0)
계		351(52.8)	204(30.7)	110(16.5)	665(100.0)

χ^2=19.648, p <.001

물건이나 돈의 절취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서는 신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χ^2=10.073, p <.05). 노동자나 귀화외국인의 경우 20.2%가 '매우 두렵다'고 응답한 반면, 유학생의 경우 11.2%만이 '매우 두렵다'고 응답하여, 노동자나 귀화외국인이 물건이나 돈의 절취에 대한 두려움이 유학생들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표 5-59 참조)

표 5-59 신분에 따른 물건이나 돈의 절취에 대한 두려움

		물건이나 돈의 절취에 대한 두려움			계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	
신분	노동자/귀화한국인	158(48.3)	103(31.5)	66(20.2)	327(100.0)
	학생	181(53.6)	119(35.2)	38(11.2)	338(100.0)
계		339(51.0)	222(33.4)	104(15.6)	665(100.0)

χ^2=10.073, p <.05

집이나 교회 등의 방화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서는 신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χ^2=18.005, p <.05). 노동자나 귀화외국인의 경우 25.7%가 '매우 두렵다'고 응답한 반면, 유학생의 경우 13.0%만이 '매우 두렵다'고 응답하여, 노동자나 귀화외국인이 물건이나 돈의 절취에 대한 두려움이 유학생들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표 5-60 참조)

표 5-60 신분에 따른 집이나 교회 등의 방화에 대한 두려움

		집이나 교회 등 방화에 대한 두려움			계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	
신분	노동자/귀화한국인	157(48.0)	86(26.3)	84(25.7)	327(100.0)
	학생	201(59.5)	93(27.5)	44(13.0)	338(100.0)
계		358(53.8)	179(26.9)	128(19.2)	665(100.0)

χ^2=18.005, p <.05

5. 거주지에 따른 증오범죄에 대한 두려움

폭행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서는 거주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χ^2=10.607, p <.05). 인천·경기도 지역 거주 외국인의 경우 각각 23.0%가 '매우 두렵다'고 응답한 반면, 서울이나 기타 지역 거주 외국인의 경우 각각 15.4%와 13.2%만이 '매우 두렵다'고 응답하여, 거주지에 따라서 폭행에 대한 두려움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61 참조)

표 5-61 거주지에 따른 폭행에 대한 두려움

		폭행(흉기로 찌르기, 총쏘기, 때리기, 물건 집어던지기, 밀치기, 목조르기)에 대한 두려움			계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	
거주지	서울	141(49.3)	101(35.3)	44(15.4)	286(100.0)
	인천·경기	90(38.3)	91(38.7)	54(23.0)	235(1000)
	기타	67(46.5)	58(40.3)	19(13.2)	144(100.0)
계		298(44.8)	250(37.6)	117(17.6)	665(100.0)

χ^2=10.607, p <.05

강도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서는 거주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χ^2=9.008, p=n.s.). 거주지에 관계없이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비슷하였다.(표 5-62 참조)

표 5-62 거주지에 따른 강도에 대한 두려움

		강도에 대한 두려움			계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	
거주지	서울	151(52.8)	97(33.9)	38(13.3)	286(100.0)
	인천·경기	104(44.3)	84(35.7)	47(20.0)	235(100.0)
	기타	77(53.5)	52(36.1)	15(10.4)	144(100.0)
계		332(49.9)	233(35.0)	100(15.0)	665(100.0)

χ^2=9.008, p=n.s.

성폭행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서는 거주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χ^2=7.772, p=n.s.). 거주지에 관계없이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비슷하였다.(표 5-63 참조)

표 5-63 거주지에 따른 성폭행에 대한 두려움

		성폭행에 대한 두려움			계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	
거주지	서울	167(58.4)	73(25.5)	46(16.1)	286(100.0)
	인천·경기	113(48.1)	66(28.1)	56(23.8)	235(100.0)
	기타	74(51.4)	44(30.6)	26(18.1)	144(100.0)
계		354(53.2)	183(27.5)	128(19.2)	665(100.0)

χ^2=7.772, p=n.s.

소유물 파손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서는 거주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χ^2=17.703, p <.005). 인천·경기도 지역 거주 외국인의 경우 21.3%가 '매우 두렵다'고 응답한 반면, 서울이나 기타 지역 거주 외국인의 경우 각각 12.6%와 12.5%만이 '매우 두렵다'고 응답하였고, 기타지역의 경우 '조금 두렵다'고 응답한 외국인의 비율이 25.0%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따라서 거주지에 따라서 소유물 파손에 대한 두려움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64 참조)

표 5-64 거주지에 따른 소유물 파손에 대한 두려움

		나의 소유물 파손에 대한 두려움			계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	
거주지	서울	152(53.1)	98(34.3)	36(12.6)	286(100.0)
	인천·경기	101(43.0)	84(35.7)	50(21.3)	235(100.0)
	기타	90(62.5)	36(25.0)	18(12.5)	144(100.0)
계		343(51.6)	218(32.8)	104(15.6)	665(100.0)

χ^2=17.703, p <.005

종교나 국가의 상징, 건물 등의 파손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서는 거주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χ^2=29.839, p<.001). 인천·경기도 지역 거주 외국인의 경우 25.1%가 '매우 두렵다'고 응답한 반면, 서울이나 기타 지역 거주 외국인의 경우 각각 12.2%와 11.1%만이 '매우 두렵다'고 응답하였고, 기타지역의 경우 '조금 두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22.2%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따라서 거주지에 따라서 종교나 국가의 상징, 건물 등의 파손에 대한 두려움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65 참조)

표 5-65 거주지에 따른 종교나 국가의 상징, 건물 등의 파손에 대한 두려움

		종교, 국가의 상징(국기 등), 건물(교회 등) 등의 파손에 대한 두려움			계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	
거주지	서울	152(3.1)	99(34.6)	35(12.2)	286(100.0)
	인천·경기	103(43.8)	73(31.1)	59(25.1)	235(100.0)
	기타	96(66.7)	32(22.2)	16(11.1)	144(100.0)
계		351(52.8)	204(30.7)	110(16.5)	665(100.0)

χ^2=29.839, p<.001

물건이나 돈의 절취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서는 거주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χ^2=17.405, p 〈.005). 인천·경기도 지역 거주 외국인의 경우 21.7%가 '매우 두렵다'고 응답한 반면, 서울이나 기타 지역 거주 외국인의 경우 각각 12.2%와 11.1%만이 '매우 두렵다'고 응답하였고, 기타 지역의 경우 '조금 두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25.7%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따라서 거주지에 따라서 물건이나 돈의 절취에 대한 두려움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66 참조)

표 5-66 거주지에 따른 물건이나 돈의 절취에 대한 두려움

		물건이나 돈의 절취에 대한 두려움			계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	
거주지	서울	145(50.7)	106(37.1)	35(12.2)	286(100.0)
	인천·경기	105(44.7)	79(33.6)	51(21.7)	235(100.0)
	기타	89(61.8)	37(25.7)	18(12.5)	144(100.0)
계		339(51.0)	222(33.4)	104(15.6)	665(100.0)

χ^2=17.405, p 〈.005

집이나 교회 등의 방화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서는 거주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χ^2=16.595, p 〈.005). 인천·경기도 지역 거주 외국인의 경우 25.5%가 '매우 두렵다'고 응답한 반면, 서울이나 기타 지역 거주 외국인의 경우 각각 16.4%와 14.6%만이 '매우 두렵다'고 응답하였고, 기타지역의 경우 '조금 두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21.5%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따라서 거주지에 따라서 방화에 대한 두려움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67 참조)

표 5-67 거주지에 따른 집이나 교회 등의 방화에 대한 두려움

		집이나 교회 등 방화에 대한 두려움			계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	
거주지	서울	161(56.3)	78(27.3)	47(16.4)	286(100.0)
	인천·경기	105(44.7)	70(29.8)	60(25.5)	235(100.0)
	기타	92(63.9)	31(21.5)	21(14.6)	144(100.0)
계		358(53.8)	179(26.9)	128(19.2)	665(100.0)

χ^2=16.595, p <.005

6. 동거인 유무에 따른 증오범죄에 대한 두려움

폭행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서는 동거인 유무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χ^2=5.349, p=n.s.). 동거인 유무에 관계없이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비슷하였다.(표 5-68 참조)

표 5-68 동거인 유무에 따른 폭행에 대한 두려움

		폭행(흉기로 찌르기, 총쏘기, 때리기, 물건 집어던지기, 밀치기, 목조르기)에 대한 두려움			계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	
동거인	있다	141(41.3)	130(38.1)	70(20.5)	341(100.0)
	없다	157(48.5)	120(37.0)	47(14.5)	324(100.0)
계		298(44.8)	250(37.6)	117(17.6)	665(100.0)

χ^2=5.349, p=n.s.

강도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서는 동거인 유무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χ^2=13.368, p <.005). 동거인이 있는 경우 19.9%가 '매우 두렵다'고 응답한 반면, 동거인이 없는 경우 9.9%가 '매우 두렵다'고 응답하여, 가족 등의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 강도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표 5-69 참조)

표 5-69 동거인 유무에 따른 강도에 대한 두려움

		강도에 대한 두려움			계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	
동거인	있다	163(47.8)	110(32.3)	68(19.9)	341(100.0)
	없다	169(52.2)	123(38.0)	32(9.9)	324(100.0)
계		332(49.9)	233(35.0)	100(15.0)	665(100.0)

χ^2=13.368, p <.005

성폭행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서는 동거인 유무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χ^2=3.837, p=n.s.). 동거인 유무에 관계없이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비슷하였다.(표 5-70 참조)

표 5-70 동거인 유무에 따른 성폭행에 대한 두려움

		성폭행에 대한 두려움			계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	
동거인	있다	179(52.5)	87(25.5)	75(22.0)	341(100.0)
	없다	175(54.0)	96(29.6)	53(16.4)	324(100.0)
계		354(53.2)	183(27.5)	128(19.2)	665(100.0)

χ^2=3.837, p=n.s.

소유물 파손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서는 동거인 유무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χ^2=10.544, p <.001). 동거인이 있는 경우 19.9%가 '매우 두렵다'고 응답한 반면, 동거인이 없는 경우 11.1%가 '매우 두렵다'고 응답하여, 가족 등의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 소유물 파손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표 5-71 참조)

표 5-71 동거인 유무에 따른 소유물 파손에 대한 두려움

		나의 소유물 파손에 대한 두려움			계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	
동거인	있다	162(47.5)	111(32.6)	68(19.9)	341(100.0)
	없다	181(55.9)	107(33.0)	36(11.1)	324(100.0)
계		343(51.6)	218(32.8)	104(15.6)	665(100.0)

χ^2=10.544, p <.001

종교나 국가의 상징, 건물 등의 파손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서는 동거인 유무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χ^2=13.782, p <.005). 동거인이 있는 경우 21.1%가 '매우 두렵다'고 응답한 반면, 동거인이 없는 경우 11.7%가 '매우 두렵다'고 응답하여, 가족 등의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 종교나 국가의 상징, 건물 등의 파손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표 5-72 참조)

표 5-72 동거인 유무에 따른 종교나 국가의 상징, 건물 등의 파손에 대한 두려움

		종교, 국가의 상징(국기 등), 건물(교회 등) 등의 파손에 대한 두려움			계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	
동거인	있다	160(46.9)	109(32.0)	72(21.1)	341(100.0)
	없다	191(59.0)	95(29.3)	38(11.7)	324(100.0)
계		351(52.8)	204(30.7)	110(16.5)	665(100.0)

χ^2=13.782, p <.005

물건이나 돈의 절취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서는 동거인 유무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χ^2=4.741, p=n.s.). 동거인 유무에 관계없이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비슷하였다.(표 5-73 참조)

표 5-73 동거인 유무에 따른 물건이나 돈의 절취에 대한 두려움

		물건이나 돈의 절취에 대한 두려움			계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	
동거인	있다	164(48.1)	114(33.4)	63(18.5)	341(100.0)
	없다	175(54.0)	108(33.3)	41(12.7)	324(100.0)
계		339(51.0)	222(33.4)	104(15.6)	665(100.0)

χ^2=4.741, p=n.s.

집이나 교회 등의 방화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서는 동거인 유무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χ^2=10.463, p 〈.05). 동거인이 있는 경우 24.0%가 '매우 두렵다'고 응답한 반면, 동거인이 없는 경우 11.7%가 '매우 두렵다'고 응답하여, 가족 등의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 종교나 국가의 상징, 건물 등의 파손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표 5-74 참조)

표 5-74 동거인 유무에 따른 집이나 교회 등의 방화에 대한 두려움

		집이나 교회 등 방화에 대한 두려움			계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	
동거인	있다	171(50.1)	88(25.8)	82(24.0)	341(100.0)
	없다	187(57.7)	91(28.1)	46(14.2)	324(100.0)
계		358(53.8)	179(26.9)	128(19.2)	665(100.0)

χ^2=10.463, p 〈.05

7. 종교에 따른 증오범죄에 대한 두려움

폭행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서는 종교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χ^2=13.344, p=n.s.). 종교에 관계없이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다.(표 5-75 참조)

표 5-75 종교에 따른 폭행에 대한 두려움

		폭행 (흉기로 찌르기, 총쏘기, 때리기, 물건 집어던지기, 밀치기, 목조르기)에 대한 두려움			계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	
종교	무교	85(44.7)	71(37.4)	34(17.9)	190(100.0)
	불교	15(39.5)	15(39.5)	8(21.1)	38(100.0)
	기독교	44(50.6)	33(37.9)	10(11.5)	87(100.0)
	이슬람교	124(44.1)	106(37.7)	51(18.1)	281(100.0)
	러시아 정교	14(51.9)	10(37.0)	3(11.1)	27(100.0)
	카톨릭	14(37.8)	14(37.8)	9(24.3)	37(100.0)
	힌두교	2(100.0)	0(0.0)	0(0.0)	2(100.0)
	기타	0(0.0)	1(33.3)	2(66.7)	3(100.0)
계		298(44.8)	250(37.6)	117(17.6)	665(100.0)

χ^2=13.344, p=n.s.

강도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서는 종교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χ^2=23.309, p=n.s.). 종교에 관계없이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다.(표 5-76 참조)

표 5-76 종교에 따른 강도에 대한 두려움

		강도에 대한 두려움			계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	
종교	무교	86(45.3)	75(39.5)	29(15.3)	190(100.0)
	불교	21(55.3)	12(31.6)	5(13.2)	38(100.0)
	기독교	52(59.8)	30(34.5)	5(5.7)	87(100.0)
	이슬람교	141(50.2)	87(31.0)	53(18.9)	281(100.0)
	러시아 정교	15(55.6)	10(37.0)	2(7.4)	27(100.0)
	카톨릭	15(40.5)	16(43.2)	6(16.2)	37(100.0)
	힌두교	2(100.0)	0(0.0)	0(0.0)	2(100.0)
	기타	0(0.0)	3(100.0)	0(0.0)	3(100.0)
계		332(49.9)	233(35.0)	100(15.0)	665(100.0)

χ^2=23.309, p=n.s.

성폭행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서는 종교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χ^2=26.738, p 〈.05). 특히 기독교는 10.3%가 '매우 두렵다', 23.7%가 '조금 두렵다'고 응답하여 두려움의 수준이 가장 낮은 반면, 가톨릭의 경우 27.0%가 '매우 두렵다', 37.8%가 '조금 두렵다'고 응답하여 두려움의 수준이 가장 높아서,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따라서 종교에 따른 성폭행에 대한 두려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77 참조)

표 5-77 종교에 따른 성폭행에 대한 두려움

		성폭행에 대한 두려움			계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	
종교	무교	91(47.9)	64(33.7)	35(18.4)	190(100.0)
	불교	21(55.3)	9(23.7)	8(21.1)	38(100.0)
	기독교	58(66.7)	20(23.0)	9(10.3)	87(100.0)
	이슬람교	153(54.4)	65(23.1)	63(22.4)	281(100.0)
	러시아 정교	13(48.1)	11(40.7)	3(11.1)	27(100.0)
	카톨릭	13(35.1)	14(37.8)	10(27.0)	37(100.0)
	힌두교	2(100.0)	0(0.0)	0(0.0)	2(100.0)
	기타	3(100.0)	0(0.0)	0(0.0)	3(100.0)
계		354(53.2)	183(27.5)	128(19.2)	665(100.0)

χ^2=26.738, p 〈.05

소유물 파손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서는 종교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χ^2=22.296, p=n.s.). 종교에 관계없이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다.(표 5-78 참조)

표 5-78 종교에 따른 소유물 파손에 대한 두려움

		나의 소유물 파손에 대한 두려움			계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	
종교	무교	91(47.9)	68(35.8)	31(16.3)	190(100.0)
	불교	21(55.3)	10(26.3)	7(18.4)	38(100.0)
	기독교	57(65.5)	23(26.4)	7(8.0)	87(100.0)
	이슬람교	143(50.9)	90(32.0)	48(17.1)	281(100.0)
	러시아 정교	14(51.9)	11(40.7)	2(7.4)	27(100.0)
	카톨릭	15(40.5)	13(35.1)	9(24.3)	37(100.0)
	힌두교	2(100.0)	0(0.0)	0(0.0)	2(100.0)
	기타	0(0.0)	3(100.0)	0(0.0)	3(100.0)
계		343(51.6)	218(32.8)	104(15.6)	665(100.0)

χ^2=22.296, p=n.s.

종교나 국가의 상징, 건물 등의 파손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서는 종교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χ^2=28.826, p 〈.05). 특히 기독교는 9.2%가 '매우 두렵다', 23.0%가 '조금 두렵다'고 응답하여 두려움의 수준이 낮았다. 그러나 국내에서도 교인들이 많은 카톨릭에서 '매우 두렵다'와 '조금 두렵다'는 응답이 가장 높아 종교적 특성이 범죄의 두려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표 5-79 참조)

표 5-79 종교에 따른 종교나 국가의 상징, 건물 등의 파손에 대한 두려움

		종교, 국가의 상징(국기 등), 건물(교회 등) 등의 파손에 대한 두려움			계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	
종교	무교	87(45.8)	75(39.5)	28(14.7)	190(100.0)
	불교	22(57.9)	10(26.3)	6(15.8)	38(100.0)
	기독교	59(67.8)	20(23.0)	8(9.2)	87(100.0)
	이슬람교	147(52.3)	81(28.8)	53(18.9)	281(100.0)
	러시아 정교	15(55.6)	9(33.3)	3(11.1)	27(100.0)
	카톨릭	19(51.4)	8(21.6)	10(27.0)	37(100.0)
	힌두교	2(100.0)	0(0.0)	0(0.0)	2(100.0)
	기타	0(0.0)	1(33.3)	2(66.7)	3(100.0)
계		351(52.8)	204(30.7)	110(16.5)	665(100.0)

χ^2=28.826, p 〈.05

물건이나 돈의 절취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서는 종교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χ^2=24.990, p 〈.05). 특히 기독교는 9.2%가 '매우 두렵다', 28.7%가 '조금 두렵다'고 응답하였고, 러시아정교의 경우 7.4%가 '매우 두렵다', 29.6%가 '조금 두렵다'고 응답하여 두려움의 수준이 낮았다. 반면 카톨릭의 경우 27.0%가 '매우 두렵다', 37.8%가 '조금 두렵다'고 응답하여 두려움의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종교에 따른 성폭행에 대한 두려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80 참조)

표 5-80 종교에 따른 물건이나 돈의 절취에 대한 두려움

		물건이나 돈의 절취에 대한 두려움			계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	
종교	무교	85(44.7)	74(38.9)	31(16.3)	190(100.0)
	불교	21(55.3)	10(26.3)	7(18.4)	38(100.0)
	기독교	54(62.1)	25(28.7)	8(9.2)	87(100.0)
	이슬람교	147(52.3)	90(32.0)	44(15.7)	281(100.0)
	러시아 정교	17(63.0)	8(29.6)	2(7.4)	27(100.0)
	카톨릭	13(35.1)	14(37.8)	10(27.0)	37(100.0)
	힌두교	2(100.0)	0(0.0)	0(0.0)	2(100.0)
	기타	0(0.0)	1(33.3)	2(66.7)	3(100.0)
계		339(51.0)	222(33.4)	104(15.6)	665(100.0)

χ^2=24.990, p 〈.05

집이나 교회 등의 방화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서는 종교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χ^2=24.728, p 〈.05). 특히 기독교는 11.5%가 '매우 두렵다', 19.5%가 '조금 두렵다'고 응답하여 두려움의 수준이 낮았다. 그러나 한국인 신자의 수도 많은 카톨릭의 32.4%가 '매우 두렵다', 21.6%가 '조금 두렵다'고 응답하여, 집이나 교회 방화의 두려움이 반드시 종교와 관련된 것만은 아님을 알 수 있었다.(표 5-81 참조)

표 5-81 종교에 따른 집이나 교회 등의 방화에 대한 두려움

		집이나 교회 등 방화에 대한 두려움			계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	
종교	무교	95(50.0)	59(31.1)	36(18.9)	190(100.0)
	불교	23(60.5)	6(15.8)	9(23.7)	38(100.0)
	기독교	60(69.0)	17(19.5)	10(11.5)	87(100.0)
	이슬람교	144(51.2)	81(28.8)	56(19.9)	281(100.0)
	러시아 정교	16(59.3)	8(29.6)	3(11.1)	27(100.0)
	카톨릭	17(45.9)	8(21.6)	12(32.4)	37(100.0)
	힌두교	2(100.0)	0(0.0)	0(0.0)	2(100.0)
	기타	1(33.3)	0(0.0)	2(66.7)	3(100.0)
계		358(53.8)	179(26.9)	128(19.2)	665(100.0)

χ^2=24.728, p <.05

8. 국적취득 여부에 따른 증오범죄에 대한 두려움

폭행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서는 국적 취득여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χ^2=10.946, p <.005).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9.1%가 '매우 두렵다', 18.2%가 '조금 두렵다'고 응답한 반면, 국적 미취득자의 경우 18.0%가 '매우 두렵다', 38.6%가 '조금 두렵다'고 응답하여, 국적취득 여부에 따라서 강도에 대한 두려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국적 취득자의 경우 미취득자에 비해서 폭행에 대한 두려움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5-82 참조)

표 5-82 국적취득 여부에 따른 폭행에 대한 두려움

		폭행(흉기로 찌르기, 총쏘기, 때리기, 물건 집어던지기, 밀치기, 목조르기)에 대한 두려움			계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	
국적	취득	24(72.7)	6(18.2)	3(9.1)	33(100.0)
	미취득	274(43.4)	244(38.6)	114(18.0)	632(100.0)
계		298(44.8)	250(37.6)	117(17.6)	665(100.0)

χ^2=10.946, p <.005

강도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서는 국적취득 여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χ^2=3.921, p=n.s.). 국적의 취득여부에 관계없이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다.(표 5-83 참조)

표 5-83 국적취득 여부에 따른 강도에 대한 두려움

		강도에 대한 두려움			계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	
국적	취득	22(66.7)	8(24.2)	3(9.1)	33(100.0)
	미취득	310(49.1)	225(35.6)	97(15.3)	632(100.0)
계		332(49.9)	233(35.0)	100(15.0)	665(100.0)

χ^2=3.921, p=n.s.

성폭행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서도 국적취득 여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χ^2=4.131, p=n.s.). 국적의 취득여부에 관계없이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다.(표 5-84 참조)

표 5-84 국적취득 여부에 따른 성폭행에 대한 두려움

		성폭행에 대한 두려움			계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	
국적	취득	23(69.7)	7(21.2)	3(9.1)	33(100.0)
	미취득	331(52.4)	176(27.8)	125(19.8)	632(100.0)
계		354(53.2)	183(27.5)	128(19.2)	665(100.0)

χ^2=4.131, p=n.s.

소유물 파손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서는 국적취득 여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χ^2=5.019, p=n.s.). 국적의 취득여부에 관계없이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다.(표 5-85 참조)

표 5-85 국적취득 여부에 따른 소유물 파손에 대한 두려움

		나의 소유물 파손에 대한 두려움			계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	
국적	취득	23(69.7)	8(24.2)	2(6.1)	33(100.0)
	미취득	320(50.6)	210(33.2)	102(16.1)	632(100.0)
계		343(51.6)	218(32.8)	104(15.6)	665(100.0)

χ^2=5.019, p=n.s.

종교나 국가의 상징, 건물 등의 대한 파손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서는 국적취득 여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χ^2=5.549, p=n.s.). 국적의 취득여부에 관계없이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다.(표 5-86 참조)

표 5-86 국적취득 여부에 따른 종교나 국가의 상징, 건물 등의 파손에 대한 두려움

		종교, 국가의 상징(국기 등), 건물(교회 등) 등의 파손에 대한 두려움			계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	
국적	취득	24(72.7)	6(18.2)	3(9.1)	33(100.0)
	미취득	327(51.7)	198(31.3)	107(16.9)	632(100.0)
계		351(52.8)	204(30.7)	110(16.5)	665(100.0)

χ^2=5.549, p=n.s.

물건이나 돈의 절취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서는 국적취득 여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χ^2=5.065, p=n.s.). 국적의 취득여부에 관계없이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다.(표 5-87 참조)

표 5-87 국적취득 여부에 따른 물건이나 돈의 절취에 대한 두려움

		물건이나 돈의 절취에 대한 두려움			계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	
국적	취득	23(69.7)	6(18.2)	4(12.1)	33(100.0)
	미취득	316(50.0)	216(34.2)	100(15.8)	632(100.0)
계		339(51.0)	222(33.4)	104(15.6)	665(100.0)

χ^2=5.065, p=n.s.

집이나 교회 등의 방화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서는 국적취득 여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χ^2=3.524, p=n.s.). 국적의 취득여부에 관계없이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다.(표 5-88 참조)

표 5-88 국적취득 여부에 따른 집이나 교회 등의 방화에 대한 두려움

		집이나 교회 등 방화에 대한 두려움			계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	
국적	취득	23(69.7)	6(18.2)	4(12.1)	33(100.0)
	미취득	335(53.0)	173(27.4)	124(19.6)	632(100.0)
계		358(53.8)	179(26.9)	128(19.2)	665(100.0)

χ^2=3.524, p=n.s

9. 배우자의 출신국에 따른 증오범죄에 대한 두려움

배우자의 출신국에 따른 증오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χ^2=7.806 p 〈.05). 배우자가 한국인인 대상자들의 경우는 '매우 두렵다'는 응답이 13.6%, '조금 두렵다'는 응답이 28.8%였으나, 배우자의 출신국이 한국 이외의 국가인 경우는 '매우 두렵다'는 응답이 19.8%, '조금 두렵다'는 응답이 44%로 나타나,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 확연한 차이를 보여준다.(표 5-89 참조)

표 5-89 배우자의 출신국 여부에 따른 폭행에 대한 두려움

		폭행 (흉기로 찌르기, 총쏘기, 때리기, 물건 집어던지기, 밀치기, 목조르기)에 대한 두려움			계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	
출신국	한국	38(57.6)	19(28.8)	9(13.6)	66(100.0)
	한국 이외	42(36.2)	51(44.0)	23(19.8)	116(100.0)
계		80(44.0)	70(38.5)	32(17.6)	182(100.0)

χ^2=7.806, p <.05

강도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서는 배우자의 출신국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χ^2=2.911, p=n.s.). 배우자의 출신국이 한국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다.(표 5-90 참조)

표 5-90 배우자의 출신국에 따른 강도에 대한 두려움

		강도에 대한 두려움			계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	
출신국	한국	39(59.1)	19(28.8)	8(12.1)	66(100.0)
	한국 이외	54(46.6)	40(34.5)	22(19.0)	116(100.0)
계		93(51.1)	59(32.4)	30(16.5)	182(100.0)

χ^2=2.911, p=n.s.

성폭행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서는 배우자의 출신국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χ^2=1.577, p=n.s.). 배우자의 출신국이 한국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다.(표 5-91 참조)

표 5-91 배우자의 출신국에 따른 성폭행에 대한 두려움

		성폭행에 대한 두려움			계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	
출신국	한국	41(62.1)	16(24.2)	9(13.6)	66(100.0)
	한국 이외	62(53.4)	31(26.7)	23(19.8)	116(100.0)
계		103(56.6)	47(25.8)	32(17.6)	182(100.0)

χ^2=1.577, p=.455

소유물 파손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서는 배우자의 출신국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χ^2=4.839, p=n.s.). 배우자의 출신국이 한국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다.(표 5-92 참조)

표 5-92 배우자의 출신국에 따른 소유물 파손에 대한 두려움

		나의 소유물 파손에 대한 두려움			계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	
출신국	한국	43(65.2)	16(24.2)	7(10.6)	66(100.0)
	한국 이외	56(48.3)	41(35.3)	19(16.4)	116(100.0)
계		99(54.4)	57(31.3)	26(14.3)	182(100.0)

χ^2=4.839, p=n.s.

종교나 국가의 상징, 건물 등의 파손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서는 배우자의 출신국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χ^2=4.486, p=n.s.). 배우자의 출신국이 한국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다.(표 5-93 참조)

표 5-93 배우자의 출신국에 따른 종교나 국가의 상징, 건물 등의 파손에 대한 두려움

		종교, 국가의 상징(국기 등), 건물(교회 등) 등의 파손에 대한 두려움			계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	
출신국	한국	42(63.6)	18(27.3)	6(9.1)	66(100.0)
	한국 이외	56(48.3)	40(34.5)	20(17.2)	116(100.0)
계		98(53.8)	58(31.9)	26(14.3)	182(100.0)

χ^2=4.486, p=n.s.

물건이나 돈의 절취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서는 배우자의 출신국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χ^2=5.750, p=n.s.). 배우자의 출신국이 한국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다.(표 5-94 참조)

표 5-94 배우자의 출신국에 따른 물건이나 돈의 절취에 대한 두려움

		물건이나 돈의 절취에 대한 두려움			계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	
출신국	한국	44(66.7)	16(24.2)	6(9.1)	66(100.0)
	한국 이외	56(48.3)	44(37.9)	16(13.8)	116(100.0)
계		100(54.9)	60(33.0)	22(12.1)	182(100.0)

χ^2=5.750, p=n.s.

집이나 교회 등의 방화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서는 배우자의 출신국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χ^2=3.511, p=n.s.). 배우자의 출신국이 한국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다.(표 5-95 참조)

표 5-95 배우자의 출신국에 따른 집이나 교회 등의 방화에 대한 두려움

		집이나 교회 등 방화에 대한 두려움			계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	
출신국	한국	88(65.2)	16(24.2)	7(10.6)	66(100.0)
	한국 이외	61(52.6)	32(27.6)	23(19.8)	116(100.0)
계		104(57.1)	48(26.4)	30(16.5)	182(100.0)

χ^2=3.511, p=n.s.

10. 거주기간에 따른 증오범죄에 대한 두려움

폭행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서는 거주기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χ^2=7.442, p=n.s.).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다.(표 5-96 참조)

표 5-96 거주기간에 따른 폭행에 대한 두려움

		폭행 (흉기로 찌르기, 총쏘기, 때리기, 물건 집어던지기, 밀치기, 목조르기)에 대한 두려움			계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	
거주기간	2년 미만	93(43.9)	80(37.7)	39(18.4)	212(100.0)
	5년 미만	154(45.0)	127(37.1)	61(17.8)	342(1000)
	10년 미만	41(51.9)	30(38.0)	8(10.1)	79(100.0)
	10년 이상	7(41.2)	4(23.5)	6(35.3)	17(100.0)
계		295(45.4)	241(37.1)	114(17.5)	650(100.0)

무응답: 5명, χ^2=7.442, p=n.s.

강도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서는 거주기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χ^2=3.209, p=n.s.).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다.(표 5-97 참조)

표 5-97 거주기간에 따른 강도에 대한 두려움

		강도에 대한 두려움			계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	
거주기간	2년 미만	102(48.1)	80(37.7)	30(14.2)	212(100.0)
	5년 미만	171(50.0)	119(34.8)	52(15.2)	342(1000)
	10년 미만	46(58.2)	22(27.8)	11(13.9)	79(100.0)
	10년 이상	9(52.9)	5(29.4)	3(17.6)	17(100.0)
계		328(50.5)	226(34.8)	96(14.8)	650(100.0)

무응답: 5명, χ^2=3.209, p=n.s.

성폭행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서도 거주기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χ^2=1.537, p=n.s.).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다.(표 5-98 참조)

표 5-98 거주기간에 따른 성폭행에 대한 두려움

		성폭행에 대한 두려움			계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	
거주기간	2년 미만	109(51.4)	61(28.8)	42(19.8)	212(100.0)
	5년 미만	184(53.8)	91(26.6)	67(19.6)	342(1000)
	10년 미만	46(58.2)	20(25.3)	13(16.5)	79(100.0)
	10년 이상	8(47.1)	5(29.4)	4(23.5)	17(100.0)
계		347(53.4)	177(27.2)	126(19.4)	650(100.0)

χ^2=1.537, p=n.s.

소유물 파손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서는 거주기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χ^2=4.825, p=n.s.).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다.(표 5-99 참조)

표 5-99 거주기간에 따른 소유물 파손에 대한 두려움

		나의 소유물 파손에 대한 두려움			계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	
거주기간	2년 미만	110(51.9)	68(32.1)	34(16.0)	212(100.0)
	5년 미만	169(49.4)	119(34.8)	54(15.8)	342(1000)
	10년 미만	47(49.5)	22(27.8)	10(12.7)	79(100.0)
	10년 이상	10(58.8)	3(17.6)	4(23.5)	17(100.0)
계		336(51.7)	212(32.6)	102(15.7)	650(100.0)

χ^2=4.825, p=n.s.

종교나 국가의 상징, 건물 등의 파손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서는 거주기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χ^2=12.549, p=n.s.).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다.(표 5-100 참조)

표 5-100 거주기간에 따른 종교나 국가의 상징, 건물 등의 파손에 대한 두려움

		종교, 국가의 상징(국기 등), 건물(교회 등) 등의 파손에 대한 두려움			계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	
거주기간	2년 미만	101(47..6)	62(29.2)	49(23.1)	212(100.0)
	5년 미만	185(54.1)	109(31.9)	48(14.0)	342(1000)
	10년 미만	48(60.8)	24(30.4)	7(8.9)	79(100.0)
	10년 이상	10(58.8)	5(29.4)	2(11.8)	17(100.0)
계		344(52.9)	200(30.8)	106(16.3)	650(100.0)

χ^2=12.549, p=n.s.

물건이나 돈의 절취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서는 거주기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χ^2=5.893, p=n.s.).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다.(표 5-101 참조)

표 5-101 거주기간에 따른 물건이나 돈의 절취에 대한 두려움

		물건이나 돈의 절취에 대한 두려움			계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	
거주기간	2년 미만	99(46.7)	74(34.9)	39(18.4)	212(100.0)
	5년 미만	176(51.5)	114(33.3)	52(15.2)	342(1000)
	10년 미만	46(58.2)	26(32.9)	7(8.9)	79(100.0)
	10년 이상	10(58.8)	4(23.5)	3(17.6)	17(100.0)
계		331(50.9)	218(33.5)	101(15.5)	650(100.0)

χ^2=5.893, p=n.s.

집이나 교회 등의 방화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서 거주기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χ^2=13.428, p 〈.05). 10년 이상의 경우에 매우 두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23.5%로 높기는 하지만, 10년까지는 거주기간이 증가할수록 두려움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102 참조)

표 5-102 거주기간에 따른 집이나 교회 등의 방화에 대한 두려움

		집이나 교회 등 방화에 대한 두려움			계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	
거주기간	2년 미만	108(50.9)	48(22.6)	56(26.4)	212(100.0)
	5년 미만	187(54.7)	99(28.9)	56(16.4)	342(1000)
	10년 미만	46(58.2)	24(30.4)	9(11.4)	79(100.0)
	10년 이상	10(58.8)	3(17.6)	4(23.5)	17(100.0)
계		351(54.0)	174(26.8)	125(19.2)	650(100.0)

χ^2=13.428, p 〈.05

11. 가계소득에 따른 증오범죄에 대한 두려움

월평균 가구소득은 한국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에 한해서만 분석하였다. 이들의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라 증오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폭행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서 월평균 가계소득 수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χ^2=18.487, p 〈.005). 소득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 25.9%가 '매우 두렵다', 41.6%가 '조금 두렵다'고 응답한 반면, 소득이 15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인 경우 13.0%가 '매우 두렵다', 39.1%가 '조금 두렵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소득이 250만원 이상인 경우 14.8%가 '매우 두렵다', 18.5%가 '조금 두렵다'고 응답하여, 소득수준이 올라갈수록 폭행에 대한 두려움이 현저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103참조)

표 5-103 월평균 가계소득에 따른 폭행에 대한 두려움

		폭행(흉기로 찌르기, 총쏘기, 때리기, 물건 집어던지기, 밀치기, 목조르기)에 대한 두려움			계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	
소득수준	150만원 미만	60(32.4)	77(41.6)	48(25.9)	185(100.0)
	250만원 미만	55(47.8)	45(39.1)	15(13.0)	115(100.0)
	250만원 이상	18(66.7)	5(18.5)	4(14.8)	27(100.0)
계		133(40.7)	127(38.8)	67(20.5)	327(100.0)

χ^2=18.487, p 〈.005

물건이나 돈의 절취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서는 월평균 가계소득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χ^2=8.537, p=n.s.). 월평균 가계소득에 관계없이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다.(표 5-104 참조)

표 5-104 월평균 가계소득에 따른 강도에 대한 두려움

		강도에 대한 두려움			계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	
소득수준	150만원 미만	78(42.2)	61(33.0)	46(24.9)	185(100.0)
	250만원 미만	58(50.4)	39(33.9)	18(15.7)	115(100.0)
	250만원 이상	18(66.7)	5(18.5)	4(14.8)	27(100.0)
계		154(47.1)	105(32.1)	68(20.8)	327(100.0)

χ^2=8.537, p=n.s.

성폭행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서는 월평균 가계소득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χ^2=8.873, p=n.s.). 월평균 가계소득에 관계없이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다.(표 5-105 참조)

표 5-105 월평균 가계소득에 따른 성폭행에 대한 두려움

		성폭행에 대한 두려움			계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	
소득수준	150만원 미만	79(42.7)	55(29.7)	51(27.6)	185(100.0)
	250만원 미만	60(52.2)	32(27.8)	23(20.0)	115(100.0)
	250만원 이상	19(70.4)	4(14.8)	4(14.8)	27(100.0)
계		158(48.3)	91(27.8)	78(23.9)	327(100.0)

χ^2=8.873, p=n.s.

소유물 파손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서 월평균 가계소득 수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χ^2=18.364, p 〈.005). 소득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 26.5%가 '매우 두렵다', 36.8%가 '조금 두렵다'고 응답한 반면, 소득이 15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인 경우 16.5%가 '매우 두렵다', 29.6%가 '조금 두렵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소득이 250만원 이상인 경우 11.1%가 '매우 두렵다', 14.8%가 '조

금 두렵다'고 응답하여, 소득수준이 올라갈수록 소유물 파손에 대한 두려움이 현저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107참조)

표 5-106 월평균 가계소득에 따른 소유물 파손에 대한 두려움

		나의 소유물 파손에 대한 두려움			계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	
소득수준	150만원 미만	68(36.8)	68(36.8)	49(26.5)	185(100.0)
	250만원 미만	62(53.9)	34(29.6)	19(16.5)	115(100.0)
	250만원 이상	20(74.1)	4(14.8)	3(11.1)	27(100.0)
계		150(45.9)	106(32.4)	71(21.7)	327(100.0)

χ^2=18.364, p <.005

종교나 국가의 상징, 건물 등의 파손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서 월평균 가계소득 수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χ^2=19.014, p <.005). 소득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 30.8%가 '매우 두렵다', 30.3%가 '조금 두렵다'고 응답한 반면, 소득이 15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인 경우 13.9%가 '매우 두렵다', 29.6%가 '조금 두렵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소득이 250만원 이상인 경우 7.4%가 '매우 두렵다', 25.9%가 '조금 두렵다'고 응답하여, 소득수준이 올라갈수록 종교나 국가의 상징, 건물 등의 파손에 대한 두려움이 현저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108 참조)

표 5-107 월평균 가계소득에 따른 종교나 국가의 상징, 건물 등의 파손에 대한 두려움

		종교, 국가의 상징(국기 등), 건물(교회 등) 등의 파손에 대한 두려움			계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	
소득수준	150만원 미만	72(38.9)	56(30.3)	57(30.8)	185(100.0)
	250만원 미만	65(56.5)	34(29.6)	16(13.9)	115(100.0)
	250만원 이상	18(66.7)	7(25.9)	2(7.4)	27(100.0)
계		155(47.4)	97(29.7)	75(22.9)	327(100.0)

χ^2=19.014, p <.005

물건이나 돈의 절취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서 월평균 가계소득 수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χ^2=18.461, p 〈.005). 소득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 25.4%가 '매우 두렵다', 34.6%가 '조금 두렵다'고 응답한 반면, 소득이 15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인 경우 13.9%가 '매우 두렵다', 31.3%가 '조금 두렵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소득이 250만원 이상인 경우 11.1%가 '매우 두렵다', 11.1%가 '조금 두렵다'고 응답하여, 소득수준이 올라갈수록 물건이나 돈의 절취에 대한 두려움이 현저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109 참조)

표 5-108 월평균 가계소득에 따른 물건이나 돈의 절취에 대한 두려움

		물건이나 돈의 절취에 대한 두려움			계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	
소득수준	150만원 미만	74(40.0)	64(34.6)	47(25.4)	185(100.0)
	250만원 미만	63(54.8)	36(31.3)	16(13.9)	115(100.0)
	250만원 이상	21(77.8)	3(11.1)	3(11.1)	27(100.0)
계		158(48.3)	103(31.5)	66(20.2)	327(100.0)

χ^2=18.461, p 〈.005

집이나 교회 등의 방화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서 월평균 가계소득 수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χ^2=11.962, p 〈.05). 소득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 31.4%가 '매우 두렵다', 27.0%가 '조금 두렵다'고 응답한 반면, 소득이 15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인 경우 19.1%가 '매우 두렵다', 27.8%가 '조금 두렵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소득이 250만원 이상인 경우 14.8%가 '매우 두렵다', 14.8%가 '조금 두렵다'고 응답하여, 소득수준이 올라갈수록 물건이나 방화에 대한 두려움이 현저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110 참조)

표 5-109 월평균 가계소득에 따른 집이나 교회 등의 방화에 대한 두려움

		집이나 교회 등 방화에 대한 두려움			계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	
소득수준	150만원 미만	77(41.6)	50(27.0)	58(31.4)	185(100.0)
	250만원 미만	61(53.0)	32(27.8)	22(19.1)	115(100.0)
	250만원 이상	19(70.4)	4(14.8)	4(14.8)	27(100.0)
계		157(48.0)	86(26.3)	84(25.7)	327(100.0)

χ^2=11.962, p <.05

제6절 가족·동거인의 증오범죄에 대한 두려움

1. 가족·동거인의 증오범죄에 대한 두려움

조사대상자 전체를 대상으로 가족이나 동거인이 느끼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문항에 관계없이 절반 정도의 응답자들이 가족이나 동거인이 '전혀 두렵지 않게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 '조금 두렵다'는 응답을 한 비율이 높았고, '매우 두렵다'는 응답을 한 비율이 가장 낮았다. 범죄유형별로 보면 성폭행에 있어 '매우 두렵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폭행에 있어 '매우 두렵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표 5-110 참조)

표 5-110 가족·동거인의 증오범죄에 대한 두려움

문항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	전체
가족 혹은 동거인이 느끼는 폭행 (흉기로 찌르기, 총쏘기, 때리기, 물건 집어던지기, 밀치기, 목조르기)에 대한 두려움	298 (44.8)	250 (37.6)	117 (17.6)	665 (100.0)
가족 혹은 동거인이 느끼는 강도에 대한 두려움	332 (49.9)	233 (35.0)	100 (15.0)	665 (100.0)
가족 혹은 동거인이 느끼는 성폭행에 대한 두려움	354 (53.2)	183 (27.5)	128 (19.2)	665 (100.0)
가족 혹은 동거인이 느끼는 소유물 파손에 대한 두려움	343 (51.6)	218 (32.8)	104 (15.6)	665 (100.0)
가족 혹은 동거인이 느끼는 물건이나 돈의 절취에 대한 두려움	351 (52.8)	204 (30.7)	110 (16.5)	665 (100.0)

2. 출신국에 따른 가족·동거인이 느끼는 증오범죄에 대한 두려움

가족 혹은 동거인이 느끼는 폭행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서는 출신국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χ^2=12.278, p <.05). 중국인의 16.4%가 '매우 두렵다', 26.9%가 '조금 두렵다'고 응답한 반면, 인도네시아인의 18.6%가 '매우 두렵다', 42.5%가 '조금 두렵다'고 응답하였고, 우즈베키스탄인의 25.5%가 '매우 두렵다', 35.1%가 '조금 두렵다'고 응답하여, 대체로 중국에 비해 인도네시아나 우즈베키스탄인들의 가족이나 동거인들이 폭행에 대한 두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표 5-111 참조)

표 5-111 출신국에 따른 가족·동거인이 느끼는 폭행에 대한 두려움

		가족 혹은 동거인이 느끼는 폭행 (흉기로 찌르기, 총쏘기, 때리기, 물건 집어던지기, 밀치기, 목조르기)에 대한 두려움			계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	
출신국	중국	76(56.7)	36(26.9)	22(16.4)	134(100.0)
	인도네시아	44(38.9)	48(42.5)	21(18.6)	113(100.0)
	우즈베키스탄	37(39.4)	33(35.1)	24(25.5)	94(100.0)
계		157(46.0)	117(34.3)	67(19.6)	341(100.0)

χ^2=12.278, p <.05

가족 혹은 동거인이 느끼는 강도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서는 출신국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χ^2=9.570, p 〈.05). 중국인의 15.7%가 '매우 두렵다', 26.9%가 '조금 두렵다'고 응답한 반면, 인도네시아인의 20.4%가 '매우 두렵다', 39.8%가 '조금 두렵다'고 응답하였고, 우즈베키스탄인의 19.1%가 '매우 두렵다', 39.4%가 '조금 두렵다'고 응답하여, 대체로 중국에 비해 인도네시아나 우즈베키스탄인들의 가족이나 동거인들이 강도에 대한 두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표 5-112 참조)

표 5-112 출신국에 따른 가족·동거인이 느끼는 강도에 대한 두려움

		가족 혹은 동거인이 느끼는 강도에 대한 두려움			계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	
출신국	중국	77(57.5)	36(26.9)	21(15.7)	134(100.0)
	인도네시아	45(39.8)	45(39.8)	23(20.4)	113(100.0)
	우즈베키스탄	39(41.5)	37(39.4)	18(19.1)	94(100.0)
계		161(47.2)	118(34.6)	62(18.2)	341(100.0)

χ^2=9.570, p 〈.05

가족 혹은 동거인이 느끼는 성폭행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서는 출신국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χ^2=12.177, p 〈.05). 중국인의 15.7%가 '매우 두렵다', 23.1%가 '조금 두렵다'고 응답한 반면, 인도네시아인의 21.4%가 '매우 두렵다', 37.2%가 '조금 두렵다'고 응답하였고, 우즈베키스탄인의 22.3%가 '매우 두렵다', 35.1%가 '조금 두렵다'고 응답하여, 대체로 중국에 비해 인도네시아나 우즈베키스탄인들의 가족이나 동거인들이 성폭행에 대한 두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표 5-113 참조)

표 5-113 출신국에 따른 가족·동거인이 느끼는 성폭행에 대한 두려움

		가족 혹은 동거인이 느끼는 성폭행에 대한 두려움			계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	
출신국	중국	82(61.2)	31(23.1)	21(15.7)	134(100.0)
	인도네시아	47(41.6)	42(37.2)	24(21.4)	113(100.0)
	우즈베키스탄	40(42.6)	33(35.1)	21(22.3)	94(100.0)
계		169(49.6)	106(31.1)	66(19.4)	341(100.0)

χ^2=12.177, p <.05

가족 혹은 동거인이 느끼는 소유물 파손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서는 출신국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χ^2=8.967, p=n.s.). 출신국에 관계없이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고 응답한 비율에 있어서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다.(표 5-114 참조)

표 5-114 출신국에 따른 가족·동거인이 느끼는 소유물 파손에 대한 두려움

		가족 혹은 동거인이 느끼는 소유물 파손에 대한 두려움			계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	
출신국	중국	79(59.0)	36(26.9)	19(14.2)	134(100.0)
	인도네시아	46(40.7)	44(38.9)	23(20.4)	113(100.0)
	우즈베키스탄	43(45.7)	35(37.2)	16(17.0)	94(100.0)
계		168(49.3)	115(33.7)	58(17.0)	341(100.0)

χ^2=8.967, p=n.s.

가족 혹은 동거인이 느끼는 물건이나 돈의 절취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서는 출신국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χ^2=7.903, p=n.s.). 출신국에 관계없이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고 응답한 비율에 있어서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다.(표 5-115참조)

표 5-115 출신국에 따른 가족·동거인이 느끼는 물건이나 돈의 절취에 대한 두려움

		가족 혹은 동거인이 느끼는 물건이나 돈의 절취에 대한 두려움			계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	
출신국	중국	76(56.7)	37(27.6)	21(15.7)	134(100.0)
	인도네시아	44(38.9)	45(39.8)	24(21.2)	113(100.0)
	우즈베키스탄	44(46.8)	33(35.1)	17(18.1)	94(100.0)
계		164(48.1)	115(33.7)	62(18.2)	341(100.0)

χ^2=7.903, p=n.s.

4. 신분에 따른 가족·동거인이 느끼는 증오범죄에 대한 두려움

가족 혹은 동거인이 느끼는 폭행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서는 신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χ^2=1.980, p=n.s.). 노동자/귀화한국인과 유학생간에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고 응답한 비율에 있어서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다.(표 5-116 참조)

표 5-116 신분에 따른 가족·동거인이 느끼는 폭행에 대한 두려움

		가족 혹은 동거인이 느끼는 폭행 (흉기로 찌르기, 총쏘기, 때리기, 물건 집어던지기, 밀치기, 목조르기)에 대한 두려움			계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	
신분	노동자/귀화한국인	108(43.7)	89(36.0)	50(20.2)	247(100.0)
	학생	49(52.1)	28(29.8)	17(18.1)	94(100.0)
계		157(46.0)	117(34.3)	67(19.6)	341(100.0)

χ^2=1.980, p=n.s.

가족 혹은 동거인이 느끼는 강도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서는 신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χ^2=1.288, p=n.s.). 노동자/귀화한국인과 유학생 간에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고 응답한 비율에 있어서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다.(표 5-117 참조)

표 5-117 신분에 따른 가족·동거인이 느끼는 강도에 대한 두려움

		가족 혹은 동거인이 느끼는 강도에 대한 두려움			계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	
신분	노동자/귀화한국인	112(45.3)	89(36.0)	46(18.6)	247(100.0)
	학생	49(52.1)	29(30.9)	16(17.0)	94(100.0)
계		161(47.2)	118(34.6)	62(18.2)	341(100.0)

χ^2=1.288, p=n.s.

가족 혹은 동거인이 느끼는 성폭행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서는 신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χ^2=6.645, p 〈.05). 노동자나 귀화외국인의 경우 34.8%가 '조금 두렵다'고 응답한 반면, 유학생의 경우 21.3%가 '조금 두렵다'고 응답하여, 노동자나 귀화외국인의 가족이나 동거인이 강도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표 5-118 참조)

표 5-118 신분에 따른 가족·동거인이 느끼는 성폭행에 대한 두려움

		가족 혹은 동거인이 느끼는 성폭행에 대한 두려움			계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	
신분	노동자/귀화한국인	113(45.7)	86(34.8)	48(19.4)	247(100.0)
	학생	56(59.6)	20(21.3)	18(19.1)	94(100.0)
계		169(49.6)	106(31.1)	66(19.4)	341(100.0)

χ^2=6.645, p 〈.05

가족 혹은 동거인이 느끼는 소유물 파손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서는 신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χ^2=1.002, p=n.s.). 노동자/귀화한국인과 유학생 간에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고 응답한 비율에 있어서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다.(표 5-119 참조)

표 5-119 신분에 따른 가족·동거인이 느끼는 소유물 파손에 대한 두려움

		가족 혹은 동거인이 느끼는 소유물 파손에 대한 두려움			계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	
신분	노동자/귀화한국인	118(47.8)	87(35.2)	42(17.0)	247(100.0)
	학생	50(53.2)	28(29.8)	16(17.0)	94(100.0)
계		168(49.3)	115(33.7)	58(17.0)	341(100.0)

χ^2=1.002, p=n.s.

가족 혹은 동거인이 느끼는 물건이나 돈의 절취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서는 신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χ^2=.482, p=n.s.). 노동자/귀화한국인과 유학생 간에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고 응답한 비율에 있어서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다.(표 5-120 참조)

표 5-120 신분에 따른 가족·동거인이 느끼는 물건이나 돈의 절취에 대한 두려움

		가족 혹은 동거인이 느끼는 물건이나 돈의 절취에 대한 두려움			계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	
신분	노동자/귀화한국인	117(47.4)	86(34.8)	44(17.8)	247(100.0)
	학생	47(50.0)	29(30.9)	18(19.1)	94(100.0)
계		164(48.1)	115(33.7)	62(18.2)	341(100.0)

χ^2=.482, p=n.s.

4. 거주지에 따른 가족·동거인이 느끼는 증오범죄에 대한 두려움

가족 혹은 동거인이 느끼는 폭행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서는 거주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χ^2=9.694, p=n.s.). 서울의 경우 26.7%가 '매우 두렵다', 17.8%가 '조금 두렵다'고 응답하여, 두려움을 느끼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

면, 인천·경기도 지역의 경우 22.3%가 '매우 두렵다', 38.6%가 '조금 두렵다'고 응답하여, 두려움을 느끼는 가족이나 동거인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5-121 참조)

표 5-121 거주지에 따른 가족·동거인이 느끼는 폭행에 대한 두려움

		가족 혹은 동거인이 느끼는 폭행 (흉기로 찌르기, 총쏘기, 때리기, 물건 집어던지기, 밀치기, 목조르기)에 대한 두려움			계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	
거주지	서울	75(55.6)	36(26.7)	24(17.8)	135(100.0)
	인천·경기	65(39.2)	64(38.6)	37(22.3)	166(100.0)
	기타	17(42.5)	17(42.5)	6(15.0)	40(100.0)
계		157(46.0)	117(34.3)	67(19.6)	341(100.0)

χ^2=9.694, p=n.s.

가족 혹은 동거인이 느끼는 강도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서는 거주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χ^2=8.205, p=n.s.). 거주지에 관계없이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고 응답한 비율에 있어서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다.(표 5-122 참조)

표 5-122 거주지에 따른 가족·동거인이 느끼는 강도에 대한 두려움

		가족 혹은 동거인이 느끼는 강도에 대한 두려움			계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	
거주지	서울	75(55.6)	37(27.4)	23(17.0)	135(100.0)
	인천·경기	66(39.8)	67(40.4)	33(19.9)	166(1000)
	기타	20(50.0)	14(35.0)	6(15.0)	40(100.0)
계		161(47.2)	118(34.6)	62(18.2)	341(100.0)

χ^2=8.205, p=n.s.

가족 혹은 동거인이 느끼는 성폭행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서는 거주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χ^2=11.760, p <.05). 서울의 경우 18.5%가 '매우 두렵다', 22.2%가 '조금 두렵다'고 응답하여, 두려움을 느끼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인천·경기도 지역의 경우 21.1%가 '매우 두렵다', 38.0%가 '조금 두렵다'라고 응답하여 두려움을 느끼는 가족이나 동거인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5-123 참조)

표 5-123 거주지에 따른 가족·동거인이 느끼는 성폭행에 대한 두려움

		가족 혹은 동거인이 느끼는 성폭행에 대한 두려움			계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	
거주지	서울	80(59.3)	30(22.2)	25(18.5)	135(100.0)
	인천·경기	68(41.0)	63(38.0)	35(21.1)	166(1000)
	기타	21(52.5)	13(32.5)	6(15.0)	40(100.0)
계		169(49.6)	106(31.1)	66(19.4)	341(100.0)

χ^2=11.760, p <.05

가족 혹은 동거인이 느끼는 소유물 파손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서는 거주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χ^2=5.888, p=n.s.). 거주지에 관계없이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고 응답한 비율에 있어서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다.(표 5-124 참조)

표 5-124 거주지에 따른 가족·동거인이 느끼는 소유물 파손에 대한 두려움

		가족 혹은 동거인이 느끼는 소유물 파손에 대한 두려움			계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	
거주지	서울	75(55.6)	36(26.7)	24(17.8)	135(100.0)
	인천·경기	73(44.0)	64(38.6)	29(17.5)	166(100.0)
	기타	20(50.0)	15(37.5)	5(12.5)	40(100.0)
계		168(49.3)	115(33.7)	58(17.0)	341(100.0)

χ^2=5.888, p=n.s.

가족 혹은 동거인이 느끼는 물건이나 돈의 절취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서는 거주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χ^2=4.574, p=n.s.). 거주지에 관계없이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고 응답한 비율에 있어서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다.(표 5-125 참조)

표 5-125 거주지에 따른 가족·동거인이 느끼는 물건이나 돈의 절취에 대한 두려움

		가족 혹은 동거인이 느끼는 물건이나 돈의 절취에 대한 두려움			계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	
거주지	서울	72(53.3)	38(28.1)	25(18.5)	135(100.0)
	인천·경기	71(42.8)	64(38.6)	31(18.7)	166(1000)
	기타	21(52.5)	13(32.5)	6(15.0)	40(100.0)
계		164(48.1)	115(33.7)	62(18.2)	341(100.0)

χ^2=4.574, p=n.s.

5. 종교에 따른 가족·동거인이 느끼는 증오범죄에 대한 두려움

가족 혹은 동거인이 느끼는 폭행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서는 종교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χ^2=11.412, p=n.s.). 종교에 관계없이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다.(표 5-126 참조)

표 5-126 종교에 따른 가족·동거인이 느끼는 폭행에 대한 두려움

		가족 혹은 동거인이 느끼는 폭행 (흉기로 찌르기, 총쏘기, 때리기, 물건 집어던지기, 밀치기, 목조르기)에 대한 두려움			계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	
종교	무교	50(50.0)	33(33.0)	17(17.0)	100(100.0)
	불교	9(56.3)	4(25.0)	3(18.8)	16(100.0)
	기독교	20(55.6)	12(33.3)	4(11.1)	36(100.0)
	이슬람교	65(40.6)	59(36.9)	36(22.5)	160(100.0)
	러시아 정교	7(43.8)	6(37.5)	3(18.8)	16(100.0)
	카톨릭	6(60.0)	2(20.0)	2(20.0)	10(100.0)
	기타	0(0.0)	1(33.3)	2(66.7)	3(100.0)
계		157(46.0)	117(34.3)	67(19.6)	341(100.0)

χ^2=11.412, p=n.s.

가족 혹은 동거인이 느끼는 강도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서는 종교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χ^2=18.236, p=n.s.). 종교에 관계없이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다.(표 5-127 참조)

표 5-127 종교에 따른 가족·동거인이 느끼는 강도에 대한 두려움

		가족 혹은 동거인이 느끼는 강도에 대한 두려움			계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	
종교	무교	49(49.0)	34(34.0)	17(17.0)	100(100.0)
	불교	8(50.0)	5(31.3)	3(18.8)	16(100.0)
	기독교	24(66.7)	10(27.8)	2(5.6)	36(100.0)
	이슬람교	64(40.0)	62(38.8)	34(21.3)	160(100.0)
	러시아 정교	9(56.3)	4(25.0)	3(18.8)	16(100.0)
	카톨릭	7(70.0)	2(20.0)	1(10.0)	10(100.0)
	기타	0(0.0)	1(33.3)	2(66.7)	3(100.0)
계		161(47.2)	118(34.6)	62(18.2)	341(100.0)

χ^2=18.236, p=n.s.

가족 혹은 동거인이 느끼는 성폭행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서는 종교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χ^2=17.446, p=n.s.). 종교에 관계없이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다.(표 5-128 참조)

표 5-128 종교에 따른 가족·동거인이 느끼는 성폭행에 대한 두려움

		가족 혹은 동거인이 느끼는 성폭행에 대한 두려움			계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	
종교	무교	53(53.0)	29(29.0)	18(18.0)	100(100.0)
	불교	8(50.0)	5(31.3)	3(18.8)	16(100.0)
	기독교	25(69.4)	9(25.0)	2(5.6)	36(100.0)
	이슬람교	67(41.9)	56(35.0)	37(23.1)	160(100.0)
	러시아 정교	8(50.0)	5(31.3)	3(18.8)	16(100.0)
	카톨릭	7(70.0)	2(20.0)	1(10.0)	10(100.0)
	기타	1(33.3)	0(0.0)	2(66.7)	3(100.0)
계		169(49.6)	106(31.1)	66(19.4)	341(100.0)

χ^2=17.446, p=n.s.

가족 혹은 동거인이 느끼는 소유물 파손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서는 종교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χ^2=18.517, p=n.s.). 종교에 관계없이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다.(표 5-129 참조)

표 5-129 종교에 따른 가족·동거인이 느끼는 소유물 파손에 대한 두려움

		가족 혹은 동거인이 느끼는 소유물 파손에 대한 두려움			계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	
종교	무교	51(51.0)	34(34.0)	15(15.0)	100(100.0)
	불교	9(56.3)	4(25.0)	3(18.8)	16(100.0)
	기독교	24(66.7)	10(27.8)	2(5.6)	36(100.0)
	이슬람교	68(42.5)	58(36.3)	34(21.3)	160(100.0)
	러시아 정교	9(56.3)	5(31.3)	2(12.5)	16(100.0)
	카톨릭	7(70.0)	3(30.0)	0(0.0)	10(100.0)
	기타	0(0.0)	1(33.3)	2(66.7)	3(100.0)
계		168(49.3)	115(33.7)	58(17.0)	341(100.0)

χ^2=18.517, p=n.s.

가족 혹은 동거인이 느끼는 물건이나 돈의 절취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서는 종교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χ^2=19.622, p=n.s.). 종교에 관계없이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다.(표 5-130 참조)

표 5-130 종교에 따른 가족·동거인이 느끼는 물건이나 돈의 절취에 대한 두려움

		가족 혹은 동거인이 느끼는 물건이나 돈의 절취에 대한 두려움			계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	
종교	무교	49(49.0)	35(35.0)	16(16.0)	100(100.0)
	불교	9(56.3)	4(25.0)	3(18.8)	16(100.0)
	기독교	24(66.7)	10(27.8)	2(5.6)	36(100.0)
	이슬람교	66(41.3)	57(35.6)	37(23.1)	160(100.0)
	러시아 정교	9(56.3)	5(31.3)	2(12.5)	16(100.0)
	카톨릭	7(60.0)	3(30.0)	0(0.0)	10(100.0)
	기타	0(0.0)	1(33.3)	2(66.7)	3(100.0)
계		164(48.1)	115(33.7)	62(18.2)	341(100.0)

χ^2=19.622, p=n.s.

6. 국적취득 여부에 따른 가족·동거인이 느끼는 증오범죄에 대한 두려움

가족 혹은 동거인이 느끼는 폭행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서 국적 취득여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χ^2=8.382, p <.05).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응답자의 가족이나 동거인의 7.7%가 '매우 두렵다', 19.2%가 '조금 두렵다'고 응답한 반면, 국적 미취득자의 가족이나 동거인의 20.6%가 '매우 두렵다', 35.6%가 '조금 두렵다'고 응답하여, 국적취득 여부에 따라서 가족이나 동거인이 느끼는 폭행에 대한 두려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131 참조)

표 5-131 국적취득 여부에 따른 가족·동거인이 느끼는 폭행에 대한 두려움

		가족 혹은 동거인이 느끼는 폭행 (흉기로 찌르기, 총쏘기, 때리기, 물건 집어던지기, 밀치기, 목조르기)에 대한 두려움			계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	
국적	취득	19(73.1)	5(19.2)	2(7.7)	26(100.0)
	미취득	138(43.8)	112(35.6)	65(20.6)	315(100.0)
계		157(46.0)	117(34.3)	67(19.6)	341(100.0)

χ^2=8.382, p <.05

가족 혹은 동거인이 느끼는 폭행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서는 국적 취득여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χ^2=5.674, p=n.s.). 국적 취득여부에 관계없이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다.(표 5-132 참조)

표 5-132 국적취득 여부에 따른 가족·동거인이 느끼는 강도에 대한 두려움

		가족 혹은 동거인이 느끼는 강도에 대한 두려움			계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	
국적	취득	18(69.2)	6(23.1)	2(7.7)	26(100.0)
	미취득	143(45.4)	112(35.6)	60(19.0)	315(100.0)
계		161(47.2)	118(34.6)	62(18.2)	341(100.0)

χ^2=5.674, p=n.s.

가족 혹은 동거인이 느끼는 폭행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서는 국적 취득여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χ^2=5.674, p=n.s.). 국적 취득여부에 관계없이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다.(표 5-133 참조)

표 5-133 국적취득 여부에 따른 가족·동거인이 느끼는 성폭행에 대한 두려움

		가족 혹은 동거인이 느끼는 성폭행에 대한 두려움			계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	
국적	취득	16(61.5)	8(30.8)	2(7.7)	26(100.0)
	미취득	153(48.6)	98(31.1)	64(20.3)	315(100.0)
계		169(49.6)	106(31.1)	66(19.4)	341(100.0)

χ^2=2.794, p=n.s.

가족 혹은 동거인이 느끼는 소유물 파손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서 국적 취득여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χ^2=14.231, p 〈.005).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응답자의 가족이나 동거인의 7.7%가 '매우 두렵다', 7.7%가 '조금 두렵다'고 응답한 반면, 국적 미취득자의 가족이나 동거인의 17.8%가 '매우 두렵다', 35.9%가 '조금 두렵다'고 응답하여, 국적취득 여부에 따라서 가족이나 동거인이 느끼는 폭행에 대한 두려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의 가족이나 동거인이 느끼는 소유물 파손의 두려움이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5-134참조)

표 5-134 국적취득 여부에 따른 가족·동거인이 느끼는 소유물 파손에 대한 두려움

		가족 혹은 동거인이 느끼는 소유물 파손에 대한 두려움			계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	
국적	취득	22(84.6)	2(7.7)	2(7.7)	26(100.0)
	미취득	146(46.3)	113(35.9)	56(17.8)	315(100.0)
계		168(49.3)	115(33.7)	58(17.0)	341(100.0)

χ^2=14.231, p 〈.005

가족 혹은 동거인이 느끼는 물건이나 돈의 절취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서 국적 취득여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χ^2=15.165, p 〈.005).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응답자의 가족이나 동거인의 7.7%가 '매우 두렵다', 7.7%가 '조금 두렵다'고 응답한 반면, 국적 미취득자의 가족이나 동거인의 19.0%가 '매우 두렵다', 35.9%가 '조금 두렵다'고 응답하여, 국적취득 여부에 따라서 가족이나 동거인이 느끼는 폭행에 대한 두려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135 참조)

표 5-135 국적취득 여부에 따른 가족·동거인이 느끼는 물건이나 돈의 절취에 대한 두려움

		가족 혹은 동거인이 느끼는 물건이나 돈의 절취에 대한 두려움			계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	
국적	취득	22(84.6)	2(7.7)	2(7.7)	26(100.0)
	미취득	142(45.1)	113(35.9)	60(19.0)	315(100.0)
계		164(48.1)	115(33.7)	62(18.2)	341(100.0)

χ^2=15.165, p 〈.005

7. 거주기간에 따른 가족·동거인이 느끼는 증오범죄에 대한 두려움

가족 혹은 동거인이 느끼는 폭행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서는 거주기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χ^2=7.073, p=n.s.). 즉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다.(표 5-136 참조)

표 5-136 거주기간에 따른 가족·동거인이 느끼는 폭행에 대한 두려움

		가족 혹은 동거인이 느끼는 폭행 (흉기로 찌르기, 총쏘기, 때리기, 물건 집어던지기, 밀치기, 목조르기)에 대한 두려움			계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	
거주기간	2년 미만	43(43.4)	32(32.3)	24(24.2)	99(100.0)
	5년 미만	70(44.6)	63(40.1)	24(15.3)	157(1000)
	10년 미만	28(50.0)	17(30.4)	11(19.6)	56(100.0)
	10년 이상	8(50.0)	3(18.8)	5(31.3)	16(100.0)
계		149(45.4)	115(35.1)	64(19.5)	328(100.0)

χ^2=7.073, p=n.s.

가족 혹은 동거인이 느끼는 강도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서는 거주기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χ^2=3.645, p=n.s.). 즉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다.(표 5-137 참조)

표 5-137 거주기간에 따른 가족·동거인이 느끼는 강도에 대한 두려움

		가족 혹은 동거인이 느끼는 강도에 대한 두려움			계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	
거주기간	2년 미만	43(43.4)	32(32.3)	24(24.2)	99(100.0)
	5년 미만	76(48.4)	57(36.3)	24(15.3)	157(1000)
	10년 미만	28(50.0)	19(32.9)	9(16.1)	56(100.0)
	10년 이상	7(43.8)	6(37.5)	3(18.8)	16(100.0)
계		154(47.0)	114(34.8)	60(18.3)	328(100.0)

χ^2=3.645, p=n.s.

가족 혹은 동거인이 느끼는 성폭행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서는 거주기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χ^2=3.962, p=n.s.). 즉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다.(표 5-138 참조)

표 5-138 거주기간에 따른 가족·동거인이 느끼는 성폭행에 대한 두려움

		가족 혹은 동거인이 느끼는 성폭행에 대한 두려움			계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	
거주기간	2년 미만	46(46.5)	29(29.3)	24(24.2)	99(100.0)
	5년 미만	84(53.5)	45(28.7)	28(17.8)	157(1000)
	10년 미만	26(46.4)	21(37.5)	9(16.1)	56(100.0)
	10년 이상	7(43.8)	6(37.5)	3(18.8)	16(100.0)
계		163(49.7)	101(30.8)	64(19.5)	328(100.0)

χ^2=3.962, p=n.s.

가족 혹은 동거인이 느끼는 소유물 파손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서는 거주기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χ^2=4.566, p=n.s.). 즉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다.(표 5-139 참조)

표 5-139 거주기간에 따른 가족·동거인이 느끼는 소유물 파손에 대한 두려움

		가족 혹은 동거인이 느끼는 소유물 파손에 대한 두려움			계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	
거주기간	2년 미만	48(48.5)	29(29.3)	22(22.2)	99(100.0)
	5년 미만	76(48.4)	58(36.9)	23(14.6)	157(1000)
	10년 미만	29(51.8)	20(35.7)	7(12.5)	56(100.0)
	10년 이상	9(56.3)	4(25.0)	3(18.8)	16(100.0)
계		162(49.4)	111(33.8)	55(16.8)	328(100.0)

χ^2=4.566, p=n.s.

가족 혹은 동거인이 느끼는 물건이나 돈의 절취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서는 거주기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χ^2=4.779, p=n.s.). 즉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다.(표 5-140 참조)

표 5-140 거주기간에 따른 가족·동거인이 느끼는 물건이나 돈의 절취에 대한 두려움

		가족 혹은 동거인이 느끼는 물건이나 돈의 절취에 대한 두려움			계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	
거주기간	2년 미만	46(46.5)	29(29.3)	24(24.2)	99(100.0)
	5년 미만	74(47.1)	58(36.9)	25(15.9)	157(1000)
	10년 미만	29(51.8)	19(33.9)	8(14.3)	56(100.0)
	10년 이상	9(56.3)	4(25.0)	3(18.8)	16(100.0)
계		158(48.2)	110(33.5)	60(18.3)	328(100.0)

χ^2=4.779, p=n.s.

8. 가계소득에 따른 가족·동거인이 느끼는 증오범죄 두려움

가족 혹은 동거인이 느끼는 증오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노동자 집단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먼저 폭행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서 월평균 가계소득 수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χ^2=18.280, p 〈.005). 소득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 27.5%가 '매우 두렵다', 38.9%가 '조금 두렵다'고 응답한 반면, 소득이 15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인 경우 12.4%가 '매우 두렵다', 37.1%가 '조금 두렵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소득이 250만원 이상인 경우 11.1%가 '매우 두렵다', 18.5%가 '조금 두렵다'고 응답하여, 소득수준이 올라갈수록 가족이나 동거인이 느끼는 폭행에 대한 두려움이 현저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141 참조)

표 5-141 월평균 가계소득에 따른 가족·동거인이 느끼는 폭행에 대한 두려움

		가족 혹은 동거인이 느끼는 폭행 (흉기로 찌르기, 총쏘기, 때리기, 물건 집어던지기, 밀치기, 목조르기)에 대한 두려움			계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	
소득수준	150만원 미만	44(33.6)	51(38.9)	36(27.5)	131(100.0)
	250만원 미만	45(50.6)	33(37.1)	11(12.4)	89(100.0)
	250만원 이상	19(70.4)	5(18.5)	3(11.1)	27(100.0)
계		108(43.7)	89(36.0)	50(20.2)	247(100.0)

χ^2=18.280, p 〈.005

가족 혹은 동거인이 느끼는 강도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서 월평균 가계소득 수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χ^2=16.531, p 〈.005). 소득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 25.2%가 '매우 두렵다', 39.7%가 '조금 두렵다'고 응답한 반면, 소득이 15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인 경우 12.4%가 '매우 두렵다', 34.8%가 '조금 두렵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소득이 250만원 이상인 경우 7.4%가 '매우 두렵다', 22.2%가 '조금 두렵다'고 응답하여, 소득수준이 올라갈수록 가족이나 동거인이 느끼는 강도에 대한 두려움이 현저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142 참조)

표 5-142 월평균 가계소득에 따른 가족·동거인이 느끼는 강도에 대한 두려움

		가족 혹은 동거인이 느끼는 강도에 대한 두려움			계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	
소득수준	150만원 미만	46(35.1)	52(39.7)	33(25.2)	131(100.0)
	250만원 미만	47(52.8)	31(34.8)	11(12.4)	89(100.0)
	250만원 이상	19(70.4)	6(22.2)	2(7.4)	27(100.0)
계		112(45.3)	89(36.0)	46(18.6)	247(100.0)

χ^2=16.531, p 〈.005

가족 혹은 동거인이 느끼는 성폭행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서 월평균 가계소득 수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χ^2=16.013, p 〈.005). 소득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 26.7%가 '매우 두렵다', 36.6%가 '조금 두렵다'고 응답한 반면, 소득이 15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인 경우 13.5%가 '매우 두렵다', 34.8%가 '조금 두렵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소득이 250만원 이상인 경우 3.7%가 '매우 두렵다', 25.9%가 '조금 두렵다'고 응답하여, 소득수준이 올라갈수록 가족이나 동거인이 느끼는 성폭행에 대한 두려움이 현저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143 참조)

표 5-143 월평균 가계소득에 따른 가족·동거인이 느끼는 성폭행에 대한 두려움

		가족 혹은 동거인이 느끼는 성폭행에 대한 두려움			계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	
소득수준	150만원 미만	48(36.6)	48(36.6)	35(26.7)	131(100.0)
	250만원 미만	46(51.7)	31(34.8)	12(13.5)	89(100.0)
	250만원 이상	19(70.4)	7(25.9)	1(3.7)	27(100.0)
계		113(45.7)	86(34.8)	48(19.4)	247(100.0)

χ^2=16.013, p <.005

가족 혹은 동거인이 느끼는 소유물 파손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서 월평균 가계소득 수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χ^2=15.979, p <.005). 소득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 23.7%가 '매우 두렵다', 37.4%가 '조금 두렵다'고 응답한 반면, 소득이 15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인 경우 11.2%가 '매우 두렵다', 36.0%가 '조금 두렵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소득이 250만원 이상인 경우 3.7%가 '매우 두렵다', 22.2%가 '조금 두렵다'고 응답하여, 소득수준이 올라갈수록 가족이나 동거인이 느끼는 소유물 파손에 대한 두려움이 현저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144 참조)

표 5-144 월평균 가계소득에 따른 가족·동거인이 느끼는 소유물 파손에 대한 두려움

		가족 혹은 동거인이 느끼는 소유물 파손에 대한 두려움			계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	
소득수준	150만원 미만	51(38.9)	49(37.4)	31(23.7)	131(100.0)
	250만원 미만	47(52.8)	32(36.0)	10(11.2)	89(100.0)
	250만원 이상	20(74.1)	6(22.2)	1(3.7)	27(100.0)
계		118(47.8)	87(35.2)	42(17.0)	247(100.0)

χ^2=15.979, p <.005

가족 혹은 동거인이 느끼는 물건이나 돈의 절취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서 월평균 가계소득 수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χ^2=17.123,

p 〈.005). 소득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 24.4%가 '매우 두렵다', 38.2%가 '조금 두렵다'고 응답한 반면, 소득이 15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인 경우 11.2%가 '매우 두렵다', 34.8%가 '조금 두렵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소득이 250만원 이상인 경우 7.4%가 '매우 두렵다', 18.5%가 '조금 두렵다'고 응답하여, 소득수준이 올라갈수록 가족이나 동거인이 느끼는 물건이나 돈의 절취에 대한 두려움이 현저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145 참조)

표 5-145 월평균 가계소득에 따른 가족·동거인이 느끼는 물건이나 돈의 절취에 대한 두려움

		가족 혹은 동거인이 느끼는 물건이나 돈의 절취에 대한 두려움			계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	
소득수준	150만원 미만	49(37.4)	50(38.2)	32(24.4)	131(100.0)
	250만원 미만	48(53.9)	31(34.8)	10(11.2)	89(100.0)
	250만원 이상	20(74.1)	5(18.5)	2(7.4)	27(100.0)
계		117(47.4)	86(34.8)	44(17.8)	247(100.0)

χ^2=17.123, p 〈.005

제7절 소결

증오범죄는 인종과 국적, 성적지향, 정치적 입장 등의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지만, 본 조사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증오범죄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외국인 중에서도 중국인과 인도네시아, 우즈벡인을 각 200명씩 할당하여 인종과 국적, 종교적 차이를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인 외국인들 665명 중 증오범죄피해를 경험한 사람들의 비율은 다음과 같았다. 먼저 폭행을 경험한 사람은 7명으로 1.1%였고, 말이나 행동으로 폭행의 위협을 당한 경험은 16명으로 2.4%를 차지했다. 강도를 당하거나 당할 뻔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3명과 5명으로, 각각 0.5%와 0.8%를 차지했다. 성폭행을 당하거나 당할 뻔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2명과 9명으로 각각 0.3%와

1.4%를 차지했다. 그리고 소유물을 파손 당하거나 파손 당할 뻔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각각 2명으로 0.3%를 차지했다. 자신의 종교나 국가의 상징이나 건물 등이 파손되는 경험을 하거나 파손당할 뻔한 경우는 각각 2명으로 0.3%를 차지했다. 물건이나 돈을 빼앗기거나 빼앗길 뻔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9명과 6명으로 각각 1.4%와 0.9%를 차지했다. 마지막으로 집이나 교회 등에서 방화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없었고, 방화당할 뻔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1명으로 0.2%에 불과했다

이러한 증오범죄피해결과를 2009년에 10,67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내범죄피해실태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성폭력, 강도, 폭행·상해, 협박·괴롭힘 등의 폭력범죄에 있어서는 0.3%에서 0.5%사이로 피해자실태 조사에서의 결과보다 다소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 피해인 절도의 경우에 있어서는 본 조사에서 1.4%가 피해경험을 보고한 반면, 2009년 피해자실태조사에서는 2.9%가 피해경험을 보고하여 본 조사에서의 피해경험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는 표집의 수도 적고, 편파된 표집이나 2008년 범죄피해조사결과와 비교해서 국내의 증오범죄발생율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인종, 종교, 국적으로 인해 본인이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33명의 대상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험을 하였는지 중복응답으로 확인하였다. 그 결과 1회에 그친 경우가 54.5%로 과반수를 차지하였고, 2회가 36.7%, 3회가 7.6%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말이나 행동으로 폭행의 위협을 당한 외국인의 경우에 5회에 이르는 위협을 반복해서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의 증오범죄 피해횟수는 평균 3.2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증오범죄 피해경험을 보고한 33명의 외국인들이 피해장소로 가장 많이 보고한 곳은 직장으로, 14명(42.4%)이 직장에서 인종, 종교, 국적을 이유로 피해를 입었다고 보고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버스나 기차, 비행기, 전차 등의 교통수단 안(11명, 33.3%), 학교(6명, 18.2%)나 백화점, 마트, 옷가게, 음식점 등의 장삿집(6명, 18.2%), 인도나 차도 등의 노상(5명, 15.2%), 술집, 노래방 등의 유흥업소(4명, 12.1%)와 같은 공적 공간에서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하였다. 그 외에도 본인의 집에서 발생했다고 응답한 경우도 4명이 있었다.

한편 외국인들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분석하면, 출신국가나 종교에 따라 범

죄에 대한 두려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국적취득 여부도 범죄의 두려움과는 뚜렷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으나, 거주지역와 신분, 가계소득에 따라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유의미한 차이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거주지역의 외국인들이 인천과 경기지역 외국인들에 비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적었으며, 유학생들이 노동자로 온 외국인들보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낮았다. 또한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중에서 월소득이 높을수록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적었다. 월소득이 낮은 외국인 노동자들은 폭력범죄 뿐만 아니라 재산범죄에 대한 두려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외국인들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경제적 위치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제6장

증오범죄의 형법적 위치설정

이 재 일

06

증오범죄의 형법적 위치설정

제1절 현대형법의 전개: 가벌성 확장

현대 형법의 전개에 있어서 최후 수단으로서의 형법을 의미하는 자유주의적·법치국가적 형법관은 과거의 유산이 되어버렸으며, 현재는 형법을 사회문제의 해결과 더 나아가 사회문제를 조종하는 최우선 수단으로 삼고자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형법의 가벌성을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형법의 가벌성을 확장하는 방식은 형법투입 영역의 확장, 형법적 수사수단의 확장, 그리고 형법적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의 확대 등을 통하여 달성할 수 있는데, 이러한 흐름에 의하여 제안되는 형법이론이 위험형법(Risikostrafrecht), 안전형법(Sicherheitsstrafrecht), 그리고 (반시민적) 적형법(Feindstrafrecht)이다. 위험형법, 안전형법, 그리고 (반시민적) 적형법은 하나의 연속적 흐름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즉 위험형법은 형법의 투입영역을 확장시킴으로써 가벌성을 확장시키는 역할, 안전형법은 위험형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송법상의 수사수단을 확장시키는 역할, 그리고 (반시민적)적형법은 특정 범죄인에 대해서는 시민이 아니라 단지 적일 뿐이므로, 그에게는 자유국가·법치국가에서 인정하는 기본권리조차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인간의 존엄성 또는 기본권 침해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1. 가벌성 확장의 원인

가. 새로운 위험의 발생과 위험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사회는 어마어마한 기술적 진보를 통해서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우리에게 생활의 편안함을 가져다 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이러한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하여 발생된 원치 않는 부수적인 결과, 부정적인 효과가 우리에게 발생된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한 부정적 효과는 인간이 만들어낸 위험으로 구조적인 사회현상이 되어가고 있으며[93], 이를 오늘날 사람들은 위험사회로 명명하고 있다.[94] 위험사회라는 개념을 통하여 주목을 받게 된 위험인식이 오늘날의 시대진단을 위한 상징이 되었으며, 현재의 사회에 대한 통제의 형식은 위험의 논리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95]

위험사회에서의 위험은 기술적 진보에 의하여 발생되어진 이전까지는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위험(Neues Risiko)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위험은 장소, 시간 그리고 해당성의 범위에 따라서 제한되어질 수 없고, 인과관계 및 책임에 관한 현행법의 원칙에 따라서 귀속되어질 수도 없으며, 새로운 위험은 보험을 통한 해결도 불가능하다고 한다.[96] 또한 이러한 새로운 위험에 대하여 Lau는 개인적·복지국가적 위험(Risiko)과 위험으로서 개념정의되지 않았던 일반적인 생활상의 위해(Gefahr)의 혼합형태라고 명명하였다.[97] 새로운 위험은 개인들 또는

93) Silva Sánchez, Die Expansion des Strafrechts, 2003, S. 7; Singelnstein/Stolle, Die Sicherheitsgesellshcaft, 2006, S. 34; Wohlers, Deliktstypen des Präventionsstrafrechts, 2000, S. 46.

94) 위험사회라는 명칭은 1986년 독일의 사회학자 Ulrich Beck에 의하여 출간된 책의 제목이다.

95) Singelnstein/Stolle, Die Sicherheitsgesellshcaft, 2006, S. 33 참조.

96) Beck, Einleitung, in: ders. (Hrsg.), Politik in der Risikogesellschaft, 1991, S. 10; Jahn, Das Strafrecht des Staatsnotstandes, 2004, S. 221.

97) Lau, Risikoduskurs: Gesellschaftliche Auseinandersetzungen um die Definition von Risiken, Soziale Welt 1989, 418, 423. Lau는 위험의 유형을 세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즉 전통적인 위험, 개인적·복지국가적 위험 그리고 새로운 위험이다. 전통적인 위험은 개인적으로 귀속가능하고 시간적으로 제한되어진 위험을 의미하고, 이에 반하여 개인적·복지국가적 위험은 위험에 내맡겨진 개별적 사람 또는 사람들의 집단이 존재하지만, 이러한 위험은 더 이상 개인에게 귀속할 수 없고 사회

제도들에 의한 결정과 행위에 근거하기 때문에[98], 한편으로는 수많은 개인들의 행위들이 의도되지 않은 집단적 효과와 관련되어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위험의 대부분은 위험의 원인과 해당성에 대한 체계적 붕괴를 유발한다. 새로운 위험은 직업, 이웃, 성 그리고 세대와 같은 '사회적 집단에 대한 소속감'의 의미를 상실시키며, 새로운 위험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그 위험을 겪게 되며[99], 따라서 인간의 공동생활에 대한 유대감이 상실되고, 공동생활 자체가 인간상호간의 분쟁의 원인으로 간주되어진다. 이러한 의미에서 또한 인간 자체가 하나의 새로운 위험이 되어지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100]

이전의 산업사회와 구별되는 위험사회의 특이점을 살펴보면,

i) 위험사회는 인위적으로 생성된 원자력, 화학적, 생태학적 그리고 유전학적인 범위에서의 기술적 진보가 그 부수효과로서 이전에는 알려져 있지 않은 거대위해를 발전시키고, 그로 인하여 자기멸절의 잠재성이 증대된다.[101] 따라서 위험사회는 거대위해사회(Groβgefahrgesellschaft)[102]가 된다.[103]

ii) 새로운 위험과 위해화는 전통적인 사회적·정치적 한계를 넘어 인간에게 귀속된다.[104]

화해야만 하는 위험을 말한다. (Hilgendorf는 이러한 개인적·복지국가적 위험은 여전히 위험에 대한 시간적·장소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위험을 말한다고 한다. (ders., Gibt es ein Strafrecht der Risikogesellschaft?, NStZ 1993, 10, 11)). 이러한 개인적·복지국가적 위험은 보험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발생시켜 이러한 위험의 사회를 보험사회라고 명명하고, 보험사회에서의 위험은 개인적, 영업적 그리고 국가적 계산의 비용요소가 된다고 한다. 이에 관하여 자세히는 Lau, Soziale Welt 1989, 418ff. 참조.

98) Lau, Soziale Welt 1989, 418, 423.

99) Lau, Soziale Welt 1989, 418, 423.

100) Beste / Wagner, KrimJ 3. Beiheft, 1991, 24, 31; Kindhäuser, Sicherheitsstrafrecht, Universitas 1992, 227, 229.

101) Beck, Risikogesellschaft, 1986, S. 29 und passim.; ders., in: ders. (Hrsg.), Politik in der Risikogesellschaft, 1991, S. 10; Seelmann, KritV 1992, 452.

102) Evers, Kommune 1989/6, S. 33 (Prittwitz, Strafrecht und Risiko, 1993, S. 57에서 재인용).

103) Prittwitz, Funktionalisierung des Strafrechts, StV 1991, 435, 438; ders., Strafrecht und Risiko, 1993, S. 57; ders., Risiken des Risikostrafrechts, in: Frehsee/Löschper/Smaus (Hrsg.), Konstruktion der Wirklichkeit durch Kriminalität und Strafe, 1997, 47, 51.

104) Prittwitz, Strafrecht und Risiko, 1993, S. 51.

iii) *Beck*은 사회국가적 개입주의의 퇴색을 확인하고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미래에 대한 위해화를 통한 기술적 거대혁신의 물결이 이전에는 정치로서 간주되던 것의 경계를 허물고, 전통적으로 비정치적인 영역이 하나의 새로운 정치적인 문화를 형성할 것이라고 한다.[105] 따라서 위험사회에서는 기술적 진보가 더욱더 사회적 논쟁을 결정하게 된다.[106]

iv) 객관적 안전이 발생한 곳이라도 주관적 불안이 광범위하게 확산되는데, 이러한 주관적 불안 또한 객관적 위해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대답이 필요하다. 그러한 경우에 사람들은 위험사회를 '불안사회(Unsicherheitsgesellschaft)'로서 특징지울 수 있다.[107]

v) 협의의 의미에서 위험사회는 행위에 대한 부수효과가 행위를 통하여 추구되어진 목적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회이며, 따라서 계산이 불가능한 위해(Gefahr)를 계산이 가능한 위험(Risiko)으로 전환하는 설득력 있는 메카니즘을 개발해야 하는 사회를 의미한다.[108]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하면, 위험사회는 위해와 불안과의 관련성 측면에서 인류는 전통적인 위해와 관련되어 더 안전해지고, 새로운 손해잠재성과 자생적인 손해잠재성과 관련되어 더 불안해지는 위해사회(Gefahrgesellschaft)이며, 그러한 더욱더 불안해진 위해를 통하여 주관적 불안(subjektive Unsicherheit)이 증가하는 '불안전한 사회(unsichere Gesellschaft)'가 되어진 것이다.[109]

105) Beck, Risikogesellschaft, 1986, S. 317; Herzog, Grenzen der strafrechtlichen Kontrolle gesellschaftlicher Risiken, in: Lahti/Nuotio (Hrsg.), Strafrechtstheorie im Umbruch, 1992, 367.

106) Beck, in: ders. (Hrsg.), Politik in der Risikogesellschaft, 1991, S. 10; Seelmann, KritV 1992, 452.

107) Prittwitz, StV 1991, 435, 438; ders., in: Frehsee/Löschper/Smaus (Hrsg.), Konstruktion der Wirklichkeit, 1997, 47, 51f.

108) Blanke, Zur Aktualität des Risikobegriffs, Leviathan 1990, 134, 136; Prittwitz, StV 1991, 435, 438; ders., in: Frehsee/Löschper/Smaus (Hrsg.), Konstruktion der Wirklichkeit, 1997, 47, 52.

109) Bonß, in: Lippert / Prüfert / Wachtler (Hrsg.), Sicherheit, 1997, 21, 23; Jahn, Das Strafrecht des Staatsnotstandes, 2004, S. 221; Prittwitz, in: Frehsee/Löschper/Smaus (Hrsg.), Konstruktion der Wirklichkeit, 1997, 47, 52.

나. 위험(Risiko)과 위해(Gefahr)

위험은 원래 원거리무역을 위한 항해에 대한 미래의 손해를 상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보험이 도입되면서 그 연구가 시작되었다. 보험에서는 손해에 대하여 금전적 보상만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은 단지 미래를 금전적인 이행만으로 단축시키고 R (위험) = W (손해발생의 개연성) x S (손해크기) 라는 공식을 통하여 미래를 계산가능한 형태로 만들었다. 이러한 공식에 의한 위험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필요로 하는데, 하나는 사건에 대한 발생개연성이 계산되어질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보험에서는 통계를 사용하였고, 다른 하나인 손해크기는 경험적인 규칙성에 근거하여야만 한다.[110] 따라서 위험에 관해서 이야기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 있어서 미래를 계산할 수 있게 하는 것이며, 그것은 모든 불확실에도 불구하고 결정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111], 결국 위험은 인간의 결정과 관련되어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위험개념은 가능한 손해와 관련하여 '위험시에 불안이 지배한다'는 방식으로 미래를 지적하고, 이러한 불안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어질 수 없는 것으로, 왜냐하면 손해의 발생 또는 미발생은 제외할 수도 명확하게 결정할 수도 없는 미래의 사건과 관련되어지기 때문이다. 만약 손해사건이 발생되어진다면 더 이상 위험은 존재하지 않고 단지 하나의 손해만이 존재하게 되는 것으로, 따라서 위험과 미래에 대한 실현은 사후에 처음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위험과 미래는 현재에는 알려져 있지 않다. 이러한 사실이 사회를 아주 극도로 불안하게 한다.[112] 또한 오늘날의 복잡한 기술의 발전을 통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손해는 재앙적이며, 이러한 재앙적 손해는 보험에서의 계산방식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만들었다.[113] 기온변화처럼 이러한 유형의 특징은 한편으로는 원인과 효과사이의 장기간의 시간적 격차가 존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결과에 있어서 참여요소의 수가 너무 많이 관련되어

110) Singelnstein/Stolle, Die Sicherheitsgesellshcaft, 2006, S. 33f.

111) Bechmann, in: Scholtz / Trappe (Hrsg.), Sicherheit, 2003, 131, 134.

112) Bechmann, in: Scholtz / Trappe (Hrsg.), Sicherheit, 2003, 131, 131f.; Bonß, in: Lippert / Prüfert / Wachtler (Hrsg.), Sicherheit, 1997, 21, 25.

113) Bechmann, in: Scholtz / Trappe (Hrsg.), Sicherheit, 2003, 131, 134; Glaeßner, Sicherheit und Freiheit, 2003, S. 22.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 효과는 주로 학문과 기술의 투입을 통해서만 인지할 수 있으며, 행위, 결과 그리고 그 야기자가 분리되어져 있으며, 그리고 행위, 결과, 야기자 사이의 명백한 관련성을 더 이상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114]

위험과는 달리 위해는 인간의 행위와 무관하게 발생되는 사건이다.[115] 이러한 의미에서 위해는 운명으로서 감수해야 하지만, 그에 반하여 위험은 미래의 어떤 것에 대한 결정이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관련되고 그것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개별적인 행위자에게 그 결정에 대하여 귀속되어져야만 한다.[116] 따라서 위험과 위해는 서로 다른 원인과 동기에 의해서 발생되어진 것으로, 그러한 원인·동기의 차이와 마찬가지로 잠재적 위해성에 대한 대응방식 또한 아주 다르다.[117] 하지만 위험사회의 거대위해의 특징은 집단적 결정을 근거로 하여 계산할 수 있는 크기로서 위험과 관련시키고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위험은 여전히 개인에게 있어서는 회피할 수 없는 위해로 표현하는데[118], 이처럼 위험사회에서는 거의 모든 위해를 위험으로서 해석하고, 그것을 통하여 어떤 결정에 대한 거대한 필요성을 만들게 되는데, 이런 의미에서 현대사회를 위험사회라고 명명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119]

위험이라는 용어는 당사자의 자기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되고 그로 인하여 그에게는 회피되어질 수 있는 위해화를 의미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위해화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에 반하여 그러한 위해화에 해당되는 제3자, 예를 들어

114) Bechmann, in: Scholtz / Trappe (Hrsg.), Sicherheit, 2003, 131, 139.

115) Bechmann, in: Scholtz / Trappe (Hrsg.), Sicherheit, 2003, 131, 136.

116) Bechmann, in: Scholtz / Trappe (Hrsg.), Sicherheit, 2003, 131, 137.

117) Hutter,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 10-11/2002, 31, 36.

118) Luhmann, Soziologie des Risikos, 1991, S. 54f., 117; Seelmann, KritV 1992, 452, 452f.

119) Bechmann, in: Scholtz / Trappe (Hrsg.), Sicherheit, 2003, 131, 135; Evers/Nowotny, Über den Umgang mit Unsicherheit, 1987, S. 39. 이에 대하여 Evers와 Prittwitz는 위해를 위험으로 해석하여 그러한 위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우고자 하는 경향의 의미에서 위험사회는 현대사회에 있어서 새로이 발생한 현상을 정확하게 표현하였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현대사회를 위해사회라고 명명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며, 따라서 Ulrich Beck이 위험사회라고 명명하기 위하여 연구대상으로 삼은 것들은 실제로는 위해이기 때문에 Ulrich Beck의 위험사회를 '거대위해의 사회(Gesellschaft der Großgefahren)' (Evers, Kommune 1989, 33 (Prittwitz, Strafrecht und Risiko, 1993, S. 57에서 재인용)) 또는 '위해사회(Gefahrgesellschaft)' (Prittwitz, Strafrecht und Risiko, 1993, S. 57)라고 그 명칭을 변경하여야만 한다고 한다.

반대편 차선에서 운전하고 있는 자, 간접흡연자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위해화는 위험이 아니라 위해에 해당되며, 제3자는 그들에게 위협되어진 위해화에 대하여 그들 자신의 계획적인 행동을 통하여 보호되어질 수 없고, 따라서 제3자는 그 위해화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120] 예를 들어 HIV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의 사례에 있어서, 이러한 위해화를 위험상황으로 해석하는 자는 잠재적 피해자가 감염자와의 성교행위가 자기 자신의 판단에 따른 행위이고, 그로 인하여 발생되어지는 위해화를 자신이 회피하여야 하기 때문에, 잠재적 피해자는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에 반하여 이러한 위해화를 위해로서 해석하는 자는 잠재적 피해자는 자기 자신의 계획적인 행동을 통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결과를 잠재적 피해자가 아닌 감염자의 행위에 귀속시킨다. 더 정확하게 말해서, 감염자에게 책임을 지우고자 하는 자는 이러한 위해한 상황을 위해로서 해석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지우고자 하는 자는 이러한 위해한 상황을 위험으로 해석하게 되는 것이다.[121]

다. 새로운 위험의 저지 또는 감소

위해평가, 위해의 감내 그리고 위해지배와 같은 문제에 따라서 위험사회에서의 중심적인 사회적 이익에 관한 분쟁이 논의되고 있는데[122], 예를 들어 과거에 페스트에 의한 전염을 통하여 사람들이 사망한 것처럼 하나의 자연재앙으로 간주되어질 수 있었던 AIDS의 전염이 그 유포방법과 같은 새로운 지식을 통하여 지금은 범죄로 간주되어지거나, 또는 선진국에서는 폭풍우와 홍수를 통한 자연재해가 지금은 인간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한 손해로서 간주되는 경향이 더욱 더 증가하고 있다.[123] 이러한 경향을 통하여 사람들은 새로운 위험과 관련된 현

120) Neumann, in: HIV und AIDS, 1994, 77, 82f.

121) Neumann, in: HIV und AIDS, 1994, 77, 83. 이러한 이유로부터 형법이라는 용어와 연결할 때, 현대사회에서 새로이 발생된 위험을 저지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형법적 수단을 투입하는 것에 대하여 형법이라는 개념과 연결되는 개념으로서 위험은 적절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며, 오히려 위해형법이 더 적절한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같은 의견: Prittwitz, Strafrecht und Risiko, 1993, S. 377.

122) Herzog, in: Lahti/Nuotio (Hrsg.), Strafrechtstheorie im Umbruch, 1992, 367.

상을 과거와는 달리 '불행(Unglück)'이 아니라 '불법(Unrecht)'으로 간주하여, 새로운 위험의 극복을 다양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구들은 법적 범위에 있어서도 예외가 되어질 수는 없다.

2. 사회에 대한 불안감의 증가

가. 위험에 대한 관점의 차이

위험에 대한 관점은 관찰하는 분야에 따라서 서로 상이하며, 상이한 위험의 관점에 따라서 불안에 대한 느낌 또한 상이하게 된다.

이미 위에서 위험에 관한 개념에서 살펴본 것처럼, 학문적·기술적인 관점에서의 위험개념은 손해의 규모와 손해발생에 대한 개연성이라는 두 가지 척도를 통해서 형성된 위험산정의 방식이다. 이러한 위험산정의 목적은 위험의 동일성과 양적 기술이고[124], 따라서 위험에 대한 객관적 진술을 위한 방식이다.

언론에 있어서는 위험의 실제적·객관적인 정도와는 관련성이 없고[125], 위험에 대한 언론보도는 국민에게 도달되는 위험에 대한 인지가 중요한데,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에게 주어지는 위험에 대한 인지가 왜곡되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126] 결국 위험의 설명에 있어서 학문적인 정확성은 저널리즘의 중심적인 표현의 질에 대한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데, 즉 학자와 같은 전문가에 있어서 정확성은 표현의 가장 중요한 기준임에 반하여, 저널리스트들에게는 단지 하위의 역할에 그치게 된다.[127] 예를 들어 언론에서 보도되는 사망사건의 경우에, 살인이나 자연

123) Prittwitz, in: Frehsee/Löschper/Smaus (Hrsg.), Konstruktion der Wirklichkeit, 1997, 47, 58.
124) Schütz/Peters,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 10-11/2002, 40.
125) Schütz/Peters,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 10-11/2002, 40, 41.
126) Hefendehl, StV 2005, 156, 159; Kube, in: Kühne (Hrsg.), FS für Miyazawa, 1995, 199, 204; Prittwitz, Strafrecht und Risiko, 1993, S. 69, 71, 72; ders., FS für Lüderssen, 2002, 499, 503; ders., in: Pilgram/Prittwitz (Hrsg.), Kriminologie, 2005, 215, 218; Schütz/Peters,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 10-11/2002, 40, 41f.
127) Schütz/Peters,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 10-11/2002, 40, 42.

재해로 인한 사망사건의 경우에는 종종 과대평가 되어지지만, 그와는 반대로 천식과 뇌출혈과 같은 일상적인 사망사건의 경우에는 그다지 보도되지 않거나 또는 과소평가되어진다. 또한 세상의 모습을 선택적으로 전송하는 언론매체를 정보원으로서 이용하는 것은 허위의 개연성을 산정할 위험이 존재할 수 있다.[128]

일반인에게 있어서 위험에 대한 관점은 학술적·미디어적 관점보다 더 쉽고 더 광범위하다. 즉 일반인은 위험에 대하여 방법론적으로 세밀하고 체계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절차에 근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쉽고, 그리고 일반인들은 손해의 중요도와 또한 손해발생의 개연성 이외에도 학문적·기술적 위험산정에서 고려되지 않는 질적 측면을 다수 고려하기 때문에 더 광범위하다.[129] 이러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 일반인에 대한 위험인지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들은 위험과의 친밀성, 위험원에 대한 개인적인 유용성, 사회내에서의 유용성과 위험의 분배 그리고 미래의 세대에 대한 가능한 영향력 등과 같은 위험의 개인적인 해당성이다.[130] 또한 그 밖에 분노를 야기하는 표현은 중립적인 표현 또는 위험야기자에 대한 관대한 표현보다 위험판단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위험설명을 감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위험판단을 더 높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인에게 있어서 위험판단은 손해사건에 대한 주관적 개연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131]

나. 주관적 측면에서의 국민 불안감

위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일반인에게는 새로운 위험의 출현으로 인한 객관적 상황보다도 시민 또는 사회적 단체의 인식, 가치태도 그리고 행위방식과 같은 주관적 측면에서의 국민 불안감이 더 큰 원인을 차지하고, 이러한 주관적 불안감은 계산하기 또한 어렵다.[132] 인류의 역사에서는 항상 위험이 존재하고 있었고, 또한 미래에도 새로운 위험은 존재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이러한 위험은

128) Schütz/Peters,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 10-11/2002, 40, 44.

129) Schütz/Peters,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 10-11/2002, 40, 43.

130) Schütz/Peters,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 10-11/2002, 40, 44.

131) BMI / BMJ, 2. Periodischer Sicherheitsbericht, S. 503; Kube, FS für Miyazawa, 1995, 199; Schütz/Peters,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 10-11/2002, 40, 44.

132) Glaeßner, Sicherheit und Freiheit, 2003, S. 33, 150; Hassemer, vorgänge 3/2002, 10, 13.

객관적 위험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사회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선과 악의 판단기준의 결핍, 타인에 대한 신뢰가능성의 약화 그리고 과잉정보로 인하여 오히려 국민들에게 의심·불확신·불안들을 증폭시키고 있다. 특히 현대의 대중매체의 시대에 있어서 엄청난 양의 정보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신뢰할 만한 정보를 취사선택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또한 대중매체를 통한 위험의 보고가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더 불안감을 갖도록 한다. 예를 들어 닭 등 가금류에 발생된 조류독감에 대한 뉴스보도는 사람들로 하여금 닭을 비롯한 음식물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도록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음식물에 대한 불안감을 증가시키는 역기능 또한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정확한 언론보도를 통하여 오히려 일반대중에게 위험에 대한 민감성만을 증가시킬 뿐이다.[133] 또한 시민들에 의해서 주관적으로 느끼는 불안감은 위험사회에서 전형적인 위험들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고, 오히려 주관적으로 느끼는 불안이 객관적인 불안을 분명하게 초과한다. 또한 일반국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또 다른 주체는 형사사법기관 스스로가 될 수도 있다. 그들이 발표하는 범죄에 대한 통계들이 그들의 목적을 위해 왜곡되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이민 청소년들에 의하여 범하여진 범죄뿐만 아니라 청소년에 의한 범죄도 모두 사회적 문제이지만, 그러나 형사사법기관이 이민 청소년들에 의하여 범하여진 범죄의 통계를 보여줌으로써 이민자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다. 불안감의 제거를 위한 형법의 투입

따라서 이러한 불안감으로 인하여 국가 또는 사회의 안전을 보호하고 유지하는 것이 국가가 충족시켜야만 하는 사회적 요구가 되어졌다.[134]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일반적으로 퍼져있는 삶에 대한 불안의 은유가 되어지고 있는데, 예를

133) Kube, FS für Miyazawa 1995, 199; Münkler, Die neuen Kriege, 3.Aufl., S. 189; Prittwitz, FS für Lüderssen, 2002, 499, 503; Silva Sánchez, Die Expansion des Strafrechts, 2003, S. 12 참조.

134) Hörnle, GA 2006, 80, 82; Kindhäuser, Universitas 1992, 227, 233; Prittwitz, Strafrecht und Risiko, 1993, S. 73; Silva Sánchez, Die Expansion des Strafrechts, 2003, S. 13f.

들어 약자에 대한 강도사건, 주거침입, 자동차절도, 아동에 대한 폭력, 외국인에 대한 폭력 등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근원이 되어지고 있다. 여기에서 국가의 과제로서 국민의 불안감을 제거하고 사회의 안전을 향상시키는 것은 사회내의 범죄로부터의 안전을 의미하고, 결국은 사회적 안전을 위해 형법적 수단을 투입함으로써 공동체를 강화해야 할 근본적인 임무가 형법에 부여되어진다고 할 수 있다.[135] 하지만 이러한 범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형법적인 강화를 정당화하는 범죄유형이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또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실재로 대규모의 사회적 문제로서 억압적인 형사정책을 통해서는 제거할 수 없다.[136] 그리고 현재의 경향은 불안감의 제거가 아니라 불안감의 감소로서, 이러한 불안감의 감소는 제한되어진 안전에의 약속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급속하게 변화하는 환경조건하에서는 절대적 안전은 생성되어질 수 없을 것이다.[137]

3. 더 많은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

가. 소극적 주체로서의 국민

현대사회에 있어서 복지국가의 진전이 국민들의 인식변화를 초래한다. 과거 산업사회에 있어서 국민들은 산업화의 역군으로서 그들이 적극적인 행위자유를 가지고자 하였지만, 오늘날의 후기산업사회의 복지국가에서는 고령화사회가 되어지고, 그러한 고령화 사회에서 국가로부터 연금을 수령하여 생활하는 자들이 사회의 중심부에 위치하게 된다. 또한 복지국가의 발전은 경제생활자들이 획득한 부에 대한 조세징수를 통하여 생활하지 못하는 자에게 국가의 공적 자금이

135) Silva Sánchez, Die Expansion des Strafrechts, 2003, S. 15.

136) BMI / BMJ, 2. Periodischer Sicherheitsbericht, S. 510; Hassemer, StV 1995, 483, 488; Kube, FS für Miyazawa, 1995, 199, 204.

137) Bonß, in: Lippert / Prüfert / Wachtler (Hrsg.), Sicherheit, 1997, 21, 33; Glaeßner, Sicherheit und Freiheit, 2003, S. 43.

수여되어진다. 이러한 복지국가에 있어서는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 자 스스로 노동의욕을 상실시키는 부정적 현상 또한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사람들은 그들에게 주어지는 적극적인 행위의 자유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생활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소극적 자유를 원하게 되고, 결국 그들은 사회 내에서 적극적 주체가 아닌 소극적 주체가 되어진다. 또한 이러한 소극적 주체의 비율은 미래에는 더욱 더 증가하게 될 것이다.[138] 이러한 소극적 주체가 주인공인 사회에서는 인간의 결정에 의해서 위험에 대한 극복이 달성되어질 수 있다는 인식이 발생하며, 따라서 불행을 불법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향이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경향의 증가는 형법을 확장시키는 요소로 작용한다. 피해자들은 가해진 손해가 우연에 의하여 발생되어질 수 있거나 또는 그러한 손해를 본인이 감수할 수 밖에 없다는 가능성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이러한 생각은 불안감과 연결되어져 있다. 따라서 어떤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사람들은 민법적이든 형법적이든 상관없이 어떤 행위를 범한 책임있는 제3자가 존재한다고 믿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자에게 책임을 지우기 위해 귀속의 확장이 필요하고, 형법에 있어서 이러한 귀속확장을 위한 방법으로 추상적 위험범이 확대되어지고 있다.[139]

나. 사회구성원들의 범죄피해자와의 동일화

사회에 대한 국민 불안감의 증가는 사회구성원의 범죄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 놓았는데, 즉 사회구성원이 범죄 행위자가 될 수도 있다는 인식보다는 차라리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현상이 시민들의 일반적 인식이 되어졌으며, 따라서 형법학과 형사판례에 있어서 사회구성원의 다수를 잠재적 범죄자가 아니라 오히려 잠재적 피해자로 간주하고, 범죄자를 안전의 위협자로 간주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140] 이러한 인식으로 인하여 강력하고 예방지향적이고 개입지향

138) 이에 관하여 자세히는 Silva Sánchez, Die Expansion des Strafrechts, 2003, S. 15ff. 참조.

139) 이에 관해서는 Herzog, Gesellschaftliche Unsicherheit, 1990, S. 54; Kindhäuser, Gefährdung als Straftat, 1989, S. 280 참조.

140) Glaeßner, Sicherheit und Freiheit, 2003, S. 153; Greco, GA 2006, 96, 108f.; Hassemer, vorgänge 3/2002, 10, 13; Silva Sánchez, Die Expansion des Strafrechts, 2003, S. 22.

적인 형사정책을 정당화시키고 형법의 확장을 근거지운다. 따라서 형법사상이 우선적으로 저항력없는 범죄자에 대한 국가의 무기로서 더이상 간주되어지지 않고, 강자의 범죄에 대항하기 위한 사회의 무기로서 간주되어 지는데, 형법의 사상이 범죄자의 Magna Charta라는 전통적인 사상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Magna Charta라는 사상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141]

다. 국가의 과제로서 더 많은 안전의 생성

위험과 불안의 증가로 인하여 안전은 인간의 기본적 필요성이고 전통적인 집단법익이 되었으며, 안전에 대한 보장 또는 재생성은 국민의 가치관에 있어서 더 높은 자리값을 차지하게 되었으며, 급속한 사회적·정치적 변화와 관련하여 안전에 대한 소망은 현대사회의 필수적 희망을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현대사회에서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과제가 국가에게 부과되었으며, 내적·외적인 평화의 유지가 국가와 정치적 기구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된 것은 비단 2001년 9.11테러에 의한 것만은 아니다.[142]

라. 경찰법이 아닌 형법을 통한 더 많은 안전의 추구

불안, 특히 범죄에 대한 불안을 해결하고 국가의 내적 안전을 생성하기 위한 해결책을 사람들은 원래 경찰법에서 찾았다. 왜냐하면 국가의 내적 안전을 위해서는 범죄발생 이전에 범죄에 대한 인지를 통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 이러한 범죄예방에 대한 의무는 경찰에게 부여되어져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의 '더 많은 안전(mehr Sicherheit)'에 대한 요구는 경찰법이 아니라 형법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경향으로, 즉 불안으로부터 발생되어진 두려움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 형법적 보호의 확대가 점점 더 크게 요구되어지

141) BMI / BMJ, 2. Periodischer Sicherheitsbericht, S. 667; Silva Sánchez, Die Expansion des Strafrechts, 2003, S. 21. 독일연방내무부와 독일연방법무부의 제2차 안전보고서에 의하면 이것이 범죄예방의 목적이라고 하고 있다. (BMI / BMJ, 2. Periodischer Sicherheitsbericht, S. 667)

142) P.-A. Albrecht, Kriminologie, 3.Aufl., 2005, S. 70; Glaeßner,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 10-11/2002, 3.

며, 안전과 질서의 수호자로서 강력한 국가가 요구된다는 경향이 강화되었고, 이러한 경향은 새로이 화학·생명·원자력기술과 같은 신기술과 연결된 생명·환경에 대한 위해에 대하여 안전을 요구하고, 이는 '안전에 대한 기본권(Grundrecht auf Sicherheit)'으로 이론구성 되었다. 연방헌법재판소[143]는 국가의 보호의무라는 원칙을 통하여 위험사회로서 이해되어진 사회의 이러한 새로운 범위에 대하여 형법규범을 통한 대응이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다.[144] 하지만 이러한 예방을 위한 수단으로 형법을 투입하는 것은 전통적인 형법의 프로그램과는 모순되는데, 왜냐하면 전통적인 형법적 프로그램은 엄격성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즉 예를 들어 테러행위에 대한 국가의 대응은 통제의 증가로 표현되는데, 통제를 통하여 계속적인 테러행위의 준비를 실패하게 하거나 테러로 인한 위해를 조기에 인식하고 그것을 제어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유형의 안전에 대한 사전조치는 국민들에게 일상적이고 두려움에 대한 근심이 없는 광범위한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부득이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예방에 있어서 틈이 발생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미래의 위험에 대한 불명확성과 연결되어 개연적인 위해방지를 위해 필요한 것보다 더 강력하게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도록 유혹할 수 있기 때문이다.[145] 이러한 비판에 대하여 형법적 수단을 통하여 더 많은 안전을 생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법치국가적인 전통적 보호방식을 변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단지 이러한 보장이 너무 엄격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유연성만 허용하면 된다고 주장하며[146], 이를 위한 예로서 환경, 경제 그리고 정치적 부패와 같은 범죄를 언급하고 있다.

143) BVerfGE 39, 1 참조. 또한 BMI / BMJ, 2. Periodischer Sicherheitsbericht, S. 532f.; Grimm, JZ 2009, 596, 598 참조

144) Calliess, NJW 1989, 1338.

145) Meyer, in: Scholtz / Trappe (Hrsg.), Sicherheit, 2003, 71, 74f.

146) Silva Sánchez, Die Expansion des Strafrechts, 2003, S. 14 참조.

제2절 위험형법(Risikostrafrecht)

1. 법치국가적 형법귀속의 어려움

새로운 거대위험으로 특정지워지는 위험사회에서는 형법이 새로운 거대위험을 강력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거대위해를 제거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서 간주되어진다. 하지만 형법은 사회계약에 근거한 자유주의적·법치국가적 형법으로서 원칙에의 엄격한 구속이라는 전제조건하에서 사회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최후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사회에서 새로운 거대위해로부터 발생되어진 범죄유형들에 대처하는 데에는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i) 법치국가적인 형법은 당사자들간의 사회적 분쟁에만 개입하기 때문에, 형법의 투입을 통하여 사람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보호하게 된다. 하지만 위험사회에서는 사람들의 행위조종을 위한 수단으로 형법을 투입하여 현재 주어진 사회질서를 유지하여 미래의 존재를 보장하고자 하지만, 법치국가적 형법은 이러한 미래의 존재보장(Zukunftssicherung)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또는 단지 형법의 부산물로서만 미래의 존재보장이 달성될 수 있을 뿐이다.[147] 또한 미래의 재앙을 저지 또는 감소시키기 위한 행위조종의 수단으로 형법을 투입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재앙에 대한 방법과 범위 등을 완전하게 예측하거나 인지할 수 있어야만 하지만, 그것은 항상 불가능하다.

ii) 형법의 투입을 위해서는 불법적인 행태가 존재해야만 하는데, 법치국가적 형법에서는 그 불법을 비교적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위험사회에서 새로운 거대위험과 관련되어 발생되어지는 범죄유형들은 환경오염, 핵물질에 의한 오염 그리고 유전물질에 대한 조작 등을 통하여 발생되어지는 것들로서 감각적으로 쉽게 인지되어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해당 전문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통해서도 의견일치가 쉽지 않은 영역들이다. 이러한 영역들에서는 그것의 위해잠재성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기

147) Stratenwerth, ZStW 105 (1993), 679, 680 참조.

때문에, 그에 따른 불법구조를 형성하는 것 또한 쉽지 않아 형법의 투입을 어렵게 한다.[148]

iii) 법치국가적인 형법에 있어서 범죄주체는 구체적인 개인이다. 하지만 오늘날의 사회는 기업과 같은 법인으로 대표되는 경제주체가 그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제주체들은 거대한 조직을 통하여 운영된다. 이러한 메카니즘에 따르면 조직의 크기에 차이는 있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조직에 참여하고, 조직내에서의 지위와 역할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그 조직을 위한 기여를 통하여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된다. 위험사회에서는 이러한 조직을 통하여 발생된 거대위험의 사회이고, 이러한 경우에 거대위험의 발생에 대한 개인적 기여는 전혀 의미가 없거나 또는 수많은 다른 부분행위들과의 상호작용속에서 아주 사소한 기여만을 하기 때문에, 조직내에서의 범죄발생과 관련된 구체적인 개별적 행위자를 발견하거나 행위자들간의 행위기여도를 측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주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행위기여도를 측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의미가 없다. 따라서 법치국가적 형법에 있어서 구체적인 개별적 행위자를 발견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형법적 귀속의 원칙으로 개별적인 범죄행위자를 고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 의심되어지고 심지어 진부한 것으로 간주되어진다.[149]

iv) 법치국가적인 형법에 있어서 행위형법의 원칙은 행위시의 범죄상황에 따른 처벌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의 위험사회에서 요구되어지는 다양하고 상황에 적합한 범죄화를 규정하거나 처벌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치국가적 형법에 따른 행위책임의 원칙은 손해와 그에 따른 특정된 개인에게 지향된 처벌로써, 위험사회에서 새롭게 발생되는 거대위험의 복잡하고 불분명한 전개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고, 다만 그러한 사건의 발생 후에 그러한 사건을 쫓아갈 수만 있기 때문에, 다양하고 상황에 적합한 범죄화를 요구하는 현대형법의 요구에는 부응하

148) Stratenwerth, ZStW 105 (1993), 679, 681 참조.

149) Stratenwerth, ZStW 105 (1993), 679, 681f.; Wohlers, Deliktstypen des Präventionsstrafrechts, 2000, S. 45f. 참조.

지 못하게 된다.[150]

v) 무죄추정의 원칙은 어느 누구라도 기판력있게 유죄선고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유책한 행위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국가적 개입도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형법적 개입을 수단으로 하여 더 나빠질 수 있는 것을 제때에 예방해야만 한다는 현대사회의 긴급한 이익과 모순되어진다.[151]

vi) 형사소송법에 따른 형사소송의 일반적인 사례에서는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하여 구두재판에 의한 본재판을 통하여 해당 법관에 의하여 선고된 판결을 통하여 형사소송절차를 종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구두재판에 의한 본재판을 통한 절차의 종결은 장기간의 소송기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소송경제상의 이유로, 현대 형사사법에 있어서 실체적 진실의 해명이전 또는 해명없이도 소수의 해당 당사자들과 그 중재자들이 참여하는 비공식적인 협상을 통하여 재판을 조기에 종결하는 것이 선호되어진다.[152]

이처럼 사회계약에 근거한 법치국가적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원칙 및 도그마틱은 현대 위험사회에서 새롭게 발생된 거대위험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법적 흠결이 존재하고, 시기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으며,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이러한 비판에 근거하여 위험사회에서의 새로운 위험에 대한 효율적이고 적절한 대응을 위한 형법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이것이 위험형법이다. 위험형법의 특징은 전단계 범죄화(Vorfeldkriminalisierung), 형법의 기능화를 위한 예방(Prävention zur Funktionalisierung des Strafrechts) 및 결과지향적 형법(das folgenorientierte Strafrecht) 등이다.

150) Hassemer, StV 1995, 483, 486; Wohlers, Deliktstypen des Präventionsstrafrechts, 2000, S. 46 참조.

151) Hassemer, StV 1995, 483, 486 참조.

152) Hassemer, StV 1995, 483, 486 참조.

2. 전단계 범죄화

가. 위험형법에서의 가벌적 행태(strafbares Verhalten)

형법에 있어서 처벌대상이 되는 행태는 모든 행위가 아니라 형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처벌할 필요가 있는 행위이며, 이러한 처벌할 필요가 있는 형법규범에 대하여 실재적인 존재를 사전에 발견하고 이러한 존재가 현재 이곳에서 정당화되어질 수 있으며, 그리고 이러한 존재가 확장 또는 감소되어져야만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형사정책을 통하여 항상 제기해야만 한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위하여 중심적 기준으로 제시되어지는 것이 인간의 행태에 대한 당벌성으로,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입법가는 어떤 행위가 당벌적인 경우에만 형벌을 통한 위협을 규정해야만 한다.

형법적인 투입을 위하여 당벌적인 행태는 정당성과 합목적성을 통하여 그 가벌적인 행태가 결정되어지는데, 법치국가적 형법에 있어서의 가벌적 행태는 악으로 간주되어지는 행태를 실행한 개별적인 적대자를 향하고 있다. 하지만 위험사회에서의 거대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의 위험형법은 가벌적 행태를 개별적인 적대자를 통한 범죄행위가 아니라 범죄실행의 환경을 향하고 있다. 따라서 형법이 더 이상 이미 발생되어진 문제 또는 분쟁에 대한 해결이 아니라 사회유해적인 일탈행위의 저지를 위하여 투입되어지며, 이러한 거대위험의 제거라는 목적달성을 위하여 법치국가적 형법에 따른 가벌성을 확장하고자 시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형법을 이해하고 또한 정당화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위험형법을 통하여 새롭게 범죄화된 행태는 예를 들어 무기거래에 있어서 판매계약의 체결 또는 핵발전소에 있어서의 감독행태 또는 통제행태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폭력적이지는 않지만, 그 효과에 있어서는 폭력적인 행태의 효과에 전혀 뒤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범죄화를 통하여 관찰할 수 있는 형법적인 대상으로서 가벌적 행태는 주관적으로 악이라기 보다는 차라리 부주의한 것으로 특징지울 수 있으며, 객관적으로는 침해범에서 위해범으로 행위결과의 전치화를 통하여 비록 행태에 대한 통계적·예측적 위험성을 확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개

별적 사례에서는 인과관계 증명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위해로운 것은 행태의 누적적인 발생을 통하여 달성되어질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위험사회의 새로운 범죄화는 일탈행위라기 보다는 차라리 체계합치적 행위라고 하여야 하며, 이러한 가벌적 행태의 수신자가 일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특정권력의 소유자로서 특정 인적 집단을 그 가벌적 행태의 수신자로 삼게 된다. 이처럼 위험형법은 형법의 대상으로 가벌적인 행태를 악에서 위해한 것으로 패러다임을 전환시킴으로써, 금지된 가벌적 행태는 사회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범죄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태가 부적합하도록 만들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그러한 행태를 금지하거나 위해성이 명백하지 않은 행태 또한 금지시키고자 한다.

나. 초개인적·집단적 법익

형법은 불법에 대한 반작용으로 투입되어지는 법적 수단이다. 형법적인 가벌성은 이러한 불법에 반하여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간주되어지는 재화, 곧 법익을 결정하는 것에서 시작해야만 한다. 결국 법익은 정당한 당벌성 결정의 중심적인 기준이 되는 것이다.[153] 즉 정당한 당벌성 결정을 위한 법익의 침해 또는 위태화는 개인 또는 사회의 근본적인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만 어떤 행태가 형벌로 위협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익개념을 통하여 입법자의 형법규범과 행태의무에 대한 형법적 결정에 있어서 자의적인 처분을 제한하고, 이러한 의미에서 법익개념은 체계비판적 또는 체계제한적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154] 법익은 범죄화와 비범죄화, 금지된 것과 허용된 것 사이의 기준을 제공해야만 한다. 전통적인 법치국가적 형법에 있어서의 법익의 기능은 시민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범위에서 공동의 사회생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153) NK-Hassemer/Neumann, Vor § 1, Rn. 150; Beste / Wagner, KrimJ 3. Beiheft, 1991, 24, 26f.; Frisch, FS für Stree und Wessels, 1993, 69, 70; Hefendehl, GA 2007, 1, 2; Jescheck / Weigend, Strafrecht. AT, 5.Aufl., 1996, S. 50f.; Wohlers, Deliktstypen des Präventionsstrafrechts, 2000, S. 217.

154) NK-Hassemer/Neumann, Vor § 1, Rn. 150; Frisch, FS für Stree und Wessels, 1993, 69, 70; Hassemer, Theorie und Soziologie, 1973, S. 20ff., 27ff.; Hefendehl, GA 2007, 1, 2.

개인과 직접 관련되는 법익들이 형법적 보호의 중심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범죄화를 위한 소극적 기준으로서 구체적 법익이 존재하지 않으면 범죄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었다.[155] 이러한 의미에서 법익은 개인과 관련되는 보호할 만한 이익으로서 법익을 규정하고, 이러한 법익보호가 형법의 과제로서 형법의 투입을 정당화한다.[156]

위험사회에서는 개인적 관련성을 강조하는 법익개념은 유지되기 어려운데[157], 왜냐하면 위험사회에서는 인간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관련성 또는 조직의 보호라는 것이 강조되며[158], 이러한 의미에서 전통적 의미의 법익이론은 범죄의 대상을 찾는 것에 머물러 있는 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위험사회에서의 거대위험 영역들은 경제, 환경, 조세, 정보처리, 테러리즘, 마약 그리고 위험물에 대한 수출 등과 관련되어 발생될 수 있는 범죄들이다. 위험형법을 통하여 대처하고자 하는 범죄들은 개별적 시민, 즉 개인과는 단지 간접적으로만 관련되어진 범죄들로서, 이러한 범죄들은 개인과의 직접적 관련성에 따른 법치국가적 형법의 법익보호원칙에 근거하여 범죄화를 하는 경우에는, 형법을 통한 법익보호는 어떠한 희망도 가질 수 없다. 위험사회의 거대위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투입되는 위험형법의 실효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거대위해와 직접적 관련성을 가지고 있

155) Appel, Verfassung und Strafe, 1998, S. 390, 597; Hassemer, Theorie und Soziologie, 1973, S. 20ff., 27ff.; ders., ZRP 1992, 378, 380; Hefendehl, GA 2007, 1, 14; Lauterwein, Symbolische Gesetzgebung, 2006, S. 19; Müssig, Schutz abstrakter Rechtsgüter, 1994, S. 9; Roxin, Strafrecht. AT, Bd. I, 4.Aufl., 2006, S. 28f. (Rn. § 2, 46ff.)

156) NK-Hassemer/Neumann, Vor § 1, Rn. 150; SK-Rudolphi, Vor § 1 Rn. 2ff.; Frisch, FS für Stree und Wessels, 1993, 69, 70; Hohmann, Das Rechtsgut der Umweltdelikte, 1991, S. 136ff.; Hörnle, in: Hefendehl / von Hirsch / Wohlers (Hrsg.), Die Rechtsgutstheorie, 2003, 268; Jäger, Strafgesetzgebung und Rechtsgüterschutz, 1957, S. 18ff.; Jescheck / Weigend, Strafrecht. AT, 5.Aufl., 1996, S. 50f.; Lauterwein, Symbolische Gesetzgebung, 2006, S. 19; Mir Puig, GA 2006, 667, 677; Müssig, Schutz abstrakter Rechtsgüter, 1994, S. 1; Roxin, Strafrecht. AT, Bd. I, 4.Aufl., 2006, S. 28f. (Rn. § 2, 46ff.); Schünemann, Fs für Roxin, 2001, 1, 27; Staechelin, in: Lüderssen (Hrsg.), Aufgeklärte Kriminalpolitik, Band I: Legitimationen, 1998, 239, 262.

157) Amelung, in: Hefendehl / von Hirsch / Wohlers (Hrsg.), Die Rechtsgutstheorie, 2003, 155, 161; Kindhäuser, Universitas 1992, 227, 231.

158) Amelung, in: Hefendehl / von Hirsch / Wohlers (Hrsg.), Die Rechtsgutstheorie, 2003, 155, 180; Wessels / Beulke, Strafrecht. AT, 39.Aufl., 2009, S. 2 (Rn. 7).

는 사회 또는 국가의 제도 자체를 보호법익으로 간주하여야만 하고, 따라서 인간다운 삶을 위한 행복의 보장, 국민건강, 자본시장 또는 국가의 경제후원제도의 보장, 경제와 행정에 있어서의 정보처리 등의 기능유용성의 보장 등이 중요한 범죄화의 영역으로 간주되어진다.[159] 개인적 관련성을 초과하는 이러한 법익들을 초개인적 법익, 집단적 법익 또는 보편적 법익이라고 부르고 있다. 개인적 법익들의 법익객체에 있어서는 주로 침해를 야기하는 행위를 직접 형법적 규범으로 연결시키는 것으로 충분하지만, 그에 반하여 집단적 법익의 법익객체에 있어서 형법적 보호가 직접적 침해를 야기하는 행위에 처음으로 연결되어지는 경우에는 형법적 보호는 더 이상 어떠한 의미도 가질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집단적 법익의 형법적 보호를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형법적 보호수단이 고유한 침해 이전의 단계에서 투입되어져야만 한다.[160]

위험사회의 거대위험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전단계 범죄화가 요구되어지고, 이러한 전단계 범죄화를 위한 사용수단으로 집단적 법익 또는 보편적 법익이 형사정책을 주도하고 있다.[161] 보편적 법익의 위태화는 개인적인 위해가 아니라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거대교란으로서 정의되어져, 결국 전체적인 질서를 정비하고, 이를 통하여 개인들에 대한 행위조종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자 한다.[162] 그 결과 법익보호원칙은 형법이 더 이상 개인적 법익에 대한 보장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러한 개인적 법익과 관련된 두려움 없는 존재확신의 보장이 더욱 더 중요해지며[163], 또한 두려움 없는 존재확신의 보장을 위해서는 두려움 없는 존재확신이 어떤 객관적인 위해상황으로부터 발생되었다는 것을 결코 근거지워질 수 없는 곳이라 하더라도 범죄구성요건이 창설된다.[164]

159) Hassemer, NStZ 1989, 553, 557; ders., Grundlinien einer personalen Rechtsgutslehre, in: ders., Strafen im Rechtsstaat, 2000, 160, 164.

160) Schulenburg, in: Hefendehl / von Hirsch / Wohlers (Hrsg.), Die Rechtsgutstheorie, 2003, 244, 252.

161) Hassemer, NStZ 1989, 553, 557; ders., ZRP 1992, 378, 381; ders., Produktverantwortung, 2.Aufl., 1996, S. 10f.; ders., vorgänge 3/2002, 10, 11; Prittwitz, in: Pilgram / Prittwitz (Hrsg.), Kriminologie, 2005, 215, 223.

162) Kratzsch, Verhaltenssteuerung und Organisation, 1985, S. 298.

163) Kindhäuser, Gefährdung als Straftat, 1989, S. 227ff.; Seelmann, KritV 1992, 452, 455.

다. 추상적 위험범

형법구성요건의 정당성은 단지 형법적으로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는 보호법익에 대한 제시만으로는 근거지울 수 없으며, 이러한 보호이익을 위한 형법구성요건으로서 파악된 행위방식과 연결되는 관계 또한 중요하다.[165] 이 경우에 있어서 개인적 법익들을 구체화하는 법익객체는 침해범과 구체적 위험범을 통하여 항상 효과적으로 보호되어질 수 있는 것에 반하여, 집단적 법익에 소속되어질 수 있는 법익객체의 보호를 위해서는 단지 추상적 위험범만이 고려되어진다.[166] 오늘날의 형사정책의 주도권을 법익론에서 집단적 법익이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범죄형태와 관련되어서는 추상적 위험범이 그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추상적 위험범이 범죄적 행위의 통상적 형태로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은 오늘날의 형법전개에 있어서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167]

현대 형법에 있어서 법익보장이라는 형법과제를 개별적인 행위규범에서 사회적 교환관계의 집단적 행위규범으로 전환하여 형법규범의 예방적 실마리를 찾고자 한다면, 형법은 행위의 결과발생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고,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행위 그 자체를 금지시켜야만 하기 때문에, 행위만이 형법적인 규범논리에서의 논리적·직접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핵심역할을 수행하게 된다.[168] 그 결과 형법의 범죄유형이 전통적인 침해범에서 추상적 위험범으로 전환되어지며[169], 국가는 최소한 단기간일지라도 현재 상태의

164) Seelmann, KritV 1992, 452, 455.

165) von Hirsch / Wohlers, in: Hefendehl / von Hirsch / Wohlers (Hrsg.), Die Rechtsgutstheorie, 2003, 196, 197.

166) Schulenburg, in: Hefendehl / von Hirsch / Wohlers (Hrsg.), Die Rechtsgutstheorie, 2003, 244, 251f.; Sternberg-Lieben, in: Hefendehl / von Hirsch / Wohlers (Hrsg.), Die Rechtsgutstheorie, 2003, 65, 72; Wohlers, Deliktstypen des Präventionsstrafrechts, 2000, S. 307ff.

167) Bunzel, in: Hefendehl / von Hirsch / Wohlers (Hrsg.), Die Rechtsgutstheorie, 2003, 96, 106; Kindhäuser, Gefährdung als Straftat, 1989, S. 225; Nuotio, in: Lathi / Nuotio (Hrsg.), Strafrechtstheorie im Umbruch, 1992, 175, 185.

168) Prittwitz, StV 1991, 435, 439.

169) Kindhäuser, Universitas 1992, 227, 228; Schünemann, GA 1995, 201, 212.

보장을 위해서라도 추상적 위험범의 범죄유형을 가지고 있는 형법규범들을 유지, 확장 또는 강화하고자 한다.[170]

3. 형법의 기능화를 위한 예방

가. 형법의 기능화

그동안 '예방'이라는 개념은 형법에서는 주로 형벌이론으로 사용되었는데, 위험사회에서는 거대위해를 제거하기 위한 형법적 수단으로서 '예방'의 개념을 전환하여 사용하고자 하며, 이를 위한 근거가 '형법의 기능화(Funktionalisierung des Strafrechts)'로서 '형사사법의 기능유용성(Funktionstüchtigkeit der Strafrechtspflege)'이라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171]에 의하여 헌법적인 원칙이 되었다. 윤리의 최소한의 보장이라는 형법은 과거에는 형사정책이 넘을 수 없는 한계로서 간주되었지만, 오늘날과 같은 위험사회에서는 자유주의적인 엄격한 구조를 벗어나 사회 또는 국가의 거대위해에 대한 조종수단으로 형법을 변화시켜, 형법을 문제해결과 위험지배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자 한다.[172] 이럴 경우 거대위해의 조종수단으로서 형법의 효율화를 위하여 예방적 패러다임을 필요로 하고, 이러한 예방적 패러다임을 통하여 안전에 대한 생성과 유지의 체계로서 형법을 위치시키고자 시도한다. 이러한 시도를 위하여 형법을 형사정책의 넘을 수 없는 한계가 아니라 형사정책의 수단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데[173], 이러한 변화를 위해

170) Jakobs, ZStW 107 (1995), 843, 855f.

171) BVerfGE 33, 367, 383.

172) P.-A. Albrecht, Kriminologie, 3.Aufl., 2005, S. 69; Bunzel, in: Hefendehl / von Hirsch / Wohlers (Hrsg.), Die Rechtsgutstheorie, 2003, 96, 107; Hassemer, NStZ 1989, 553, 558; ders., ZRP 1992, 378, 380; Kratzsch, Verhaltenssteuerung und Organisation, 1985, S. 30f.; Lauterwein, Symbolische Gesetzgebung, 2006, S. 17; Prittwitz, StV 1991, 435, 438; ders., in: Bora (Hrsg.), Rechtliches Risikomanagement, 1999, 193, 198; Vormbaum, ZStW 107 (1995), 734, 742; Wohlers, Deliktstypen des Präventionsstrafrechts, 2000, S. 36.

173) NK-Hassemer/Neumann, Vor § 1, Rn. 342ff.; P.-A. Albrecht, StV 1994, 265ff.; ders., Die vergessene Freiheit, 2.Aufl., 2006; Hassemer, StV 1985, 483ff.; Naucke, KritV 1993,

서는 형법을 기능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174] 형법에서의 기능주의[175]는 당벌성에 대한 결정과 그 집행의 규범적 원칙에 정치적 이익을 침투시켜[176], 형법적 수단을 통한 법과 질서의 유지라는 사회정치적인 목적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형법의 기능화를 통하여 과거와는 달리 형법, 형벌목적 그리고 형법도그마틱은 형법의 기능화를 위한 기준들로 변화되고, 따라서 '예방'과 '결과고려'가 형법에 편입되고, 정치적 목적추구를 위하여 '형법적 수단의 유용성'이 형법의 정당성 기준의 중심이 된다.[177] 이러한 기준에 의하면 위험형법을 통한 '형법의 탈형식화(Entformalisierung des Strafrechts)'를 형법의 기능화에 대한 하나의 예로 들 수 있다. 즉 오늘날 위험형법은 형법적 귀속원칙의 유연화를 통하여 법치국가적 형법의 전통에 의하여 설치되어진 원칙들을 정치적인 목적추구를 방해할 수 있는 장애물로 간주하고, 이러한 장애물을 제거 또는 축소시키기 위하여 법률조항에 모호한 개념 및 일반규정의 사용을 증가시키거나[178] 또는 범죄화와 비범죄화의 개념과 기준을 불명확하게 사용하는[179] 등 형법적 개입을 필수적이고 합목적적인 것으로 정당화시켜 자연스럽게 정치적인 문제해결수단으로 형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180] 여기에서 사람들은 형법의 기능유용성을 '효율적인 범죄퇴치의 부득이함(Notwendigkeit einer wirksamen Verbrechensbekämpfung)' 또는 '중범죄 사건해결의 부득이함(Notwendigkeit der Aufklärung schwerer Straftaten)'으로 개념정의

135ff.; Neumann, StV 1994, 273ff. 참조.

174) Hassemer, Grundlinien einer personalen Rechtsgutslehre, in: ders., Strafen im Rechtsstaat, 2000, 160; Prittwitz, in: Bora (Hrsg.), Rechtliches Risikomanagement, 1999, 193, 199.

175) 형법에 있어서 기능주의(Funktionalismus)에 관한 개념사용의 복잡성에 관하여 Lüderssen, ZStW 107 (1995), 877ff.; Stratenwerth, Was leistet die Lehre von den Strafzwecken?, 1995 참조.

176) Hassemer, JuS 1987, 257, 264; ders., Grundlinien einer personalen Rechtsgutslehre, in: ders., Strafen im Rechtsstaat, 2000, 160.

177) NK-Hassemer/Neumann, Vor § 1, Rn. 342; Nuotio, in: Lathi / Nuotio (Hrsg.), Strafrechtstheorie im Umbruch, 1992, 175, 192.

178) NK-Hassemer/Neumann, Vor § 1, Rn. 353; P.-A. Albrecht, Die vergessene Freiheit, 2.Aufl., 2006, S. 62f.; Naucke, Über Generalklauseln und Rechtsanwendung im Strafrecht, 1973, S. 3ff., 21ff.; Rieß, GA 2004, 623.

179) NK-Hassemer/Neumann, Vor § 1, Rn. 354. 또한 Naucke, GA 1984, 199ff. 참조.

180) NK-Hassemer/Neumann, Vor § 1, Rn. 347.

를 함으로써[181], 형법을 투쟁수단으로 무장하고, 긴급한 것으로 인식된 특정 외부 문제해결에의 기여라는 기능을 획득하게 된다.[182]

나. 형법이론으로서의 예방

오늘날 미래와 관련된 거대위해라는 광범위한 위협감과 관련되어, 사람들은 조직화된 범죄·환경오염·마약범죄와 같은 영역에서의 위협을 형법을 통하여 대처할 수 있다는 희망을 또한 광범위하게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희망은 법치국가적 형법의 원칙으로서 규범적 한계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다.[183] 그러나 거대위해의 제거와 불안감의 감소라는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형법 단독으로는 불가능하고, 사회의 다른 메커니즘과의 상호관련성 속에서만 실현되어질 수 있다. 따라서 형법 또한 사회의 다른 메커니즘과의 상호관련성에 부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 근거가 전환되어질 것이 요구되며, 과거에 지배적 견해였던 절대적 형벌이론은 다른 사회적 통제수단과 분리되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규범적으로 수용할 수 없게 되었다. 그 이유로 인하여 사회의 다른 통제수단들과 상호관련되어질 수 있는 예방적 형벌이론이 그 중심에 서게 되었다.[184]

형법의 기능화 또는 형사사법의 기능유용성과 결합된 예방은 더 이상 형벌이론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형법이론으로서의 역할 또한 요구되어진다. 즉 과거처럼 범하여진 불법과 책임에 상응한 정당한 대응, 범죄에 대한 우선적인 반작용으로서의 정의를 추구하고 있는 형법은 오늘날과 같은 위험사회의 사회적 위협에 대처하고 불안감을 감소시키는 데에 실질적인 효과를 보장할 수 없고, 범죄에 대한 더욱 더 강력한 예방적 조치, 장래의 예방적 조치를 통한 범죄퇴치의 중요성으로 인식이 전환된다.[185] 따라서 '예방'이라는 개념이 장래의 범죄를

181) Rieß, StraFo 2000, 364, 366.

182) Bunzel, in: Hefendehl / von Hirsch / Wohlers (Hrsg.), Die Rechtsgutstheorie, 2003, 96, 106f.; Hassemer, StV 2006, 321, 323.

183) Hassemer, Produktverantwortung, 2.Aufl., 1996, S. 8; Kindäuser, Universitas 1992, 227.

184) Hassemer, JuS 1987, 257, 264; Prittwitz, StV 1991, 435, 437.

185) Glaeßner, Sicherheit und Freiheit, 2003, S. 162; Hefendehl, GA 2007, 1, 2f.; Jahn, Das Strafrecht des Staatsnotstandes, 2004, S. 222; Lüderssen, in: ders. (Hrsg.), Aufgeklärte

예방하고 퇴치하기 위하여 투입된 형법의 정당성을 위한 개념으로 전환되어, 결국 예방이라는 개념을 형벌이론에서 형법이론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예방'이라는 개념은 전통적인 법치국가적 형법에 있어서는 형벌의 정당성을 위한 형벌이론으로 사용되었고, 또한 형법이론에 있어서도 2차적 목적에 불과하였으며, 그것을 통하여 예방을 1차적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경찰법과 구별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오늘날의 '예방'이라는 개념을 형법투입의 정당성 또는 형법의 임무로서 사용하고 형법의 1차 목적이 되어지고 있는 경향이며[186], 그 중에서도 적극적 일반예방이론이 그 중심을 이루고 있다.[187]

오늘날 형법은 구체적인 법적 침해에 대한 억압의 수단에서 문제상황에 대한 광범위한 예방으로 변화되고 있다. 왜냐하면 정치적 목적 및 문제상황에 대한 조종과 위해한 상황에 대한 광범위한 예방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과거에 범하여진 범죄행위에 지향된 법치국가적·자유주의적 형법으로는 새로운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어렵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 반대로 경악스럽고 모호한 위협들을 제때 그리고 효과적으로 저지해야만 하는 긴급한 필요로 인하여 예방적 패러다임이 형법의 기초가 되며[188], 따라서 오늘날의 형법에서는 예방이 형법의 목적을 결정하는 기준이다.[189] 그 결과 형법은 예방형법이라 할 수 있다.[190] 그러나 오늘날 위험형법이 적극적 일반예방에 근거하여 거대위해를 제거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목적형법으로서 예방형법이라고 할 수 있지만, 목적을 충족해

Kriminalpolitik, Band I: Legitimationen, 1998, 25, 54.

186) Cancio Meliá는 새로운 예방개념이 "형법의 유일한 과제로서 실제적 예방의 우월성"에 해당된다고 하고 있다.(ders., FS für Tiedemann, 2008, 1489, 1496)

187) Calliess, NJW 1989, 1338, 1339.

188) Hassemer, ZRP 1992, 378, 381; ders., Produktverantwortung, 2.Aufl., 1996, S. 13; ders., vorgänge 3/2002, 10, 11; Singelnstein / Stolle, Die Sicherheitsgesellschaft, 2006, S. 33. Hilgendorf에 의하면 민주법치국가에서의 정치적 의사결정권자는 의회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목적의 관철을 위한 수단으로서 형법을 사용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한다.(ders., Strafrechtliche Produzentenhaftung, 1993, S. 45f.)

189) Hassemer,NStZ 1989, 553, 558; ders., StV 1995, 483, 489; ders., StV 2006, 321, 323.

190) Calliess, NJW 1989, 1338, 1340; Hassemer, ZRP 1992, 378, 379; Jakobs, in: Eser / Hassemer / Burkhardt (Hrsg.), Die Deutsche Strafrechtswissenschaft, 2000, 47, 50; Prittwitz, Strafrecht und Risiko, 1993, S. 369f.; ders., in: Frehsee / Löschper / Smaus (Hrsg.), Konstruktion der Wirklichkeit, 1997, 47, 54.

야만 하는 형법은 정당한 목적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목적형법은 원칙적으로 기능화를 반대할 이유가 없으며, 또한 법익보호라는 목적에 기여하는 규범논리적으로 확정된 프로그램으로서의 법치국가적 형법도 역시 규범적인 원칙에 의하면 형법의 기능화를 반대할 수 없다.[191] 따라서 형법의 기능화로 인하여 형법에 정치적인 이익이 투입되어 예방적 프로그램에 의하여 형성된 위험사회의 예방형법은 원칙적으로 목적형법으로서 부정되어지지 않지만, 그러나 순수한 목적형법과는 구별되어진다. 왜냐하면 순수한 목적형법이 형법과 위험은 서로서로 어울리지 않는 개념으로, 형법에서 위험이라는 개념을 제거하고 형법을 사용하자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위험형법은 위험개념을 형법에 포함시킴으로써 과거에는 불행 또는 재앙으로 간주되던 것을 불법으로 간주하여 형법을 통하여 책임을 귀속시키고 하는 것으로, 위험형법에 있어서는 불행에 대한 주지의 가능성이 '회피불가능한 불행'을 '회피해야만 하는 불법'으로 만들어 불행과 불법 사이의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따라서 귀속불가능한 불행 또는 재앙을 귀속가능한 불법으로 전환하여 귀속시킬 위험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불법과 구별되어져야만 하는 불행 또는 재앙을 누군가에게 불법으로 귀속시켜 책임을 전가하고자 하는 필요성과 경향이 존재한다.[192]

4. 결과지향적 형법

형법의 현대화는 관점을 형사사법체계의 결과로 확장시키고 있다. 이러한 형법의 현대화를 위한 기초인 기능화된 형법사상은 형사정책에 있어서 어떠한 것도 제외하거나 제한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형사정책이 기능화된 형법사상의 중심적 이익에 속하고 또한 기능화된 형법 자체가 결과에만 지향되

191) Kühne, GA 2008, 361, 368; Prittwitz, StV 1991, 435, 438f.

192) Bonß, in: Lippert / Prüfert / Wachtler (Hrsg.), Sicherheit, 1997, 21, 26; Prittwitz, Strafrecht und Risiko, 1993, S. 379ff.; ders., in: Frehsee / Löschper / Smaus (Hrsg.), Konstruktion der Wirklichkeit, 1997, 47, 58; ders., in: Bora (Hrsg.), Rechtliches Risikomanagement, 1999, 193, 201f.

어지지기 때문이다.[193] 결과지향적인 프로그램속에 존재하고 있는 형법적 사고와 행동은 경험론에 근거하여 현실화되기 때문에, 예방적 개념을 선호하고, 예방적 프로그램에 의한 결과를 지향하는 형법체계는 행위자와 피해자에 대한 경험적 지식이 중요하다.[194] 형사사법은 실제적인 결정행위에 있어서 경험적 지식의 획득을 위한 조직적인 능력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경험적 지식은 형사법관의 판단에 있어서는 하나의 참고사항이지 결정적인 기준으로는 작용하지 못하며, 따라서 경험지식에 의한 예상적인 진단은 형사법관에게 있어서 상례라고 하기 보다는 하나의 예외일 뿐이다.[195] 하지만 형사입법가에게는 '인간의 행태 중에 어떠한 유형들을 형법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즉 범죄로 선택해야만 하는가'의 문제에 직면해 있는데,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입법가가 결과를 고려하는 경우에만 입법자는 경험적 지식을 필요로 하게 된다.[196] 예를 들어 형법적인 가벌적 행태의 판단기준으로서 '사회유해성(soziale Schädlichkeit)'은 인간의 이익에 대한 모든 침해가 형법의 응답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회유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행위를 통한 침해만이 형법적인 가벌적 행태로서 규정되어져야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르면 형법의 이론 및 실무에서 사용하는 '사회유행성'이라는 개념은 사회학에 의존하고 있으며, 형법을 넘어선 사회적 체계의 필요성과 이익을 제시하고 있는 개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사회유해적인 행태의 가벌성의 확정과 그 결과로서 형벌부과의 확정에 있어서 경험적 지식이 투입되어져야만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결정권한이 있는 입법자에게 경험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197]

오늘날 형법이 유용한 결과를 생성하고 불리한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형법적 결정의 정당성이 판단되어지는 때에는, 형법이 결과지향적 형법으

193) Hassemer, Grundlinien einer personalen Rechtsgutslehre, in: ders., Strafen im Rechtsstaat, 2000, 160.

194) Hassemer, Einführung, 2.Aufl., 1999, S. 20; ders., JuS 1987, 257, 260.

195) NK-Hassemer/Neumann, Vor § 1, Rn. 34; Kühl, Strafrecht. AT, 6.Aufl., 2008, S. 19 (Rn. § 4, 6).

196) Hassemer, Einführung, 2.Aufl., 1999, S. 23; Wohlers, Deliktstypen des Präventionsstrafrechts, 2000, S. 242.

197) Hassemer, Einführung, 2.Aufl., 1999, S. 25.

로 전환되었다고 할 수 있다.[198] 이것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현재 형법은 결과지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며, 따라서 현대적 의미의 위험형법은 결과지향적인 형법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199] 형법이 결과지향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면 모든 지식, 특히 경험적 지식이 형사사법을 위하여 중요하게 되는데, 범죄에 대한 지식 또는 경험적 지식은 입법·판례·행형의 결과가 실제로 알려져 있거나 또는 적어도 그 결과가 평가되어질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형법의 결과지향성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200] 형법체계의 결과지향성에 있어서 형사입법가·형사법관·행형담당자에게 부과된 과제는 범죄적 불법을 소추하여 행위자를 속죄 또는 상쇄시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범죄자를 개선하고 범죄를 전체적으로 방지하는 목적을 추구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201] 따라서 결과지향적인 형법은 이론과 실무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실제의 결과를 이론에 반영하거나 또는 실제의 결과를 통하여 이론을 수정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202] 그리고 결과지향적인 형법으로서 위험형법은 형법을 통하여 규범실현의 체계가 아니라, 행태의 사회적 조종의 체계로 전화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형법으로서 국민교육을 위한 수단으로서 형법을 투입하게 된다.[203] 이러한 의미에서 결과지향적인 형법은 그 투입 자체가 적절하거나 정당한 것인지는 더 이상 고려대상이 아니며, 이에 대한 예가 위험형법은 더 이상 최후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최고의 수단 또는 최선의 수단으로 투입되어지는 것이다.[204]

198) NK-Hassemer/Neumann, Vor § 1, Rn. 30f.; Hassemer, Einführung, 2.Aufl., 1999, S. 22.

199) NK-Hassemer/Neumann, Vor § 1, Rn. 32; Hassemer, Einführung, 2.Aufl., 1999, S. 22.

200) NK-Hassemer/Neumann, Vor § 1, Rn. 32ff., 44; Hassemer, Einführung, 2.Aufl., 1999, S. 22.

201) Hassemer, Einführung, 2.Aufl., 1999, S. 22.

202) Hassemer, StV 1995, 483, 485.

203) Hassemer, Einführung, 2.Aufl., 1999, S. 25; ders., ZRP 1992, 378, 380; ders., Produktverantwortung, 2.Aufl., 1996, S. 8.

204) Hassemer, ZRP 1992, 378, 380; ders., Produktverantwortung, 2.Aufl., 1996, S. 8; Hilgendorf, Strafrechtliche Produzentenhaftung, 1993, S. 47f.

제3절 안전형법(Sicherheitsstrafrecht)

1. 안전의 개념성

'안전'이라는 개념은 다의적 개념이다.[205] 하지만 주로 안전이라는 개념은 '불안전'이라는 개념과 대비되어지는 것으로, 즉 환경·사회·문화·정치적 변화로 인하여 발생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국민들의 주관적 불안감을 증가시키고, 이러한 국민들의 주관적 불안감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된 상태, 즉 위험의 회피로서 위해 또는 위협의 부존재와 위해로부터의 보호를 의미하는 것이 '안전'이라고 할 수 있다.[206] 특히 안전이라는 개념에서 사회적·정치적 관계 또는 질서에 대한 내적 위협과 외적 위협을 저지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간주되는 특정된 제도적 조정을 필요로 한다.[207] 여기에서 국가의 외적 안전은 다른 국가 또는 국가단체들에 의하여 위협되어지고, 국가의 내적 안전은 범죄 또는 정치적 질서의 적대자에 의하여 위협되어지는 것으로 간주되는데, 오늘날 국가안보라는 측면에서 판단할 때, 이러한 내적 안전과 외적 안전에 대한 구별이 무의미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에 있어서 외세의 무력침입이나 내란 등이 중심이었다면, 오늘날에는 전세계적인 금융위기·경기침체, 에너지와 식량의 고갈, 전지구적인 환경파괴, 산업기술의 유출, 동맹과 국제적인 다자구조의 개편, 테러리즘, 사회 양극화 등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요요인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인들은 일상화되어져 있으며 또한 다양화되어져 있고, 위기의 진행속도와 파급효과 역시 더 빠르고 광범위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원인으로 인하여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만 하는 정치가들은 '안전에 대한 위태화에 강력하게 대처하라'는 국민들의

205) Bonß, in: Lippert / Prüfert / Wachtler (Hrsg.), Sicherheit, 1997, 21, 25; Nuotio, in: Lathi / Nuotio (Hrsg.), Strafrechtstheorie im Umbruch, 1992, 175, 191. 또한 '안전'이라는 개념의 다의성을 위해서는 Glaeßner, Sicherheit und Freiheit, 2003, S. 15ff. 참조.

206) Amelung, in: Hefendehl / von Hirsch / Wohlers (Hrsg.), Die Rechtsgutstheorie, 2003, 155, 172f.; Bonß, in: Lippert / Prüfert / Wachtler (Hrsg.), Sicherheit, 1997, 21, 22; Glaeßner,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 10-11/2002, 3, 4.

207) Glaeßner,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 10-11/2002, 3, 4.

강력한 압력에 놓여 있으며, 이러한 정치적 행위의 목적은 비록 행위의 구체적인 효과가 미미하다 하더라도 대중에게 안전에 대한 감정을 전파하기 위하여 무엇인가를 해야만 한다.[208] 따라서 정치가들은 그들의 입법권을 통하여 국가와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한 입법을 하게 되는데, 법적 의미에서 '안전'은 '법익의 불훼손성'으로 이해되어지고[209], 이러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형법적인 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규범들이 준수되어지는 경우에 안전은 유지되어진다는 것이다.[210] 민주주의 정치체제하에서는 국민의 안전과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임무가 되었다.

2. 안전의 헌법적 의미

가. 안전에 관한 국가사상의 변화

안전의 헌법적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가사상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안전에 관한 국가사상의 초기인식은 '내적 안전의 보장'이었다. 즉 내전 종식과 외부의 적에 의한 공격의 방어를 위하여 국내의 안전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결과로 인하여 '내전'이라는 혼란을 빌미로 국가에 의한 강제적 수단을 영주국가의 손에 집중시킨 나머지, '국가의 안녕과 질서보장'이라는 명분을 통하여 국가에의 권력집중과 국가로의 강제적 수단의 독점화가 정당화되었다.[211] 그러나 현대국가에서의 권력독점은 '안전보장과 불안전의 감소'라는 국가의 목적을 통하여 정당화되어질 수 있는데, 만약 이러한 목적이 달성되어질 수 없다면 국가권력의 정당성근거는 상실되어져야만 한다. 이러한

208) Glaeßner, Sicherheit und Freiheit, 2003, S. 27.

209) Glaeßner,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 10-11/2002, 3, 4.

210) Amelung, in: Hefendehl / von Hirsch / Wohlers (Hrsg.), Die Rechtsgutstheorie, 2003, 155, 172f.

211) Erbel,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 10-11/2002, 14, 17; Glaeßner,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 10-11/2002, 3, 6f.; Gusy / Nitz, in: Lange (Hrsg.), Staat, Demokratie und Innere Sicherheit, 2000, 335, 336.

국가사상의 반성으로 형성된 것이 '헌법국가'인데, 20세기의 권위주의적·전체주의적 정부의 경험 이후, 국가권력의 제한을 통하여 시민들의 사생활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개입을 저지해야만 한다는 인식이 증가되었다. 이로 인하여 정치적 공동체의 과제는 그의 시민들에게 자유롭고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었다.[212] 이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 헌법국가이다. 하지만 국민들의 자유롭고 방해받지 않는 삶에 대한 가능성을 침해하는 것이 단지 국가의 개입에 의한 것만이 아니며, 그 외에도 예를 들어 경제적·사회적 질서의 근본적인 변화, 현대사회에서 사회적 기회의 불평등과 경제적 자원의 불균등한 분배, 그리고 비국가적인 지배체계에 의한 시민의 안전과 자유에의 위협 등도 시민들이 자신들의 능력을 자유롭게 전개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들이다. 이러한 방해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국가에 국민에 대한 보호의무가 부여되었는데, 이것이 현대의 민주주의적 헌법국가의 주요 특징이다. 그리고 현대적 의미의 국가사상은 국민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과한 단순한 '안전국가'에서 국민의 생존보장에 대한 의무를 국가에 부과하고 있는 '보장국가'로 전환되었으며, 이는 곧 복지민주주의국가를 탄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보장국가에서는 건강, 주거공간, 그리고 일자리와 같은 국민들의 위태화된 법익의 보장이 국가질서의 중심적 과제를 형성하고[213], 이러한 중심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의 또는 연대성과 같은 개념들을 위하여 개인적 자유는 그 의미가 상실되어지며, 결국에는 국가 및 사회의 안전보장이라는 국가사상이 개인적인 자유보장의 국가사상을 눌러 버리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하지만 위험사회는 위에서 설명한 국가사상의 세가지 형태가 광범위한 안전사상을 위하여 혼합되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214]

212) Erbel,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 10-11/2002, 14, 17; Glaeßner,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 10-11/2002, 3, 7f.

213) Erbel,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 10-11/2002, 14, 17; Glaeßner,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 10-11/2002, 3, 8.

214) Erbel,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 10-11/2002, 14, 17.

나. 안전의 헌법상 자리값

헌법상 안전에 대한 관점은 국가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국가를 통한 시민상호간으로부터 시민의 보호라는 두 가지로 요약되어질 수 있다.[215] 따라서 이러한 의미에서 법적 안전은 한편으로는 국가의 자의적인 권력행사로부터의 시민의 보호와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공동생활과 개인적인 생활영위를 위하여 승인된 규범들의 존중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216] 이러한 의미를 헌법상의 과잉금지와 과소금지의 원칙에 의하여 도출할 수 있다. 과잉금지의 원칙은 국가의 개입에 대한 국민의 저항권을 근거지우는 것으로 기본권의 전통적 가치이며, 이러한 과잉금지의 원칙은 정당한 범위를 초과하는 국가개입의 한계를 설정하고 그 한계를 실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217] 이에 반하여 과소금지의 원칙은 입법자에게 특정된 상황에 있어서 특정된 이익을 특정된 방식으로 보호할 헌법적 의무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218], 이로부터 국민의 생명·자유·재산·안전보장에 있어서의 국가의 예방의무와 보호의무는 헌법상 기본권으로부터 도출된다.[219]

기본권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는 국가의 자의에 대한 저항권으로 현대 헌법의 기본권에 대한 범주의 중심을 형성한다. 독일 기본법 제1조 제1항은 개인의 존엄성과 개인의 존엄성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를 헌법상 최고의 우선가치로 설정하고 있으며[220], 따라서 헌법은 국가권력보다 인간과 인간의 존엄성이 우위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국가의 법은 전체적으로 개인들의 자유로운

215) 과잉금지와 과소금지에 관하여 자세히는 Lagodny, Strafrecht vor den Schranken der Grundrechte, 1996, S. 216ff., 254ff. 참조.

216) Appel, Verfassung und Strafe, 1998, S. 20; Bunzel, in: Hefendehl / von Hirsch / Wohlers (Hrsg.), Die Rechtsgutstheorie, 2003, 96, 99; Glaeßner,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 10-11/2002, 3, 4.

217) Hassemer, in: Hefendehl / von Hirsch / Wohlers (Hrsg.), Die Rechtsgutstheorie, 2003, 57, 59.

218) Hassemer, in: Hefendehl / von Hirsch / Wohlers (Hrsg.), Die Rechtsgutstheorie, 2003, 57, 62.

219) Glaeßner, Sicherheit und Freiheit, 2003, S. 78.

220) Glaeßner,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 10-11/2002, 3, 8; ders., Sicherheit und Freiheit, 2003, S. 78; Sternberg-Lieben, in: Hefendehl / von Hirsch / Wohlers (Hrsg.), Die Rechtsgutstheorie, 2003, 65, 67.

전개를 보장할 수 있도록 입법되어지고 사용되어져야만 한다. 이러한 의미를 형법적으로 판단하면, 독일 기본법은 형사입법가에 기본권의 원칙들, 즉 시민의 기본권과 법치국가적 원칙에의 구속이라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다만 여기에서 독일 기본법이 전제하고 있는 시민으로서의 개인은 '독립적 자아'가 아니라 '공동체에 편입된 자아'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형법은 개인적 자유와 인격 전개의 전제조건의 보장을 위한 기여만을 하도록 과제가 부여되어져 있다.[221] 따라서 이러한 기여적 과제를 통하여 국가는 시민을 위하여 존재해야지 국가 자체를 위하여 존재할 수 없고, 국가적인 제재의 설정에 있어서 법적 평화의 국가적 보호가 모든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달성되어져만 하는 목적으로서 모든 것들이 허용되어진 것도 아니며, 입법자의 임의적 목적 설정을 위하여 허용된 것도 아니라는 결론이 도출되어진다. 이러한 의미에서 형법은 국가의 보호질서를 위한 하나의 부분으로서 단지 사회유해적이고 평화로운 공동생활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행위방식만을 제재해야만 한다. 따라서 국가의 행위는 개인들과 개인들의 자유에의 기여라는 이익과 완전하게 분리되어져, '시민의 이익'을 제한하는 '공적 이익'만을 위하는 경우에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222]

현대의 헌법사상에서 안전은 처음부터 자유와 더불어 커다란 의미가 부여되었으며, 그리고 현대국가와 자유주의국가의 명백한 근거로서 안전의 보장은 처음부터 국가의 과제에 해당되어졌다.[223] 오늘날 거대위해로서 표현되어지는 새로운 위험 그리고 테러리즘과 같은 위협상황으로부터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더욱 더 증가하고 있으며, 사람들은 민주주의국가가 현대 사회의 위험 및 사적 권력에 대한 보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입법과 판례는 공동체질서의 보호에 더 높은 자리값을 인정하고자 하는 경향의 증가, 즉 내적·외적 평화, 시민의 자유 그리고 사회복지와 같은 전통적인 의미에서

221) Kindhäuser, Gefährdung als Straftat, 1989, S. 144; Sternberg-Lieben, in: Hefendehl / von Hirsch / Wohlers (Hrsg.), Die Rechtsgutstheorie, 2003, 65, 67.

222) Sternberg-Lieben, in: Hefendehl / von Hirsch / Wohlers (Hrsg.), Die Rechtsgutstheorie, 2003, 65, 65f.

223) Glaeßner,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 10-11/2002, 3, 4f.; Sternberg-Lieben, in: Hefendehl / von Hirsch / Wohlers (Hrsg.), Die Rechtsgutstheorie, 2003, 65.

의 집단적 법익으로서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오늘날 국가와 정치제도들의 고귀한 업무로 승인하는 경향이 발생하고 있다.[224] 이러한 의미에서 안전보장이라는 인식이 독일 기본법의 중심을 이루고, 국가를 통한 시민 상호간으로부터 시민의 보호라는 기본법적 의미에 있어서의 안전보장은 제3자, 특히 권력을 소유하고 있는 정치·경제·사회적 행위자의 공격과 개입으로부터의 사적·공적 이익의 보호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225] 그리고 이러한 안전에 대한 헌법상 자리값의 상승을 위한 근거로서 과소금지의 원칙이 원용되어지는데, 이러한 과소금지의 원칙은 기본권을 국가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저항권이 아니라 객관적인 가치결정으로 이해하며[226], 그리고 과소금지의 원칙에 대한 사용영역은 현재 존재하고 있는 가능성을 수단으로 하여 지속적으로 확장되어지는데, 그 가능성에 대한 수단 중에 대표적인 것이 형법이다. 그리고 과소금지의 원칙에 의하여 형법의 가벌성이 확장되어지고 있다.[227] 안전보장을 위하여 오늘날 입법가들은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의 목적으로 공동체 이익을 제시하고 있는데[228], 하지만 공동체의 이익결정을 위한 실정법적 원칙이 헌법에 존재하지 않으며[229], 안전은 과거처럼 국가와 시민간의 관계로서 양자관계가 아니라, 국가질서, 개인, 경제적·사회적 그룹들, 그리고 정치적 운동들의 다극적 관계로 변화되어지고 있다. 다극적 관계에서는 안전에 대한 보장의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불안의 감소라는 문제가 더 적절하기 때문에[230], 당연히 공동체 이익을 위한 목적설정에 있어서 입법가의 권한이 광범위해지고 있다.[231] 하지만 형법은 보호할 필요가 있고 보호할 가

224) Glaeßner, Sicherheit und Freiheit, 2003, S. 45, 78f.; Nuotio, in: Lathi / Nuotio (Hrsg.), Strafrechtstheorie im Umbruch, 1992, 175, 195; Roxin, Strafrecht. AT, Bd. I, 4.Aufl., 2006, S. 22f. (Rn. § 2, 26ff.); Wohlers, Deliktstypen des Präventionsstrafrechts, 2000, S. 196.

225) Glaeßner,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 10-11/2002, 3, 9; Grimm, JZ 2009, 596, 598.

226) BVerfGE 39, 1, 41f.; NK-Hassemer / Neumann, Vor § 1, Rn. 65.

227) Hassemer, in: Hefendehl / von Hirsch / Wohlers (Hrsg.), Die Rechtsgutstheorie, 2003, 57, 62.

228) Böse, in: Hefendehl / von Hirsch / Wohlers (Hrsg.), Die Rechtsgutstheorie, 2003, 89; Lagodny, Strafrecht vor den Schranken der Grundrechte, 1996, S. 138f.; ders., in: Hefendehl / von Hirsch / Wohlers (Hrsg.), Die Rechtsgutstheorie, 2003, 83, 87.

229) Böse, in: Hefendehl / von Hirsch / Wohlers (Hrsg.), Die Rechtsgutstheorie, 2003, 89, 90.

230) Glaeßner,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 10-11/2002, 3, 5.

231) Böse, in: Hefendehl / von Hirsch / Wohlers (Hrsg.), Die Rechtsgutstheorie, 2003, 89, 90;

치있는 법익을 보호하는 경우에만, 그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다. 따라서 형법상의 법익의 인수가 보호의무를 생성하는 토대가 되어지며[232],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하여 주장되어지는 것이 헌법상 '안전에 대한 기본권'이다.

다. 안전에 대한 기본권

헌법상의 과잉금지와 과소금지의 원칙에 의하여 도출된 안전의 의미는 한편으로는 '국가로부터의 시민의 안전',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를 통한 시민의 안전'이라는 어찌 보면 상반된 두 가지 의미가 도출되어진다. 하지만 오늘날 기술적 시설 또는 테러리즘 등을 통한 잠재적 위해는 국가의 행위와 국민들의 법적 영역에의 개입을 정당화하고[233], 따라서 헌법적 의미에서의 국가를 통한 국민의 안전을 위한 수단으로서 형법이 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모든 형법적인 명령 또는 금지는 일반적인 행위자유에 대한 개입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러한 개입은 법치국가적 형법에서는 일반적·특별적 정당성을 필요로 한다.[234]

오늘날 기본권의 범위에는 복지, 교육, 노동 등과 같은 생존을 위한 적극적 기본권으로까지 확장되어 포함되어지며, 이러한 기본권의 확장은 국가에게 생활위험에 대한 보장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에게 보호기능과 후원기능을 부여하고 있다.[235]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독일 기본법 제1조 제1항 제2문과 연결된 제2조 제2항을 개인의 기본권 보장뿐만 아니라 국민전체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규정으로 해석함으로써, 제2조 제2항으로부터 국민 전체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도출하고 있다.[236] 민주주의국가는 자유를 보장하고, 안전을 유지하

Roxin, Strafrecht. AT, Bd. I, 4.Aufl., 2006, S. 16 (Rn. § 2, 7).

232) Hassemer, in: Hefendehl / von Hirsch / Wohlers (Hrsg.), Die Rechtsgutstheorie, 2003, 57, 63.

233) Glaeßner, Sicherheit und Freiheit, 2003, S. 89.

234) Gusy / Nitz, in: Lange (Hrsg.), Staat, Demokratie und Innere Sicherheit, 2000, 335, 337; Hassemer, in: Hefendehl / von Hirsch / Wohlers (Hrsg.), Die Rechtsgutstheorie, 2003, 57, 60; Sternberg-Lieben, in: Hefendehl / von Hirsch / Wohlers (Hrsg.), Die Rechtsgutstheorie, 2003, 65, 66.

235) Glaeßner, Sicherheit und Freiheit, 2003, S. 33, 41.

236) BVerfGE 46, 160, 164. 또한 Isensee, Das Grundrecht auf Sicherheit, 1983, S. 22; Robbers, Sicherheit als Menschenrecht, 1987, S. 195ff. 참조.

며, 공격에 대한 민주적 질서자체를 보호해야만 하는 등 기본권 침해의 저지라는 전통적인 기능 이외에도 안전보장을 위하여 기본권 위태화에 대한 예방과 저지의 기능 또한 수행해야만 한다. 여기에서 문제는 오늘날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안전의 보장은 국가가 질서유지의 기능을 수행하고 시민의 자유전개에 있어서 당연히 더 적은 방해를 받아야만 한다는 합의를 초과한다는 것이다.[237] 분명하게 독일 기본법은 기본권의 범주에 있어서 자유권과 저항권에 더 높은 자리값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보장과 국가의 보호기능 사이의 규범적·정치적 관계설정, 즉 안전보장을 위한 국가의 보호적 기능수행을 위해서는 자유권과 저항권과 비교가능한 안전에의 기본권적인 권한 부여가 필요하게 된다.[238] 이를 위하여 주장되고 있는 것이 '안전에 대한 기본권'이다.

'안전에 대한 기본권'의 대표적인 주장자는 Josef Isensee인데, Isensee에 따르면, 현대적인 헌법사상의 시작에 있어서는 안전에 대한 기본권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는데[239], 자유주의적 국가관의 전개에 의하여 안전에 대한 기본권의 역할이 후퇴하였으며, 그 결과 자유와 안전, 저항권과 보호권의 대립이 발생되었다. 저항권은 특정의 보호영역에서 국가를 배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그에 반하여 보호권은 특정의 보호영역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제3자를 통한 위해화로부터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국가는 기본권보호에 있어서 이중적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240] 즉 저항권을 위해서는 소극적 보호의무를, 보호권을 위해서는 적극적 보호의무를 부담해야만 한다. 따라서 Isensee는 동일한 기본권에 대한 의무관점이 중요하며, 이러한 의무관점은 동일한 헌법상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241], 저항권과 국가의 보호의무 사이의 근본적인 분쟁은 단지 제도적인 문제일 뿐이라고 주장한다.[242] 저항권에 있어서 국가는 기본권에 대한 가능한 위해의 장본인이 되기 때문에, 저항권은 시민이 국가개입으

237) Glaeßner, Sicherheit und Freiheit, 2003, S. 42; Herzog, Prävention des Unrechts, 1987, S. 45.
238) Glaeßner, Sicherheit und Freiheit, 2003, S. 89.
239) Isensee, Das Grundrecht auf Sicherheit, 1983, S. 3ff. 참조.
240) Glaeßner, Sicherheit und Freiheit, 2003, S. 89f. 참조.
241) Isensee, Das Grundrecht auf Sicherheit, 1983, S. 33.
242) Glaeßner, Sicherheit und Freiheit, 2003, S. 90 참조.

로부터 기본권 보호의 주장, 즉 '기본권에 대한 권리'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에 반하여 보호의무는 시민이 그들의 기본권을 보호해 줄 것을 국가에게 과제로 부여함으로써, 결국 보호의무는 '기본권에 대한 의무'를 의미한다. 이처럼 국가는 기본권에 대한 '잠재적인 위해자'와 '기본권의 보장인'으로서 두가지 역할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Isensee는 이러한 국가의 역할에 대한 모순을 제도적으로 받아들이고 삼권분립의 체계를 통하여 상쇄하자고 주장한다. 즉 권력분립의 체계 내에서 기본권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국가기관과 기본권보호를 위한 통제기관으로서 독립적인 국가기관을 동시에 설치하자는 것이다.[243] 결국 Isensee의 견해에 따르면, 개인이나 대부분의 사회적 그룹들은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국가는 국가권력으로부터의 보호 이외에 사인들간의 기본권적인 이익의 불훼손을 보존하고 사적 관계에서의 안전을 보호해야만 하는 객관화된 과제를 가지고 있다.[244]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는 국가는 더 이상 시민의 기본권에 대한 잠재적 침해자로서의 적대자가 아니라 시민의 기본권에 대한 보증인 또는 보호자로서 이해되어지며, 시민과 국가는 공생관계에 놓이게 된다.[245] 시민의 기본권에 대한 보증인 또는 보호자로서의 국가에게 부여된 보호의무로부터 Isensee는 '안전에 대한 기본권'을 도출하고 있다. '안전에 대한 기본권'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독일 기본법에는 없는데, 이에 대하여 Isensee는 국가가 개인의 자유권에 대한 보증인으로서의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안전에 대한 기본권'에 대한 별도의 근거설정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한다.[246]

여기에서 '안전에 대한 기본권'으로부터의 국가에게 부과된 보호기능이 자유보장과 어떠한 규범적·정치적인 실제적 순위가 매겨져야만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어진다. 이에 대하여 Isensee는 이러한 자유권과 국가기관의 보호과제 또는 질서유지과제 사이의 관계를 하나의 피라미드구조로 해석하고, 피라미드의

243) Isensee, in: Isensee / Kirchhoff (Hrsg.), Handbuch des Staatsrecht, Bd. V: Allgemeine Grundrechtslehren, 1992, 143, 146.

244) Isensee, in: Isensee / Kirchhoff (Hrsg.), Handbuch des Staatsrecht, Bd. V: Allgemeine Grundrechtslehren, 1992, 143, 148.

245) Glaeßner,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 10-11/2002, 3, 10; ders., Sicherheit und Freiheit, 2003, S. 41, 90 참조.

246) Glaeßner, Sicherheit und Freiheit, 2003, S. 89 참조.

맨 밑부분에 국가의 보호의무를 설정하고 그 위에 저항권, 저항권 위에 사회권을 위치시키고 있다.[247] 이것으로 판단할 때, Isensee의 현대 국가의 과제설정에 있어서 평화유지와 보호의무가 현대 국가의 근본이 되어지는 것이며, 그 바탕위에 설정된 민주주의·법치주의 국가를 통하여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자유와 평등의 보장, 그리고 피라미드의 맨 위에 자유로운 삶의 보장 속에서 인간다운 삶의 실질적 전제조건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사회국가의 실현으로 설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Isensee의 기본권 순위에 대한 피라미드구조는 자유와 안전을 대립시키고, 국가의 입장에서 모든 안전보장을 위한 조치들은 기본권에 대한 개입금지의 원칙과 충돌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따라서 모든 것을 아우르는 안전의 개념을 형성할 수 있고, 이러한 안전개념속에 자유권이 포함되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248]

라. 복지로서의 '안전'

일반적 의미에서의 질서유지는 국가의 안전보호기능은 시민들이 그들의 개인적 권리와 재산권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조건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만 수행되어질 수 있는 것이었는데, 그러나 시민들의 자유와 독립성 획득은 부득이하게 안전상실이라는 역설적 상황이 함께 발생되었다.[249] 사회는 이러한 안전상실을 해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사회적 분쟁으로 인한 안전체계의 붕괴는 시민과 국가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도록 강제하였고, 이로 인하여 새로 발생한 제도가 보험이다.[250] 보험은 공동체적 유대감에 의하여 조직되었으며, 생존의 위험과 자연재해와 같은 책임자 없는 긴급상황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하였지만, 보험은 평상시 보험금 납입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추후의 예기치 않은 어려움에 대한 대비책이 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러

247) Isensee, in: Isensee / Kirchhoff (Hrsg.), Handbuch des Staatsrecht, Bd. V: Allgemeine Grundrechtslehren, 1992, 143, 162f.

248) BVerfGE 49, 24, 56f.

249) Glaeßner, Sicherheit und Freiheit, 2003, S. 121f.

250) 이에 관하여 Bonß, Vom Risiko, 1995, S. 149ff. 참조.

한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인간의 생존을 위한 조건들의 증가와 시민들의 요구로 인하여 국가는 점점 더 많은 의무를 인수하게 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전통적인 안전보호의무에 사회적 안전과 복지라는 새로운 형태의 기능이 국가에게 의무로 부과되었다. 복지로서 안전은 물질적인 충족과 확장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하나의 가치로서, 현존하는 사회적·정치적 구조를 위한 안정기능과 정당화기능을 소유하고 있는 정치영역의 핵심이 되어지고 있다.[251] 하지만 복지라는 것은 국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비록 사적 영역이라 하더라도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국가의 복지후원이 국가의 자의적인 지배요구를 위한 관문으로서의 역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심을 하게 한다. 하지만 사회국가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독일 기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에게 사회적 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사회적 정의와 개인의 자유보장을 위한 의무가 존재하며, 분명히 사회국가원칙은 개인의 자유권에 대한 개입을 통해서만 실현되어질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252], 만약 사회적 기회와 권력 등이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개인적 자유가 제한되어지는 경우라면, 사회국가원칙에 의한 불평등한 사회적 자원의 배분에 사회국가적 개입은 오히려 더 큰 자유영역을 생성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253]

3. '더 많은 안전'을 위한 형법: 안전형법

가. 범죄예방(Kriminalitätsprävention)을 위한 형법

복지로서 안전을 보호해야만 하는 국가는 안전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형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형법의 강력한 자유제한적인 효과는 기본권관계에 있어서 형법적인 수단을 가장 강력한 개입수단으로 이해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형법을 ultima ratio로서 무조건 일반화하기 보다는 전체적인 고려에 의

251) Glaeßner, Sicherheit und Freiheit, 2003, S. 122f.
252) Glaeßner, Sicherheit und Freiheit, 2003, S. 130.
253) Glaeßner, Sicherheit und Freiheit, 2003, S. 121.

하여 형법적 수단에 의한 기본권에의 개입을 판단해야만 하고[254], 헌법적 이해에 따르면 형법의 과제는 개인의 자유권에 대한 보호[255], 중요한 공동체의 관심사 보호[256], 공동체 생활의 필수적인 가치의 보호[257], 그리고 공동체 생활의 근거의 보호[258]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보호를 위하여 투입되어지는 형법은 개념적으로 광의의 의미에서의 위해저지의 수단이 되어지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형법은 아주 특별한 개입수단을 사용해야만 한다. 그러나 형법은 헌법 또는 형법 고유의 다양한 원칙에 구속되어져야만 하고, 이러한 원칙에의 구속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고려는 형법적 제재규범을 창설하는 입법자뿐만 아니라 개별사례에서의 형법적 규범하에 범죄화된 행위방식을 포섭하는 법사용자에게 의무지워진다. 기본권의 기대할 수 있는 침해가 비가역적이고 지배할 수 없거나 또는 당사자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규율되어질 수 없는 경우에 국가의 행동이 요구되어지고[259], 이러한 요구에 있어서 사람들은 효율적인 형법이 안전의 보호라는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260] 여기에서 헌법적인 안전위임에 있어서 형사사법이 포함되어질 수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되는데, 이 질문에 대하여 긍정함으로써 형사사법이 내적 안전의 합목적적인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형사사법이 안전의 목적을 위하여 도구화되어질 수 있다는 위험성이 더 크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형법은 '미래의 법익침해에 대한 형법적 법익질서의 보호로서 결정되어져야만 한다'는 구체적·현세적인 목적에만 기여해야 하고, 그와 다른 어떠한 것도 법치국가적 의미에서는 계획되어지거나 정당화되어질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할 때 형법은 사회통제의 전체 체계내에서의 하나의 부분체계로서 공적 안전의 침해에 대한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2차적인 예방의 법으로서만

254) Böse, in: Hefendehl / von Hirsch / Wohlers (Hrsg.), Die Rechtsgutstheorie, 2003, 89, 95.
255) BVerfGE 90, 145, 184.
256) BVerfGE 53, 152, 158; 66, 191, 195.
257) BVerfGE 45, 187, 253.
258) BVerfGE 88, 203, 257.
259) Bunzel, in: Hefendehl / von Hirsch / Wohlers (Hrsg.), Die Rechtsgutstheorie, 2003, 96, 98f.
260) Frisch, GS für Schlüchter, 2002, 669, 669f.; Kindhäuser, Universitas 1992, 227.

기능해야 한다.[261] 결과적으로 자유와 안전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헌법상의 지위에 대한 순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형사사법기관에 안전에 대한 과제가 부여되는가에 대한 질문과 관련되어, 원칙적으로 불명확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조치에 있어서 자의적일 수 있다는 위험성이 존재하게 된다.[262]

나. 안전과 외적 안전

이러한 자의성 이외에 문제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안전에 대한 범위가 법치국가내에서는 다르게 적용되어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즉 공동체의 안전과 내적 질서를 보장하고 불안을 회피해야만 하는 것이 국가기관의 과제라고 하는 것은 명백하고, 이러한 과제의 수행영역에 있어서 외적 범위와 내적 범위가 나뉘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외적 안전은 다른 국가 또는 국가연합에 의한 자국 영토에의 군사적 공격을 군사적 수단을 통하여 저지하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내적 안전은 공공의 안전과 질서 및 타인에 의하여 위협되고 있는 위해에 대하여 개인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내적 안전은 생명, 신체, 건강 자유와 재산에 대한 보호처럼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주 임무로, 내적 안전에 대한 모든 조치들은 민주주의적 질서에 따라서 헌법규범과 법치국가적 원칙들에 종속되어져야만 한다.[263] 따라서 내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정치적 행동의 법적 근거는 기본권보장과 절차규정을 가지고 있는 헌법질서이어야만 한다. 그러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형태들이 오늘날의 사회에서 급속도로 변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새로운 기술혁명을 통한 위태화에 있어서 그 야기자와 결과를 인식할 수 없거나 결정할 수 없으며, 또한 국제적인 테러리즘에 있어서 국경을 초과하거나 국경과 무관하게 수행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안전은 국경없는 문제가 되어졌으며, 국가적인 정치적 제도구조로는 적절하고 효과적인 반대전략을 수립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리고 과거의 위해 저지를 위한 전통적인 수단들을 단순하게 재

261) Haffke, in: 29. Strafverteidigertag, 2006, 9, 18f.

262) Haffke, in: 29. Strafverteidigertag, 2006, 9, 11.

263) Beulke, Jura 2008, 653, 665; Glaeßner, Sicherheit und Freiheit, 2003, S. 145; Jäger, GA 2006, 615, 617.

사용하거나 또는 위해저지에 대한 전통적인 관할권을 통해서는 더 이상 저지할 수 없는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따라서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안전보장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간 그리고 안전보장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공동작업이 강제되어진다. 이것은 내적 안전과 외적 안전의 구별이 불가능하고 무의미해졌다는 것의 반증이다.[264]

다. 예방국가

내적 안전의 보호를 위하여 국가는 안전기관에게 광범위한 감시와 예방적 수단들을 마련해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오늘날의 국가를 안전국가(Sicherheitsstaat), 예방국가(Präventionsstaat), 감시국가(Überwachungsstaat) 등과 같은 개념들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러한 개념들은 오늘날의 문제의 범위를 표시하고 있는 것들로서, 현실에 대한 특징적 표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265]

감시국가는 모든 사용가능한 수단과 국가에 의하여 법정화된 수단을 통하여 국민을 감시하는 국가이다. 즉 전체적인 감시를 통하여 획득한 인식을 법률위반에 대한 추후 처벌을 위하여 사용하고, 개인과 국민단체들에 관한 정보를 비밀정보부가 획득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국가를 의미한다. 감시국가에서는 지속적인 감시에 대한 압력으로 인하여 시민의 범죄와 다른 불쾌한 행동방식들에 대한 예방이 간접적으로 시행되어지고 있다. 감시국가는 광범위한 정보수집 프로그램을 이용한 수배(Rasterfahndung), 전화·이메일·인터넷 등 통신시설의 도감청, 공공장소에 대한 CCTV로의 감시, 범죄혐의자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자에 대한 시청각 설비를 통한 도감청, 예금통장·신용카드 등 은행계좌의 정기적 검사, 지문·유전자정보 등 생물학적 정보수집을 위한 정보은행 설립, 비밀수사요원의 광범위한 투입 등의 수단들을 사용하고 있다.

감시국가와 약간 구별되는 예방국가는 시민들의 법률위반과 원치 않는 불쾌한 행태에 대하여 처음부터 전단계에서 미리 저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감시기구들로부터 획득한 정보들을 직접적으로 투입하는 국가를 의미한다. 따라서 예방국

264) Glaeßner, Sicherheit und Freiheit, 2003, S. 146f.

265) Glaeßner,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 10-11/2002, 3, 11.

가는 법률위반 또는 불쾌한 행태를 처음부터 저지하기 위하여 감시수단을 통하여 획득한 정보들을 이미 직접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감시국가에서 사용되어지는 수단들이 모두 사용된다. 그리고 그 외의 집회금지, 특정 장소에서의 퇴장조치, 체류금지, 보고의무, 직업금지, 불쾌한 자에 대한 추방, 보안처분, 보호감호, 다양한 기관과 경찰을 통한 범죄혐의에 대한 통제뿐만 아니라 범죄혐의가 없는 경우에도 통제할 수 있는 수단 등이 사용된다. 그리고 감시국가와 예방국가는 '정보보호, 사적 영역 그리고 정보자기결정권의 최소한'을 그 특징으로 하는데, 특히 예방국가에서는 모든 영역에서 획득한 감시정보들을 개인 프로필의 형태로 정보은행에 보관하여 예방목적을 위하여 특정 유형에 따른 효율적인 조사를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감시국가와 예방국가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어렵지만, 이러한 의미에서 예방국가는 감시국가의 논리적인 발전형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감시국가와 예방국가는 모두 오늘날 범죄·조직화된 범죄·테러리즘 등의 위해방지를 위해서는 부득이하고 합리적인 결과로서 이해되어진다.[266]

라. 안전없는 자유의 부존재(Keine Freiheit ohne Sicherheit)

오늘날과 같은 현대사회에서는 사회적 변화과정과 위험과 위해상황에 대한 변화로 인하여 사회의 안정된 질서가 혼란스러울 뿐만 아니라 또한 신뢰 또한 약화되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국가에게 국민의 자유보호 및 위해화에 대한 국가 자체·정치질서 보호의 기능이 부여되고 있다.[267] 민주주의국가의 과제가 사회적 지배를 제한하고 생활기회를 공평하게 분배하도록 조직하는 것이라면, 민주주의국가는 인간의 개인적 자유의 전개와 사회적 평화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질서를 생성하고, 그 질서의 정도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에 따라서 사회적·정치적 질서의 수호자로서 국가의 역할이 결정된다.[268] 법치국가의 형법에

266) BMI / BMJ, 2. Periodischer Sicherheitsbericht, S. 441; Denninger,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 10-11/2002, 22, 24.

267) Glaeßner, Sicherheit und Freiheit, 2003, S. 192f.

268) Glaeßner, Sicherheit und Freiheit, 2003, S. 175.

서는 주로 범죄자가 형사정책적 이익의 중심이었지만, 오늘날과 같은 복지국가에서는 피해자가 형사정책적인 이익의 중심이 된다.[269] 그리고 시민들은 그들이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것에 대하여 적극적인 보호를 국가에게 요구함으로써, 시민의 안전보호가 오늘날 국가의 핵심과제가 된다.[270] 이와 같은 국가의 보호기능 또는 보호의무의 프로그램속에서 국민의 안전에 대한 권리를 정당화하고, 안전은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국가로부터의 안전보장뿐만 아니라 국가를 통한 안전보장을 의미하게 되었으며, 안전보장을 위하여 국가에게 헌법적인 위임을 하였고, 그 위임을 근거로 하여 형법적인 사회통제, 즉 안전형법을 도출하고 정당화하고 있다.[271] 이러한 안전형법하에서의 형법은 시민보호법으로[272], 시민들에게 있어서 형법은 국가에 대한 저항법이고 동시에 다른 사람에 의하여 자행되는 자의적·폭력적 자력구제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법이 된다.

국제적 금융시장의 발전, 국경과 무관하게 행해지는 조직화된 범죄, 사적인 전쟁수행 그리고 국제적인 테러리즘과 관련하여 법치국가의 정치제도들은 적절하고 효율적인 반대전략의 제시와 효과적인 전환능력이 제한적이다.[273] 왜냐하면 분쟁해결을 위한 형법수단들은 정형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형화된 형법은 예를 들어, 묵비권과 증거금지로 인하여 정보가 차단되거나, 위해한 아이들에 대한 체포가 제한되어지거나, 또는 위협되어지는 범죄혐의에 대한 전단계 개입에의 어려움 등과 같이 안전의 집중적·효율적인 생성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또한 위해저지를 위하여 행정법 또는 개입법 등이 아니라 형법이 투입되면, 형법은 헌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형법적 책임의 개별적 특성과 범죄혐의를 근거로 한 개입만이 고려되어져야 하므로, 안전의 집중적·효율적 생성에

269) König, in: 25. Strafverteidigertag, 2002, 7, 20.

270) Beste / Wagner, KrimJ 3. Beiheft, 1991, 24, 26.

271) Beste / Wagner, KrimJ 3. Beiheft, 1991, 24, 29; Haffke, in: 29. Strafverteidigertag, 2006, 9, 24.

272) Calliess, NJW 1989, 1338, 1343; Glaeßner, Sicherheit und Freiheit, 2003, S. 175f.; Hassemer, StV 2006, 321, 322.

273) Glaeßner,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 10-11/2002, 3, 4; ders., Sicherheit und Freiheit, 2003, S. 40; Hassemer, StV 2006, 321, 330; Kindhäuser, Universitas 1992, 227, 230.

방해가 되고 있다. 이처럼 안전의 집중적·효율적 생성을 위해서는 금지의 증가, 제재의 강화, 통제밀도의 증가, 절차의 비형식화 등과 같은 감시와 통제의 수단들이 사용되어지는데, 이러한 수단들은 안전 또는 예방의 패러다임에 의하여 완전히 지배되어진다.[274] 그리고 오늘날의 위험사회에서 새로운 거대위해로서 간주되어지는 경제적·기술적 진보의 징후들은 체계조건적으로 개념이 정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체계교란적 또는 체계파괴적으로 개념정의 되어지기 때문에[275], 국가는 이러한 위험을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국가는 형법을 조종수단으로 삼기 위하여 형법적인 수단을 유연화하고자 한다.[276] 이러한 의도에 의하여 오늘날 안전의 생산자로서의 역할을 형법목적으로 삼으며, 이에 따라서 형법은 예방적 이익의 패러다임에 의하여 지배되며, 위해저지법(Gefahrenabwehrrecht)으로서 예방적인 경찰법과의 차이가 무의미하게 된다.[277] 위해저지법으로서의 형법은 안전의 생성 및 유지라는 관점에 의하여 지배되어지며, 이러한 관점에 따른 형법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조정하고자 하는 수단으로, 자유와 안전의 긴장관계에서 안전을 우선시하고, 위해한 행위자에 대한 격리와 제거를 위한 특별형법을 만들고자 한다. 그 결과 감시·통제 수단의 강화가 안전의 생성 및 유지라는 관점하에서는 자유를 위협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부득이한 것으로 이해되어 간단하게 그 설득력을 획득하게 된다.[278] 위해저지법은 당연히 그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위해저지법으로서의 형법 또한 사전예방을 위한 수단이 된다. 그러나 사전예방적 수단으로서의 형법은 형법적 전통들과 모순

274) Di Fabio, NJW 2008, 421, 422; Haffke, in: 29. Strafverteidigertag, 2006, 9, 15; Hassemer, StV 2006, 321, 322, 329. Hassemer는 21세기에는 결과지향성을 포기한 형법은 적합하지도 않고 헌법합치적이도 않다고 한다(ders., StV 2006, 321, 322).

275) König, in: 25. Strafverteidigertag, 2002, 7, 10.

276) P.-A. Albrecht, KritV 1993, 163; Calliess, NJW 1989, 1338, 1340; Haffke, in: 29. Strafverteidigertag, 2006, 9, 13; Naucke, KritV 1993, 135, 144ff.; Kempf, NJW 1997, 1729, 1730f.; Wohlers, Deliktstypen des Präventionsstrafrechts, 2000, S. 47.

277) P.-A. Albrecht, KritV 1993, 163, 171ff.; Calliess, NJW 1989, 1338, 1340; Hassemer, StV 2006, 321, 331; Naucke, KritV 1993, 135, 138, 146f.; Kempf, NJW 1997, 1729, 1730f.

278) Beste / Wagner, KrimJ 3. Beiheft, 1991, 24; Di Fabio, NJW 2008, 421, 422; Hassemer, StV 2006, 321, 325, 328.

되어지는데, 이러한 형법을 통한 위해의 사전예방에 대한 정당성은 형법적으로 근거지울 수 있는 원칙으로부터가 아니라, 단지 안전에 대한 패러다임으로부터 도출하고 있다. 이러한 '안전에 대한 패러다임'은 사회의 전체체계가 안전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형법 또한 이러한 안전에 대한 전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그 결과 형법을 통한 사전예방이 전통적인 형법의 핵심적 영역과 마찰되어지는 경우에도 아무런 문제없이 안전의 생산자로서 형법이 위해의 사전예방을 위한 투입의 정당성문제가 해결되어진다.[279]

국가의 보호의무로부터 국가의 안전생성 의무를 찬성하는 견해들은 자유와 안전이 비록 긴장관계에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는 대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충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들은 자유에 대한 논의를 안전의 논의에서 출발한다.[280] 기본권은 국가권력에 대한 저항권으로 구상되었지만, 이것이 안전이라는 관점을 자유라는 관점과는 다른 것으로 이해하고 서로 분리되는 것을 의미라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국가이론적인 안전의 개념이 자유라는 사상을 통하여 보충되거나 심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한다.[281] 즉 국가가 자유와 안전에 대한 최후의 책임 있는 보증인으로, 국가는 자유권의 핵심영역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새로운 위협에 대한 투쟁을 위하여 실제로 적합하게 추구되어지는 안전획득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함으로써, 안전을 최적으로 보장하고, 이러한 안전의 최적의 보장만이 자유에 대한 최대한의 보장을 보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권력을 위하여 권한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자유의 영역에 포함되어질 수 있다는 것으로[282], 보호를 구하는 시민과 보호를 해야만 하는 국가는 동일한 선상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283] 오늘날은 자유보다 안전이 더 중요시되는데, 국가의 보호의무를 긍정하는 견해들은 이것이 안전을 자유보다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좌우대칭을

279) Hassemer, StV 2006, 321, 326; Haffke, in: 29. Strafverteidigertag, 2006, 9, 15.

280) Di Fabio, NJW 2008, 421, 422.

281) Haffke, in: 29. Strafverteidigertag, 2006, 9, 11.

282) Denninger,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 10-11/2002, 22, 23; Di Fabio, NJW 2008, 421, 422; Gusy / Nitz, in: Lange (Hrsg.), Staat, Demokratie und Innere Sicherheit, 2000, 335, 336; Haffke, in: 29. Strafverteidigertag, 2006, 9, 11.

283) Haffke, in: 29. Strafverteidigertag, 2006, 9, 13.

의미하는 것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자유주의적 헌법국가는 자유의 완전한 희생을 감수하면서 획득한 안전은 그 정당성을 획득할 수 없으며, 단지 근본적인 가치근거와 일치되어 획득한 안전만이 정당화되어질 수 있고[284], 따라서 자유와 안전은 정반대되어지는 개념이 아니라, 상호 관계가 조정되어질 수 있는 것으로 서로 보충적인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285] 오늘날의 민주주의·법치국가적 헌법에서는 그 중요성이 자유권의 절대적 우선에서 국가의 안전능력에 대한 유용성의 후원으로 이전되어지고 있으며, 우리의 눈 앞에서 놓여 있는 위해상황과 관련되어 안전의 생성 및 유지 속에서만 자유의 행사가 보장된다는 것 또한 부정할 수는 없다.[286]

제4절 (반시민적) 적형법(Feindstrafrecht)

(반시민적) 적형법은 '적(Feind)'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적'은 전쟁 또는 전쟁법에서 사용하는 개념이다. 전쟁은 항상 사람들의 불안감을 증가시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고, 또한 지금도 그렇다. 하지만 테러리즘·범죄 등은 전쟁과 같은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주관적 안전을 지속적으로 혼란케 하고 있는 것으로서[287], '테러와의 전쟁(Krieg gegen Terrorismus)' 또는 '범죄와의 전쟁(Krieg gegen Verbrechen)'이라는 용어를 통하여 전쟁과 동일시하고 있다. 이러한 용어의 사용은 외적 안전과 관련된 '전쟁'이라는 개념을 내적 안전의 영역으로 끌어 들여, 내적 안전을 위한 수단들의 투입은 자유법치주의 국가에서는 국민 개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국민들간의 상호공존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범위내에서만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것에 반하여,

284) Di Fabio, NJW 2008, 421, 422. 또한 이에 관하여 Isensee, in: Mellinghoff / Morgenthaler / Puhl, Die Erneuerung des Verfassungsstaates, 2003, 7ff. 참조.

285) Di Fabio, NJW 2008, 421, 422; Glaeßner, Sicherheit und Freiheit, 2003, S. 192f.; Haffke, in: 29. Strafverteidigertag, 2006, 9, 13.

286) Glaeßner, Sicherheit und Freiheit, 2003, S. 275.

287) Glaeßner, Sicherheit und Freiheit, 2003, S. 227; Jahn, Das Strafrecht des Staatsnotstandes, 2004, S. 221f.

외적 안전을 위한 수단들의 투입은 국가의 긴급상태에 해당되어지기 때문에, 국가의 존립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민의 자유에 대한 희생은 부득이하게 발생되어지며, 국가는 거의 무제한적으로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어진다. 결국 전쟁이라는 개념을 통한 테러와 범죄에의 퇴치를 위한 조치들은 이러한 내적 안전과 외적 안전의 경계를 허물어버리고, 내적 안전의 영역에 외적 안전의 수단들 또는 논리들을 투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을 위한 근거가 최근에 주장되고 있는 '(반시민적) 적형법'이다.

(반시민적) 적형법과 관련되어 가장 주목을 받는 사람은 형법학자이자 법철학자인 Günther Jakobs이다. Jakobs는 1985년 프랑크푸르트에서 개최된 형법교수회의에서 "법익침해 전단계에서의 범죄화(Kriminalisierungen im Vorfeld einer Rechtsgutsverletzung)"[288]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반시민적) 적형법(Feindstrafrecht)'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였으며, 그 후의 논문들을 통하여 그의 (반시민적) 적형법이라는 개념을 구체화시켰다. 1985년의 논문에서의 (반시민적) 적형법의 출발점은 순수한 도그마틱적인 방식이었으며, 새로운 전단계 구성요건과 위해화 구성요건의 창출을 통한 가벌성 전치화의 확대에 대한 정당성의 문제이었으며, 여기에서 Jakobs는 오늘날은 구체적인 법익침해뿐만 아니라 법익에 대한 위태화와 연결되어져야만 하는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범죄화의 전단계화를 통하여 가벌성이 인정되는 영역에서의 행위자를 '적(Feind)'으로서 취급할 것을 주장하였다. 1985년의 논문에서 Jakobs는 (반시민적) 적형법에 대하여 온화한 표현을 사용하였다면, 그 후의 논문[289]에서 그는 (반시민적) 적형법을 구체화하여, 시민형법과 (반시민적) 적형법을 명백하게 구분하고, 이 두 형법은 서로 다른 목적을 추구하며, 문제없이 상호 공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현재 Jakobs의 (반시민적) 적형법은 현행 형법에 대한 단지 서술적 분석으로서의 적절성은 동의를 받고 있지만,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부정되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290]

288) Jakobs, ZStW 97 (1985), 751ff.

289) Jakobs, in: Eser / Hassemer / Burkhardt (Hrsg.), Die Deutsche Strafrechtswissenschaft, 2000, 47ff.; ders., HRRS 2004, 88ff.; ders., Staatliche Strafe, 2004 참조.

290) P.-A. Albrecht, ZStW 117 (2005), 852ff.; ders., Kriminologie, 3.Aufl., 2005, S. 69ff.;

1. (반시민적) 적형법의 예

Jakobs가 (반시민적) 적형법으로 예시하는 영역은 가벌성에 대한 광범위한 전치화를 통하여 범죄화의 확장을 형성하고 있는 영역이다. 이러한 영역을 통하여 Jakobs가 (반시민적) 적형법의 전형적인 특징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은, i) 가벌성

ders., in: Uwer (Hrsg.), »Bitte bewahren Sie Ruhe«, 2006, 117, 120ff.; Ambos, Der Allgemeiner Teil des Völkerstrafrechts, 2.Aufl., 2004, S. 62ff.; ders., ZStrR 124 (2006), 1, 25; Aponte, Krieg und Feindstrafrecht, 2004, S. 189ff.; ders., HRRS 2006, 297, 303; ders., in: Uwer (Hrsg.), »Bitte bewahren Sie Ruhe«, 2006, 131; Arnold, HRRS 2006, 303, 314f.; Brunkhorst, in: Uwer (Hrsg.), »Bitte bewahren Sie Ruhe«, 2006, 103, 109ff.; Bung, HRRS 2006, 63; ders., HRRS 2006, 317; ders., in: Uwer (Hrsg.), »Bitte bewahren Sie Ruhe«, 2006, 249; Cancio Meliá, ZStW 117 (2005), 267, 268, 287ff.; Crespo, ZIS 2006, 413; Dencker, StV 1988, 262, 266; Di Fabio, NJW 2008, 421, 423; Düx, ZRP 2003, 189, 194f.; Eser, in: Eser / Hassemer / Burkhardt (Hrsg.), Die Deutsche Strafrechtswissenschaft, 2000, 437, 444f.; Greco, GA 2006, 96, 100, 107, 113; ders., GA 2007, 628, 635; Hassemer, StraFo 2005, 312, 315; ders., HRRS 2006, 130, 137f.; Hefendehl, StV 2005, 156, 158ff.; Heinrich, ZStW 121 (2009), 94, 102ff.; Hörnle, GA 2006, 80, 89ff.; Jahn, Das Strafrecht des Staatsnotstandes, 2004, S. 234f.; Kalek, in: Uwer (Hrsg.), »Bitte bewahren Sie Ruhe«, 2006, 281.; Kett-Straub, GA 2007, 332, 332 Fn. 5; Kindhäuser, FS für Schroeder, 2006, 81, 94ff.; Krauß, in: Uwer (Hrsg.), »Bitte bewahren Sie Ruhe«, 2006, 79, 84ff.; Kunz, FS für Eser, 2005, 1375, 1385ff.; Landau, NStZ 2007, 121, 122; Lüderssen, StV 2001, 718, 719f.; Malek, HRRS 2006, 316; Mir Puig, Grenzen des Normativismus im Strafrecht, in: Hefendehl (Hrsg.), Empirische und dogmatische Fundamente, kriminalpolitischer Impetus, 2005, 77, 89 Fn. 34; Muñoz Conde, Über das Feindstrafrecht, 2007, S. 17; Neumann, in: Uwer (Hrsg.), »Bitte bewahren Sie Ruhe«, 2006, 299, 312ff.; Palazzo, FS für Tiedemann, 2008, 15, 18ff.; Prittwitz, ZStW 113 (2001), 774, 794f.; ders., FS für Lüderssen, 2002, 499; ders., in: Pilgram / Prittwitz (Hrsg.), Kriminologie, 2005, 215, 226; Roxin, Strafrecht. Allgemeiner TeilI, 4.Aufl., 2005, S. 55ff. (Rn. § 2 127ff.); Sacher, ZStW 118 (2006), 574, 605ff.; Sauer, NJW 2005, 1703; Scheffler, FS für Schwind, 2006, 123, 124f.; Schneider, ZStW 113 (2001), 499, 504f.; Schulz, ZStW 118 (2006), 547, 548ff.; ders., in: Uwer (Hrsg.), »Bitte bewahren Sie Ruhe«, 2006, 315, 325ff.; Schünemann, GA 2001, 205, 211ff.; ders., GA 2003, 299, 312f.; ders., FS für Nehm, 2006, 219; ; Silva Sánchez, ZStW 118 (2006), 547, 548ff.; Sinn, ZIS 2006, 107, 112ff.; Strate, HRRS 2004, 239, 245; Streng, in: Uwer (Hrsg.), »Bitte bewahren Sie Ruhe«, 2006, 227, 231ff. 이에 반하여 (반시민적) 적형법을 찬성하는 견해로는 Pérezdel Valle, FS für Jakobs, 2007, 515ff.; Poloino Navarrete, FS für Jakobs, 2007, 529ff.

이 광범위하게 전치화되어 가벌성의 관점이 이미 발생되어진 범죄행위가 아니라 미래에 발생되어질 수 있는 범죄로 이전되어지며, ii) 따라서 형법은 범죄행위에 대한 대응으로서가 아니라 범죄행위를 퇴치하기 위한 법으로서 입법화되어지고, iii) 보통 형법에서는 가벌성이 전치화되어지면 그에 비례해서 형벌 또한 감소되어지지만, (반시민적) 적형법에서는 이러한 형벌의 감소가 발생하지 않으며, iv) 그리고 이러한 (반시민적) 적형법의 효율성을 위하여 법치국가적으로 근거지워진 형사소송법상의 원칙들에 따른 보장이 해체되어진다. 이러한 특징을 바탕으로 하여 Jakobs는 (반시민적) 적형법의 구체적인 예들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가. 실체법으로서의 (반시민적) 적형법의 예

실체법으로서의 (반시민적) 적형법을 Jakobs는 사적 영역에까지 개입할 수 있는 법익침해의 전단계를 범죄화한 규범 전체를 거론하고 있는데, 특히 성범죄와 같은 품행(Haltung)에 따른 범죄, 경제범죄·마약범죄 및 기타 조직화된 범죄(organisierte Kriminalität)로서 영업적인 범죄실행의 영역 그리고 테러리즘·조직화된 범죄처럼 조직적인 범죄실행의 영역, 독일형법 제30조에 따른 범죄공모, 제129조 및 제129조의a에 따른 범죄단체 또는 테러단체의 결성, 제267조에 따른 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그리고 제146조에 따른 통화위조 및 동행사죄 등이다.[291]

독일형법 제30조에 따른 범죄공모에 대한 처벌은 실제 발생한 손해가 아니라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위험성 때문에 처벌되는 것으로, 확인된 행태로 인한 처벌이 아니라 계획된 행태에 의한 처벌로서 가벌성이 광범위하게 전치화되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제129조 및 제129조의a에 따른 범죄단체 또는 테러단체의 결성 또는 마약류법(Betäubungsmittelsgesetz; BtMG) 제30조 제1항 제1호 및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집단적 마약재배 등에 관한 범죄공모도 형법 제30조에 따른 가벌성의 광범위한 전치화 영역에 포함된다. 제30조에 의한 광범위한 전치화에 포함되는 범죄들은 실제 발생된 범죄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형사입

291) Jakobs, HRRS 2004, 88, 92.

법이 아니라 미래에 발생되어질 수 있는 범죄위해로부터의 예방적 범죄퇴치를 위한 형사입법이기 때문에, 이러한 예방적 범죄퇴치입법에는 거의 모든 중죄(Verbrechen)가 포함되어진다.

이러한 범죄영역은 주로 사람들의 내적 영역에 속한다. 하지만 형법은 내적 영역과 외적 영역을 구별하여 행위자의 범죄적 의도가 외부적으로 표현되어진 행태만이 형법적으로 의미있는 행태가 되기 때문에, 만약 Jakobs가 주장하는 (반시민적) 적형법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내적 영역에 속하는 행위자의 범죄적 의도에는 국가가 개입할 수 없으며 처벌할 수도 없게 된다.[292] 이처럼 Jakobs가 주장하는 (반시민적) 적형법은 선행되어지는 법익 또는 광범위한 법익을 찾아야만 하는데, 그러한 이익을 Jakobs는 '공공의 평화와 안전'에서 찾았다.[293] 즉 그의 견해에 따르면 법종속자에 의한 규범효력의 침해가 (반시민적) 적형법의 보호이익이 되는 것이다.[294]

나. 실체법 이외의 (반시민적) 적형법의 예

예를 들어 9.11 테러행위에 대한 대응방식의 특징은 그 테러리스트들은 대량살인을 저지른 범죄자인 동시에 미국에 전쟁을 선포한 자로서 간주되었으며, 그들에 대한 구금을 군사기지에서 법원의 영장없이도 무제한적으로 실시하였다. 이에서 보듯이 테러리즘에 대한 대응방식을 통해서는 집행권과 사법권을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으며, 따라서 사법적 형태로서 간주될 수 없는 대응방식이 사용되어지고 있다. 또한 전쟁의 형태를 띠고 있는 절차를 통하여, 자기의 영토 내에서 범죄가 발생된 국가는 다른 국가의 도움을 얻어 테러리스트의 근거지를 파괴하고 그들을 체포하고자 시도하며, 더 나아가 무고한 사람의 사망과 부수적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테러리스트들을 사살하고자 시도한다. 범죄피고인으로서 테러리스트들의 이러한 이중적인 법적 지위는 '전쟁적 수단을 통한 범죄소추'의 하나의 증거이다.[295]

292) Heinrich, ZStW 121 (2009), 94, 97 참조.
293) Jakobs, ZStW 97 (1985), 751, 773.
294) Heinrich, ZStW 121 (2009), 94, 98 참조.

다. 절차법으로서의 (반시민적) 적형법의 예

실체법적인 (반시민적) 적형법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절차법상의 피고인의 보호와 관련된 보장이 해체되어지는데, Jakobs는 다음의 것들을 그 예로서 거론하고 있다.[296]

i) 독일 형사소송법 제112조 및 제112조의a에 따른 수사를 위한 구금(Untersuchungshaft): 법속에 있는 '사람'은 숨거나 도주하지 않기 때문에 강제적인 구속수사가 필요하지 않지만, 욕구와 분노로 인하여 합법적인 사회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적'은 강제적인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ii) 독일 형사소송법 제81조의a에 따른 강제채혈(Blutentnahme)

iii) 독일 형사소송법 제100조의a에 따른 전화감청(Überwachung der Telekommunikation) 또는 제100조의c에 따른 기타 비밀수사(sonstige geheime Ermittlungen), 그리고 제110조의a에 따른 비밀수사요원에 의한 수사(der Einsatz verdeckter Ermittler) 등 감시조치들(Überwachungsmaßnahmen): 실체법적 (반시민적) 적형법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감시조치들은 합법적인 영역의 밖에서 불법적으로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조치들이 사용되는 경우에 단지 피고인들은 법적 영역의 범위내에서 그의 권리로부터 제외되어지는 것으로, 국가는 법적으로 규정된 방식으로 피고인의 권리를 제거하는 것뿐이다.

iv) 독일 법원조직법을 위한 도입법률(EGGVG) 제31조의 이하의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피고인과 그 변호인과의 접견금지: Jakobs에 의하면 이러한 조치는 현행 독일법률에서 가장 심하게 규정되어 있는 (반시민적) 적형법의 예이다.

(반시민적) 적형법의 영역으로 간주되는 이러한 예의 특징들에 대한 Jakobs의 주장은, 국가가 이러한 (반시민적) 적형법의 수단들을 그들의 국민들을 위협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반대로 국가의 적들을 위협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297]

295) Jakobs, HRRS 2004, 88, 93; ders., Staatliche Strafe, 2004, S. 47.

296) Jakobs, HRRS 2004, 88, 93.

2. 적의 개념: 누가 과연 적으로서 간주되어져야만 하는가?

가벌성이 광범위하게 확장된 영역에 속하는 범죄를 저지른 자는 국가의 '시민(Bürger)'으로서가 아니라 국가의 '적(Feind)'으로 간주되어 취급되어져야만 한다고 Jakobs는 주장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적은 누가 될 수 있는가? Jakobs는 시민형법(Bürgerstrafrecht)과 (반시민적) 적형법(Feindstrafrecht)을 구별하고, 시민형법에 의하여 적용되는 시민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시민은 규범을 명확히 하고 규범유지를 위한 형법위협을 통하여 동기화되어지는 사람이며, 시민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사람(Person)으로, 법치주의적 형법을 통하여 그의 행위에 대하여 반대할 수 있는 자로 간주되어진다. 그에 반하여 (반시민적) 적형법에 속하는 적은 위해로운 개인(Individiuum)으로서, 그러한 적에게는 법치주의적 형법과는 다른 확실한 조치를 취해야만 하는 개인이다. 이러한 개인은 비록 부수적 범위라 할지라도 성범죄와 같은 그의 품행과 경제범죄·조직화된 범죄·마약범죄와 같은 생계생활을 위한 행위, 또는 테러리즘·조직화된 범죄·마약범죄를 위한 단체에 가입한 자로서, 추정적으로 장기간 법을 부정함으로써 사람으로서 행위를 한다는 최소한의 인식을 보장하지 못하여 그의 행동이 이러한 보장의 결핍을 나타내는 자를 말한다.[298] 결국 Jakobs에 따르면 성향범(Hangtäter)과 조직에 관여된 행위자는 일상적인 유형의 범죄로서 잘못 행동한 사람인 시민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져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자는 위해한 개인으로서 취급해야만 하며, 그러한 위해한 사람들의 아노미적 행태에 기초한 위해는 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부각시켜야만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테러리스트들은 원칙적으로 법질서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이러한 질서를 파괴하고자 하기 때문에, 적으로 명명해야만 한다는 것이다.[299]

297) Jakobs, in: Eser / Hassemer / Burkhardt (Hrsg.), Die Deutsche Strafrechtswissenschaft, 2000, 47, 52.

298) Jakobs, in: Eser / Hassemer / Burkhardt (Hrsg.), Die Deutsche Strafrechtswissenschaft, 2000, 47, 52; ders., HRRS 2004, 88, 92; ders., Staatliche Strafe, 2004, S. 42; ders., HRRS 2006, 289, 293. 이러한 관점에 관해서는 Jasch, in: Uwer (Hrsg.), »Bitte bewahren Sie Ruhe«, 2006, 267, 268ff. 참조.

299) Jakobs, HRRS 2004, 88, 92.

Jakobs의 견해에 있어서 시민과 적에 대한 구별에 관한 중요한 기준이 '최소한의 인식적인 토대'를 가지고 있느냐이다. 사회에 있어서 어떤 규범이 사회의 형태를 결정해야만 한다면, 주요사실에 있어서 규범합치적 행태가 기대되어질 수 있어야만 하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이 계산할 때 '다른 사람이 규범합치적으로 행위할 것'이라는 것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적어도 어느 정도 중요한 규범들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규범신뢰라는 이러한 기대가능성을 실제화하기 위하여 확실한 인식적 근거를 필요로 하며, 이러한 충분한 인식적 근거가 없으면 규범효력은 침식되고 공허한 약속이 되어지며, 더 이상은 실제 살아있는 사회적 형태를 제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조직화된 사회로서 기능화할 수도 없다.[300] 따라서 다른 사람이 쾌와 불쾌를 계산할 수 있는 존재로서 개인뿐만 아니라 합법과 불법에 대한 지향성에 근거한 사람으로서, 즉 적이든 시민이든 간에 근본적으로 이러한 규범적 기대를 인식적으로 받아들여야만 한다.[301] 사람 - 시민 - 으로서 취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가 사람으로서 행위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인식적 보장을 보여주어야 하며, 이러한 보장을 보여주지 못하거나 또는 명시적으로 거부한 경우에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시민이 아니라 적으로 전환되어진다.[302] 충분한 인식적 토대를 가지고 있지 않은 자는 다른 사람의 안전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취급되어질 수 있는 기대를 해서도 안되며 국가 또한 그러한 자를 사람으로서 취급해서도 안된다.[303] 따라서 인식적 토대를 가지고 있지 않은 자로서의 적은 그러한 인식적 토대를 가지고 있는 시민으로서의 '사람(Person)'과 반대되는 '비사람(Unperson)'이 되어진다는 것이다.[304]

300) Jakobs, in: Eser / Hassemer / Burkhardt (Hrsg.), Die Deutsche Strafrechtswissenschaft, 2000, 47, 52; ders., HRRS 2004, 88, 91.

301) Jakobs, HRRS 2004, 88, 91.

302) Jakobs, in: Eser / Hassemer / Burkhardt (Hrsg.), Die Deutsche Strafrechtswissenschaft, 2000, 47, 52; ders., Staatliche Strafe, 2004, S. 44.

303) Jakobs, HRRS 2004, 88, 93.

304) Jakobs, in: Eser / Hassemer / Burkhardt (Hrsg.), Die Deutsche Strafrechtswissenschaft, 2000, 47, 53.

3. (반시민적) 적형법의 역할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시민과 적을 구별하고 각각에 적용되는 형법을 시민형법과 (반시민적) 적형법으로 구별한 Jakobs는 (반시민적) 적형법은 비록 시민형법과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시민은 국가에 그들의 안전에 대한 이행을 요구할 권리, 즉 안전을 위한 기본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을 위한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형법으로서 (반시민적) 적형법은 원칙적으로 정당한 법이라고 하고 있다. Jakobs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형법인 (반시민적) 적형법이 시민형법과의 공존속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가. 법익보호의 최적화(Optimierung des Rechtsgüterschtzes)

Jakobs의 견해에 따르면 사람으로서의 취급을 위하여 필수적인 최소한의 인식적 보장을 수행할 수 없는 자인 적은 장기적으로, 그리고 적어도 단호하게 권리를 박탈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적들에 의하여 범하여진 범죄들은 규범효력의 상실뿐만 아니라 위해와도 관련되어지고, 따라서 그러한 적들에 의한 범죄에의 대응은 상실된 규범효력의 상쇄뿐만 아니라 위해를 제거해야만 하며, 그 결과 형벌은 실행된 행위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미래의 범죄행위에 대한 방지를 위해서도 투입될 수 있고, 그것을 위하여 형법적인 가벌성은 범죄예비의 단계에까지 광범위하게 전치화되어질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반시민적) 적형법이 필요하다고 Jakobs는 주장한다.[305] (반시민적) 적형법은 법익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위해'라는 개념을 통해서 정의되어지며, 여기에서의 위해의 시작은 잠재적으로는 제한없이 전치화되어질 수 있다. 그러나 자유주의 국가의 형법에 있어서 문제가 되어지는 통제의 영역은 동기를 포함한 내적 영역이 아니라 외적 영역으로, 내적 영역의 문제는 어쨌든 이미 침해되어 발생된 외적 영역의 해석을 위해서만 허용되어지는데[306], (반시민적) 적형법을 통하여 사람들은 모든 범죄에 대한 예비를 비개인적·비사적인 행태로서 파악하고, 그렇게 되면 인간의 사상

305) Jakobs, HRRS 2004, 88, 92.

306) Jakobs, ZStW 97 (1985), 751, 761.

또는 생각도 비범죄화할 이유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307] 또한 Jakobs에 의하면 범죄적 행태가 법익침해이전으로 광범위하게 전치화되어질 수 없다면, 법익침해 자체를 전치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308] 행위주체에게 있어서 그의 사적 영역으로부터의 탈피를 의미하는 형법인 (반시민적) 적형법은 행위자에게는 국가가 개입할 수 없는 사적인 영역과 아직까지도 사회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행태라는 것은 없으며, 단지 그는 야생동물과 같은 위험원[309], 즉 법익의 적일 뿐이며[310], 법익의 적으로서 행위자에 대한 개념정의는 시민으로서의 행위자에 대한 정의와 대립되어지며, 시민적 상태에 놓여질 수 없는 개인은 사람의 개념을 통한 은혜를 향유할 수 없다.[311] 이러한 의미에서 적형법은 법익보호를 최적화하고, 시민 형법은 자유영역을 최적화한다고 주장한다.[312]

나. 위해퇴치를 위한 형법(Strafrecht zur Bekämpfung der Gefahr)

어느 사회이든 그 사회내에서 살아가고 있는 적들은 항상 존재하게 마련인데, 위험사회에서는 인식적 안전의 결핍이라는 문제를 간단하게 제거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문제는 더 이상 사회내부적인 혼란에 따른 질서유지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취급할 수 있기 위한 기준으로서 필수적인 최소한의 인식적 토대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모든 자들을 사회에서 분리시켜 납득할 수 있는 환경적 조건을 형성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313] 따라서 Jakobs는 위험사회는 이러한 문제를 경찰법적 수단만을 가지고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형법적인 수단을 필요로 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법적인 수단이 (반시민적) 적형법이며, (반시민적) 적형법은 오늘날 양자택일이라는 선택의 문제가 결

307) Jakobs, ZStW 97 (1985), 751, 757.
308) Jakobs, ZStW 97 (1985), 751, 773f.
309) Jakobs, Staatliche Strafe, 2004, S. 41.
310) Jakobs, ZStW 97 (1985), 751, 753.
311) Jakobs, HRRS 2004, 88, 92; ders., Staatliche Strafe, 2004, S. 42.
312) Jakobs, ZStW 97 (1985), 751, 756.
313) Jakobs, in: Eser / Hassemer / Burkhardt (Hrsg.), Die Deutsche Strafrechtswissenschaft, 2000, 47, 53.

코 아니라고 한다.[314]

Jakobs의 (반시민적) 적형법에 있어서 현대국가에서 발생되어지는 일상적인 범죄의 실행자는 멸절시킬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지는 적이 아니라 시민 또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 시민 또는 사람으로서 그의 행위로 인하여 규범효력이 침해되어지면, 그러한 침해된 규범효력을 다시 상쇄시키기 위하여 그 행위자에 대하여 시민으로서 취급하는 것이 필요하다.[315] 그와는 반대로 대량학살, 인종청소와 같은 인권침해의 사례에 있어서는 인권침해의 국제적·국가적 처벌은 정치적 변혁을 통하여 (반시민적) 적형법적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인권침해자에 대한 처벌은 시민으로서 유책한 사람으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위해한 적으로 간주하여 형벌을 부과해야만 한다. 따라서 시민형법에 있어서 형벌의 공개적 기능은 '유책한 범죄행위에 대한 반대'를 의미하지만, (반시민적) 적형법에 있어서는 '위해의 제거'를 의미한다.[316] 이러한 의미에서 현행 형법의 규정들은 두 가지 서로 다른 극점 또는 경향이 존재하는데, 그 하나의 극점에 위치하는 시민형법은 시민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시민들의 행위가 외부화되어, 그러한 외부화를 통하여 침해된 규범의 효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투입되어지는 형법이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극점에 위치하는 (반시민적) 적형법은 적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법익침해 이전의 전단계까지 광범위하게 전치화하여 적의 위해성에 투쟁하기 위하여 투입되어지는 형법이다.[317] 그렇기 때문에 시민형법은 규범효력을 유지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반시민적) 적형법은 위해를 퇴치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318]

314) Jakobs, in: Eser / Hassemer / Burkhardt (Hrsg.), Die Deutsche Strafrechtswissenschaft, 2000, 47, 53; ders., Staatliche Strafe, 2004, S. 47.

315) Jakobs, HRRS 2004, 88, 91.

316) Jakobs, HRRS 2004, 88, 95.

317) Jakobs, HRRS 2004, 88, 92.

318) Jakobs, HRRS 2004, 88, 90.

다. 제어된 전쟁(gebändigter Krieg)

시민형법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질 수 있는 법이지만, 적형법은 적으로 간주되어진 자들에게만 적용되어져야만 하는 법으로, 적에 대하여는 신체적 강제를 위한 수단들이 사용되어질 수 있고, 여기에서의 신체적 강제를 위한 수단들에 전쟁수단도 포함되어질 수 있다.[319] 실제적으로 '적'은 '비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비사람에게 적용되는 (반시민적) 적형법은 전쟁이라는 개념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전쟁이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질 것인가 아니면 전면적으로 사용될 것인가는 적들에 의하여 위협되어진 상태에 달려 있는 것이다.[320] Jakobs의 견해에 따르면 만약 적을 범죄자라는 개념과 동일한 것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자는 전쟁과 형사소송의 개념을 혼동한 것이다. 왜냐하면 범죄자는 일상적인 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시민으로 간주되어지고, 이러한 시민에게 적용되어지는 시민형법은 감정의 억제·순수한 예비가 아니라 외부화된 범죄행위에만 적용되고, 형사소송에 있어서 범죄자의 인격권의 존중 등과 같은 법치국가적 특성에 따라서 적용되어지는 형법을 의미한다. 그에 반하여 테러리스트들과 같은 적들에 대하여 적용되어져야만 하는 (반시민적) 적형법은 이러한 법치국가적 특성에 따라서 적용되어질 필요가 없는 형법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반시민적) 적형법은 시민형법적인 형사소송과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는 '제어된 전쟁'으로서 이해되어질 수 있다.[321] 하지만 (반시민적) 적형법이 전쟁과 관련된 문제인 것은 분명하지만, 여기에서 전쟁은 엄격하게 제한되어져야만 하는 '제어된 전쟁'을 의미한다고 Jakobs는 주장하고 있다.[322] '제어된 전쟁'의 개념을 통하여 (반시민적) 적형법은 두 가지 관점에 의하여 제한되어지는데, 우선은 적으로 간주되는 자라 하더라도 그러한 적에게서 모든 권리를 박탈할 수는 없으며, 예를 들어 적으로 간주된 피고인을 보안처분에 따라서 구금하는 경우에도 그의 재산소유자

319) Jakobs, HRRS 2004, 88, 90.

320) Jakobs, in: Eser / Hassemer / Burkhardt (Hrsg.), Die Deutsche Strafrechtswissenschaft, 2000, 47, 53.

321) Jakobs, HRRS 2004, 88, 92; ders., Staatliche Strafe, 2004, S. 46.

322) Jakobs, Staatliche Strafe, 2004, S. 44.

로서의 권리는 인정되며,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러한 적에 대한 전쟁당사자로서 이해되어지는 국가가 전쟁중이라 하더라도 자유롭게 모든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 추후에 성립되어질 수 있는 평화조약과 같은 일련의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국가는 단지 유보적으로 행동하여야만 한다는 것이다.[323] 하지만 Jakobs는 (반시민적) 적형법을 '제어된 전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적이 그의 위해성을 증가시킬 경우에는 그의 비인간화를 증가시킬 수 있는 법적 조치들을 취할 수 있다고 하면서, 관타나모의 수감자들에 대한 미국정부의 대응방식을 이러한 '제어된 전쟁'의 경계를 초과한 예로 제시하고 있다.[324] Jakobs에 따르면 법질서를 파괴하는 자를 강제수단을 통하여 그러한 행태를 그만두게 하여야 하는데, 그 이유는 이러한 적들에 의하여 법질서가 파괴되어 무규범의 상태가 되면, 이는 자연상태로서 과도한 자유와 과도한 투쟁의 상태가 되며, 이러한 자연상태에서는 약육강식의 법칙에 따라 투쟁상태에서 승리한 자가 그 규범을 결정하고, 패자는 그 규범에 복종해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325] 이러한 의미에서 시민형법은 법치국가적 특성을 가진 형법으로 이해되어지지만, (반시민적) 적형법은 비록 '제어된 전쟁'이긴 하지만 전쟁법으로 이해되어진다.

라. 긴급형법(Notstandsstrafrecht)

그리고 (반시민적) 적형법의 존재는 자유주의 국가의 강력함에 대한 징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자유주의 국가의 강력함이 없다는 징표로서 표현되어지는 것이다. 단지 사람들이 억압적 수단을 가지고 행위자가 그의 사적 영역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에는 자유주의 국가에 있어서 포기되어질 수 없는 규범과 그 규범의 실효성을 상실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326], 현재 상황이 그러한 상황에 해당되어지기 때문에 자유주의 국가의 포기할 수 없는 규범과 그 실효성을 위하여 현재의 사회에서는 (반시민적) 적형법

323) Jakobs, HRRS 2004, 88, 90.
324) Jakobs, Staatliche Strafe, 2004, S. 44.
325) Jakobs, HRRS 2004, 88, 92.
326) Jakobs, ZStW 97 (1985), 751, 783f.

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반시민적) 적형법은 예외적으로만 통용되어질 수 있는 긴급형법으로서만 정당화되어져야 한다.[327] 따라서 (반시민적) 적형법에 속하는 형법조항들은 시민형법과 엄격하게 구별되어져야만 하는데[328], 왜냐하면 (반시민적) 적형법이 분명한 윤곽을 가지고 있고, 이를 통하여 시민형법과 엄격하게 분리되어지는 것이 (반시민적) 적형법적인 규정들을 모든 형법속에 포함시켜 시민형법과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것보다 법치국가적 관점에 있어서 덜 위해하기 때문이다.[329]

4. 현행 형법에 대한 순수한 서술적 표현

Jakobs의 견해에 따르면 현재의 형태에 있어서의 형법전은 적지 않은 곳에서 자유주의적 국가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으며[330], 그리고 형법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형법학이 동일하게 취급한다면, 형법학은 정치로부터의 구별력을 상실하게 되고, 결국 스스로를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331] 따라서 국가는 잘못으로서 범죄를 저지른 시민과 법질서를 파괴한 개인을 구별하여, 각각의 영역에 투입되어지는 형법을 시민형법과 (반시민적) 적형법으로 구별하고, 시민형법에 그의 법치국가적 특성을 유지하게 하기 위하여 법치국가의 적에 대한 조치는 시민에 대한 조치와는 다른 방식을 사용해야만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두 가지 관점은 영역별로 각자의 정당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332] 문제가 발생되어지지 않으며, 결국 예외적인 사례들과 별도의 행위자에게만 적용되는 (반시민적) 적형법의 승인만이 시민형법을 구하고 시민형법의 법치국가적 한계를 존중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333] 그리고 (반시민적) 적

327) Jakobs, ZStW 97 (1985), 751, 784.

328) Jakobs, ZStW 97 (1985), 751, 784.

329) Jakobs, HRRS 2004, 88, 95; ders., Staatliche Strafe, 2004, S. 45.

330) Jakobs, ZStW 97 (1985), 751, 784.

331) Jakobs, in: Eser / Hassemer / Burkhardt (Hrsg.), Die Deutsche Strafrechtswissenschaft, 2000, 47, 54.

332) Jakobs, HRRS 2004, 88, 92f.

형법은 시민형법과 (반시민적) 적형법이라는 독자적인 형법의 두 영역을 대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세계에 대한 두 가지 극점을 서술하거나 형법의 하나의 관련성 속에서 반대되는 두 가지 경향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라고 한다. 또한 이러한 경향은 중첩되어질 수도 있는데, 즉 한편으로는 행위자를 사람으로서 취급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위험원으로서 또는 다른 사람의 위하를 위한 수단으로서 행위자를 취급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334] 그리고 모든 범죄자가 법질서의 원칙적인 적대자는 아니기 때문에, 개관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의 (반시민적) 적형법적인 내용이 일반형법에 도입되는 것은 법치국가적 관점에서 하나의 해악이 되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335] 또한 Jakobs는 (반시민적) 적형법을 통한 강제조치는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위해한 개인에게 적용되어지는데, 현행 형법에 있어서 보안처분을 위한 수단으로서 보호감호가 여기에 해당되어지는데, 보호감호는 유죄선고되어질 행위뿐만 아니라 미래에 있을 일반인에 대한 심각한 범죄행위의 경향으로 인하여 위해한 영향력을 저지하기 위하여 선고되어지기 때문에, 미래를 중심으로 하는 형법의 예가 되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336] 동시에 Jakobs는 형법전에 있어서 현재의 위법한 공격에 대한 정당방위를 허용하고 있는 것처럼, 미래의 공격에 대한 방어도 허용되어져야만 한다고 주장한다.[337]

Jakobs의 견해에 의하면 (반시민적) 적형법에 있어서 '적'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평온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이러한 평온에 대하여 평온한 사람뿐만 아니라 반항자에게도 부담되어질 수 있다.[338] 그러나 법으로서 (반시민적) 적형법은 즉흥적·감정적 행태가 아니라 규정에 의하여 이끌어지는 행태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반시민적) 적형법이라는 명칭이 원칙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를 소유하고 있지 않다.[339] 또한 만약 (반시민적) 적형법이 없다면 법치주의

333) Jakobs, HRRS 2004, 88, 93.

334) Jakobs, HRRS 2004, 88.

335) Jakobs, HRRS 2004, 88, 93.

336) Jakobs, HRRS 2004, 88, 89

337) Jakobs, in: Eser / Hassemer / Burkhardt (Hrsg.), Die Deutsche Strafrechtswissenschaft, 2000, 47, 51.

338) Jakobs, HRRS 2004, 88 참조.

적 헌법에 있어서 적에 해당되어지는 개인들에게 강제조치를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적들에 해당되어지는 개인들을 어떻게 다루어야만 하는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따라서 (반시민적) 적형법이라고 명명되어진 것들을 죄악시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다.[340]

제5절 증오범죄의 현대형법의 경향과의 일치성

1. 위험형법으로서의 증오범죄?

증오범죄는 행위자의 선입견이나 증오로 인하여 발생되는 범죄로 그 발생건수보다는 일단 증오범죄가 발생하면 그 결과가 중한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위험에 대한 어떠한 정확한 산술적 계산이 이루어질 수 없으며, 이러한 증오범죄의 불명확성 또는 예측불가능성으로 인하여 국민들은 다른 범죄에 비하여 더욱 더 불안감을 가지게 된다. 또한 그 피해자들은 어찌 보면 자신이 왜 범죄피해자가 됐는지 알 수 없거나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범죄피해자가 된 것이 하나의 불행으로 간주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국민들은 언제라도 자신이 증오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밖에 없으며, 이로 인하여 국민들의 주관적 불안감은 극도로 증가되며, 언론의 경우 이러한 증오범죄를 다른 범죄에 비하여 대대적으로 보도하고자 한다. 이럴 경우 국민들의 시선을 잡기 위하여 범죄현장의 잔혹성, 범죄행위자의 잔인성 및 사회에 대한 부적응 등을 집중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실제 발생한 사건의 현실보다 드라마틱하게 사건을 재구성함으로써 일정 정도 사건을 왜곡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국민들은 자신도 언젠가는 증오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기인하여 국가에게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으로 요구하게 되며, 이로 인하여 가장 강력한 수단인 형법을 투입하여 범죄행위자를 찾아내 중형으로 처벌할 것을 요

339) Jakobs, HRRS 2004, 88.

340) Jakobs, HRRS 2004, 88, 93.

구하게 된다. 이럴 경우 과거에는 하나의 불행이었던 사건이 하나의 불법으로 전환하게 되며, 국민의 불안감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회 제재수단 중 가장 강력한 수단인 형벌을 통하여 그 목적을 이루고자 하며, 이렇게 판단할 경우 증오범죄는 형법의 가벌성 확장의 한 원인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증오범죄는 범죄행위자의 선입견에 의하여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또는 증오의 발현형태로서 살인, 상해, 기물파손 또는 방화 등 일정한 행위결과가 나타남으로써 외부에 표출된다. 이렇게 판단할 경우 위험형법의 특징인 전단계 범죄화, 예방 또는 결과지향성 등의 요소는 증오범죄에서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위험형법은 새로운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범죄구성요건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형벌을 강화하고, 범죄구성요건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새로운 범죄구성요건을 신설하는 것 또한 포함되어지며, 새롭게 신설되는 범죄구성요건들이 대부분 집단적 법익을 보호하는 추상적 위험범의 형태를 띠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경우 증오범죄로 발생된 범죄에서는 기존의 범죄구성요건에 규정된 법정형을 상향하는 입법요구가 존재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위험형법의 일종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증오범죄는 범죄행위자의 선입견, 혐오 또는 증오가 범죄행위시에 처음으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이미 사전에 그러한 선입견, 혐오 또는 증오가 외부에 표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외국인 혐오증과 같은 자신의 선입견 또는 증오를 주변의 지인에게 표현하거나 최근의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블로그, 페이스북 또는 트위터 등의 인터넷 공간에 자신의 선입견 또는 증오를 표출하고 자신의 의견에 동의를 구하는 경우 등이 대부분일 것이다. 이럴 경우에는 위험형법의 전형적인 특징이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 즉 아직 선입견, 혐오 또는 증오라는 자신의 생각이나 견해가 어떠한 행위로 외부에 표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유해한 행위로 판단하여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결과 '사회의 안전과 공공의 평화'라는 집단적 법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으면, 단지 자신의 선입견이나 증오 등을 표출하는 행위를 범죄화함으로써 처벌조항을 신설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의 범죄화의 유형은 추상적 위험범이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러한 범죄유형은 당연히 증오범죄로 인하여 이미 발생된 범죄결과에 대한 응보적 성격으로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증오범죄라는 사회적

위해를 퇴치·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게 된다. 따라서 증오범죄라는 일종의 범죄예방을 위하여 형법이 예방적 수단으로 사용됨으로써, 예방이라는 관점이 형법이론으로서 적용되어진다. 그리고 증오범죄에 관한 법률규정은 그 수단적용의 정당성 등도 중요하지만, 증오범죄의 미발생이라는 결과가 중요하게 되고, 따라서 증오범죄를 수사하는 경우 그 절차적 정당성은 그다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 못하게 된다. 결국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여 절차적 부당성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증오범죄의 미발생이라는 목적이 달성되면, 전체로서의 증오범죄에 대한 대처방식은 충분한 정당성을 보장받게 된다. 이렇게 판단한다면, 증오범죄는 위험형법의 일종이 될 것이다.

2. 안전형법으로서의 증오범죄?

국민은 자신들이 인간답게 살기 위하여 자유롭게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그들의 자유로운 권리향유를 위하여 국가에게 그들의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증오범죄는 범죄행위자의 선입견, 혐오 또는 증오로 인하여 발생되는 범죄로서, 그 선입견, 혐오 또는 증오가 생성된 원인으로서 인종, 종교, 국적, 성적 편향, 피부색 등 그 원인이 다양하다. 따라서 국민들은 최소한 어느 하나의 원인에 해당되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안전보장을 국가에 강력하게 요구하게 된다. 이러한 요구에 직면한 국가는 국민들의 안전에의 충족이라는 목적달성을 위하여 사회의 가장 강력한 제재수단인 형법을 통하여 이를 충족시키고자 하며, 따라서 형법을 사회문제해결의 최후수단이 아니라 최우선수단으로 간주하고자 한다. 최우선수단이 된 형법이 투입될 영역으로서의 증오범죄는 그 범죄의 실행계획 및 실행모의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고, 이를 위하여 증오범죄의 예방이라는 목적으로 위하여 형법이 투입된다. 이 경우 예방은 형법투입의 제1의 목적이 되어진다. 예방을 목적하는 형법은 무엇보다도 수사수단의 광범위한 전치화가 필요하다. 즉 증오범죄는 범죄실행 이전에 자신의 범행을 일반인들이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전에 공표하며, 이에 동조한 다른 사람들과의 공동범행이 일반

적이다. 범죄수사기관은 증오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수사수단들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 전화 및 휴대폰 통화·이메일의 도·감청, 범죄실행자금의 흐름에 대한 조사, 관련자와의 연계성 등이다. 하지만 이 단계에서는 증오범죄의 범죄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치국가적 형사소송법에 의한 수사수단을 투입하는 것으로는 효율적인 수사결과를 달성할 수 없게 된다. 즉 범죄실행 이전의 단계에서는 증거자료 수집 및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압수·수색 및 도·감청 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내적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방지하기 위하여 광범위한 감시와 예방적 수단들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감시국가 또는 예방국가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이러한 전환을 통하여 국가 수사기관에 범죄예방을 위하여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감시할 수 있는 수단 및 권한을 부여하게 된다. 증오범죄는 사전 예방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범죄로서, 사전에 증오범죄의 예고가 발생한 경우 광범위한 수사를 통하여 그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에 가능한 한 모든 감시수단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로 인하여 자신도 증오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국민에게 국가가 그들을 보호해 주고 있다는 인상을 주어야만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증오범죄는 안전형법의 수단들을 필요로 하는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3. (반시민적) 적형법으로서의 증오범죄?

증오범죄는 그 결과의 심각성으로 인하여 무엇보다도 증오범죄를 계획하거나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범죄행위자의 사상 또는 생각에 대한 형법적 개입을 필요로 한다. 비록 사적인 영역에 해당되는 범죄행위자의 범죄계획 또는 준비가 외부적 범죄실행의 착수단계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수사기관이 인식한 경우에는 그러한 자를 색출하여 처벌할 필요성이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증오범죄에 관한 범죄구성요건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현재 형법체계상의 예비·음모에 해당되는 사적 영역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마련되어야만 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그리고 증오범죄 행위자들은 자신들의 선입견, 혐오 또는 증오에 바탕

을 두고 범죄행위를 실행하는 자들로서, 일시적인 반사회적 행위로 인한 잘못을 형벌을 통하여 다시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자, 즉 시민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자신들의 잘못된 선입견, 혐오 또는 증오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법질서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이러한 질서를 파괴하고자 하는 자들로서, '다른 사람이 규범합치적으로 행위할 것'이라는 규범합치적 행태의 기대에 대한 인식적 토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그런 기대에 대한 인식적 토대를 소유한 자를 위협하는 위해한 자인 '적'이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증오범죄 행위자는 (반시민적) 적형법의 적용대상인 '적'이 된다.

'적'으로서의 증오범죄 행위자는 더 이상 시민으로서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적'을 색출하고 처벌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용할 수 모든 강제적 수단들을 동원할 수 있다. 따라서 수사를 위한 구속, 신원확인 및 증거확보를 위한 강제적 채혈 및 DNA정보 채취, 범죄혐의 없이도 도·감청 허용, 증오범죄 혐의자를 수사하기 위하여 증오범죄와 직접 관련없는 자에 대한 도·감청 허용, 증오범죄 혐의자과 그 변호인 사이의 접견금지, 고문허용, 그리고 사회와의 영원한 격리를 위한 보안처분의 허용 등의 수단이 사용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판단에 의할 경우, 범죄행위자의 잘못된 선입견, 혐오 또는 증오로 인하여 발생되는 증오범죄는 현대형법의 경향인 형법적 가벌성 확장을 위한 제이론, 즉 위험형법, 안전형법, 그리고 (반시민적) 적형법의 영역에 해당되는 범죄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남기철(2006). 노숙인에 대한 폭력 : "증오의 문화", 복지동향 제89호,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p. 22-24.

박상열(2001). 증오범죄와 적정한 보호체계, 광운비교법학 제2호, 광학대학교 비교법연구소, p. 1-20.

박순진(2004).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죄의 사회적 원인에 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17호, 한국공안행정학회, p. 205-236.

임미혜(2007). 불특정 다수를 향한 증오범죄의 원인에 관한 연구, 광운대학교 대학원 마약범죄정보학과 석사학위논문.

지영배(2010). 증오범죄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대학원 형사법학 박사학위논문.

최응렬, 정승민(2005). 미국에서의 인종차별에 의한 증오범죄에 관한 연구, 피해자학 연구 제13권 2호, 한국피해자학회, p. 361-394.

허경미, 김정원(2007). 미국의 증오범죄 피해자 특징에 관한 연구, 경찰학 논총 제2권 1호, 원광대학교 경찰학 연구소, p. 75-104.

▌국외문헌

1) 단행본

Albrecht, Peter-Alexis(2006). Die vergessene Freiheit. Strafrechtsprinzipien in der europäischen Sicherheitsdebatte, 2.Aufl., Berlin.

Albrecht, Peter-Alexis(2005). Kriminologie. Eine Grundlegung zum Strafrecht, 3.Aufl., München.

Ambos, Kai(2004). Der Allgemeine Teil des Völkerstrafrechts. Ansätze einer Dogmatisierung, 2.Aufl., Berlin.

Aponte, Alejandro(2004). Krieg und Feindstrafrecht. Überlegungen zum „effizienten“ Feindstrafrecht anhand der Situation in Kolumbien, Baden-Baden.

Appel, Ivo(1998). Verfassung und Strafe. Zu den verfassungsrechtlichen Grenzen staatlichen Strafens, Berlin.

Barbara Perry(2001). In the name of hate: understanding hate crimes, Routledge.

Beck, Ulrich(1986). Risikogesellschaft. Auf dem Weg in eine andere Moderne, Frankfurt am Main.

Bonß, Wolfgang(1995). Vom Risiko. Unsicherheit und Ungewißheit in der Moderne, Hamburg.

Bundesamt für Verfassungsschutz: Zahlen und Fakten zum Rechtsextremismus in Deutschland: Definitionssystem "Politisch motivierte kriminalität", Berlin (2007). (자료출처: http://verfassungsschutz.de/de/arbeitsfelder/af_rechtsextremismus/ zahlen_und_fakten.html/ zuf_re_erfassungsmethodik_pmk.html)

Bundeskriminalamt (BKA)(2004). Informationen zum polizeilichen Definitionssystem Politisch motivierte kriminalität (PMK), Meckenheim

Bundesministerium des Inneren (BMI)(2009). Bundesinnenministerium legt Zahlen zur politisch motivierten Kriminalität für das Jahr 2008 vor, Berlin. (자료출처: http://www.bmi.bund.de/SharedDocs/Pressemit teilungen/DE/2009/04/ entwicklung_politisch_motiviete_kriminalitaet.html)

Bundesministerium des Innern / Bundesministerium der Justiz(2001). Erster Periodischer Sicherheitsbericht.

Bundesministerium des Innern / Bundesministerium der Justiz(2006). Zweiter Periodischer Sicherheitsbericht.

Bureau of Justice Assistance(1997) Stopping Hate Crime: A Case History From the Sacramento Police Department.

Butterwegge, Christoph(2002). Rechtsextremismus, Freiburg in Breisgau.

Coester Marc(2008). Hate Crime. Das Konzept der Hate Crimes aus den USA unter be-

sonderer Berücksichtigung des Rechtsextremismus in Deutschland, Frankfurt am Main.

Cornel West(1993). Race matters, Vintage Books.

Diamond Jenness(1999). The American Aborigines, Their Origin and Antiquity: A Collection of Papers by Ten Authors, Reprint Services Company.

Europäische Kommission gegen Rassismus und Intoleranz (ECRI)(2009), ECRI-Bericht über Deutschland, 26. 05.
(자료출처: http://www.coe.int/t/dghl/monitoring/ecri/Country-by-country/Germany/DEU-CbC-IV-2009-019-DEU.pdf)

Evers, Adalbert / Nowotny, Helga(1987). Über den Umgang mit Unsicherheit. Die Entdeckung der Gestaltbarkeit von Gesellschaft, Frankfurt am Main.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1993). Hate crime statistics, 1990: a resource book, University (Boston, Mass.). Center for Applied Social Research, United States.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Frederick Merk(1963) Manifest destiny and mission in American history: a re-interpreta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Ganter, Stephan(1998). Ursachen und Formen der Fremdenfeindlichkeit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onn.

Gerstenfeld, P. B. (2004). Hate crimes: Causes, controls, and controversies. Thousand Oaks, California: Sage Publications.

Gerstenfeld, P. B., & Grant D. R. (2004). Crimes of hate: Selected readings. Thousand Oaks, California: Sage Publications.

Glaeßner, Gert-Joachim(2003). Sicherheit und Freiheit. Die Schutzfunktion des demokratischen Staates und die Freiheit der Bürger, Opladen.

Glet, Alke(2011). Sozialkonstruktion und strafrechtliche Verfolgung von Hasskriminalität in Deutschland. Eine empirische Untersuchung polizeilicher und justizieller Definitions- und Selektionsprozesse bei der Bearbeitung vorurteilsmotivierter Straftaten, Berlin.

Hamm(1993) American skinheads: the criminology and control of hate crime. Westport:

Greenwood Publishing Group.

Hannah Arendt(1963). On revolution, Faber and Faber.

Hassemer, Winfried(1990). Einführung in die Grundlagen des Strafrechts, 2.Aufl., München.

Hassemer, Winfried(1996). Produktverantwortung im modernen Strafrecht, 2.Aufl., Heidelberg

Hassemer, Winfried. Theorie und Soziologie des Verbrechens(1973). Ansätze zu einer praxisorientierten Rechtsgutslehre, Frankfurt am Main.

Herzog, Felix(1991). Gesellschaftliche Unsicherheit und strafrechtliche Daseinsvorsorge. Studien zur Vorverlegung des Strafrechtsschutzes in den Gefährdungsbereich, Heidelberg

Herzog, Felix(1987). Prävention des Unrechts oder Manifestation des Rechts. Bausteine zur Überwindung des heteronom-präventiven Denkens in der Strafrechtstheorie der Moderne, Frankfurt am Main.

Hohmann, Olaf. Das Rechtsgut der Umweltdelikte(1991). Grenzen des strafrechtlichen Umweltschutzes, Frankfurt am Main.

Human Rights First(2008). 2008 Hate Crime Survey, New York.
(자료출처: http://humanrightsfirst.org/pdf/FD-081103-hate-crime-survey-2008.pdf)

Isensee, Josef(1983). Das Grundrecht auf Sicherheit. Zu den Schutzpflichten des freiheitlichen Verfassungsstaates, Berlin/New York.

Jack Levin & Jack McDevitt(1993). Hate crimes: the rising tide of bigotry and bloodshed, Plenum Press.

Jack McDevitt(2000). Slow Lightning, HarperCollins Publishers Limited.

Jack P. Gibbs(1989). Control: sociology's central notion,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Jäger, Herbert(1957). Strafgesetzgebung und Rechtsgüterschutz bei Sittlichkeitsdelikten. Eine kriminalsoziologische Untersuchung, Stuttgart.

Jahn, Matthias(2004). Das Strafrecht des Staatsnotstandes. Die strafrechtlichen Rechtfertigungsgründe und ihr Verhältnis zu Eingriff und Intervention im Verfassung- und Völkerrecht der Gegenwart, Frankfurt am Main.

Jakobs, Günther(2004). Staatliche Strafe: Bedeutung und Zweck, Paderborn / München / Wien / Zürich.

James B. Jacobs, Kimberly Potter(2000). Hate crimes: criminal law & identity politics,

Oxford University Press.

Jescheck, Hans-Heinrich / Weigend, Thomas(1996). Lehrbuch des Strafrechts. Allgemeiner Teil, 5.Aufl., Berlin.

John Maroney(1998). Environmental assessments for real property transfers, Environmental Resource Center.

Junge, Iris(2000). Das Schutzgut des § 130 StGB, Herdecke.

Kindhäuser, Urs. Gefährdung als Straftat(1989). Rechtstheoretische Untersuchungen zur Dogmatik der abstrakten und konkreten Gefährdungsdelikte, Frankfurt am Main.

Kratzsch, Dietrich(1985) Verhaltenssteuerung und Organisation im Strafrecht, Berlin.

Krupna, Karsten(2010). Das Konzept der "Hate Crime" in Deutschland. Eine systematische Untersuchung der Kriminalitätsform, der strafrechtlichen Erfassungsmöglichkeiten de lege lata und der Verarbeitung in der Strafrechtspraxis, Frankfurt am Main.

Kühl, Kristian(2008). Strafrecht. Allgemeiner Teil, 6.Aufl., München.

Lagodny, Otto(1996). Strafrecht vor den Schranken der Grundrechte: Die Ermächtigung zum strafrechtlichen Vorwurf im Lichte der Grundrechtsdogmatik; dargestellt am Beispiel der Vorfeldkriminalisierung, Tübingen.

Lauterwein, Carl Constantin(2006). Symbolische Gesetzgebung. Eine Untersuchung am Beispiel Strafrecht, München.

Luhmann, Niklaus(2003). Soziologie des Risikos, Berlin/New York 1991. (unveränderter Nachdruck.

Mahoney, J.(1999). Stop the hate: Massachusetts Task Force Creates Student Civil Rights Project to Combat Problem. Corrections Today, 61(5), 82-86.

Melvin Steinfield(1973). Cracks in the melting pot: racism and discrimination in American history, Glencoe Press.

Michael Mann(1993). The Sources of Social Power: The Rise of Classes and nation-states, 1760-1914, Cambridge University Press.

Morgan, C. T., King, R. A., & Robinson, N. M.(1981) Introduction to psychology (6thed). N. Y.:McGrow-Hill.

Münkler, Herfried(2002). Die neuen Kriege, 3.Aufl., Hamburg.

Muñoz Conde, Francisco: Über das „Feindstrafrecht“, Berlin 2007.

Müssig, Bernd J.A.(1994). Schutz abstrakter Rechtsgüter und abstrakter Rechtsgüterschutz, Frankfurt am Main.

Naucke, Wolfgang Über Generalklauseln und Rechtsanwendung im Strafrecht, Tübingen. (1973).

NK-Hassemer / Neumann(2005). Vor § 1, 2.Aufl., Baden-Baden.

Philip Perlmutter(1992). Divided we fall: a history of ethnic, religious, and racial prejudice in America, Iowa State University Press.

Prittwitz, Cornelius(1993). Strafrecht und Risiko. Untersuchungen zur Krise von Strafrecht und Kriminalpolitik in der Risikogesellschaft, Frankfurt am Main.

Rath, Jürgen(2002). Gesinnungsstrafrecht. Zur Kritik der Destruktion des kriminalunrechtsbegriffs in der Rechtsprechung des Bundesgerichtshofs, Hamburg.

Reginald Horsman(1981). Reac and manifest destiny, President and fellows of Harvard college.

Robbers, Gerhard(1987). Sicherheit als Menschenrecht. Aspekte der Geschichte, Begründung und Wirkung einer Grundrechtsfunktion, Baden-Baden.

Rohrßen, Benedikt(2009). Von der »Anreizung zum klassenkampf« zur »Volksverhetzung« (§ 130 StGB). Reformdiskussion und Gesetzgebung seit dem 19. Jahrhundert, Berlin.

Ronald T. Takaki(1994). From different shores: perspectives on race and ethnicity in America, Oxford University Press.

Roxin, Claus(2006). Strafrecht. Allgemeiner Teil. Band I: Grundlagen, Der Aufbau der Verbrechenslehre, 4.Aufl., München.

Samuel Walker, Cassia Spohn, Miriam DeLone(1996). The color of justice: race, ethnicity, and crime in America, Wadsworth Pub. Co.,

Schellenberg, Britta(2008). Strategien gegen Rechtsextremismus in Deutschland - Analyse der Gesetzgebung und Umsetzung des Rechts. Centrum für angewandte Politikforschung, Forschungsgruppe Zukunftsfragen, Gütersloh.

Schönke, Adolf / Schröder, Horst(2006). Strafgesetzbuch. Kommentar, 27.Aufl., München.

Silva Sánchez, Jesús-María(2003). Die Expansion des Strafrechts. Kriminalpolitik in post-industriellen Gesellschaften, Frankfurt am Main.

Singelnstein, Tobias / Stolle, Peer(2006). Die Sicherheitsgesellschaft. Soziale Kontrolle im 21. Jahrhundert, Wiesbaden.

Sowada, Christoph(2002). Der gesetzliche Richter im Strafverfahren, Berlin.

Valerie Jenness, Kendal Broad(1997). Hate crimes: new social movements and the politics of violence, Walter de Gruyter, Inc., New York.

Valerie Jenness, Ryken Grattet(2001). Making Hate a Crime: From Social Movement to Law Enforcement, The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s Rose Series in Sociology.

Wessels, Johannes / Beulke, Werner, Strafrecht.. Allgemeiner Teil, 39.Aufl., Heidelberg. (2009)

Willems, Helmut / Steigleder, Sandr(2003). Täter-Opfer-Konstellationen und Interaktionen im Bereich fremdenfeindlicher, rechtsextremistischer und antisemitischer Gewaltdelikte, Trier. a.

Winthrop D. Jordan(1968). White over black: American attitudes toward the Negro, 1550-1812,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Wohlers, Wolfgang(2000). Deliktstypen des Präventionsstrafrechts – zur Dogmatik „moderner“ Gefährdungsdelikte, Berlin.

2) 연구논문

Aden, Hartmut: Problemdefinition und Agendagestaltung in der Kriminalpolitik, in: Hans-Jürgen Lange (Hrsg.), Kriminalpolitik, Wiesbaden 2008, S. 122-136.

Albrecht, Peter-Alexis: „Krieg gegen den Terror“ – Konsequenzen für ein rechtsstaatliches Strafrecht, ZStW 117 (2005), S. 852-864.

Albrecht, Peter-Alexis: »Krieg gegen den Terror«. Konsequenzen für ein rechtsstaatliches Strafrecht, in(2006). Thomas Uwer (Hrsg.), »Bitte bewahren Sie Ruhe«. Leben im Feindrechtsstaat, Berlin, S. 117-128.

Albrecht, Peter-Alexis(1994) Das Strafrecht im Zugriff populistischer Politik, StV, S. 265-273.

Ambos, Kai(2006). Feindstrafrecht, ZStrR 124, S. 1-30.

Amelung, Knut(2003). Der Begriff des Rechtsguts in der Lehre vom strafrechtlichen Rechtsgüterschutz, in: Roland Hefendehl / Andrew von Hirsch / Wolfgang Wohlers (Hrsg.), Die Rechtsgutstheorie. Legitimationsbasis des Strafrechtsoderdogmatisches Glasperlenspiel?, Baden-Baden, S. 155-182.

Aponte, Alejandro(2006) Feind oder Bürger? Günther Jakobs und das Dilemma eines feindlichen Strafrechts, in: Thomas Uwer (Hrsg.), »Bitte bewahren Sie Ruhe«. Leben im Feindrechtsstaat, Berlin, S. 131-163.

Aponte, Alejandro(2006) Krieg und Politik – Das politische Feindstrafrecht im Alltag, HRRS, S. 297-303.

Arnold, Jörg(2006) Entwicklungslinien des Feindstrafrechts in 5 Thesen, HRRS, S. 303-315.

Bechmann, Gotthard: Zukunft als Risiko oder Gefahr. Zur Bedeutung des Nichtwissens und der Sicherheit in der modernen Gesellschaft, in(2003) Gunter Scholtz / Tobias Trappe (Hrsg.), Sicherheit – Grundproblem moderner Gesellschaft, Würzburg, S. 131-149.

Beck, Ulrich(1991). Einleitung, in: ders. (Hrsg.), Politik in der Risikogesellschaft. Essays und Analysen, Frankfurt am Main, S. 9-29.

Beste, Hubert / Wagner, Hartmut(1991) Strafrecht, gesellschaftliche Sicherheit und demokratische Teilhabe, in: Politisches Strafrecht und politische Kriminalität, KrimJ 3. Beiheft, S. 24-40.

Beulke, Werner(2008) Beweiserhebungs- und Beweisverwertungsverbote im Spannungsfeld zwischen den Garantien des Rechtsstaates und der effektiven Bekämpfung von Kriminalität und Terrorismus, Jura, S. 653-666.

Blanke, Thomas(1990). Zur Aktualität des Risikobegriffs. Über die Konstruktion der Welt und die Wissenschaft von ihr, Lebiathan, S. 134-143.

Bonß, Wolfgang(1997). Die gesellschaftliche Konstruktion von Sicherheit, in: Ekkehard Lippert / Andreas Prüfert / Günther Wachtler (Hrsg.), Sicherheit in der unsicheren Gesellschaft, Wiesbaden, S. 21-41.

Böse, Martin(2003). Grundrechte und Strafrecht als „Zwangsrecht“, in: Roland Hefendehl / Andrew von Hirsch / Wolfgang Wohlers (Hrsg.), Die Rechtsgutstheorie. Legitimationsbasis des Strafrechts oder dogmatisches Glasperlenspiel?, Baden-Baden, S. 89-95.

Brunkhorst, Hauke (2006), Folter, Würde und repressiver Liberalismus, in: Thomas Uwer (Hrsg.), »Bitte bewahren Sie Ruhe«. Leben im Feindrechtsstaat, Berlin, S. 103-116.

Bung, Jochen(2006). Feindstrafrecht als Theorie der Normgeltung und der Person, HRRS, S. 63-71.

Bung, Jochen(2006). Feindstrafrecht als Theorie der Normgeltung und der Person, in: Thomas Uwer (Hrsg.), »Bitte bewahren Sie Ruhe«. Leben im Feindrechtsstaat, Berlin, S. 249-265.

Bung, Jochen(2006). Zurechen-Können, Erwarten-Dürfen und Vorsorgen-Müssen – Eine Erwiderung auf Günther Jakobs, HRRS, S. 317-321.

Bunzel, Michael(2003). Die Potenz des verfassungsrechtlichen Verhältnismäßigkeitsprinzips als Grenze des Rechtsgüterschutzes in der Informationsgesellschaft, in: Roland Hefendehl / Andrew von Hirsch / Wolfgang Wohlers (Hrsg.), Die Rechtsgutstheorie. Legitimationsbasis des Strafrechts oder dogmatisches Glasperlenspiel?, Baden-Baden, S. 96-118.

Calliess, Rolf-Peter(1989). Strafzwecke und Strafrecht. 40 Jahre Grundgesetz – Entwicklungstendenzen vom freiheitlichen zum sozial-autoritären Rechtsstaat?, NJW, S. 1338-1343.

Cancio Meliá, Manuel(2005) Feind„strafrecht“?, ZStW 117, S. 267-289.

Crespo, Eduardo Demetrio(2006). Das „Feindstrafrecht“ darf nicht sein! Zur Unzulässigkeit des sogenannten „Feindstrafrechts“ und dem Gedanken der Sicherheit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der wissenschaftlichen Diskussion und Tendenzen in Spanien, ZIS, S. 413-427.

Dencker, Friedrich: Das »Gesetz zur Bekämpfung des Terrorismus«, StV 1987, S. 117-122.

Denninger, Erhard(2002). Freiheit durch Sicherheit? Anmerkungen zum

Terrorismusbekämpfungsgesetz,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 10-11/, S. 22-30.

ders.: Internationalisierung der Kriminalpolitik(2008). Überlegungen zum strafrechtlichen Kampf gegen den Terrorismus, in: Ulrich Sieber / Gerhard Dannecker / Urs Kindhäuser / Joachim Vogel / Tonio Walter (Hrsg.), Strafrecht und Wirtschaftsstrafrecht – Dogmatik, Rechtsvergleich, Rechtstatsachen -. Festschrift für Klaus Tiedemann zum 70.Geburtstag, Köln / München, S. 1489-1502.

Di Fabio, Udo(2008). Sicherheit in Freiheit, NJW, S. 421-425.

Düx, Heinz: Globale Sicherheitsgesetze und weltweite Erosion von Grundrechten. Statt „Feindstrafrecht“ globaler Ausbau demokratischer Rechte, ZRP 2003, S. 189-195.

Erbel, Günter: Die öffentliche Sicherheit im Schatten des Terrorismus,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 10-11/2002, S. 14-21.

Eser, Albin: Schlußbetrachtungen, in: ders. / Winfried Hassemer / Björn Burkhardt (Hrsg.), Die Deutsche Strafrechtswissenschaft vor der Jahrtausendwende. Rückbesinnung und Ausblick, München 2000, S. 437-448.

Frisch, Wolfgang: An den Grenzen des Strafrechts, in: Wilfried Küper / Jürgen Welp (Hrsg.), Beiträge zur Rechtswissenschaft. Festschrift für Walter Stree und Johannes Wessels zum 70. Geburtstag, Heidelberg 1993, S. 69-106.

Frisch, Wolfgang: Sicherheit durch Strafrecht? Erwartungen, Möglichkeiten und Grenzen, in: Gunnar Duttge / Gerd Geilen / Lutz Meyer-Goßner / Günter Warda (Hrsg.), Gedächtnisschrift für Ellen Schlüchter, Köln / Berlin / Bonn / München 2002, S. 669-689.

Gaßebner, Martina / Peucker, Christian / Schmidt, Nikola / Wahl, Klaus(2003). Fremdenfeinde und Rechtsextremisten vor Gericht: Analyse von Urteilen, in: Klaus Wahl (Hrsg.), Skinheads, Neonazis, Mitläufer. Täterstudien und Prävention, Opladen , S. 29-80.

Glaeßner, Gert-Joachim(2002). Sicherheit und Freiheit,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 10-11/, S. 3-13.

Grattet, R., & Jenness, V. (2001). The British and Maturation of Hate Crime Policy in

the United States.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45, 668-696.

Greco, Luís: Die Regeln hinter der Ausnahme. Gedanken zur Folter in sog. ticking time bomb-Konstellationen, GA 2007, 628-643.

Greco, Luís(2006). Über das so genannte Feindstrafrecht, GA, S. 96-113.

Grimm, Dieter(2009). Stufen der Rechtsstaatlichkeit. Zur Exportfähigkeit einer westlichen Errungenschaft, JZ , S. 596-600.

Gusy, Christoph / Nitz, Gerhard: Vom Legitimationswandel staatlicher Sicherheitsfunktion, in(2000). Hans-Jürgen Lange (Hrsg.), Staat, Demokratie und Innere Sicherheit in Deutschland, Opladen, S. 335-354.

Haffke, Bernhard(2006). Vom Rechtsstaat zum Sicherheitsstaat?, in: Strafverteidigervereinigungen (Hrsg.), Wen schützt das Strafrecht? 29. Strafverteidigertag. Aachen, 4.-6. März 2005, Schriftenreihe der Strafverteidigervereinigungen Bd. 29, Berlin, S. 9-26.

Hassemer, Winfried(2003). Darf es Straftaten geben, die ein strafrechtliches Rechtsgut nicht in Mitleidenschaft ziehen?, in: Roland Hefendehl / Andrew von Hirsch / Wolfgang Wohlers (Hrsg.), Die Rechtsgutstheorie. Legitimationsbasis des Strafrechts oder dogmatisches Glasperlenspiel?, Baden-Baden, S. 57-64.

Hassemer, Winfried(2000). Grundlinien einer personalen Rechtsgutslehre, in: ders., Strafen im Rechtsstaat, Baden-Baden, S. 160-169.

Hassemer, Winfried(1992). Kennzeichen und Krisen des modernen Strafrechts, ZRP, S. 378-383.

Hassemer, Winfried(1995). Perspektiven einer neuen Kriminalpolitik, StV, S. 483-490.

Hassemer, Winfried(1987). Prävention im Strafrecht, JuS, S. 257-266.

Hassemer, Winfried(2006). Sicherheit durch Strafrecht, HRRS, S. 130-143.

Hassemer, Winfried(2006). Sicherheit durch Strafrecht. Eröffnungsvortrag Strafverteidigertag 24. 3. 2006, Frankfurt/M., Paulskirche, StV, S. 321-332.

Hassemer, Winfried(2005). Sicherheitsbedürfnis und Grundrechtsschutz: Umbau des Rechtsstaates?, StraFo, S. 312-318.

Hassemer, Winfried(1989). Symbolisches Strafrecht und Rechtsgüterschutz, NStZ, S. 553-559.

Hassemer, Winfried(2002). Zum Spannungsverhältnis von Freiheit und Sicherheit. Drei Thesen, vorgänge 3/, S. 10-15.

Hefendehl, Roland(2007). Mit langem Atem: Der Begriff des Rechtsguts, Oder: Was seit dem Erscheinen des Sammelbandes über die Rechtsgutstheorie geschah, GA, S. 1-14.

Hefendehl, Roland(2005). Organisierte Kriminalität als Begründung für ein Feind- und Täterstrafrecht?, StV, S. 156-161.

Heinrich, Bernd(2009) Die Grenzen des Strafrechts bei der Gefahrprävention. Brauchen oder haben wir ein „Feindstrafrecht“?, ZStW 121, S. 94-130.

Herzog, Felix(1992). Grenzen der strafrechtlichen Kontrolle gesellschaftlicher Risiken – Eine kritische Perspektive auf das Gefährdungsstrafrecht, in: Raimo Lahti / Kimmo Nuotio (Hrsg.), Strafrechtstheorie im Umbruch, Helsinki, S. 367-375.

Hilgendorf, Eric(1993). Gibt es ein „Strafrecht der Risikogesellschaft?” – Ein Überblick -, NStZ, S. 10-16.

Hohmann, Olaf(1991). Das Rechtsgut der Umweltdelikte. Grenzen des strafrechtlichen Umweltschutzes, Frankfurt am Main.

Holzberger, Mark(2001). Offenbarungseid der Polizeistatistiker - Registrierung rechts-extremistischer Straftaten, Bürgerrechte & Polizei/CILIP 68/1.
(자료출처: http://www.cilip.de/ausgabe/68/ erfass.htm)

Hörnle, Tatjana(2003). Der Schutz von Gefühlen im StGB, in: Roland Hefendehl / Andrew von Hirsch / Wolfgang Wohlers (Hrsg.), Die Rechtsgutstheorie. Legitimationsbasis des Strafrechts oder dogmatisches Glasperlenspiel?, Baden-Baden, S. 268-280.

Hörnle, Tatjana(2006). Deskriptive und normative Dimensionen des Begriffs »Feindstrafrecht«, GA, S. 80-95.

Hutter, Reinhard(2002). Cyber-Terror”: Risiken im Informationszeitalter,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 10-11/, S. 31-39.

Isensee, Josef(1992). Das Grundrecht als Abwehrrecht und als staatliche Schutzpflicht, in: Josef Isensee / Paul Kirchhoff (Hrsg.), Handbuch des Staatsrech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d. V: Allgemeine Grundrechtslehren, Heidelberg,

S. 143-241.

Isensee, Josef(2003). Der Verfassungsstaat als Friedensgarant, in: Rudolf Mellinghoff / Gerd Morgenthaler / Thomas Puhl, Die Erneuerung des Verfassungsstaates. Symposiumaus Anlass des 60.Geburtstages von Professor Dr. Paul Kirchhof, Heidelberg, S. 7-43.

Jäger, Christian(2006).: Grund und Grenzen des Gesetzlichkeitsprinzips im Strafprozessrecht, GA, S. 615-628.

Jakobs, Günther(2004). Bürgerstrafrecht und Feindstrafrecht, HRRS, S. 88-95.

Jakobs, Günther(2000). Das Selbstverständnis der Strafrechtswissenschaft vor den Herausforderungen der Gegenwart (Kommentar), in: Albin Eser / Winfried Hassemer / Björn Burkhardt (Hrsg.), Die Deutsche Strafrechtswissenschaft vor der Jahrtausendwende. Rückbesinnung und Ausblick, München, S. 47-56.

Jakobs, Günther(2006). Feindstrafrecht? – Eine Untersuchung zu den Bedingungen von Rechtlichkeit, HRRS, S. 289-297.

Jakobs, Günther(1985). Kriminalisierung im Vorfeld einer Rechtsgutsverletzung, ZStW 97, S. 751-785.

Jasch, Michael(2006). Alltägliche Feinde. Die Expansion der Ausschließung mit den Mitteln des Rechts, in: Thomas Uwer (Hrsg.), »Bitte bewahren Sie Ruhe«. Leben im Feindrechtsstaat, Berlin, S. 267-278.

Jesse, Eckhard(2003). Extremismus, in: Uwe Andersen / Wichard Woyke (Hrsg.), Handwörterbuch des politischen System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5.Aufl., Bonn, S. 178-181.

Kaleck, Wolfgang(2006). Zu kurz gegriffen. Die Diskussion um das Feindstrafrecht, in: Thomas Uwer (Hrsg.), »Bitte bewahren Sie Ruhe«. Leben im Feindrechtsstaat, Berlin, S. 281-297.

Kempf, Eberhard(1997). Die Funktion von Strafrecht und Strafverteidigung in einer modernen Gesellschaft, NJW, S. 1729-1736.

Kett-Straub, Gabriele(2007). Auch Terroristen haben einen Rechtsanspruch auf Freiheit. Die Aussetzung der Reststrafe in Mordfällen mit besonderer Schuldschwere,

GA, S. 332-347.

Kindhäuser, Urs(2006). Schuld und Strafe. Zur Diskussion um ein „Feindstrafrecht“, in: Andreas Hoyer / Henning Ernst Müller / Michael Pawlik / Jürgen Wolter (Hrsg.), Festschrift für Friedrich-Christian Schroeder zum 70.Geburtstag, Heidelberg, S. 81-98.

Kindhäuser, Urs(1992). Sicherheitsstrafrecht. Gefahren des Strafrechts in der Risikogesellschaft, Universitas, S. 227-235.

Kleffner, Heike / Holzberger, Mark(2004) War da was? Reform der polizeilichen Erfassung rechter Straftaten, Bürgerrechte & Polizei/CILIP 77/1, S. 56-64.

König, Stefan(2002). Rechtsstaatsmüdigkeit?, in: Strafverteidigervereinigungen (Hrsg.), Erosion der Rechtsstaatlichkeit. Werteverfall oder Paradigmenwechsel?, Ergebnisse des 25. Strafverteidigertages. Berlin, 9. bis 11. März 2001, Schriftenreihe der Strafverteidigervereinigungen Bd. 25, Berlin, S. 7-25.

Krauß, Detlef(2006). Vom Bürgerstrafrecht zum Feindstrafrecht?, in: Thomas Uwer (Hrsg.), »Bitte bewahren Sie Ruhe«. Leben im Feindrechtsstaat, Berlin, S. 79-101.

Kube, Edwin: Verbrechensfurcht – ein vernachlässigtes kriminalpolitisches Problem, in: Hans-Heiner Kühne (Hrsg.), Festschrift für Koichi Miyazawa. Dem Wegbereiter des japanisch-deutschen Strafrechtsdiskurses, Baden-Baden 1995, S. 199-214.

Kubink, Michael(2002) Fremdenfeindliche Straftaten - eine neuer Versuch der polizeilichen Registrierung und kriminalpolitischern Problembewältigung, MSchrKrim 5, S. 325-340.

Kubink, Michael(2002). Rechtsextremistische und fremdendeindliche Straftaten, in: ZRP, S. 308-312.

Kühne, Hans-Heiner(2008). Die Instrumentalisierung der Wahrheitsfindung im Strafverfahren, GA, S. 361-374.

Kunz, Karl-Ludwig(2005). “Gefährliche” Rechtsbrecher und ihre Sanktionierung, in: Jörg Arnold / Björn Burkhardt / Walter Gropp / Günter Heine / Hans-Georg Koch / Otto Lagodny / Walter Perron / Susanne Walther (Hrsg.), Menschengerechtes Strafrecht. Festschrift für Albin Eser zum 70.Geburtstag, München, S. 1375-1392.

Lagodny, Otto(2003). Das materielle Strafrecht als Prüfstein der Verfassungsdogmatik, in: Roland Hefendehl / Andrew von Hirsch / Wolfgang Wohlers (Hrsg.), Die Rechtsgutstheorie. Legitimationsbasis des Strafrechts oder dogmatisches Glasperlenspiel?, Baden-Baden, S. 83-88.

Landau, Herbert(2007). Die Pflicht des Staates zum Erhalt einer funktionstüchtigen Strafrechtspflege, NStZ, S. 121-129.

Lau, Christoph(1989). Risikodiskurse: Gesellschaftliche Auseinandersetzungen um die Definition von Risiken, Soziale Welt, S. 418-436.

Lüderssen, Klaus(1995). Das Strafrecht zwischen Funktionalismus und „alteuropäischem" Prinzipiendenken. Oder: Verabschiedung des „alteuropäischen" Strafrechts?, ZStW 107, S. 877-906.

Lüderssen, Klaus: Moderne Wege kriminalpolitischen Denkens – Einführende Bemerkungen zum gesamten Werk, in: ders. (Hrsg.), Aufgeklärte Kriminalpolitik oder Kampf gegen das Böse?, Band I: Legitimationen, Baden-Baden 1998, S. 25-118.

Lüderssen, Klaus: Zur Zukunft des Strafverteidiger, StV 2001, S. 718-720.

Malek, Klaus(2006). Feindstrafrecht – Einige Anmerkungen zur Arbeitsgruppe „Feindstrafrecht – Ein Gespenst geht um im Rechtsstaat" auf den 30. Strafverteidigertag, HRRS 2006, S. 316-317.

McDevitt, J., Levin, J., & Bennett, S. (2002). Hate crime offenders: An expanded typology. Journal of Social Issues, 58(2), 303-317.

Meise, Manfred / Maier, Kurt: Spiegelt die Polizeiliche Kriminalstatistik das tatsächliche Kriminalitätsgeschehen wider? Eine kritische Auseinandersetzung mit dem Zahlenwerk, in: Edwin Kube / Hans Schneider / Jürgen Stock (Hrsg.), Kriminologische Spuren in Hessen, Bd. 2, Frankfurt am Main 2003, S. 79-85.

Meyer, Berthold: Wenn die Ausnahme zur Regel wird. Staatliche Reaktionen auf den Terrorismus im Spannungsfeld von Sicherheit und Freiheit, in: Gunter Scholtz / Tobias Trappe (Hrsg.), Sicherheit – Grundproblem moderner Gesellschaft, Würzburg 2003, S. 71-90.

Mir Puig, Santiago: Rechtsgüterschutz durch dialogisches Strafrechts, GA 2006, S. 667-677.

Naucke, Wolfgang(1993). Schwerpunktverlagerung im Strafrecht, KritV, S. 135-162.

Naucke, Wolfgang(1984). Über deklaratorische, scheinbare und wirkliche Entkriminalisierung, GA, S. 199-217.

Neumann, Ulfrid(1994). Das Risiko des Risiko-Strafrechts. Zur Funktion des Strafrechts bei der Bekämpfung von HIV-Infektionen, in: HIV und AIDS im Spiegel der Wissenschaft, St. Ingbert, S. 77-89.

Neumann, Ulfrid(2006). Feindstrafrecht, in: Thomas Uwer (Hrsg.), »Bitte bewahren Sie Ruhe«. Leben im Feindrechtsstaat, Berlin, S. 299-314.

Neumann, Ulfrid(1994). Zum Entwurf eines Verbrechensbekämpfungsgesetzes, StV, S. 273-276.

Nuotio, Kimmo(1992). Das Bild des Strafrechts im Zeitalter der Risikogesellschaft, in: Raimo Lahti / Kimmo Nuotio (Hrsg.), Strafrechtstheorie im Umbruch, Helsinki, S. 175-198.

Palazzo, Francesco(2008). Feindstrafrecht, Strafrecht und Verfassung, in: Ulrich Sieber / Gerhard Dannecker / Urs Kindhäuser / Joachim Vogel / Tonio Walter (Hrsg.), Strafrecht und Wirtschaftsstrafrecht – Dogmatik, Rechtsvergleich, Rechtstatsachen -, Festschrift für Klaus Tiedemann zum 70.Geburtstag, Köln / München, S.15-28.

Pérez del Valle, Carlos(2007). Zur rechtsphilosophischen Begründung des Feindstrafrechts, in: Michael Pawlik / Rainer Zaczyk (Hrsg.), Festschrift für Günther Jakobs zum 70.Geburtstag am 26. Juli 2007, Köln / Berlin / München, S. 515-528.

Preuß, Ulrich K.(1989). Politische Justiz im demokratischen Verfassungsstaat, in: Wolfgang Luthart / Alfons Söllner (Hrsg.), Verfassungsstaat, Souveränität, Pluralismus, Opladen, S. 129-152.

Prittwitz, Cornelius: »Feindstrafrecht«, in: Arno Pilgram / Cornelius Prittwitz (Hrsg.), Kriminologie. Akteurin und Kritiker in gesellschaftlicher Entwicklung, 2005, S. 215-228.

Prittwitz, Cornelius(1991). Funktionalisierung des Strafrechts, StV, S. 435-441.

Prittwitz, Cornelius(2002). Krieg als Strafe – Strafrecht als Krieg. Wird nach dem „11.

September" nichts mehr sein, wie es war?, in: ders. / Michael Baurmann / Klaus Günther / Lothar Kuhlen / Reinhard Merkel / Cornelius Nestler / Lorenz Schulz (Hrsg.), Festschrift für Klaus Lüderssen zum 70.Geburtstag am 1. Mai 2002, Baden-Baden, S. 499-514.

Prittwitz, Cornelius(2001). Nachgeholte Prolegomena zu einem künftigen Corpus Juris Criminalis für Europa, ZStW 113, S. 774-799.

Prittwitz, Cornelius(1997). Risiken des Risikostrafrechts, in: Detlev Frehsee / Gabi Löschper / Gerlinda Smaus (Hrsg.), Konstruktion der Wirklichkeit durch Kriminalität und Strafe, Baden-Baden, S. 47-65.

Prittwitz, Cornelius(1999). Strafrecht und Risiko, in: Alfons Bora (Hrsg.), Rechtliches Risikomanagement. Form, Funktion und Leistungsfähigkeit des Rechts in der Risikogesellschaft, Berlin, S. 193-206.

Rieß, Peter(2004). Die »Straftat von erheblicher Bedeutung« als Eingriffsvoraussetzung. Versuch einer Inhaltsbestimmung, GA, S. 623-642.

Rieß, Peter(2000). Sicherung einer effektiven Strafrechtspflege – ein Verfassungsgebot?, StraFo, S. 364-369.

Sacher, Mariana(2006). Systemtheorie und Strafrecht. Kritik der rollenbezogenen Zurechnungslehre, ZStW 118, S. 574-619.

Sauer, Dirk(2005). Das Strafrecht und die Feinde der offenen Gesellschaft, NJW, S. 1703-1705.

Scheffler, Uwe(2006). Freund- und Feindstrafrecht, in: Thomas Feltes / Christian Pfeiffer / Gernot Steinhilper (Hrsg.), Kriminalpolitik und ihre wissenschaftlichen Grundlagen. Festschrift für Professor Dr. Hans-Dieter Schwind zum 70.Geburtstag, Heidelberg, S. 123-146.

Schneider, Hans Joachim(2009). Hass- und Vorurteilskriminalität, in: ders. (Hrsg.), Internationales Handbuch der Kriminologie, Bd. 2, Berlin, S. 298-338.

Schneider, Hans Joachim(2003) Kriminologie der Hassdelikte - Konzeptionen, Ursachen, Vorbeugungen und Kontrolle, Bewährungshilfe 50/2, S. 115-133.

Schneider, Hendrik(2001) Bellum Justum gegen den Feind im Inneren? Über die

Bedeutung der verfassungsrechtlichen Verfahrensgarantien bei der „Bekämpfung“ der Organisierten Kriminalität, ZStW 113, S. 499-515.

Schulenburg, Johanna: Dogmatische Zusammenhänge von Rechtsgut, Deliktsstruktur und objektiver Zurechnung, in(2003). Roland Hefendehl / Andrew von Hirsch / Wolfgang Wohlers (Hrsg.), Die Rechtsgutstheorie. Legitimationsbasis des Strafrechts oder dogmatisches Glasperlenspiel?, Baden-Baden, S. 244-254.

Schulz, Lorenz(2006). Friktionen einer Fiktion. Jakobs Strafrecht für Feinde, in: Thomas Uwer (Hrsg.), »Bitte bewahren Sie Ruhe«. Leben im Feindrechtsstaat, Berlin, S. 315-333.

Schünemann, Bernd(2003). Das Strafrecht im Zeichen der Globalisierung, GA, S. 299-313.

Schünemann, Bernd: Die deutsche Strafrechtswissenschaft nach der Jahrtausendwende, GA 2001, S. 205-225.

Schünemann, Bernd(2006). Feindstrafrecht ist kein Strafrecht!, in: Rainer Griesbaum / Rolf Hannich / Karl Heinz Schnarr (Hrsg.), Strafrecht und Justizgewährung. Festschrift für Kay Nehm zum 65.Geburtstag, Berlin, S. 219-227.

Schünemann, Bernd(1995). Kritische Anmerkungen zur geistigen Situation der deutschen Strafrechtswissenschaft, GA, S. 201-229.

Schünemann, Bernd(2001). Strafrechtsdogmatik als Wissenschaft, in: ders. / Hans Achenbach / Wilfried Bottke / Bernhard Haffke / Hans-Joachim Rudolphi (Hrsg.), Festschrift für Claus Roxin zum 70.Geburtstag am 15. Mai 2001, Berlin / New York, S. 1-32.

Schütz, Holger / Peters, Hans Peter(2002). Risiken aus der Perspektive von Wissenschaft, Medien und Öffentlichkeit,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 10-11/, S. 40-45.

Seelmann, Kurt(1992). Risikostrafrecht. Die „Risikogesellschaft” und ihre „symbolische Gesetzgebung” im Umwelt- und Betäubungsmittelstrafrecht, KritV, S. 452-471.

Shenk, A. H. (2001). Victim-offender mediation: The road to repairing hate crime injustice. Ohio State Journal on Dispute Resolution, 17, 185-217.

Silva Sánchez, Jesús-María(2006) Die Unerwünschten als Feinde: Die Exklusion von

Menschen aus dem statuspersonae, ZStW 118, S. 547-573.

Singer, Jens Peter(2004) Erfassung der politisch motivierten Kriminalität. In einem neuen Definitionssystem mit mehrdimensionalen Analysemöglichkeiten, Kriminalistik 59, S. 32-37.

Sinn, Arndt(2006). Moderne Verbrechensverfolgung – auf dem Weg zu einem Feindstrafrecht?, ZIS, S. 107-117.

Staechelin, Gregor(1998). Interdependenzen zwischen der Rechtsgutstheorie und den Angriffswegen auf die dadurch bestimmten Güter, in: Klaus Lüderssen (Hrsg.), Aufgeklärte Kriminalpolitik oder Kampf gegen das Böse?, Band I: Legitimationen, Baden-Baden, S. 239-262.

Sternberg-Lieben, Detlev(2003). Rechtsgut, Verhältnismäßigkeit und die Freiheit des Strafgesetzgebers, in: Roland Hefendehl / Andrew von Hirsch / Wolfgang Wohlers (Hrsg.), Die Rechtsgutstheorie. Legitimationsbasis des Strafrechts oder dogmatisches Glasperlenspiel?, Baden-Baden, S. 65-82.

Strate, Gerhard(2004). Justiz und Terrorismus – am Beispiel der Fälle Padilla, Hamdi, Moussaoui und Motassadeq, HRRS, S. 239-246.

Stratenwerth, Günter(1993) Zukunftssicherung mit den Mitteln des Strafrechts?, ZStW 105, S. 679-696.

Streng, Franz(2006). Vom Zweckstrafrecht zum Feindstrafrecht? Überlegungen zu den Auswirkungen des neueren Sicherheitsdenkens auf ein »demokratisches Strafrecht«, in: Thomas Uwer (Hrsg.), »Bitte bewahren Sie Ruhe«. Leben im Feindrechtsstaat, Berlin, S. 227-248.

von Hirsch, Andrew / Wohlers, Wolfgang(2003). Rechtsgutstheorie und Deliktsstruktur – zu den Kriterien fairer Zurechnung, in: Roland Hefendehl / Andrew von Hirsch / Wolfgang Wohlers (Hrsg.), Die Rechtsgutstheorie. Legitimationsbasis des Strafrechts oder dogmatisches Glasperlenspiel?, Baden-Baden, S. 196-214.

Vormbaum, Thomas(1995) “Politisches” Strafrecht, ZStW 107, S. 735-760.

Winkel, F. W. (1997). Hate Crimes and Antiracism Campaigning: Testing the Approach of Portraying of Stereotypical Information Processing. Issues in Criminological

and Legal Psychology, 29, 14-19.

Ziercke, Jörg(2006). Lagebild extremistischer Kriminalität in Deutschland, in: Rudolf Egg (Hrsg.), Extremistische Kriminalität: Kriminologie und Prävention, Wiesbaden, S. 61-106.

Abstract

A Study on hate crime in Korea

Ji Young KIM · Yi, Jaeil

This research was conducted to research about the reality of hate crime and effective counter plan of each developed countries and to set penal position of hate crimes.

The research method is as following. Documentary survey was held to investigate history, concept and feature of hate crime, to research counter plan of each developed countries and to set penal position of hate crimes. A survey was held to comprehend the domestic hate crime occurrence rate. The subject of the survey was limited to Chinese, Indonesian and Uzbek and the social standing of the foreigners were limited to laborers and students. According to the survey, 1.1% experienced the crime, and 2.4% was threatened with crime by words or actions. 0.5% have experienced robbery and 0.8% were in danger of robbery. 0.3% were sexually harassed and 1.4% were in danger of sexual harassment. 0.3% had their possession damaged and also 0.3% were in danger of getting their possession damaged. 0.3% experienced a damage in their symbol of religion or nation and also 0.3% were in danger of having their symbol of religion or nation damaged. 1.4% had their possession and money taken and 0.9% were in danger of having their possession and money taken. Lastly, there were none who experienced incendiarism at home or church and 0.2& were in danger of

incendiarism at home and church. But compared to the 2009 domestic crime damage reality result, the hate crime damage result shows quite higher rate and the robbery experience was lower in this research. This research has a small and biased sample, but compared to 2008 crime danage research result, it could be inferred that the domestic hate crime occurrence rate is not lower.

The United States requires the Minister of Justice to collect materials related to hate crime through 1990 The Hate Crime Statistics Act, 1994 The Violent Crime Control and Law Enforcement Act and 2009 Matthew Shepard and James Byrd, jr. Hate Crime Prevention Act)'. The subjects that are included in this hate crime are race · religion · sexual taste · nationality · disabled · adolescents crimes and crimes committed by adolescents · crimes that resulted from discrimination of certain sexual identity. In contrast, the discussion regarding hate crimes is not widely held in Germany. Because they consider hate crimes to not be an independent kind of crime but a traditional crime that the criminal is only motivated by hatred. Hence, i) hate crimes have a low possibility of substantiation when we investigate individual cases, ii) the only way to eradicate hate crime is ti strengthen the penalty, iii) this kind of penalty strengthening only makes the criminal law a "Gesinnungsstrafrecht". But recently in Germany, due to the crime motivated by hatred of foreigners and extreme right conservatives there has been a legislation reform movement since 2000 that calls for strengthening of penalty and especially, the legislations of Brandenburg, Mecklenburg-Vorpommern and Sachsen-Anhalt are representative.

Hate crime is not about a whole new category of crime that is different from the existing traditional crime, but a crime that prejudice · hatred is added to the traditional crime. According to the criminal centered way of understanding, it seems that no other countermeasure is needed. However, according to the victim centered way of understanding, hate crime could be understood as an independent crime that causes physical · mental damage and social damage. Thus, hate crime is a violence crime that has its cause in the holders' · possessors' race, religion, nationality, gender, political · sexual identity, age, mental · physical disability. The criminal's purpose of the crime

becomes an attack to what the victim represents. Then this makes the normal nations unstable because they will feel that they could once be a victim of the crime and this becomes a factor for social unrest. Hence, in order to have a countermeasure to prevent thin, a concept of 'hate crime' should be admitted and the need for harsh penalty of crimes that is motivated by hatred · anger will increase. Nevertheless, we should beware that the regulation of hate crime that is legislated to settle social unrest not only end as a way to show that "legislator or the government is doing something for the people(known as symbolic legislation)."

부록

설 문 지

외국인 범죄피해에 관한 설문조사

ID□□□□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KIC)**에서 외국인 범죄피해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 및 유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본 조사는 학술 및 정책연구용 전문조사기관인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에 귀하의 답변은 외국인의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연구 및 정책에 기초자료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것입니다. 귀하의 의견을 솔직하고 정확하게 응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내어 응답해 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사의 내용은 통계법 제13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법 제14조에 따라 학술,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2011년 10월

주관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KIC)
조사기관 :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KSDC)

담당자 (조사관련 문의)

KSDC 조사연구팀 장대홍 팀장 (02)6011-8005 e-mail: jjangdae@ksdc.re.kr
이은영 연구원 (02)6011-8005 e-mail: pansy@ksdc.re.kr

통계처리를 위한 기본인적사항
Sq1.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Sq2. 출생년도 19_____년
Sq3. 출신국 ① 중국 ② 인도네시아 ③ 우즈베키스탄
Sq4. 신분 ① 노동자/귀화한국인 ② 학생
Sq5. 현 거주지역 ① 서울 ② 인천 ③ 경기도 ④ 그 외 지역

※ 다음은 본인이 한국에서 당한 피해를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음의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횟수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없다	있다
문1-1. 내가 특정한 인종이나 종교, 국적이라는 것 때문에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 (예: 흉기로 찌르기, 총쏘기, 때리기, 물건집어던지기, 밀치기. 목조르기 등)	①	② 약(　　)건
문1-2. 내가 특정한 인종이나 종교, 국적이라는 것 때문에 누군가에게 말이나 행동으로 폭행의 위협을 당한 적이 있다	①	② 약(　　)건
문1-3. 내가 특정한 인종이나 종교, 국적이라는 것 때문에 강도를 당한 적이 있다	①	② 약(　　)건
문1-4. 내가 특정한 인종이나 종교, 국적이라는 것 때문에 강도를 당할 뻔한 적이 있다	①	② 약(　　)건
문1-5. 내가 특정한 인종이나 종교, 국적이라는 것 때문에 누군가 나를 성폭행했다	①	② 약(　　)건
문1-6. 내가 특정한 인종이나 종교, 국적이라는 것 때문에 누군가 나를 성폭행하려고 했다	①	② 약(　　)건
문1-7. 내가 특정한 인종이나 종교, 국적이라는 것 때문에 누군가가 나의 소유물을 파손한 적이 있다	①	② 약(　　)건
문1-8. 내가 특정한 인종이나 종교, 국적이라는 것 때문에 누군가가 나의 소유물을 파손하려 한 적이 있다	①	② 약(　　)건
문1-9. 누군가가 나의 종교나 국가의 상징(국기 등), 건물(교회 등) 등을 파손한 적이 있다	①	② 약(　　)건
문1-10. 누군가가 나의 종교나 국가의 상징(국기 등), 건물(교회 등) 등을 파손하려 한 적이 있다	①	② 약(　　)건
문1-11. 나의 인종, 종교, 국적 때문에 누군가가 나의 물건이나 돈을 훔쳤다	①	② 약(　　)건
문1-12. 나의 인종, 종교, 국적 때문에 누군가가 나의 물건이나 돈을 훔치려한 적이 있다	①	② 약(　　)건
문1-13. 나의 인종, 종교, 국적 때문에 누군가 나의 집이나 교회 등에 불을 질렀다	①	② 약(　　)건
문1-14. 나의 인종, 종교, 국적 때문에 누군가 나의 집이나 교회 등에 불을 지르려고 한 적이 있다	①	② 약(　　)건

Sq6. 귀하는 현재 가족이나 동거인과 함께 살고 계십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혼자 살고 있다 ➔ **문 2로 가시오**

※ 다음은 본인의 가족(배우자, 부모, 형제자매, 자녀)이나 동거인이 한국에서 당한 피해에 관한 질문입니다. 가족이나 동거인이 한국에 있으신 분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없다	있다
문1-15. 나의 가족이나 동거인이 인종, 종교, 국적을 가진 것 때문에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예: 흉기로 찌르기, 총쏘기, 때리기, 물건집어던지기, 밀치기.목조르기 등)	①	② 약( )건
문1-16. 나의 가족이나 동거인이 인종, 종교, 국적을 가진 것 때문에 말이나 행동으로 폭행의 위협을 당한 적이 있다	①	② 약( )건
문1-17. 나의 가족이나 동거인이 인종, 종교, 국적을 가진 것 때문에 강도를 당한 적이 있다	①	② 약( )건
문1-18. 나의 가족이나 동거인이 인종, 종교, 국적을 가진 것 때문에 강도를 당할 뻔한 적이 있다	①	② 약( )건
문1-19. 나의 가족이나 동거인이 인종, 종교, 국적을 가진 것 때문에 성폭행을 당했다	①	② 약( )건
문1-20. 나의 가족이나 동거인이 인종, 종교, 국적을 가진 것 때문에 성폭행 당할 뻔한 적이 있다	①	② 약( )건
문1-21. 나의 가족이나 동거인이 인종, 종교, 국적을 가진 것 때문에 소유물을 파손당한 적이 있다	①	② 약( )건
문1-22. 나의 가족이나 동거인이 인종, 종교, 국적을 가진 것 때문에 소유물을 파손 당할 뻔한 적이 있다	①	② 약( )건
문1-23. 나의 가족이나 동거인이 인종, 종교, 국적을 가진 것 때문에 물건이나 돈을 도둑맞았다	①	② 약( )건
문1-24. 나의 가족이나 동거인이 인종, 종교, 국적을 가진 것 때문에 물건이나 돈을 도둑맞을 뻔한 적이 있다	①	② 약( )건

※ 위의 문1-1~24에서 모든 항목을 '① 없다' 로 응답하신 경우는 '문9' 로 가십시오. 하나라도 있다고 응답하신 분은 문2에 응답해 주십시오.

문2. 본인이나 가족 혹은 동거인이 위의 문1에서 표시하신 **피해를 당한 장소**는 어디입니까?(해당되는 장소에 **모두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①___ 버스나 기차, 비행기, 전차 등의 교통수단안
②___ 술집, 노래방 등의 유흥업소
③___ 교회, 절 등의 종교적 장소
④___ 백화점, 마트, 옷가게, 음식점 등의 장삿집
⑤___ 약국, 병원 등의 의료기관
⑥___ 공원 등의 위락시설
⑦___ 경찰서, 동사무소 등의 정부기관
⑧___ 인도나 차도 등의 노상
⑨___ 직장
⑩___ 가해자의 집
⑪___ 나의 집
⑫___ 학교
⑬___ 기타(**직접작성** :)

※ 다음은 본인이나 가족 혹은 동거인에게 문1과 같은 피해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3. 가해자가 누구인지 밝혀졌습니까?

①___ 모든 피해사건에서 밝혀졌음**(☞문3-1로)**
②___ 일부 피해사건에서는 밝혀졌지만 다른 일부의 피해사건은 밝혀지지 않음 **(☞문3-1로)**
③___ 모든 피해사건에서 밝혀지지 않음**(☞문4로)**

문3-1. **[문3에서 ① 또는 ②로 응답한 경우]** 그 사람과 본인이나 가족 혹은 동거인과의 관계는?(해당사항에 **모두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①___ 평소 잘 알던 사람
②___ 평소 얼굴만 아는 사람
③___ 전혀 모르는 사람

문3-2. **[문3에서 ① 또는 ②로 응답한 경우]** 그 사람의 국적은?
(해당사항에 **모두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①___ 한국인
②___ 한국인 아닌 다른 나라 사람

문3-3. **[문3에서 ① 또는 ②로 응답한 경우]** 그 사람의 성별은?
(해당사항에 **모두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①___ 남성
②___ 여성

문3-4. **(문3에서 ① 또는 ②로 응답한 경우)** 그 사람의 나이대는?
(해당사항에 **모두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①___ 10대 정도 ②___ 20대~30대 정도
③___ 40대~50대 정도 ④___ 60대 이상

문3-5. **(문3에서 ① 또는 ② 응답한 경우)** 가해자들의 숫자는?
(해당사항에 **모두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①___ 1명 ②___ 2명~3명
③___ 4명 ④___ 5명 이상

※ 다음은 본인이나 가족 혹은 동거인이 입은 신체적·재정적 피해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4. 본인이나 가족 혹은 동거인이 입은 신체적 피해는?(해당되는 것에 **모두 표시**하시오)

①___ 신체피해가 없음 ②___ 강간
③___ 강간미수 ④___ 성추행
⑤___ 칼(가위, 송곳 등 날카로운 물건)에 의한 부상 ⑥___ 총기(모의총기)에 의한 부상
⑦___ 뼈나 이빨이 부러짐(신체골절) ⑧___ 장기 손상을 입음
⑨___ 기절함(의식불명) ⑩___ 타박상, 할퀴거나 긁힘
⑪___ 화상 ⑫___ 기타(**직접작성** :)

문5. 본인이나 가족 혹은 동거인이 입은 피해를 금전적으로 환산한다면 그 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약 _____ 만원(여러번인 경우, 합산한 피해액)

(병원치료비, 진단서 비용, 침뜸의 시술비, 치아치료비, 물리치료비, 정신과 치료비 등)

문6. 피해경험이 있는 경우 본인이나 가족 혹은 동거인은 피해 당한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까?

①___ 한번도 신고한 적 없다**(☞문6-2로)**
②___ 어떤 때는 신고하고 어떤 때는 신고하지 않았다**(☞문6-1로)**
③___ 항상 신고하였다**(☞문6-1로)**

문6-1. **(경찰에 신고한 경우)** 경찰의 사건처리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웠습니까?

①___ 전혀 만족스럽지 못했다
②___ 조금 만족스러웠다
③___ 아주 만족스러웠다

문6-2.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___ 피해가 심각하지 않아서
②___ 개인적으로 해결했기 때문에
③___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④___ 경찰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같아서
⑤___ 경찰에서 귀찮게 할 것 같아서
⑥___ 범인이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⑦___ 보복이 두려워서
⑧___ 기타(직접작성 :)

문7. 경찰 이외에 도움을 요청한 사람이나 기관이 있습니까? 해당사항에 **모두 표시**하십시오.

①___ 요청한 적 없음 → **문 9로 가시오**
②___ 이웃
③___ 외국인 지원기관
④___ 종교단체
⑤___ 자국친구, 자국커뮤니티
⑥___ 직장상사, 직장동료
⑦___ 자국 대사관
⑧___ 학교당국(교수, 교내상담소 등)
⑨___ 한국인 친구
⑩___ 기타(**직접작성** :)

} **문 8로 가시오**

문8. 경찰 이외에서 어떤 도움을 받으셨습니까?

①___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다
②___ 심리적 위안
③___ 물질적인 도움
④___ 정보적 도움
⑤___ 기타(**직접작성** :)

문9. 다음은 평소 본인의 범죄피해에 대한 생각과 느낌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
문9-1. 내가 특정한 인종이나 종교, 국적이라는 것 때문에 누군가에게 폭행(흉기로 찌르기, 총쏘기, 때리기, 물건집어던지기, 밀치기. 목조르기 등)을 당할까봐 두렵다	①	②	③
문9-2. 내가 특정한 인종이나 종교, 국적이라는 것 때문에 누군가에게 강도를 당할까봐 두렵다	①	②	③
문9-3. 내가 특정한 인종이나 종교, 국적이라는 것 때문에 누군가 나를 성폭행할까봐 두렵다	①	②	③
문9-4. 내가 특정한 인종이나 종교, 국적이라는 것 때문에 누군가가 나의 소유물을 파손할까봐 두렵다	①	②	③
문9-5. 누군가가 나의 종교나 국가의 상징(국기 등), 건물(교회 등) 등을 파손할까봐 두렵다	①	②	③
문9-6. 내가 특정한 인종이나 종교, 국적이라는 것 때문에 누군가 나의 물건이나 돈을 훔칠까봐 두렵다	①	②	③
문9-7. 내가 특정한 인종이나 종교, 국적이라는 것 때문에 누군가 나의 집이나 교회 등에 불을 지를까봐 두렵다	①	②	③

Sq7. 귀하는 현재 가족이나 동거인과 함께 살고 계십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혼자 살고 있다 ➔ **PQ1으로 가시오**

※ 다음은 내 가족이나 동거인의 범죄피해에 대한 생각과 느낌에 관한 질문입니다. <u>한국에 가족이나 동거인 있으신 분만 응답</u>해주시기 바랍니다. <u>없으신 분은 PQ1에 응답</u>해 주십시오.

다 음	전혀 두렵지 않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
문9-8. 인종, 종교, 국적 때문에 내 가족 혹은 동거인이 폭행(흉기로 찌르기, 총쏘기, 때리기, 물건집어던지기, 밀치기. 목조르기 등)을 당할까봐 두렵다	①	②	③
문9-9. 인종, 종교, 국적 때문에 내 가족 혹은 동거인이 강도를 당할까봐 두렵다	①	②	③
문9-10. 인종, 종교, 국적 때문에 내 가족 혹은 동거인이 성폭행 당할까봐 두렵다	①	②	③
문9-11. 인종, 종교, 국적 때문에 내 가족 혹은 동거인의 소유물이 파손될까봐 두렵다	①	②	③
문9-12. 인종, 종교, 국적 때문에 내 가족 혹은 동거인의 물건이나 돈이 도둑맞을까봐 두렵다	①	②	③

※ 마지막으로 통계처리를 위한 문항들입니다.

PQ1. 본인의 종교는?

①___ 무교 ②___ 불교 ③___ 기독교
④___ 이슬람교 ⑤___ 러시아 정교 ⑥___ 카톨릭
⑦___ 힌두교 ⑧___ 기타(**직접작성**:)

PQ2. 본인은 현재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습니까?

①___ 예 ②___ 아니오

PQ3. 본인의 현재 결혼상태는?

①___ 미혼**(☞PQ4로)** ②___ 기혼(동거 포함) **(☞PQ3-1로)**
③___ 별거, 이혼, 사별**(☞PQ3-1로)**

PQ3-1. **(PQ3에서 ②, ③으로 응답한 경우)** 본인 배우자의 출신국가는?

①___ 한국 ②___ 나와 동일국적
③___ 제3의 국적

PQ4. 본인과 현재 같이 사는 사람을 다음 중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①___ 배우자 ②___ 자녀
③___ 본국에서 온 가족 ④___ 배우자의 원가족
⑤___ 친구 ⑥___ 직장동료
⑦___ 혼자 산다 ⑧___ 기타(**직접작성** :)

PQ5. 본인의 한국에서의 총 거주 기간은 얼마입니까?

대략 _____ 년

PQ6. **(노동자에 한해서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한국에서 본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얼마입니까?(노동·사업 소득 뿐 아니라 모든 수입을 기준)

①___ 150만원 미만 ②___ 150만원 이상~250만원 미만
③___ 250만원 이상~350만원 미만 ④___ 350만원 이상~450만원 미만
⑤___ 450만원 이상~550만원 미만 ⑥___ 550만원이상

면접원 기재사항			
면 접 원		검 증 원	

♣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Kuesioner Penelitian tentangKerugianyang Diderita Warga negara asingdari Kejahatan

ID

Salam!

Kuesioner ini merupakan bagian dari penelitian yang diadakan oleh Lembaga Kriminal Korea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KIC) terkait pekerja asing dan pelajar yang bekerja dan belajar di Korea yang bertujuan untuk membantu warga negara asing yang menjadi korban kejahatan. Penelitian ini dilakukan oleh 'Pusat Data Ilmu Sosial Korea' (Korea Social-science Data Center, KSDC), sebuah lembaga penelitian yang khusus meneliti hal-hal terkait akademik dan pembuatan kebijakan.

Jawaban Anda di Kuesioner ini akan digunakan dengan maksimal sebagai data utama dalam penelitian-penelitian dan pembuatan kebijakan untuk mencegah dan mengatasi kerugian-kerugian yang timbul dari kejahatan yang menimpa warga negara asing. Kami meminta Anda untuk menjawab dengan jujur dan tepat. Kami sangat berterima kasih untuk waktu yang Anda sediakan untuk mengisi Kuesioner ini.

Kerahasiaan isi dari Kuesioner ini dijamin sesuai dengan Pasal 13 Hukum Statistik dan akan digunakan hanya untuk kepentingan akademikdan penelitian sesuai dengan pasal 13 Hukum Statistik.

Oktober 2011

Lembaga Pengawas: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KIC)

Lembaga Peneliti: Korea Social-science Data Center (KSDC)

Pihak yang Bertanggung Jawab (untuk pertanyaan seputar penelitian)

Jang, Dae Hong, Manajer Tim Penelitian di KSDC

(02) 6011-8005 e-mail: jjangdae@ksdc.re.kr

Lee, Eun Young, Peneliti: (02)6011-8005 e-mail: pansy@ksdc.re.kr

Data Pribadiuntuk Proses Statistik
Sq1. Jenis Kelamin ① Pria ② Wanita Sq 2. Tahun kelahiran 19_____ Sq3. Kewarganegaraan ① China ② Indonesia ③ Uzbekistan Sq4. Status ① Pekerja/ Orang Korea hasil naturalisasi ② Pelajar Sq5. Tempat tinggal saat ini ① Seoul ② Incheon ③ Provinsi Gyeonggi ④ Wilayah lain

※ Pertanyaan berikut adalah tentang kejahatan yang telah Anda alami di Korea. Jika Anda telah mengalami kejahatan dibawah ini, silahkan tulis berapa kali kejahatan tersebut menimpa Anda.

Pertanyaan	Tidak	Ya
Pertanyaan 1-1. Saya menjadi korban kejahatan karenasaya berasal dari ras, agama, dan kewarganegaraan tertentu. (contoh: saya ditusuk dengan senjata tajam, ditembak, dipukuli, dilempari, didorong, dicekik, dsb)	①	② Kira-kira ( ) kasus
Pertanyaan 1-2. Saya menjadi korban ancaman kejahatan, secara lisan atau tindakan dari seseorang karenasaya berasal dari ras, agama, dan kewarganegaraan tertentu.	①	② Kira-kira ( ) kasus
Pertanyaan 1-3. Saya dirampok karena saya berasal dari ras, agama, dan kewarganegaraan tertentu.	①	② Kira-kira ( ) kasus
Pertanyaan 1-4. Saya hampir dirampok karenasaya berasal dari ras, agama, dan kewarganegaraan tertentu.	①	② Kira-kira ( ) kasus
Pertanyaan 1-5. Saya menjadi korban kejahatan seksual karenasaya berasal dari ras, agama, dan kewarganegaraan tertentu.	①	② Kira-kira ( ) kasus
Pertanyaan 1-6. Beberapa orang pernah mencoba melakukan kejahatan seksual kepada saya karenasaya berasal dari ras, agama, dan kewarganegaraan tertentu.	①	② Kira-kira ( ) kasus
Pertanyaan 1-7. Seseorang menghancurkan barang pribadi saya karena saya berasal dari ras, agama, dan kewarganegaraan tertentu.	①	② Kira-kira ( ) kasus
Pertanyaan 1-8. Seseorang pernah mencoba menghancurkan barang pribadi saya karena saya berasal dari ras, agama, dan kewarganegaraan tertentu.	①	② Kira-kira ( ) kasus
Pertanyaan 1-9. Seseorang menghancurkan simbol (bendera nasional, dsb) dan/atau bangunan (rumah ibadah,dsb) agama saya dan negara asal.	①	② Kira-kira ( ) kasus
Pertanyaan 1-10. Seseorang mencoba menghancurkan simbol (bendera nasional, dsb) dan/atau bangunan (rumah ibadah,dsb) agama saya dan negara asal.	①	② Kira-kira ( ) kasus
Pertanyaan 1-11. Seseorang mencuri barang pribadi atau uang saya karena saya berasal dari ras, agama, dan kewarganegaraan tertentu.	①	② Kira-kira ( ) kasus
Pertanyaan 1-12. Seseorang mencoba mencuri barang pribadi atau uang saya karenasaya berasal dari ras, agama, dan kewarganegaraan tertentu.	①	② Kira-kira ( ) kasus
Pertanyaan 1-13. Seseorang mencoba membakar rumah atau rumah ibadah saya karena saya berasal dari ras, agama, dan kewarganegaraan tertentu.	①	② Kira-kira ( ) kasus
Pertanyaan 1-14. Seseorang mencoba membakar rumah atau rumah ibadah sayakarena saya berasal dari ras, agama, dan kewarganegaraan tertentu.	①	② Kira-kira ( ) kasus

Sq6. Apakah saat ini anda tinggal dengan keluarga atau pasangan?

① Ya

② Tidak, saya tinggal sendiri ➔ Lanjutkan ke ☻ Pertanyaan 2.

※ Pertanyaan-pertanyaan berikut adalah tentang kejahatan yang menimpa anggota keluarga (pasangan, orang tua, adik, kakak, dan/atau anak) Anda di Korea. Hanya responden yang memiliki keluarga atau pasangan di Korea yang harus menjawab pertanyaan-pertanyaan berikut.

Pertanyan	Tidak	Ya
Pertanyaan 1-15. Keluarga atau pasangan saya menjadi korban kejahatan karena mereka berasal dari ras, agama, dan kewarganegaraan tertentu. (contoh: ditusuk dengan senjata tajam, ditembak, dipukuli, dilempari, didorong, dicekik, dsb)	①	② Kira-kira ( ) kasus
Pertanyaan 1-16. Keluarga atau pasangan saya menjadi korban ancaman kejahatan secara lisan atau tindakankarena mereka berasal dari ras, agama, dan kewarganegaraan tertentu.	①	② Kira-kira ( ) kasus
Pertanyaan 1-17. Keluarga atau pasangan saya menjadi korban perampokan karena mereka berasal dari ras, agama, dan kewarganegaraan tertentu.	①	② Kira-kira ( ) kasus
Pertanyaan 1-18. Keluarga atau pasangan saya hampir dirampok karena mereka berasal dari ras, agama, dan kewarganegaraan tertentu.	①	② Kira-kira ( ) kasus
Pertanyaan 1-19. Keluarga atau pasangan saya menjadi korban kejahatan seksual karena mereka berasal dari ras, agama, dan kewarganegaraan tertentu.	①	② Kira-kira ( ) kasus
Pertanyaan 1-20. Keluarga atau pasangan saya hampir menjadi korban kejahatan seksual karena mereka berasal dari ras, agama, dan kewarganegaraan tertentu.	①	② Kira-kira ( ) kasus
Pertanyaan 1-21. Barang pribadi keluarga atau pasangan saya dihancurkan karena mereka berasal dari ras, agama, dan kewarganegaraan tertentu.	①	② Kira-kira ( ) kasus
Pertanyaan 1-22. Barang pribadi keluarga atau pasangan saya hampir dihancurkan karena mereka berasal dari ras, agama, dan kewarganegaraan tertentu.	①	② Kira-kira ( ) kasus
Pertanyaan 1-23. Keluarga atau pasangan saya menjadi korban pencurian barang pribadi atau uang karena mereka berasal dari ras, agama, dan kewarganegaraan tertentu.	①	② Kira-kira ( ) kasus
Pertanyaan 1-24. Keluarga atau pasangan saya hampir menjadi korban pencurian barang pribadi atau uang karena mereka berasal dari ras, agama, dan kewarganegaraan tertentu.	①	② Kira-kira ( ) kasus

※ Jika anda menjawab '? Tidak' untuk semua pertanyaan no 1-1 sampai 1-24, silahkan melanjutkan langsung ke 'Pertanyaan 9'. Jika anda menjawab 'Ya' bahkan untuk satu pertanyaan, silahkan lanjutkan ke 'Pertanyaan 2'.

☻ Pertanyaan 2. Dimana lokasi ketika Anda, keluarga, atau pasangan Anda menjadi korban kejahatan yang disebutkan di Pertanyaan 1 diatas? (Pilih semualokasi kejadian)

①___ Di transportasi umum seperti bis, kereta api, pesawat, dan kereta bawah tanah.
②___ Tempat hiburan seperti bar, tempat karoke, dsb.
③___ Tempat ibadah seperti gereja, Kuil agama Budha, dsb.
④___ Tempat belanja seperti mall, pasar, tokopakaian, restoran, dsb.
⑤___ Institusi kesehatan seperti apotek, rumah sakit, dsb.
⑥___ Fasilitas umum termasuk taman.
⑦___ Kantor pemerintahan seperti kantor polisi, kantor layanan umum, dsb.
⑧___ Di jalanan seperti tempat pejalan kaki atau jalan besar (untuk kendaraan).
⑨___ Tempat kerja.
⑩___ Tempat tinggal pelaku kejahatan.
⑪___ Di rumah saya.
⑫___ Sekolah
⑬___ Lain-lain (tulis jawaban Anda:)

※ Pertanyaan-pertanyaan berikut terkait dengan tindakan pengerusakan yang dilakukan oleh pelaku kejahatan terhadap Anda, keluarga, atau pasangan Anda, seperti yang dimaksud dalam Pertanyaan 1 di atas.

Pertanyaan 3. Apakah identitas pelaku kejahatan telah terkuak?

①___ Terkuak untuk semua kasus kejahatan yang terjadi
(⇒ Lanjutkan ke Pertanyaan 3-1).
②___ Terkuak untuk beberapa kasus dan tidak terkuak dalam beberapa kasus kejahatan
yang terjadi. (⇒ Lanjutkan ke Pertanyaan 3-1)
③___ Tidak terkuak untuk semua kasus kejahatan yang terjadi
(⇒ Lanjutkan ke Pertanyaan 4)

Pertanyaan 3-1. (Jika Anda menjawab ① atau ② dalam pertanyaan 3)Apakah hubungan antara pelaku kejahatan dan Anda, keluarga, dan pasangan Anda?(Pilih Semuajawaban yang terkait)

①___ Seseorang yang kami kenal baik.
②___ Seseorang yang tidak begitu kami kenal baik.
③___ Seseorang yang kami tidak kenal sama sekali.

Pertanyaan 3-2. (Jika Anda menjawab ① atau ② dalam Pertanyaan 3) Apakah kewarganegaraan pelaku kejahatan?(Pilih semua jawaban yang terkait)

①___ Orang Korea
②___ Warga negara asing selain orang Korea.

Pertanyaan 3-3. (Jika Anda menjawab ① atau ② dalam Pertanyaan 3)Apakah jenis kelamin dari pelaku kejahatan?(Pilih semua jawaban yang terkait)

①___ Pria
②___ Wanita

Pertanyaan 3-4.(Jika Anda menjawab ① atau ② dalam pertanyaan 3)Apakah golongan usia pelaku kejahatan?(Pilih semua jawaban yang terkait)

①___ Remaja
②___ Antara 20an - 30an
③___ Antara 40an - 50an
④___ Lebih dari 60 tahun.

Pertanyaan 3-5.(Jika Anda menjawab ① atau ② dalam Pertanyaan 3)Berapa jumlah pelaku kejahatan? (Pilih semua jawaban yang terkait)

①___ 1 orang
②___ 2 -3 orang
③___ 4 orang
④___ lebih dari 5 orang.

※ Pertanyaan-pertanyaan berikut terkait dengan kejahatan fisik atau finansial yang dialami oleh Anda, keluarga, atau pasangan Anda.

Pertanyaan 4. Apakah kejahatan fisik yang Anda, keluarga, atau pasangan Anda alami? (Pilih semua jawaban yang terkait)

①___ Tidak ada kejahatan fisik yang dilakukan.
②___ Pemerkosaan.
③___ Percobaan pemerkosaan.
④___ Kekerasan seksual.
⑤___ Dilukai dengan pisau (benda tajam seperti gunting, penusuk, dsb)
⑥___ Dilukai dengan senjata api (senjata palsu)
⑦___ Tulang atau gigi patah (patah tulang tubuh)

⑧___ Kerusakan organ tubuh.
⑨___ Pingsan (tidak sadar)
⑩___ Memar, terluka, atau tergores.
⑪___ Terbakar
⑫___ Lain-lain (tulis jawaban Anda:)

Pertanyaan 5.Jika kejahatan yang Anda alami dapat diuangkan, berapa jumlah yang Anda, keluarga, atau pasangan Anda nilai pantas ditebus dalam bentuk uang?

Sekitar Won (jika kejahatan terjadi beberapa kali, tulis jumlah total)
(Termasuk ongkos perawatan di rumah sakit, dokumen medis untuk diagnosa, akupuntur, pengobatan alternatif, perawatan gigi, fisioterapi, perawatan psikiatris, dsb)

Pertanyaan 6.Jika Anda memiliki pengalaman menjadi korban kejahatan, apakah Anda, keluarga, atau pasangan Anda melaporkan kejadian tersebut ke polisi?

①___ Saya tidak pernah melaporkan kejadian tersebut (➜ Lanjutkan ke Pertanyaan 6-2)
②___ Ada beberapa kali dilaporkan dan beberapa kali tidak dilaporkan
(➜ Lanjutkan ke Pertanyaan 6-1)
③___ Selalu melaporkan setiap kejadian (➜ Lanjutkan ke Pertanyaan 6-1)

Pertanyaan 6-1.(Jika Anda melaporkan kejadian tersebut ke polisi)Apakah Anda puas dengan cara penanganan kasus tersebut oleh polisi secara keseluruhan?

①___ Saya tidak puas sama sekali.
②___ Sedikit puas.
③___ Sangat puas.

Pertanyaan 6-2.(Jika Anda tidak melaporkan kejadian tersebut kepada polisi)Apakah alasan Anda tidak melaporkan kejadian tersebut kepada polisi?

①___ Kejahatan yang dilakukan tidak serius.
②___ Saya menyelesaikan masalah tersebut secara pribadi.
③___ Tidak ada bukti.
④___ Saya merasa bahwa polisi tidak akan mengambil tindakan atas kejadian tersebut.

⑤___ Saya takut polisi akan menyakiti saya.
⑥___ Karena pelaku kejahatan adalah seseorang yang saya kenal.
⑦___ Saya takut akan balas dendam.
⑧___ Lain-lain(tuliskan jawaban Anda:)

Pertanyaan 7. Apakah Anda pernah meminta bantuan dari seseorang atau lembaga lain selain polisi? Pilih semua jawaban yang terkait.

①___ Tidak pernah meminta bantuan ➔ Lanjutkan ke Pertanyaan 9
②___ Tetangga
③___ Lembaga Bantuan untuk Warga negara asing.
④___ Kelompok keagamaan.
⑤___ Teman dan komunitas dari negara asal.
⑥___ Staf senior dan/atau teman sekerja di tempat kerja. } Lanjutkan ke Pertanyaan 8.
⑦___ Kedutaan Besar negara asal.
⑧___ Kantor sekolah (professor/pengajar, pusat konsultasi kampus, dsb)
⑨___ Teman Korea
⑩___ lain-lain(tuliskan jawaban Anda:)

Pertanyaan 8. Apakah Anda menerima bantuan dari orang/ lembaga selain polisi tersebut? Jika ya, bagaimanakah bentuk bantuan tersebut?

①___ Saya tidak menerima bantuan dalam bentuk apapun.
②___ Konsultasi psikologis.
③___ Bantuan fisik.
④___ Bantuan informasi.
⑤___ Lain-lain(tuliskanjawabanAnda:)

Pertanyaan 9. Pertanyaan-pertanyaan berikut berkaitan dengan opini dan perasaan Anda tentang kejahatan yang terjadi.Tolong pilih jawaban yang terkait.

Pertanyaan	Tidak takut sama sekali	Sedikit takut	Sangat takut
Pertanyaan 9-1. Saya takut menjadi korban kejahatan (penusukan dengan senjata tajam, ditembak,dipukuli, dilempari, didorong, dicekik, dsb) oleh seseorang hanya karena saya berasal dari ras, agama, dan kewarganegaraan tertentu.	①	②	③
Pertanyaan 9-2. Saya takut dirampok oleh seseorang hanya karena saya berasal dari ras, agama, dan kewarganegaraan tertentu.	①	②	③
Pertanyaan 9-3.Saya takut menjadi korban kejahatan seksual oleh seseorang hanya karena saya berasal dari ras, agama, dan kewarganegaraan tertentu.	①	②	③
Pertanyaan 9-4. Saya takut bahwa seseorang akan menghancurkan barang pribadi saya hanya karena saya berasal dari ras, agama, dan kewarganegaraan tertentu.	①	②	③
Pertanyaan 9-5. Saya takut bahwa seseorang akan menghancurkan simbol (bendera nasional, dsb) dan bangunan (tempat ibadah, dsb) dari agama atau negara asal saya.	①	②	③
Pertanyaan 9-6. Saya takut bahwa seseorang mencuri barang pribadi atau uang saya hanya karena saya berasal dari ras, agama, dan kewarganegaraan tertentu.	①	②	③
Pertanyaan 9-7. Saya takut seseorang akan membakar rumah atau rumah ibadah saya hanya karena saya berasal dari ras, agama, dan kewarganegaraan tertentu.	①	②	③

Sq7. Apakah saat ini anda tinggal dengan keluarga atau pasangan?

① Ya

② Tidak, saya tinggal sendiri ➔ Lanjutkan ke ☻ halaman berikutnya PQ1

※ Pertanyaan-pertanyaan berikut adalah tentang opini dan perasaan keluarga atau pasangan anda terhadap kejahatan yang terjadi. Hanya dijawab oleh mereka yang memiliki keluarga atau pasangan di Korea. Mereka yang tidak memiliki keluarga atau pasangan di Korea harus menjawab PQ1.

Pertanyaan	Tidak takut sama sekali	Sedikit takut	Sangat takut
Pertanyaan 9-8. Saya takut bahwa keluarga atau pasangan saya menjadi korban kejahatan (ditusuk dengan senjata tajam, ditembak, dipukuli, dilempari, didorong, dicekik, dsb) karena ras, agama, dan kewarganegaraan mereka.	①	②	③
Pertanyaan 9-9. Saya takut keluarga atau pasangan saya dirampok karena ras, agama, dan kewarganegaraan mereka.	①	②	③
Pertanyaan 9-10. Saya takut keluarga atau pasangan saya menjadi korban kejahatan seksual karena ras, agama, dan kewarganegaraan mereka.	①	②	③
Pertanyaan 9-11. Saya takut barang pribadi keluarga atau pasangan saya dirusak karena ras, agama, dan kewarganegaraan mereka.	①	②	③
Pertanyaan 9-12. Saya takut keluarga atau pasangan saya menjadi korban pencurian barang pribadi atau uang mereka karena ras, agama dan kewarganegaraan mereka.	①	②	③

※ Terakhir, pertanyaan-pertanyaan berikut adalah untuk proses statistik.

☻ PQ1. Apakah agama Anda?

①___ Tidak ada. ②___ Budha
③___ Kristen ④___ Islam
⑤___ Rusia Ortodoks ⑥___ Katolik
⑦___ Hindu. ⑧___ Lainnya (tuliskan agama Anda:)

PQ2. Apakah Anda telah memiliki kewarganegaraan Korea?

①___ Ya ②___ Tidak

PQ3. Apakah status pernikahan Anda?

①___ Belum pernah menikah (➜ Lanjutkan ke PQ4)
②___ Menikah (termasuk tinggal bersama) (➜ Lanjutkan ke PQ3-1)
③___ Berpisah, cerai, janda/duda(➜ Lanjutkan ke PQ3-1)

PQ3-1. (Jika Anda memilih ② atau ③ di PQ3)
Apakah kewarganegaraan pasangan Anda?

①___ Korea
②___ Sama seperti saya
③___ Negara ketiga.

PQ4. Pilih semua orang yang saat ini tinggal bersama dengan Anda.

①___ Istri/suami
②___ Anak-anak
③___ Keluarga dari negara asal.
④___ Keluarga inti dari istri/ suami.
⑤___ Teman
⑥___ Teman sekerja
⑦___ Saya tinggal sendiri
⑧___ lain-lain (tulis jawaban Anda:)

PQ5. Berapa lama Anda tinggal di Korea? Kurang lebih tahun

PQ6. (Hanya dijawab oleh pekerja)Berapa jumlah pendapatan bulanan keluarga Anda di Korea? (Semua pendapatan termasuk gaji dari pekerjaan dan bisnis)

①___ Kurang dari 1.5 juta won
②___ 1.5 juta won ~2.5 juta won
③___ 2.5 juta won ~3.5 juta won
④___ 3.5 juta won ~4.5 juta won
⑤___ 4.5 juta won ~5.5 juta won
⑥___ Lebih dari 5.5 juta won

Diisi oleh Pewawancara			
Pewawancara		Pemeriksa	

♣ Kami mengucapkan terima kasih atas kesediaan Anda mengisi Kuesioner ini. ♣

外国人犯罪受害相关问卷调查

ID

您好！

本问卷调查由**韩国刑事政策研究院(KIC)**主管，旨在掌握在韩外国人犯罪受害相关实际情况，以外国劳动人员和留学生为对象进行调查。本问卷调查由学术及政策研究专业调查机构——“韩国社会科学数据中心”实行。

您的回答将成为以预防和解决外国人犯罪受害为目的的研究及相关政策的基础资料，将为相关研究和政策制定提供极大帮助。请在本问卷调查中如实反映您的情况和意见。十分感谢您在百忙之中抽出时间配合进行本问卷调查。

根据统计法第十三条规定，对本问卷调查内容进行保密，根据统计法第十四条规定，本问卷调查内容仅用于学术、研究目的。

2011年10月

主管机构：韩国刑事政策研究院(KIC)

调查机构：韩国社会科学数据中心(KSDC)

负责人(调查相关咨询)

KSDC 调查研究组 张大弘 组长 (02)6011-8005 e-mail: jjangdae@ksdc.re.kr

李恩英 研究员 (02)6011-8005 e-mail: pansy@ksdc.re.kr

统计处理用基本人员信息事项
Sq1. 性别 ① 男性　② 女性
Sq2. 出生年份 19_____年
Sq3. 出生国家 ① 中国　② 印度尼西亚　③ 乌兹别克斯坦
Sq4. 身份 ① 劳动人员/归化韩国人　② 学生
Sq5. 现居住地区 ① 首尔　② 仁川　③ 京畿道　④ 前三项以外的地区

※以下是针对您在韩国受到的犯罪侵害相关提问。
如受到犯罪侵害，请在相关项中填写受侵害次数。

问　　项	没有	有
问题1-1. 我因特定人种、宗教、国籍问题曾受到他人暴力对待。 （例如：用凶器刺、枪击、殴打、丢掷物品、推搡、掐脖子等）	①	② 约(　)次
问题1-2. 我因特定人种、宗教、国籍问题曾受到他人以语言或行动实行的暴力威胁。	①	② 约(　)次
问题1-3. 我因特定人种、宗教、国籍问题曾遭遇抢劫。	①	② 约(　)次
问题1-4. 我因特定人种、宗教、国籍问题曾差点遭遇抢劫。	①	② 约(　)次
问题1-5. 我因特定人种、宗教、国籍问题曾遭遇性侵犯。	①	② 约(　)次
问题1-6. 我因特定人种、宗教、国籍问题曾差点遭遇性侵犯。	①	② 约(　)次
问题1-7. 我因特定人种、宗教、国籍问题曾被他人破坏自身所有物。	①	② 约(　)次
问题1-8. 我因特定人种、宗教、国籍问题曾差点被他人破坏自身所有物。	①	② 约(　)次
问题1-9. 曾有人破坏我的宗教或国家象征物(国旗等)、建筑物(教会等)。	①	② 约(　)次
问题1-10. 曾有人意图破坏我的宗教或国家象征物(国旗等)、建筑物(教会等)。	①	② 约(　)次
问题1-11. 因人种、宗教、国籍问题，曾有人盗窃我的物品或钱财。	①	② 约(　)次
问题1-12. 因人种、宗教、国籍问题，曾有人意图盗窃我的物品或钱财。	①	② 约(　)次
问题1-13. 因人种、宗教、国籍问题，曾有人在我家或教会等处放火。	①	② 约(　)次
问题1-14. 因人种、宗教、国籍问题，曾有人在我家或教会等处意图放火。	①	② 约(　)次

Sq6. 现在，您是否和家人或其他人一同居住？

① 是的

② 不是，自己一个人生活 ➔ 请跳到问题 ☻ 2.

※ 以下是针对您的家人(配偶、父母、兄弟姐妹、子女)或同住人在韩国受到的犯罪侵害相关提问。请在韩国有家人或同住人的人士回答。

问　　项	没有	有
问题1-15. 我的家人或同住人因人种、宗教、国籍问题曾受到暴力对待。(例如：用凶器刺、枪击、殴打、丢掷物品、推搡、掐脖子等)	①	② 约(　)次
问题1-16. 我的家人或同住人因人种、宗教、国籍问题曾受到以语言或行动实行的暴力威胁。	①	② 约(　)次
问题1-17. 我的家人或同住人因人种、宗教、国籍问题曾遭遇抢劫。	①	② 约(　)次
问题1-18. 我的家人或同住人因人种、宗教、国籍问题曾差点遭遇抢劫。	①	② 约(　)次
问题1-19. 我的家人或同住人因人种、宗教、国籍问题曾遭遇性侵犯。	①	② 约(　)次
问题1-20. 我的家人或同住人因人种、宗教、国籍问题曾差点遭遇性侵犯。	①	② 约(　)次
问题1-21. 我的家人或同住人因人种、宗教、国籍问题曾被他人破坏自身所有物。	①	② 约(　)次
问题1-22. 我的家人或同住人因人种、宗教、国籍问题曾差点被他人破坏自身所有物。	①	② 约(　)次
问题1-23. 我的家人或同住人因人种、宗教、国籍问题曾被盗窃物品或钱财。	①	② 约(　)次
问题1-24. 我的家人或同住人因人种、宗教、国籍问题曾差点被盗窃物品或钱财。	①	② 约(　)次

※上述1~24个问题中，所有答案均为"①没有"的人士请直接跳到第6页"问题9"，回答"有"的人士，即使只有一个问题回答"有"，也请继续回答问题2。

☻ 问题2. 您或您的家人或同住人在上述问题1中遭遇犯罪侵害的场所是？(请标示所有符合场所)

①___ 公共汽车、火车、飞机、电车等公共交通工具内
②___ 酒吧、练歌房等娱乐场所
③___ 教会、寺庙等宗教场所
④___ 百货商场、超市、服装店、餐饮店等商家
⑤___ 药店、医院等医疗机构
⑥___ 公园等休闲场所
⑦___ 警察局、洞办事处等政府机构
⑧___ 人行道或车道等路上
⑨___ 工作单位
⑩___ 加害人家中
⑪___ 自己家中
⑫___ 学校
⑬___ 其他(**直接填写：**)

※ 以下是针对您或您的家人或同住人在问题1中受到的侵害行为加害人的相关提问。

问题3. 加害人身份是否已被揭穿？

①___ 所有被害事件中的加害人身份都已被揭穿**(☞跳到问题3-1)**
②___ 一部分被害事件中被揭穿，一部分被害事件中未被揭穿**(☞跳到问题3-1)**
③___ 所有被害事件中的加害人身份均未被揭穿**(☞跳到问题4)**

问题3-1.**(问题3的答案为①或者②时)** 加害人与您或您的家人或同住人的关系是？(请标示所有符合选项)

①___ 熟人
②___ 只打过照面的人
③___ 陌生人

问题3-2.**(问题3的答案为①或者②时)** 加害人的国籍是？(请标示所有符合选项)

①___ 韩国人
②___ 非韩国人

问题3-3.**(问题3的答案为①或者②时)** 加害人的性别是？(请标示所有符合选项)

①___ 男性
②___ 女性

问题3-4.**(问题3的答案为①或者②时)** 加害人的年龄是？(请标示所有符合选项)

①___ 十几岁　　②___ 20~30岁
③___ 40~50岁　　④___ 60岁以上

问题3-5.**(问题3的答案为①或者②时)** 加害人的人数是?(请标示所有符合选项)

①___ 1人　　②___ 2~3人
③___ 4人　　④___ 5人以上

※ 以下是针对您或您的家人或同住人受到的身体、财产侵害的相关提问。

问题4. 您或您的家人或同住人受到的身体侵害是？(请标示所有符合选项)

①___ 无身体侵害　　②___ 强奸
③___ 强奸未遂　　④___ 性骚扰
⑤___ 因刀(剪刀、锥子等尖锐物品)受伤　⑥___ 因枪支(模拟枪支)受伤
⑦___ 骨头或牙齿断裂(身体骨折)　⑧___ 脏器受损
⑨___ 晕倒(意识不清)　⑩___ 瘀伤、抓伤或划伤
⑪___ 烧伤　⑫___ 其他(**直接填写：**)

问题5. 您或您的家人或同住人受到的侵害，如果换算成金钱，大概是多少？

约 _____ 万韩元(受到多次侵害时，为合计总额)

(医院治疗费、诊断费、针灸费、牙齿治疗费、物理治疗费、精神治疗费等)

问题6. 您或您的家人或同住人是否将受侵害案件向警察进行了申报？

①___ 一次也没有申报**(☞跳到问题6-2)**
②___ 有时申报，有时没有申报**(☞跳到问题6-1)**
③___ 全部都已申报**(☞跳到问题6-1)**

问题6-1.**(向警察申报时)** 针对警察对案件的处理状况，整体上是否满意？

①___ 一点也不满意
②___ 稍微有点满意
③___ 十分满意

问题6-2.（**未向警察申报时**）未进行申报的理由是?

①___ 受到的侵害不是太严重
②___ 已通过个人途径解决
③___ 没有证据
④___ 认为警察不会采取任何措施
⑤___ 认为申报很麻烦
⑥___ 犯人是认识的人
⑦___ 担心会遭到报复
⑧___ 其他(直接填写 ：　　)

问题7. 除警察外，是否曾向个人或其他机构求助？请<u>标示所有</u>符合选项。

①___ 没有 ➔ **请跳到问题 9.**
②___ 邻居
③___ 外国人支援机构
④___ 宗教团体
⑤___ 母国朋友、母国社团
⑥___ 工作单位的领导、同事
⑦___ 母国大使馆
⑧___ 学校(教授、校内咨询所等)
⑨___ 韩国朋友
⑩___ 其他(**直接填写：**　　)

} **请跳到问题 8.**

问题8. 除警察外，曾获得过怎样的帮助？

①___ 没有获得过任何帮助
②___ 心理安慰
③___ 物质帮助
④___ 信息帮助
⑤___ 其他(**直接填写：**　　)

问题9. 以下是针对您对犯罪受害的想法和感受的相关提问。请在相应选项处作出标记。

问　　项	一点也不害怕	有一点害怕	非常害怕
问题9-1. 我害怕会因特定人种、宗教、国籍问题受到他人暴力对待(用凶器刺、枪击、殴打、丢掷物品、推搡、掐脖子等)。	①	②	③
问题9-2. 我害怕会因特定人种、宗教、国籍问题遭遇抢劫。	①	②	③
问题9-3. 我害怕会因特定人种、宗教、国籍问题遭遇性侵犯。	①	②	③
问题9-4. 我害怕会因特定人种、宗教、国籍问题被他人破坏自身所有物。	①	②	③
问题9-5. 我害怕会有人破坏我的宗教或国家象征物(国旗等)、建筑物(教会等)。	①	②	③
问题9-6. 我害怕他人会因特定人种、宗教、国籍问题盗窃我的物品或钱财。	①	②	③
问题9-7. 我害怕他人会因特定人种、宗教、国籍问题在我家或教会等处放火。	①	②	③

Sq7. 现在, 您是否和家人或其他人一同居住？

① 是的

② 不是, 自己一个人生活 ➔ 请跳到下一页 ☻ PQ1.

※ 以下是针对您的家人或同住人对犯罪受害的想法和感受的相关提问。请在韩国有家人或同住人的人士回答。没有的人士请回答PQ1。

问　　项	一点也不害怕	有一点害怕	非常害怕
问题9-8. 我的家人或同住人害怕会因人种、宗教、国籍问题受到他人暴力对待。(用凶器刺、枪击、殴打、丢掷物品、推搡、掐脖子等)。	①	②	③
问题9-9. 我的家人或同住人害怕会因人种、宗教、国籍问题遭遇抢劫。	①	②	③
问题9-10. 我的家人或同住人害怕会因人种、宗教、国籍问题遭遇性侵犯。	①	②	③
问题9-11. 我的家人或同住人害怕会因人种、宗教、国籍问题被他人破坏自身所有物。	①	②	③
问题9-12. 我的家人或同住人害怕会因人种、宗教、国籍问题被盗窃物品或钱财。	①	②	③

※ 最后是为统计处理而设置的问项。

☻ PQ1. 您的宗教信仰是?

①___ 无宗教信仰　②___ 佛教　③___ 基督教
④___ 伊斯兰教　⑤___ 俄罗斯东正教　⑥___ 天主教
⑦___ 印度教　⑧___ 其他(**直接填写**:)

PQ2. 您是否已取得韩国国籍？

①___ 是　②___ 否

PQ3. 您的婚姻状况是？

①___ 未婚(**☞跳到PQ4**)　②___ 已婚(包括同居)(**☞跳到PQ3-1**)
③___ 分居、离婚, 丧偶(**☞跳到PQ3-1**)

PQ3-1.（PQ3的答案为②或者③时）您配偶的国籍是?

①___ 韩国　　②___ 与我相同的国籍
③___ 除①、②项外的其他国籍

PQ4. 请将现在和您共同居住的人**全部标示**出来。

①___ 配偶　　②___ 子女
③___ 从母国来的家人　　④___ 配偶的家人
⑤___ 朋友　　⑥___ 工作单位的同事
⑦___ 独居　　⑧___ 其他(**直接填写：**　　)

PQ5. 您在韩国一共居住了多长时间？

大概_____年

PQ6.**（本题仅请劳动人员作出回答。）**目前在韩国居住的您和您家人月平均收入是多少？(包括劳动收入在内的所有收入)

①___ 不到150万韩元　　②___ 150万韩元以上~不到250万韩元
③___ 250万韩元以上~不到350万韩元　　④___ 350万韩元以上~不到450万韩元
⑤___ 450万韩元以上~不到550万韩元　　⑥___ 550万韩元以上

面试人员填写事项			
面试人		检查人	

♣ 真诚感谢您在百忙之中抽出时间配合我们进行问卷调查。 ♣